

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076-10


釜山史料叢書 16

國
譯 典客司別膽錄(I)

(1699. 7 ~ 1736. 11)

國譯 鄭景柱

監修 李源鈞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9. 7

일 러 두 기

- 이 책은 전객사(典客司)의 업무 기록 중 동래부 소관 대일교섭 업무에 관한 현존하는 전객사별등록 8책(숙종 25년, 1699년~영조 29년, 1753년) 중 제1책(1699.1~1718.7), 제2책(1720.7~1736.11)을 국역한 것이다.
- 이 책은 조선후기 대일교섭 실무책임자인 동래부사의 일상적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기록한 공문서를 전객사에서 발췌하여 기록한 것이다.
- 전객사별등록의 국역문은 가능한 한 원문의 취지에 가깝게 직역하되, 외교 및 무역관례상 관습적으로 굳어진 용어는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였다.
- 이 책은 조선시대 공용문서를 발췌한 것이므로 이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개 이두의 본 뜻을 살려 국역하였으나, 간혹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 문맥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간에 끊어 고친 곳이 있다.
- 원문의 어휘 중에 간혹 지금의 관용 표기와 다른 경우는, 재래의 관습을 중시하여 대개 원문대로 살렸다. 다만 필사 과정의 실수로 인한 오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밝히고 고쳤다.
- 일본 인명(人名) 및 지명(地名)에 사용된 한자는 일본 측의 표음(表音)이 분명한 경우에는 풀어 표기하였으나, 조선 측의 한자음이 관용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조선 측의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국역 전객사별등록(I)

(1699. 7 ~ 1736. 11)

차 례

- 일러두기
- 차 례
- 국역 전객사별등록(I) 해제 15

제 1 책

- 原本 제1책 原目次 37
- 己卯(1699년, 숙종 25년)
 - 윤 7월 18일 倭船들이 제주 漂流人 및 그 屍身을 싣고 나옴 42
 - 公作米·公木 논의
 - 차왜의 요청으로 禮曹回答書契 문구를 조정함
 - 9월 13일 신임 부산훈도에 朴再興을 파견함 45
- 庚辰(1700년, 숙종 26년)
 - 1월 30일 新銀通用에 대한 回答草稿를 수정함 46
 - 왜관 수리의 給價에 대한 논의 48
 - 일본의 送使 중지에 대한 奉行 문書を 접수함
 - 3월 21일 왜관 修改에 대한 造給방안을 선택함 50
 - 4월 22일 왜인접대 約條를 實銀에서 贍出함 51
 - 5월 2일 新銀 許捧의 건의를 잘못된 동래부사 鄭澮 등을 문책하기로 함 ... 52
 - 왜관보수를 給價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함 54
 - 8월 11일 대일본 開市의 新銀관계 조건을 결정함 55
 - 9월 9일 大殿誕日 방물을 늦게 바친 제주목사 南至熏을 推考하게 함 57
 - 10월 4일 예조 회답서계에 「大輔」를 不書한 堂上을 推考하기로 함 58

□ **辛巳(1701년, 숙종 27年)**

- 2월 16일 일본측 요청으로 예조 회답서계를 改書하기로 함 58
- 6월 12일 公木을 계속 公作米로 代給하되 5년의 기한을 정함 59
- 왜관 朝市에 用箋하는 자는 潛商律로 다스리기로 함 60
- 7월 25일 왜인에게 주는 禮單에 사용하는 黑照를 改造함 61
- 8월 19일 일본에 皇曆銀을 재촉함 61
- 9월 12일 統營倭學이 누락한 禁徒倭 1인을 조사하도록 함 62
- 15일 왜인과의 교역상황 보고 63
 - 별차 李碩麟의 후임을 각별히 선별하도록 함
- 10월 28일 禁徒倭를 누락하여 보고한 통영왜학 鄭郁을 파직하고 후임을 선발하게 함 64
- 11월 3일 裁判倭에게 주는 米太를 줄인 역관에게 상을 내림 65
- 13일 陶器燔造次 出來한 왜인을 돌려보내고 서식에 어긋난 物書を 倭物進上品을 접수함 69
 - 물품이 모자라 倍來監色을 처벌하게 함 퇴각함
- 12월 17일 왜인 銀貨를 元數대로 準捧하기로 함 71
 - 年例送使 및 別差倭에 대한 기한 후에는 柴炭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함

□ **壬午(1702년, 숙종 28년)**

- 1월 10일 砂器燔造倭人이 돌아감 72
- 4월 3일 왜선 問情을 잘못된 統營倭學 金斗元을 決棍하기로 함 72
- 8월 왜선의 인원을 잘못 파악한 왜학 김두원을 罷黜함 73
- 5월 4일 敦寧殿 제향에 入參할 樂工을 各道에 分定함 74
- 7월 회답서계를 不察한 承文院 書員과 禮曹 書吏 등을 처벌함 75
- 11월 弔慰差倭에 대한 日供宴禮雜物을 줄인 훈도 卞廷郁 등을 論賞함 .. 75
- 윤 6월 11일 훈도 변정욱 등에 대한 加資를 비변사에서 다시 평가하게 함 78
- 7월 24일 훈도 加資 반대에 사실을 잘못 논한 승지 呂必容의 상소 80
- 9월 26일 北道 賑資를 위해 왜관 公木의 作米를 논의함 80
- 12월 3일 飛船이 燔造倭 등을 실고 出來함 81
 - 조선에서 사기를 번조하게 해달라는 왜인의 요청을 불허함

□ **癸未(1703년, 숙종 29년)**

- 3월 8일 樂工祿遞兒 줄인 것을 복구하기로 함 83

- 3월 12일 樂工祿遞兒 典聲 1斗 副典聲 2斗 合 3斗를 복구하기로 함 84
- 16일 倭館開市를 撤市하지 않기로 함 85
- 27일 領屍差倭 出來에 賜物을 分給하고 善待하기로 함 85
- 10월 8일 淸使에 대한 茶啖 飯膳를 출인 淸學의 功을 論賞함
- 11월 13일 冬至方物 進상을 소홀히 한 경상좌병사 鄭弘佐를 推考하게 함 86
- 冬至進賀를 미룸에 따라 封進 등 방물도 미룸
- 23일 동래 왜관의 開市에 雜人 출입을 엄금함 87

□ 甲申(1704년, 숙종 30년)

- 3월 11일 왜관에 줄 公米, 公木의 미수가 가장 심한 경주 관인을 처벌함 87
- 28일 謝恩使行에 海賊 소식 문서를 購得한 역관을 論賞함 88
- 8월 2일 小通事 金銀奉을 살해한 왜인을 효시함 89
- 通事輩와 왜인의 개인적인 給債를 엄금함
- 11월 14일 잡물을 넣어 인삼 거래의 무게를 늘이는 것을 엄금함 90

□ 乙酉(1705년, 숙종 31년)

- 2월 7일 漢人 漂船의 물화를 수합하기로 함 90
- 4월 21일 私財로 文書購得한 역관 朴世和 등을 加資하기로 함 92

□ 丙戌(1706년, 숙종 32년)

- 4월 21일 역관 卞廷郁 등에 대한 加資가 過濫하여 환수하기로 함 93
- 8월 29일 父에 대한 加資還收를 취소해 달라는 卞弘和 등의 上言을 무 93
- 9월 5일 都下庶民 80세 이상자에게 酒肉을 베풀기로 함 94
- 6일 80세 이상자에게 베푸는 酒肉의 節目을 마련함 96
- 15일 老人宴의 세부절차를 마련함 96

□ 戊子(1708년, 숙종 34년)

- 1월 16일 朝鮮 여인을 犯奸한 왜인을 양국 관원이 推問하기로 함 97
- 開市의 혁파를 논의하고 和用水用奸을 嚴飭함 98
- 3월 4일 日本 寶字銀貨를 통용하자는 대마도의 요청을 묵살함 99
- 윤 3월 11일 朝鮮 여인 범간왜인을 계속 요청하기로 함 99
- 왜인이 왜관 金표를 벗어난 것을 막지 못한 훈도 등을 처벌하기로 함

○ 5월	15일	일본으로부터 철물 수입 방식을 변동함	101
○		왜관 開市 혁파	102
		－ 公作米 和水의 엄단책 논의	
○ 6월	16일	역관 吳允門이 사망하여 후임을 차출하기로 함	104
○ 10월	5일	대마도주에게 글을 보내어 조선여인을 犯奸한 왜인을 同律로 다스릴것을 定式化하기로 함	105
○	24일	왜선 問情을 잘못된 통영왜학 申之憲을 罷黜함	106
○ 11월	3일	二手斗 加俸을 계속 묵인하고 商買 定額을 罷함	106

□ 己丑(1709년, 숙종 35년)

○ 1월	16일	왜관 開市를 朝前으로 제한하고 收稅色吏를 罷함	108
○ 5월	7일	奸犯倭人을 부산첨사와 관수왜가 同坐하여 처벌하기로 함	109
		－ 奸犯倭人 관계 書契를 전하지 못한 역관을 定配함	
		－ 彦千代圖書를 不許하기로 함	
○ 6월	5일	奸犯倭人에게 조선인과 동물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기로 함	111
		－ 祈請에 의한 圖書 給賜를 불허함	
○ 7월	24일	圖書賜給을 불허하고 書契傳給 대신 邊臣을 통해 논의하기로 함 ...	113
○	27일	규칙외 나온 왜인을 단속치 못한 助羅浦 萬戶 등을 처벌함	115
○ 8월	10일	倭船漂到時 부산별차를 보내지 않고 거제왜학이 문정하기로 함 ...	116
○ 10월	9일	罪倭인 還去 등에 대한 동래부사의 장계에 대한 논의	117
		－ 倭船漂到時 부산별차를 보내지 않고 거제왜학이 문정하기로 함	
○ 12월	11일	서계에 奸犯倭人事와 圖書事를 나누어 措辭하기로 함	117
		－ 兩裁判에 대한 접대를 불허하기로 함	

□ 庚寅(1710년, 숙종 36년)

○ 3월	28일	역관 등이 대마도주에게서 千兩銀 받는 것을 금하는데 대한 논의 ...	118
		－ 기타 역관 등의 보수와 상행위 등에 대한 논의	
○ 4월	9일	동래 왜관의 왜인이 闕出한 일로 인하여 별차 韓續興을 罷黜함 ...	123
○	14일	왜인 난출로 인하여 훈도, 별차를 決棍하기로 함	125
		－ 왜선 문정을 잘못된 거제왜학을 결곤하기로 함	
○ 5월	11일	왜선의 왜인수를 잘못 보고한 훈도 등을 定罪하기로 함	126
○ 6월	14일	犯倭捉送後 奸倭罪人을 처단하기로 함	126
○ 8월	28일	관수왜에게 撤供한 것을 환급하도록 함	127

- 서계를 전하지 않은 역관을 다시 配所로 보냄

- 9월 6일 호조, 공조의 郎廳과 掌樂院 관원이 鐘石磬을 조성하기로 함 128
- 15일 鐘石磬造成廳의 堂上和 郎廳을 차출하기로 함 129

□ 辛卯(1711년, 숙종 37년)

- 3월 27일 五日色吏를 혁파하기로 함 129
- 4월 25일 宰臣을 보내 勞問하고 御帖禮單을 거행하기로 함 130
- 5월 12일 八星 舊銀 통용을 허락하고 六星 新銀을 廢絶하게 함 130
- 6월 27일 舊銀 통용을 허락하되 약속을 申明하기로 함 131
- 7월 2일 銀貨 복구에 대한 대마도주의 서계 및 그 회답 마련 132
- 9월 6일 偶語廳 훈장을 差定하여 華語 清語를 勤謀하기로 함 133
 - 學財 業醫하는 역관을 本業으로 돌리기로 함
- 12월 18일 八星銀 통용 허락 서계를 수정하기로 함 135
 - 前 서계를 전하지 못한 동래부사, 훈도, 별차를 처벌하기로 함

□ 壬辰(1712년, 숙종 38년)

- 5월 17일 空船板子 出送에 대한 일본 서계를 받은 훈도 별차 등을 처벌하기로 함 136
- 12월 28일 회답서계의 問候 여부에 대한 논의 136
 - 問候없는 회답서계를 전하지 못한 동래부사 등을 처벌하기로 함

□ 癸巳(1713년, 숙종 39년)

- 10월 21일 왜관에 대한 日供雜物을 本色대로 하기로 함 140

□ 乙未(1715년, 숙종 41년)

- 6월 17일 倭使宴享에 女樂을 그대로 쓰기로 함 140
 - 手本에 御諱를 범한 훈도, 별차를 처벌하기로 함

□ 丁酉(1717년, 숙종 43년)

- 3월 16일 예조 郎廳이 비어 계목에 公事郎廳을 書入하지 못함 141
- 9월 10일 거제왜학을 급속히 差送하기로 함 142
- 14일 조선 漂民들이 나가사키[長崎]에서 關出하였다는 別書契를 받아 들이기로 함 142

- 벌서계를 가지고 온 頭倭處에 糧饌을 題給하기로 함
- 경상도, 전라도 표민들에 대한 대마도주의 서계
- 나가사키의 표민이 난출한데 대한 대마도주의 서계 및 그 서계 회답의 마련
- 9월 15일 倭供米木の 각색 未收之數를 查出啓聞하고 방납을 금함 146
- 17일 知世浦 漂迫 왜인에 대한 경상좌수사의 장계 147
 - 동래훈도 洪舜明에게 하직을 거두고 赴任시킴
- 24일 일본에 대한 경상도 鷹連 入給을 허락하여 시행함 147
- 25일 경상도 卜定 鷹子를 동래부에 수송하라는 예조의 相考 149
- 10월 22일 일본에 대한 강원도 응련 입급을 허락하여 시행함 150
 - 강원도 복정 응련을 동래부로 수송하라는 예조의 상고

□ 戊戌(1718년, 숙종 44년)

- 1월 19일 館守, 裁判倭의 進上 肅拜를 出來 후 卽行하게 함 151
- 鐵碇掬出罪人을 捕捉한 군관 등에 대한 論賞 152
- 2월 18일 銅靑 進獻에 대한 답으로 3근을 送給하기로 함 152
- 6월 7일 일본에 주는 鷹連을 모두 경상도 各邑에 分定함 152
- 7월 19일 예조 답서의 還島를 還州로 고치기로 함 153

제 2 책

□ 原本 제1책의 原目次 154

□ 庚子(170년 숙종 46년)

- 7월 16일 掌樂院 工生 秋等 付祿을 仕多者로 하기로 함 161
- 9월 25일 장악원 公生 冬等 부록을 사다자로 하기로 함 161
- 11월 12일 國恤時 習樂을 추뒀 후에 하기로 함 161
- 12월 15일 장악원 春等 祿取才를 講譜로 하기로 함 161

□ 辛丑(1721년 경종 1년)

- 3월 27일 제주 大靜縣 漂迫 漢人을 육로로 귀환시키기로 함 162
- 4월 13일 제주 표박 한인을 北京에 入送하기로 함 162
- 6월 6일 역관을 보내어 荒唐船 퇴거를 責論하기로 함 163

- 11월 21일 解事譯官을 差送해 典需官倭를 酬應하게 하고 역관 私禮單을 마련하기로 함 164
 - 12월 1일 弔慰回答書契를 돌려보내 別幅을 갖추어 개찬해 오게 함 164
- 壬寅(1722년 경종 2년)
- 3월 24일 御諱를 범한 巖丸送使 서계를 그대로 上送시키기로 함 165
- 암환서계를 捧上한 동래부사와 훈도와 별차 처벌을 논하지 않음
 - 7월 5일 엄환서계의 서식을 兕名에서 平胤公으로 改給하기로 함 166
- 癸卯(1723년 경종 3년)
- 10월 20일 사역원 관원의 褒貶을 蕩滌하기로 함 166
 - 11월 18일 왜인과 符同하여 縛吏奪米한 소통사 및 관계 왜학을 처벌하기로 함 166
- 甲辰(1724년 경종 4년)
- 1월 13일 장악원 원액외 樂工을 本役に 환속하고 그 保人은 良役に 移定하도록 함 167
 - 8월 19일 朝鮮漂人船 문정을 잘못 보고하고 漂迫倭船 문정을 늦춘 별차를 治罪 함 168
 - 10월 20일 왜선 문정을 소홀히 한 왜학을 院籍에서 太去하기로 함 168
- 乙巳(1725년 영조 1년)
- 11월 19일 掌樂院 提調의 유고로 秋冬等祿取才를 仕多者로 하기로 함 169
 - 12월 2일 어휘를 범한 왜인서계와 그것을 영수한 동래부사를 勿論하기로 함 ... 169
 - 28일 임진왜란 전망자의 후손 申昉을 예조참의에서 遞職함 170
- 丙午(1726년 영조 2년)
- 2월 11일 왜인이 훼손한 수직막을 조성할 때까지 개시를 정지하기로 함 ... 170
- 왜인을 상시 검칙하지 못한 관직자를 처벌하기로 함
 - 5월 11일 임진왜란 순절인의 후손 예조참의 李濩이 회답서계에 대한 避攘으로 체직됨 171
 - 6월 27일 지세포, 구조라포 漂迫 왜인에 대한 문정 내용 172
- 문정을 소홀히 한 옥포왜학 金壽天을 決棍 罷黜하기로 함

- 왜관에 들어가 간 順弘, 善陽을 효시하기로 하고 指捕者를 논상함
- 8월 12일 興販倭 문정을 잘못된 영일현감 池欽과 가별차 金震燦을 처벌하기로 함 173
- 漂倭 久留之弊가 없도록 서계를 급속찬출하게 함
- 9월 1일 왜관 別開市에 商賣譯官 등의 被執物貨 假銀을 捧出함 174
- 倭小船을 倭所에 領付하고 載來한 下人屍體를 확인함
- 가별차 金진혁을 決棍함
- 五島漂倭人의 입송에 대한 서계를 관수왜의 요청에 따라 改給함

□ 丁未(1727년 영조 3년)

- 1월 21일 景宗 祈廟時 入參 樂工들에게 良加之典을 特施하기로 함 178
- 3월 20일 예조참의 李秉泰를 체직하여 倭書回答 주관을 피하게 함 179
- 윤 3월 13일 樂生 金允海의 상언에 의해 그 父 典樂 金俊永을 論賞함 180
- 5월 1일 부산첨사의 잘못을 직접 請罪한 동래부사 李崎天을 推考하기로 함 .. 181

□ 戊申(1728년 영조 4년)

- 2월 9일 物色과 晝錄이 다른 차왜 진상품을 看品別單 중에 懸註하여 들이기로 함 182
- 7월 5일 회답서계의 예단잡물을 예조에서 받아 바로 내려오지 않은 역관들을 從重稟處하기로 함 182
- 회답서계 역관들의 차출 및 發行日字를 查出함
- 19일 倭供米太의 부족한 액수를 등록에서 取考한 후 還銀하도록 함 184
- 28일 왜관 조성에 前監董官이 유식한 價錢을 쓰되 모자라는 값은 營門에서 劃給하기로 함 185
- 8월 3일 蔘稅와 鑄役을 파한 후 왜인 접대 방도를 비변사에서 變通하도록 함 186

□ 己酉(1729년 영조 5년)

- 1월 17일 왜인이 고의로 거제에 漂泊하여 접대를 받는 폐단을 비변사에서 품처하기로 함 186
- 1월 23일 倭使 所給 篁竹 藁草價를 國儲에 넣은 훈도 玄德潤을 加資하기로 함 187
- 訓別廳, 出使廳을 개조함

- 2월 21일 王世子 喪中の 왜인 접대 服色과 宴享節次를 비변사에서 품처하게 함 188
- 3월 4일 왕세자 상중의 왜인 접대를 服盡前에는 卒哭前의 服色으로 하기로 함 189
 - 일본 圖書差倭의 出來를 막은 훈도 별차에 대한 시상을 무시함
 - 倭學 玄德潤에 대한 그 동생의 加資 요청을 무시함
- 22일 乙巳條 三特送使倭 二號再渡船에 대한 問情 내용 193
 - 문정을 잘못된 玉浦倭學을 파직함
- 4월 1일 왕세자 상중의 왜인접대 복색을 마련함 195
- 9월 29일 樂工 朴昌權의 上言으로 그 父 典藥 朴萬積에게 加資함 197
- 10월 12일 왜관 수리시 監董譯官들의 役價 운영을 조사하고 그들에 대한 처벌과 시상을 논함 198
- 11월 3일 왜관에 난입하여 기물을 훔친 양인 朴大中을 처단하기로 함 200
- 12월 11일 玉浦, 多大浦 漂倭船을 처리함 201
 - 왜선 候望을 잘못된 望軍을 決棍하고 왜관에 난입한 죄인을 梟示함

□ 庚戌(1730년 영조 6년)

- 8월 6일 赴京 역관 職窠의 次上通事 복구 여부를 사역원에서 품처하게 함 .. 202
- 21일 九送使倭에게 주는 篋竹, 藁草價를 減除한 역관 卞箕和에게 加資함 .. 203
 - 왜사에 대한 朝家 例給之物의 減除를 防塞함
- 12월 25일 造蓼人은 一律로 논함을 호조의 지방관에게 申飭하기로 함 204

□ 辛亥(1731년 영조 7년)

- 1월 3일 출사역관을 竣事 후 즉시 上京시켜 營私害公의 폐단을 없애기로 함 204
- 8월 24일 회답서계를 改書해 달라는 告慶差倭의 요청 중 일부를 받아 들이기로 함 205
- 12월 12일 商賈, 역관 등 被執蓼絲價出來銀을 八星으로 捧出하도록 함 208
- 14일 漂倭問情을 잘못된 옥포 왜학 梁時雄을 勸罪하기로 함 209
- 22일 次上通事 一窠를 복구하여 淸學에 移屬하기로 함 209

□ 壬子(1732년 영조 8년)

- 1월 13일 사역원 草記에 의해 차상통사 복구를 보류하기로 함 211

- 1월 27일 漂泊倭船 문정을 잘못된 옥포 왜학 양시웅을 勘律하고 手標를 위조한 소통사 등을 從重考律하기로 함 212
- 2월 13일 上言을 再모한 자를 예조에서 考律科治하기로 함 213
- 9월 3일 倭丁銀 捧出이 늦어짐을 늦게 論報한 訓別 등을 論罪하기로 함 213
- 10월 17일 鹽浦 漂泊 왜선을 瞭望하지 못하고 문정을 늦춘 守令, 邊將, 別差 등을 定罪하기로 함 214

□ 癸丑(1733년 영조 9년)

- 1월 6일 差介를 僞稱하여 糧饌을 받은 禁徒倭를 대마도로 縛送하고 옥포 문정 소통사 劉有實을 查問하기로 함 215
- 13일 왜관 화재 215
 - 恤典은 거론하지 않고 改造는 年豐을 기다려 관수왜와 考例 講定하기로 함
- 4월 6일 漂泊 왜선 문정을 잘못된 옥포 왜학 金鼎弘을 拿問하기로 함 216
 - 飢餓不實한 撥卒이 중도에 殞斃하는 일이 없도록 申飭
 - 漂民領來差倭는 접대를 勿許하고 飢餓하도록 함
- 5월 11일 역관 중 1인을 定送하여 江戶 所在 草木, 鳥獸, 魚龍, 藥材를 講하게 함 217
- 23일 被執蔘絲價를 天銀 대신 本色인 丁銀으로 改備 出來하게 함 218
 - 丁銀 여부를 발각하지 못한 飢餓를 決棍하게 함
- 6월 11일 發關推奴한 접위관 權責을 拿處할 것을 명함 219
- 차왜 飢餓를 위해 飢餓에게 接慰官事를 계속 살피게 함
- 12월 12일 접위관 飢餓를 일이 끝난 후 飢餓할 것을 명함 220
- 28일 왜인이 被執之價를 及期 出送하도록 蔘商 潛賣를 막고 開市에 蔘貨를 入去하지 않게 함 220
- 30일 차왜에 대한 公作米와 料米를 充數했으므로 飢餓를 推移하는 것을 飢餓하기로 함 221
- 9월 27일 館守倭에게 責論함 223
 - 위 일로 訓別을 決棍하고 晴川別將 金萬迪을 拿問處之하기로 함
- 29일 飢餓, 別차를 倭情에 밝은 자를 차송하기로 함 224
- 12월 22일 皇曆 冬至使行의 銀貨를 기한에 내지 않은 飢餓부사를 推考하고 飢餓, 別차를 拿處하기로 함 224

□ 甲寅(1734년 영조 10년)

- 1월 倭供米 入給에 手標를 質得하여 公米를 防納하는 것을 엄금하고
用奸하는 자는 館門梟示하기로 함 225
- 17일 平爾一이 도주를 승습한 후 兒名圖書의 未納前에 그 아명으로
送使하는 것을 불허함 226
 - 도주가 差介보내는 것을 정지할 것을 告達함
 - 倭供米 등을 減除한 훈도 玄德潤 등에게 시상하기로 함
- 각 官房 衙門의 별장을 湖南으로부터 禁斷하기로 함 231
- 27일 圖書大差倭 上船宴에 접위관이 사망하여 鄉接尉官을 차출하기로
함 231
- 5월 10일 접대를 誠信으로 할 것을 동래부사에게 신칙함 231
- 21일 한어에 진심할 것을 신칙하여 권역하도록 함 232
- 7월 6일 대차와 진상 숙배시의 儀仗 232
 - 초량객사를 修改할 것을 명함
- 公作米, 倭料米, 柴炭을 기한 내에 왜관에 入給할 것을 申飭함
- 8월 11일 送使倭에 대해 잘못 書報한 옥포 왜학 鄭東起를 논죄하기로 함 ... 235
 - 역관을 시켜 漂民領來差倭를 期末 入去하도록 하게 함
 - 역관의 물화피집을 금단함
 - 동래부에 設廳하고 역관에게 倭語 教習하게 함
- 21일 동래부 설정과 왜어 학습을 倭譯 潛商의 폐단으로 인해 무시함 .. 236
 - 왜역은 竣事 후 즉시 上京하도록 동래부에 재촉하도록 함
- 29일 軍布, 身布, 大同을 正月까지는 錢布를 勿論하여 捧上시키기로 함 238
- 10월 17일 동래부사 최명상이 교인하여 도입함 239
 - 초량객사를 隨朽隨改하기로 하고 경상도에 所入物力을 劃給을 分付 함
 - 漂倭 支供을 약조대로 5일에 한할 것을 관수왜에게 責論하기로 함
 - 漂倭에게 5일외 공급할 경우 壬譯, 道臣, 守臣을 論責하기로 함
- 11월 2일 蒙學 聰敏을 別設해 달라는 上言에 대해 사역원에서 稟處하도록
함 241
 - 樂生 金麗澤의 上言에 의해 그 父 典樂 金鎮兌에게 加資하기로 함

□ 乙卯(1735년 영조 11년)

- 1월 10일 公作公米의 退限을 청하러 출래한 裁判差倭에게 作米事는
嚴防하게 함 243

- 1월 24일
 - 漂泊 왜선 문정을 잘못된 옥포 왜학 鄭東起를 拿門 定罪하기로 함
 - 동래부사가 장계하여 관수왜의 병사와 회답서계 벌폭 등을 입급 및 賻物 題給의 전례를 알림 243
- 3월 7일
 - 武知浦 漂泊 왜인이 料米를 요구하며 次知色吏를 載船함 244
 - 首謀倭人을 도중에 입송하여 治罪할 것을 재판차왜에게 책론함
- 20일
 - 漂倭船을 各鎮에 次次로 領付하여 다대포에 교부하는 것을 전대로 하게 함 246

□ 丙辰(1736년 영조 12년)

- 1월 10일
 - 倭料의 부족액수를 劃給해 달라는 경상감사의 요청을 무시하고 그를 推考하기로 함방하게 함 247
- 7월 28일
 - 柴炭 불급을 이유로 館倭가 난출함 248
 - 관수왜에게 난출한 왜인을 依法 處斷하고 撤供을 전례에 의해 거행하게 함
 - 김해부사, 혼도, 별차, 부산첨사 등을 경중에 따라 처벌함
- 8월 6일
 - 蒙譯을 擇送하여 역관 李續庚이 筭錄한 蒙語書冊을 釐正하게 하기로 함 250
- 8월 14일
 - 順天漂民 領來差倭가 출래함 251
 - 新倭皇이 繼立함에 따라 차왜 서계의 연호가 元文으로 바뀜
- 9월 12일
 - 公作米 柴炭을 過限토록 불급하는 경우 僉使를 호시하고 守令을 중죄로 처하기로 함 252
- - 왜관 난출 왜인처치를 參量하여 撤供에 대해 分付하기로 함 252
- 10월 26일
 - 漂倭船에 대한 給糧을 5일로 한하는 것에서 舊制로 복구함 253
- 11월 22일
 - 표왜선이 5일을 넘겨 領付한 경우 論罪하되 심히 어긴 자는 지체 기간의 長短을 가려 논죄하기로 함 254

□ 影印本 典客司別騰錄 第1冊 255

□ 影印本 典客司別騰錄 第2冊 387

□ 극역 전객사별등록(Ⅰ) 찾아보기 503

국역 전객사별등록(I) 해제

김 동 철
(부산대 사학과)

차 례

1. 『전객사별등록』 개관
2. 『국역 전객사별등록』(I) 개관
3. 『국역 전객사별등록』(I)의 주요
기사 내용 검토

1. 『전객사별등록』 개관

『전객사별등록』은 예조 전객사에서 편찬한 책으로, 현재는 8책만 남아 있다. 현재 전해지는 책의 제1책에는 표지에 「별등록 제2(別騰錄 第二)」라고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래 원본은 모두 9책인데, 현재 제1책은 전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본은 필사본으로 책의 크기는 41×26cm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도서번호 奎 12961)에 소장되어 있다. 왜선이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상황, 일본과 교역한 각종 공사(公私) 무역의 내용, 일본과의 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등 1699년(숙종 25, 기묘) 윤7월부터 1753년(영조 29) 12월 사이에 일어난, 17~18세기 한일관계의 제반 업무 및 왕명으로 실시된 다른 부서와의 관련 업무 등을 전객사에서 기록한 등록이다.

전객사는 예조에 속한 관청, 즉 속사(屬司)이다. 1405년(태종 5) 육조 속사제가 정립될 때 예조 속사로 설치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 『경국대전』 이전(吏典)에 의하면, 예조에 속한 관청으로는 계제사(稽制司), 전향사(典享司), 전객사(典客司) 세 속사가 있었다. 이 가운데 전객사는 중국·일본·여진 등 사신의 접대와 조공, 외국인에 대한 접대와 이들에 대한 왕의 하사품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즉 조선시대 대외관계 실무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였다. 고종 때 편찬된 『대전회통』에도 “야인[여진]에 대한 영접은 지금은 폐지되었다.”는 조항이 붙어 있을 뿐, 나머지는 『경국대전』과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전객사 기능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8책의 『전객사별등록』 수록 시기를, 원본 책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책 : 1699년(숙종 25) 윤7월~1718년(숙종 44) 7월

제2책 : 1720년(숙종 46) 7월~1736년(영조 12) 11월

제3책 : 1737년(영조 13) 3월~1742년(영조 18) 12월

제4책 : 1743년(영조 19) 1월~1744년(영조 20) 12월

제5책 : 1745년(영조 21) 1월~12월

제6책 : 1746년(영조 22) 1월~12월

제7책 : 1747년(영조 23) 1월~1750년(영조 26) 12월

제8책 : 1751년(영조 27) 1월~1753년(영조 29) 12월

『전객사별등록』에 수록되지 않은 1699년 윤7월 이전과, 1754년(영조 30) 이후의 일본과의 교섭 내용은 『전객사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전객사별등록』은 1992년 12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 대외관계편」이란 이름 아래, 3권으로 영인 출간되었다. 영인본 제1권에는 원본 제1~3책, 제2권에는 원본 제4~6책, 제3권에는 원본 제7~8책이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 영인본에는 원본의 내용을 날짜별로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목차에 실고 있어서, 『전객사별등록』 내용의 윤곽을 파악하기에 대단히 편리하다. 그리고 영인본에는 오수창(吳洙彰)의 상세한 해제가 실려 있어서, 책의 구성과 체재, 내용, 사료적 가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 『국역 전객사별등록』(1) 개관

『국역 전객사별등록』(1)은 1699년(숙종 25, 기묘) 윤7월에서 1736년(영조 12, 병진) 11월 22일까지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현존하는 원본의 제1책과 제2책, 즉 규장각 영인본 『전객사별등록』 1의 1~486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규장각 영인본에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이라는 글자를 붙여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件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 목차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표 1> 『국역 전객사별등록』(1)의 연도별 기사항목 수

연도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항목수	2	9	13	10	8	4	2	6	0	11
연도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항목수	8	9	7	2	1	0	1	0	13	4
연도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항목수	0	4	6	3	2	3	3	6	4	5
연도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합계
항목수	12	3	5	5	13	15	5	8		212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각 연도별 항목의 수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1699년에서 1736년의 38년 동안, 1714, 1716, 1719년의 4년은 기사항목이 없다. 1건인 해가 2년, 2건인 해가 4년, 3건인 해가 4년이다. 3건 이하인 해가 14년으로 전체의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한다.

『국역 전객사별등록』(1)의 첫 기록은 기묘(己卯, 숙종 25, 1699) 윤7월 18일 조이다. 기사의 내용은 <동래부사 정호(鄭澹)가 7월 27일에 성첩(成貼)한 장계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첩부한 계목(啓目)에 대한 계하(啓下) 내용>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 정호가 성첩한 장계 내용>은 ㉠ 일본 살마주(薩摩州)에 표류한 제주도 표류민의 시신과 생존자의 송환 문제, ㉡ 공작미(公作米)와 공목(公木) 가운데 한 가지로 지정하는 문제, ㉢ 웅천(熊川) 표류민을 데려오는 차왜(差倭) 등정중(藤貞重)에게 보낸 회답 서계(書契) 내용의 일부에 대한 수정 요구 등이 중심이다. 특히 서계의 수정 문제는 조정에 보고하여 분부를 받아 회답하는 것이 도리이므로, 그들이 청하는 대로 보고하는 장계를 올린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첩부한 계목>은 ㉣ 제주도에 표류한 사람 두 명의 사체(死體)를 찾아가라는 내용의 예조 관문(關文)을 제주목(濟州牧)에 발송, ㉤ 재판차왜를 전례대로 접대하기 위해 접왜관(接倭官)을 차출하여 정하라는 내용을 경상감사에게 알리고, 증정하는 예단(禮單) 잡물은 전례에 따라 마련하여 내려보내고, ㉥ 표류민 원적(原籍)의 관원인 웅천현감은 담당 부서에 명하여 엄중하게 조사하여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이처럼 각 항목별 기사에는 표류민 문제, 공작미 문제 등 당시 양국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안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국역 전객사별등록』(1)의 주요 기사 내용 검토

① 새 은화[新銀] 통용 등 은화 문제

『국역 전객사별등록』(1)의 세 번째 기사인 경진년(1700) 1월 20일조 기사는 새 은화[新銀] 통용에 관한 회답 초고의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대마도주가 새 은화 일로 보낸 서계에 대한 회답 서계 가운데, 일본에서는 새 은화를

통용하는 규정에 수량을 더하여 계산하는 일이 없는데, 도주가 조선에서 새 은화 통용을 허락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수량을 더하는 일을 임시로 시행하였으나, 서계 끝 부분에 「품질이 낮은 것은 수량을 더한다[劣品加數]」는 데서부터 「끝내 반드시 가짜가 늘어날 것[終必滋僞]」이라는 등 부분은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는 이번 서계는 고쳐주지 말고, 앞으로 일의 형편을 보고서 조처를 하도록 하였다.

이 새 은화[新銀] 통용 등 은화와 관련된 문제는 「새 은화의 일로 동래부사와 훈도별차를 잡아와 심문하고 첩시(撤市)함」(1700.5.2), 「새 은화 일 및 개시 일로 여부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는 일」(1700.8.11), 「황력은(皇曆銀)을 재촉하는 일」(1701.8.19), 「보자은(寶字銀)을 통용하자는 대마도주의 서계」(1708.3.4)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701년 9월 15일, 12월 17일, 1711년 5월 12일, 6월 27일, 7월 2일, 12월 18일, 1731년 12월 12일, 1732년 9월 3일, 1733년 5월 23일, 6월 28일, 12월 22일 기사에도 은화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은 산출량이 풍부하고 품질이 뛰어난 은(銀) 생산에 힘입어 에도(江戶)막부가 처음 주조한 은화인 경장(慶長) 정은(丁銀)은 순도 80%의 고품위 통화였다. 10% 정도는 일본 국내에 유통되고, 90% 정도는 국외로 유출되었다. 일본과 조선과의 교역에서도 이 은이 통용되었다. 에도막부 5대 장군 쓰나요시(綱吉) 때인 1695년에 화폐 개주(改鑄)를 단행하여 순도 64%의 원록은(元祿銀)을 새로 주조하였다. 이 은은 경장은과 구별하기 위해 ‘원(元)’ 자를 찍었다. 그래서 원은(元銀)이라고도 한다. 경장은[古銀]과 원록은[新銀]이 통용되게 되었다.

조선과 일본의 교역에 사용된 은은 순도 80%의 은이었다. 이 경장은(慶長銀)은 1611~1697년에 사용되었다. 순도 64%의 원록은(元祿銀)이 통용되면서 교역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 대마도는 잠시 이 사실을 조선에 숨기기로 했다. 그러나 2년이 한계였다. 순도가 높은 경장은이 점차 자취를 감추자, 대마도는 악화인 원록은을 교역용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1700년부터 원록은이 교역은(交易銀)으로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순도 64%의 원록은이 1697~1712년에 양국 교역에 통용되었다. 그런데 1706년에 에도막부는 다시 순도 50% 은화를 만들었다. 1710년, 1711년에 은화의 악주(惡鑄)를 거듭하여 순도가 20%까지 떨어졌다.

순도가 낮은 은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그 부족한 순도만큼 은을 더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원록은에 대한 평판이 나빠서 조선상인은 원록은을 받

기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교역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대마도와 막부와의 끈질긴 교섭 끝에, 「조선의 인삼을 사오기 위하여 특별히 과거와 같은 품위(80%)로 주조한 은」이라는 뜻의 「인삼대 왕고 은(人蔘代往古銀)」을 주조하게 되었다. 1710년 9월 27일의 일이다. 이 사실은 극히 일부의 막부관료와 은좌(銀座) 담당자만 알고 있었을 뿐, 일반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오직 조선과의 무역용으로서 대마도에만 전달되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만들어진 특주은(特鑄銀, 人蔘代往古銀)이 1712~1715년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1716~1738년에는 순도 80%의 정덕은(正德銀), 향보은(享保銀)이 통용되었다.

대마도에서 왜관으로 은을 수송하는데는 은선(銀船)이라는 작은 전용선을 사용하였다. 이 은선의 움직임은 월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대마도에서는 7월과 8월에 조선으로 신고 가는 은을 황력은(皇曆銀), 10월과 11월에 신고 가는 은을 동지은(冬至銀)이라 불렀다. 일본에서 수입한 은은 대부분 중국에 수출되었다. 중국에 수출되는 은은 중국에 가는 정기사행이 가지고 갔다. 중국의 역(曆)을 받으러 가는 사행인 역자행(曆咨行)은 8월에 한양을 출발하여 11월에 귀국하였다. 이 역자행이 가지고 가는 은이 황력은이다. 동지행(冬至行)은 11월에 출발하여 신년 하례 등 정례적인 의례를 치른 다음, 이듬해 4월 경에 귀국하였다. 이 동지행이 가지고 가는 은이 동지은이다.

이처럼 은화는 조선과 일본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조선의 중개무역으로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품이었다. 은화 관련 기사는 경장은[舊銀]에서 원록은[新銀]으로의 전환, 신은에서 구은으로의 복귀, 순도 50%의 보자은(寶字銀) 통용문제, 황력은 문제 등 왜관에서 이루어진 은화의 통용과 그를 둘러싼 양국 사이의 마찰 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과의 매매춘(賣買春)

왜관은 일본인 여성의 거주나 조선인 여성의 출입이 금지된 남성만의 공간이었다. 조선인 여성이 왜관에 몰래 들어가서 일본인과 성관계를 갖거나, 일본인 남성이 왜관을 몰래 나와서 조선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숙종실록』(1675년 5월)의 기록에는 “왜관의 일본인이 마을을 몰래 드나들면서 부녀와 간음하니, 동래와 부산 사람 가운데는 왜산[일본인이 낳은 사람]이 많다(館倭 潛行閭里 奸淫婦女 東萊釜山之民 多倭產)” 고 할 정도였다.

조선정부는 이러한 매매춘 행위를 잠간(潛奸), 범간(犯奸), 교간(交奸), 화간(和奸), 간음(姦淫) 등이라 불렀다. 매매춘 사실이 발각 되면 당사자는 물론 이를 주선한 중개인도 사형이라는 극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은 조선인과는 달리 대마도로 소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왜인이 우리나라 여인을 범하여 간통한 일을 양국 관원이 자리를 같이하여 조사 심문하는 일」(1708.1.16), 「교간한 시골 여인에게 왜인과 같은 법률을 적용함」(1708.윤3.11), 「우리나라 시골 여자와 간통한 왜인에게 같은 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도중에 서찰을 보냄」(1708.10.5), 「범간왜인을 부산첨사와 관수왜가 같이 조사함. 간통을 범한 왜인 관계 서계를 전하지 못한 문위역관을 정배함」(1709.5.7), 「범간왜인에게 아국인과 동률로 적용하라고 요구하기로 함」(1709.6.5), 「간통을 범한 왜인의 일」(1709.7.24), 「서계에 간범왜인 일과 도서일을 나누어 조사(措辭)하기로 함」(1709.12.11), 「범왜 축송 후 범간죄인을 처단하기로 함」(1710.6.14), 「왜관에 들어가 간(奸)한 순홍(順弘), 선양(善陽)을 효시하기로 하고 그 지포자를 논상함」(1726.6.27) 등 기사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1708~1710년에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보인다.

1708년 1월 16일 기사 내용을 보면, 「왜인과 간통한 시골 여인과 동조한 사람 및 죄를 범한 왜인을 같은 법률로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초량왜관의 관수왜(館守倭)는 왜인은 간통을 범한 일이 없는데 조선 사람이 거짓으로 자백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1707년에 부장(部將) 송중만(宋中萬, 宋仲萬)이 조선인 여인 감옥(甘玉)을 데리고 왜관에 몰래 들어가서 일본인 백수원칠(白水源七)과 매매춘을 한 사건이다. 양자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조선측 주장에 대하여, 왜관의 관수왜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 문제는 1708년 최상집을 당상관으로 하는 문위행(問慰行) 때 해결, 교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문위행은 예조 서계를 대마도에 정식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대마도측의 답서도 받지 못한 채 귀국하였다.

동래부사 권이진(1709.1~1711.4)은 5차례나 장계를 올리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전객사별등록』에 수록된 1709년 5월에서 1710년 6월까지의 5건 기사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권이진은 양자를 동률로 처단하라는 예조의 서계를 수리하지 않고, 또한 답서도 발송하지 않는 대마도측의 변칙적인 대응에 대해, 외교 의례의 기본을 무시한 무례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당사자의 심문보다 대마도주의 답서 제출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백수원칠(白水源七)은 1709년 9월 대마도로 보내진 후, 「죄상은 불분명하지만 양국에 분쟁을 일으켰다」는 죄명으로 유죄(有罪) 처리되었다. 그리고 감옥(甘玉)과 송중만은 1710년 7월 왜관의 수문 밖에서 처형되었다.

대마도의 답서 불급과 백수원칠(白水源七)의 처리에 불만을 품은 조선정부는 「매매춘을 할 경우 양자를 동물로 처리한다」는 것을 약조로 규정하는 것을 1711년 통신사(정사 조태역)의 임무로 삼았다. 통신사는 이 문제를 막부장군에게 직접 탄원하겠다고 주장하여, 마침내 1711년에 대마도와 동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범간약조(犯干約條, 交奸約條, 新定約條)를 체결하였다. 조약은 「대마도 사람이 초량왜관을 빠져나와 여인을 강간한 자는 율문에 따라 사형에 처한다. 조선여인을 유인하여 화간한 자 및 강간 미수자는 영원히 유배에 처한다. 왜관에 잠입한 여성을 조선측에 통보하지 않고 교간한 자는 차률[유배]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1726년 6월 27일 기사는 「초량에 사는 사노(私奴) 순홍(順弘)이라는 남자가 부산에 사는 여인 선양(善陽)과 몰래 왜관으로 들어가서 일본인과 간통하고, 쌀 3말 5되와 은자(銀子) 4전을 받았으므로, 이들은 전례대로 효시(梟示)해야 하며, 순홍의 처 박조시(朴早時)는 남편 말만 듣고 데려오는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배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초량에 사는 추순홍(秋順弘)이 처 박조이(朴召史, 박소사)를 시켜 부산에 사는 창녀(娼女) 김선양(金善陽)을 유인한 후 왜관에 데리고 들어가서, 일본인 무길작(武吉作), 좌위문(左衛門)과 매매춘한 사건이다. 그 결과 추순홍은 왜관 문밖에서 처형되었다. 김선양은 사형을 감면받고 평안도에, 박조이는 전라도에 유배되었다. 일본인 두 명은 약조에 따라 영원히 귀양 갔다.

1707년에 감옥(甘玉)과 백수원칠(白水源七) 사이에 일어난 매매춘 사건 이후 1711년 범간약조(犯干約條, 交奸約條, 新定約條)의 체결까지, 양국 사이에 일어난 매매춘 행위의 내용과 그 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③ 초량왜관 건물의 수리와 조성

「왜관 수리 비용에 대한 논의」(1700.1.20), 「왜관 수리 감동관 김수구(金壽九)가 횡령한 금액을 조사하여 최대제(崔岱濟)에게 지급하고, 모자라는 비용은 영문(營門, 경상감영)에서 획급할 것」(1728.7.28), 「왜관 수리 감동인 역관 김수구와 유극신(劉克愼)의 죄를 논하고 빚진 돈을 징수하여 최대제(崔岱濟)에게 지급

함」(1729.10.12) 등 기사 내용이다.

1700년 1월 20일조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량왜관의 서관 삼대청[동대청, 서대청, 중대청]의 동헌(東軒)과 서헌(西軒), 삼대청의 좌우 행랑, 동관의 재판왜가 등 건물이 기와를 비롯하여 손상된 곳이 많아 수리해야 되는데, 근래 조선의 사정이 계속된 흉년으로 물자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또 공사를 시작하면 송사왜(送使倭) 등이 거쳐할 장소가 없으므로, 올해 구송사(九送使)는 보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래부사 조태동(趙泰東, 1698.9~1699.4) 재임 때, 관수왜가 왜인 목수를 불러와서 필요한 재목과 물자를 마련한 뒤에, 조선에서 비용을 지급하면 일본인 스스로 맡아 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때 즉시 거행하지 않았다. 그후 관수왜와 대관왜 등이 필요한 물자를 계산해 보니, 은화 7,000여 냥 정도이고, 그밖에 일꾼[役軍], 기와, 산자(撒子), 외목(椶木), 대나무, 쥘[藁草], 새끼줄[藁索], 숙마줄[熟麻索], 산마줄[山麻索] 등 잡물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조선측 입장은 은화 가격이 너무 많은데다, 일꾼, 기와, 잡물 등을 별도로 지급해 달라는 것은 매우 해괴하므로, 조선인이 힘써 수리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그래서 차사원(差使員)과 감동역관(監董譯官)을 정한 후, 동래부의 감색(監色)과 공장(工匠) 등을 데리고 가서 수리할 곳을 살핀 후 필요한 재목과 물자를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다.

초량왜관의 건물을 수리할 때 드는 비용이나 필요한 물자의 내용,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과 조선의 입장 차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1728년 7월 28일조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수왜가(館守倭家) 73칸, 대문 18칸, 중문 2칸, 개시대청(開市大廳) 60칸, 재판차왜가(裁判差倭家) 48칸, 대문 2칸, 중문 1칸 등 합계 204칸을 조선 조정에서 지급하는 저치미(儲置米) 1,550석으로 돈 7,000냥을 만들어 조성하게 하였다. 그런데 감동관(監董官) 김수구(金壽九) 등이 맡아 지으면서, 관수왜가 93칸만 조성하였다. 돈 7,000냥으로 93칸만 조성하였다면, 1칸에 75냥 정도의 비용이 든 셈이다. 이처럼 1칸에 75냥이나 비용이 들었다면, 이것은 김수구가 돈을 횡령한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김수구는 새 집을 지으면서 현 집의 목재와 기와를 많이 사용하여 비용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래서 김수구 대신 최대제(崔岱濟)를 시켜 처음 계획했던 204칸 중 나머지 114칸을 짓게 하였다. 비용은 김수구가 횡령한 돈을 추징하고, 부족한 것은 저치미 5,000석을 마련하여 그 이자로서 충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경상감사가 각 읍에 저치미를 획급했으나, 각 읍에서 즉시 출급(出給)하지 않고, 시가(市價)도

가감이 없어 비용 마련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대제는 자기 돈으로 먼저 건물을 조성하고 나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최대제도 헌 집의 목재와 기와를 많이 사용하였다. 조정에서는 최대제에게 조성 비용을 알맞게 지급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상감영에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였다.」

1729년 10월 12일조 기사는 김수구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갑진일록(甲辰日錄)』 내용을 검토한 결과, 김수구가 저치미 1,550석으로 돈 6,975냥을 마련하였지만, 실제 비용으로 쓴 돈은 4,035냥 1전 4푼이었다. 그리고 왜장인(倭匠人)의 역가(役價)인 은화 363냥, 양식쌀[糧米] 30석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액수만큼은 김수구에게서 징수하여 최대제(崔岱齊)에게 주어야 했다. 또한 6,975냥 중 쓰고 남은 돈 2,939냥 8전 6푼은 모두 김수구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 중 480냥은 역관 유극신(劉克愼)이 처음 대신 감독할 때 비용으로 쓰고 갚지 아니한 것이다. 이 480냥을 제하면 김수구가 실제 빚진 것은 2,459냥 8전 6푼이다. 이것은 마땅히 징수하고, 그 죄상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한중억(韓重億)은 자신이 당상임역(堂上任譯)이면서 모두 김수구에게 위임하여 손실이 일어났으니, 자리만 차지하면서 잃어버린 죄를 면하기 어렵다. 최대제는 김수구가 일을 망친 후에, 스스로 비용을 마련하여 큰 역사를 완공하였다. 실제 사용한 경비가 3,441냥 1전 1푼인데, 저치미 1,100석으로 돈 3,300냥을 만들어 모두 계산하였다. 부족한 돈 141냥 1전 1푼은 변통하여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수구와 유극신은 국가를 속이고 재물을 도둑질하고 일을 망친 죄에 따라 엄중하게 처단하고, 한중억은 당상역관으로서 단속하고 감독하지 못한 죄를 추궁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초량왜관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바다 바람의 영향으로 건물 파손이 심하였다. 동관, 서관의 삼대청에 대한 수리는 25년마다 실시하는 대수리[대감동]와, 적절한 시기에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소수리[소감동]가 있었다.

1728, 1729년 기사는 그 전에 이루어진 동관 삼대청(관수왜가, 개시대청, 재판왜가) 204칸의 수리 관련 내용이다. 수리공사의 책임을 맡은 감동역관이 직책을 남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중간에서 횡령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왜관수리등록』(규장각도서 12923), 대마도 종가문서인 『관수옥개시대청재판옥수리기록』, 『변례집요』 등 관련 자료와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왜관 건물을 짓거나 수리 보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이를 위한 비용의 내용과 부담, 건축 자재의 조달 등 왜관 건물의 물리적 관리 실태의 모

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④ 왜관 조시·개시에서의 동전 사용 문제

「왜관의 조시(朝市)에서 돈을 사용하는 자가 탄로나면 잠상률(潛商律)로 조처함」(1701.6.12). 「일본으로부터의 철물(鐵物) 수입 방식을 변통함」(1708.5.15) 등 기사 내용이다.

1701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래부사 김덕기가 조시(朝市)와 관련된 조목 하나를 비변사에 보고한 것이다. 왜관에는 날마다 조시가 열렸는데, 매매하는 것은 채소 등 잡물에 불과하며, 아침에 열렸다가 곧 파하였다. 돈[常平通寶]을 사용한 이후로는 양국 사람이 항상 돈을 교역의 수단으로 삼는다. 최근 왜인들이 전화(錢貨)를 쉽게 위조하고, 또 구리가 왜관에서 나오므로 금지 조목을 엄격하게 마련하여 폐단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지하는 법률은 조정에서 의논하여 확정된 다음에야 변방 수령이 의거하여 행할 수 있다.」 이제부터 조시에서 돈을 사용하다가 발각되는 자는 잠상률(潛商律)로 논단한다는 내용이다.

1708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래부사 한배하가 철물(鐵物)을 변통하는 일로 올린 장계이다. 양국 무역에서 백사(白絲)나 인삼 등 물자를 파는 것은 은화로, 그 밖의 잡화(雜貨) 가격은 철물로 교환하는 것이 전례이기 때문에 철물을 방색(防塞)하는 것이 불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동전[상평통보]을 통용한 이후로, 간사한 백성이 사주(私鑄)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철물을 방색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돈이 통용되는 길이 막혔다. 철물은 돈을 주조하는 원료일 뿐 아니라 온갖 기물(器物)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여러 해 방색하면 공사 간에 모두 절실하다. 근래 동전이 천하여 도구를 만드는 이익보다 못하니, 다시 통용을 허락해도 사주할 염려는 없다고 한다. 우리 상인이 이문을 잃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왜인이 철물을 버리고 은화로만 값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를 면치 못한다. 매번 방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변통하도록 했다.」

조시는 왜관의 수문(守門) 밖에 서는 새벽시장이다. 생선, 과일, 채소, 쌀 등 왜관에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생필품이 주로 거래되었다. 교환수단은 주로 쌀이었다. 그러나 1678년부터 상평통보가 널리 통용되면서 조시 거래에서도 동전이 널리 유통되었다. 특히 왜관을 통해 일본에서 구리가 많이 수입되었으므로,

동전을 위조하는 사주(私鑄)의 폐단이 심하였다.

『신보수교집록』에 보면, 「1698년 동래에서 구리[銅鐵]를 매매하거나 사사로이 돈을 주조하는 것을 엄히 금한다」는 숙종의 전교(傳敎)가 있다. 그후에도 사주의 폐단이 단절되지 아니하자, 김덕기의 장계에 따라 1701년에 「조시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잠상의 범률로 논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 내용은 『증정교린지』(권4, 금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김덕기는 이러한 금지 내용을 목판에 새겨 왜관 문안에 걸어둘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1708년 동래부사 한배하는 동전의 유통 때문에 철물[구리]의 수입을 막았지만, 이제는 동전이 너무 흔해 사주의 염려가 없고, 또 우리측 상인의 이문이 없어지고, 모든 거래에 은화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철물 수입 금지를 풀어주는 변통책을 주장한 것이다.

왜관의 개시, 조시에서의 상평통보 유통, 사주전의 남발 양상과 이와 연동된 구리 수입의 금지 등 실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⑤ 왜관 오일개시(五日開市)

「동래왜관의 개시에 잡인의 출입을 엄금함」(1703.11.23), 「오일개시의 효과를 논의하고 화수(和水)용간(用奸)을 엄칙함」(1708.1.16), 「오일개시의 효과를 논의하고 화수(和水)용간(用奸)을 엄칙함」(1708.5.15), 「왜관 개시를 아침 전으로 한정하고 수세색리를 혁파함」(1709.1.18) 등 기사 내용이다.

1703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래 왜관의 개시는 한 달에 여섯 차례인데, 이것은 조정에서 허락한 것이다. 왜인에게 찬(饌)을 보내는 일로 오일일차개시(五日一次開市)하는 잘못된 규정이 있어서, 상고(商賈) 외에 잡인(雜人)과 동래부 관리가 연속하여 출입함으로써 난잡한 폐단이 많고, 우리나라의 은밀한 일이 왜인에게 몰래 전달되는 일이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조정에서 막으려고 해도 동래부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폐지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지금부터는 이를 엄금해야 한다.」

1708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일개시(五日開市)의 폐단이 가장 심한데도, 동래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그대로 두고 혁파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오일개시는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오일개시의 개념은 1708년 5월 15일, 11월 3일 기사에 잘 보인다. 「오일개시는 미곡 등 긴요한 물자를, 색리(色吏)를 정하여 장부를 두고 세금을 거둔 뒤

에 표를 지급하여 왜관에 들어가 매매하는 것이다. 잡류(雜類)가 마음대로 출입하거나, 여러 날 왜관에서 머무는 등 일이 매우 해괴하나, 동래부가 수세하여 경비를 보충하기 때문에 금단하지 못한다.» (5월 15일)

「오일개시는 상인들이 한 달에 6차례 왜관 안에 들어가서 매매할 때 혼도·별차 및 동래부의 군관이 함께 들어가 감독하는데, 아침에 들어갔다가 정오에 나오는데 불과하다.» (5월 15일) 「오일개시는 동래부에서 색리(色吏)를 정하여 매오일(每五日) 양식과 찬을 왜관에 지급하기 위하여 들여줄 때 물화를 교역하는 사례가 있는데, 색리에게 세금을 지급하면 모두 물화를 통한다고 한다. 색리가 세금을 거두는 것을 혁파하도록 한다.» (1708년 11월 3일)

왜관 개시대청에서 열리는 개시는 한 달에 여섯 번 즉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열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개시를 대개시(大開市), 본개시(本開市), 육개시(六開市), 일삭육차개시(一朔六次開市), 육대개시(六大開市), 대청개시(大廳開市) 등으로 불렀다. 이 개시와는 별도로 왜관에서는 오일개시가 열렸다. 이 개시는 ‘일삭육차개시’와는 달리 ‘오일일차개시’라고 불렀다. 오일개시는 왜관에 양식과 찬을 지급할 때 열리는 개시로서, 동래부에서 색리(色吏)를 정하여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였다. 대개시, 대청개시 때는 왜관의 출입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상고[수패상고, 도중상고]인 특권상인이 담당하는 것과 달리, 오일개시 때는 ‘잡류, 잡인, 잡상’이라 불리는 비특권적인 영세상인이 거래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오일개시의 개념이나 성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시 날짜이다. 개시 날짜를 뜻하는 「오일일차개시」, 「매오일(每五日)」 등 사료적 표현은 ① 한 달에 1번(첫째 5일), ② 한 달에 3번(5일, 15일, 25일), ③ 한 달에 6번(5일마다)의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필자는 ‘일삭육차개시’와 ‘오일일차개시’의 대비되는 표현에 주목하여, 「한 달에 한 번 첫 5일날 열린 것 같다」고 해석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위의 1708년 사료를 검토해 보면, 한 달에 6번, 즉 5일마다 열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해석이 가능할 경우 오일개시는 ㉠ 대개시 날과 동일 날짜(3일, 8일), ㉡ 대개시 날과 관계 없이 오일마다 한 번의, 두 가지 개시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춘관지』(권3, 개시)에서는 「본개시와 같은 날이 되기도 하고, 혹은 앞뒤로 어긋나기도 했다」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오일개시 기사 내용은 오일개시의 설치, 날짜, 거래 물품, 세금, 폐단, 혁파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앞으로 개시, 오일개시, 조시 등의 비

교 검토를 통해 각각의 유형, 개념,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⑥ 왜사의 연향 접대

「왜사의 연향 때 여악을 그대로 쓰기로 함」(1715.6.17), 「왕세자 상중의 왜인을 접대하는 복색과 연향절차를 품처하게 함」(1729.2.21), 「왕세자 상중의 왜인 접대를 복이 끝나기 전에는 줄곡전의 복색으로 함」(1729.3.4), 「왕세자 상중의 왜인접대 복색을 마련함」(1729.4.1) 등 내용이다.

1715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왜사(倭使)의 연향(宴享) 때 여악(女樂)을 폐지하는 조목에 대해 확정된 명이 있었다. 금년조 송사왜(送使倭) 등의 하선연(下船宴)이 6월 4일로 결정되어, 시험삼아 조정의 분부를 왜학역관에게 전하였으나, 왜인들은 백여 년 동안 이미 시행한 예를 갑자기 폐지하니, 이를 대마도주에 통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측의 반발이 심하여 1715년 제1, 2, 3선 송사왜 등의 하선연(下船宴)에 여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증정교린지』를 보면, 구례(舊例)에는 소동(小童)이 춤을 추었으나 1612년에 차왜가 기생들의 춤을 고집한 까닭에 처음으로 시행하였다고 하였다. 동래부에서 여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숙종실록』 숙종 40년(1714) 8월 임신조에 의하면, 경상도 암행어사 이병상(李秉常)은 음탕한 소리와 아름다운 여색(女色)을 뒤섞어 연향하는 자리에 올리고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바탕으로 삼으니, 참으로 해괴하다고 하면서, 여악 폐지를 주장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다. 앞에서 언급한 1715년 기사는 이 『숙종실록』 내용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왜관의 일본인이 이를 거부하여 다시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1729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왕세자 상중에 왜인을 접대할 때의 복색과 연향의 절차는 동래부에 근거로 할 만한 전례가 없어서, 오래된 등록을 살펴보았다. 1645년(을유) 소현세자(昭顯世子) 상사 때는 객인에게 권화(勸花)하고 상화(床花)는 사용하지 않았다. 기생과 악공은 진열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연회 때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다. 찬품(饌品)은 세 차례 연회 모두 고기를 사용하였고, 복색은 모두 길복(吉服)으로 한 듯하다. 무술년 빈궁(殯宮) 상사 때는 줄곡 전에는 잔치를 베풀지 않았고 건물(乾物)을 주었고, 줄곡 뒤에는 연향 절차를 평상시 사례대로 거행하였다.」

이에 대해 복이 끝나기 전에는 마땅히 줄곡 이전의 사례대로 하도록 하였

다.(1729년 3월 4일) 그러나 이전부터 국홀 시에는 졸곡 뒤에는 왜인의 연향 접대 예를 폐지한 사례가 없는데, 신사년 국홀 때 졸곡 이후에는 천담복(淺淡服)과 오사모(烏紗帽)에다 철을 제거한 흑각대(黑角帶)로 잔치를 베풀었고, 일본 쪽에는 고기 상을, 우리쪽에는 소찬 상을, 상제(祥祭) 뒤에는 길복(吉服)에 고기 상을 사용하였다. 경자년과 갑진년에는 국홀의 졸곡 뒤에는 포사모(布紗帽)와 포단령(布團領)으로 하면서, 권화(勸花)는 객인(客人)에게만 배치하고 상화(床花)와 기악(伎樂)은 사용하지 않았다. 졸곡 뒤에도 이전대로 연향을 베풀되, 피차간에 고기, 소찬의 구분, 권화와 상화, 기악 등의 절차를 경자년과 갑진년 등록대로 하되, 복색은 시복(時服)의 백포단령에 오사모와 흑각대의 제도로 하여 구분을 두도록 하였다.

일본에서 연례송사나 차왜 등 사신이 오면 왜관의 연향대청(연대청)에서 접대 연향이 이루어졌다. 『증정교린지』 「연향의」에 이러한 연향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다. 연향에서 여악 실시를 둘러싼 양국간 생각의 차이, 1714년 여악 폐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1715년 왜관 접대 연향에서 여악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상 때 왜사 접대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⑦ 왜관 난출(闕出)

「동래왜관의 왜인이 난출한 일로 인하여 별차 한찬홍을 파출함」(1710.4.9), 「왜인 난출로 인하여 훈도와 별차에게 곤장을 칩」(1710.4.14), 「땀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관 왜인이 난출함」(1736.7.28), 「난출 왜인의 처치를 헤아려 첩공(撤供)에 대해 분부함」(1736.9.12) 등 기사 내용이다.

1710년 4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문군관(守門軍官), 복병장(伏兵將)의 고목(告目)과 거리통사(巨里通事)의 진고(進告) 내용에 ‘관왜 57명이 생선과 채소를 매입한다고 칭하면서 각기 미승(米升)을 가지고 사질도(莎叱道) 구덕산(九德山) 길로 갔다’ 는 보고하였다. 그 중 5명이 왜관의 북쪽 담장을 넘어 나갔다. 이를 막기 위해 부산진에서는 장교(將校)를 보냈다. 또한 훈도와 별차 등에게 전령하고 신칙하였다. 이들은 구덕산을 넘어서 목장촌(牧場村)으로 돌아왔다.

왜인의 사정을 탐지하였더니 모두 공작미(公作米)에서 나온 것이다. 두 해분을 한꺼번에 다 받은 뒤에 그대로 경인조 공작미를 칭하여 가을 사이에 또

받으려고 난출하는 형세를 하여 위협하여, 청하는 바를 모두 이루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다. 별차 한찬흥(韓纘興)이 병을 칭하고 녀 달이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번 난출 때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파직시키도록 하였다.」 난출의 목적은 공작미를 원활하게 지급받기 위한 조직적 시위 활동의 성격이 강했다.

난출을 막지 못한 훈도와 별차에 대한 책임 추궁을 둘러싸고 경상좌수사 이상집과 동래부사 권이진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1710년 4월 14일 기사를 보면, 이상집은 훈도와 별차들이 농간한 실상이 있다고 죄를 청하였으나, 권이진은 왜인이 훈도와 별차를 쫓아내려고 전례에 따라 난출한 것이라면서 죄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특히 권이진은 훈도와 별차를 쫓아내려는 것이 난출 목적의 하나라고 하였다.

1736년 7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왜인이 난출한 것이 정축년(1697)에는 200명, 경인년(1710)에는 57명이다. 이번에는 인원수의 다과도 차이가 있고, 정축년, 경인년처럼 소란을 일으킴도 없다. 다만 이번 난출의 변고는 날마다 공급하는 땀감을 때맞추어 계속 지급하지 못한데서 비롯하였다. 경계 밖으로 난출한 자는 일죄(一罪, 사형)로 처단하는 것이 약조[계해약조, 1683]에 실려 있으니, 관수왜에게 따지고 타일러서 대마도주에 통보하여 법대로 처단한 뒤에 회보(回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첩공(撤供)은 정축, 경인년의 전례가 있으니 동래부가 청한대로 첩공한다고 고하고, 서서히 그들이 하는 바를 보고 조처함이 마땅하다」 고 하였다.

1736년 9월 12일 기사 내용을 보면, 왜관 관수왜가 난출한 왜인 등을 마땅히 대마도로 잡아보낸다고 하였으니 그 조처 여부를 살펴보고 나서야, 첩공(撤供)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초량왜관 왜인의 난출은 공작미의 원활한 조달, 땀감 지급 요청, 훈도·별차 등 왜학역관의 파직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시도되었다. 조선에서는 왜관의 경계 밖으로 난출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약조 내용을 적은 약조제 찰비를 1683년 왜관 출입문 안팎에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난출은 계속되었다. 난출의 다양한 양상과 그에 따른 양국의 대응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상에서 『국역 전책사별등록』(1)에 해당하는 기사를 몇 가지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이 외에도 표류민, 공작미, 유민(遊民), 피집(被執), 개시

(開市), 잠상(潛商), 다완(茶碗)·도기(陶器)의 번조, 상선연·하선연, 살인, 절도, 조삼(造蔘), 상세(商稅), 매[鷹連], 수포 위조, 왜관 화재, 초량객사 수리 등 조선후기, 특히 18세기 전반 한일교류사, 부산지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전객사의 일상 사무와 그에 따른 각종 문식(文式), 의례 등을 망라한 자료로는 『전객사일기』가 있다. 이 책은 『전객사일기초본』 『전객사등록』 등으로도 표기되어 있다. 1640년(인조 18)에서 1886년(고종 23)의 약 250년 동안의 전객사에 관한 총 99책의 방대한 분량이다. 이 책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각사등록 92~101』(1999~2006년)으로 활자화하여 간행한 바 있다. 『전객사별등록』의 내용을 『전객사일기』, 『왜인구청등록』, 『변례집요』, 『증정교린지』,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조선왕조실록』 등 관련 내용과 비교하면, 더욱 구체적인 조선후기 한일교류사, 부산지역사의 역사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해제는 아래 참고문헌의 성과를 참고하면서 상당 부분 인용, 요약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김동철, 「17·18세기 대일공무역에서의 공작미 문제」 『항도부산』 10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3.
- 김동철, 「조선 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동래상인」 『민족문화』 21, 민족문화추진회, 1998.
- 김동철, 「국역 왜인구청등록 해제」 『국역 왜인구청등록』(V),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08.
- 김문식, 「18세기 전반 권이진의 대외인식」 『도산학보』 4, 도산학술원, 1995.
- 다시로 가즈이 지음(정성일 옮김), 『왜관-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2005.
-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료의 소개」 『한일관계사연구』 18집, 한일관계사학회, 2003.
- 신명호, 「조선후기 해양인식과 표류인 정책-『전객사일기』를 중심으로-」 『해양문화학』 2호, 2006.
- 심민정, 「18세기 왜관에서의 왜사 접대음식 준비와 양상」 『역사와 경계』 66, 부산경남사학회, 2008.
- 양홍숙, 「조선후기 대일 접위관의 파견과 역할」 『부대사학』 24집, 부산대학교

사학회, 2000.

- 오수창, 「『전객사별등록』 해제」 『전객사별등록』(一), 서울대 규장각, 1992.
- 윤유숙, 「17세기 후반~18세기 초두 왜관통제와 한일교섭」 『통신사·왜관과 한일 관계』(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경인문화사, 2005.
- 尹裕淑, 「近世癸亥約條の運用實態について-潛商・闖出事件を中心に」 『朝鮮學報』 164, 1997.
- 尹裕淑, 「近世倭館の造營・修補について」 『歴史評論』 595호, 1999.
- 田代和生, 「倭館における朝鮮錢の使用」 『對馬島宗家文書 第Ⅲ期 倭館館守日記・裁判記録 別冊』(中), ゆまに書房, 2005.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0.
- 제임스 루이스, 「조선후기 부산 왜관의 기록으로 본 조일관계- ‘폐·성가심(迷惑)에서 상호이해로-」 『한일관계사연구』 6, 1996.
- 한문중, 「조선후기 일본에 관한 저술의 조사 연구-대일관계 등록류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6집, 국사편찬위원회, 1999.

국역 전객사별등록(I)

國譯 鄭景柱

監修 李源鈞

국역 전객사별등록 제1책

원본 제1책 원목차

기묘(1699)

- 윤7월 제주에서 표류한 사람의 시신을 실어오고, 재판(裁判)을 교체 파직하고 대신으로 등직량(藤直良)이 나오고, 관수왜가 또 말한 “표류한 사람을 데려 온 차왜 등정중(藤貞重)에게 보내는 예조의 회답 서계 가운데 넣은 말을 깎아주기를 청한 품의 등의 일”로 비변사에 계하함.
- 9월 새로 차출한 훈도가 바로 동래로 감.

경진(1700)

- 정월 새 은화를 통용하는 회답 초고 가운데 사용한 말을 깎아 고치라고 운운한 일로 비변사에 계하함.
- 왜관을 수리하는 사이에 당년조 9차의 송사(送使)는 내보내지 않는 일로 동래 등에 봉행이 바진 서찰을 올려 보냄.
- 3월 경상감사의 장계로 말미암아 왜관을 우리 측에서 지어 주는 일.
- 4월 왜인 접대 시의 약조 서너 건을 실록에서 빼껴 내어 옴.
- 5월 새 은화의 일로 동래부사와 훈도 별차를 잡아와 심문하고 첩시(撤市)함.
- 8월 새 은화의 일 및 개시의 일로 여부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는 일.
- 9월 대전(大殿) 탄일의 방물(方物) 때문에 제주목사를 추고함.
- 10월 답장 서계에 대보(大輔) 두 글자를 쓰지 않은 일을 추고.

신사(1701)

- 경진조 제2선 이하의 회답 서계 가운데 ‘래인(來人)’ 두 글자를 이어 썼으므로 받아가지 않아 고쳐 써서 내려보내는 일.
- 6월 왜인에게 지급하는 공작미를 5년에 한하여 지급을 허락하는 일.
- 왜관의 조시(朝市)에 돈을 사용하는 자가 탄로나면 잠상율(潛商律)로 조치함.
- 7월 왜인에게 지급하는 예단 가운데 찍는 검은 도장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일.
- 8월 황력은(皇曆銀)을 재촉하는 일.
- 9월 통영 왜학의 문정(問情)에 중금도왜(中禁徒倭) 1인을 거론하지 않아서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는 일.
- 별차의 임기가 차서 그 대신을 순서를 해아리지 않고 각별히 선발하여 보내는 일.
- 10월 통영 왜학 정욱(鄭郁)을 파직하고 대신을 차출하여 보내는 일.

- 11월 재판 차왜 평성상(平成尙)에게 지급하는 쌀과 콩을 감한 일로 훈도별차 등에게 상을 청함.
- 사기를 구워만드는 담당 왜인이 바친 봉행 등의 서찰이 전례에 크게 어긋나므로 되돌려 물려주고 허락하지 아니함.
- 11월 왜물을 진상하여 가져 온 감색(監色)을 유사(攸司)에 명하여 추고하게 하는 일.
- 통영 왜학을 파직하여 내쫓고 대신을 급속히 차출하여 정함.
- 은화를 수량에 맞추어 받아내는 일 및 연례 송사와 별차왜 등에게 지급하는 땀감은 기한이 이미 끝난 뒤에는 일체 이전대로 들여주지 마는 일.

임오(1702)

- 정월 사기를 구워만드는 일을 담당하는 왜인이 돌아들어감.
- 4월 통영 왜학 김두원을 본도에 명하여 곤장을 치게함.
- 왜선이 표류하여 정박할 때 명 수가 어긋난 왜학 김두희를 파직하여 내쫓음.
- 5월 경녕전(慶寧殿) 제향에 들어가 참여하는 악공을 분정하는 일.
- 표차(漂差)의 회답 서계를 살피지 않은 일로 승문원 서원(書員)과 본조 서리(書吏)를 추고하여 다스림.
- 조위 차왜에게 지급하는 급료 미태(米太) 및 세 차례 잔치의 예단(禮單)을 경감한 연고로 훈도 별차에게 상을 논함.
- 윤6월 훈도 별차의 가자(加資)를 묘당에 명하여 다시 품의하게 함.
- 7월 훈도 별차 가자의 일로 올라온 상소를 비변사에 내림.
- 9월 왜관 공목작미의 편의 여부.
- 12월 사기를 구워만드는 것을 방색하고 왜인의 서계를 되돌려 내려보냄.

계미(1703)

- 3월 악공(樂工)의 녹체아(祿遞兒)를 복구함.
- 경녕전 제향 악공의 녹체아를 복구함.
- 왜관의 개시를 철거하지 말 것.
- 첩공(撤供)과 첩시(撤市)는 이미 분부하였으나, 차왜에게 부물(賻物)을 나누어 주고 접대하는 두 조목을 분부.
- 10월 역관 정방립(鄭芳立)이 상언(上言)하여 회계(回啓)함.
- 진상한 화살통[筒筒]이 정밀하지 않아 좌병사(左兵使)를 추고함.
- 동지진하(冬至陳賀)는 국기(國忌)와 상치하니 물려서 시행하는 일.
- 11월 5일 개시에 잡인을 금함.

갑신(1704)

- 3월 공작미(公作米)와 공목(公木)의 미수(未收)가 있는 수령을 논죄함.
- 3월 사은사(謝恩使) 사행(使行)에 문서를 구입한 역관의 상을 논함.
- 8월 소통사 김은봉(金銀奉)을 살해한 왜인을 왜관 문 밖에서 효시(梟示)함.
- 11월 인삼 피육(皮肉) 사이에 잡물을 삼입한 자가 드러나서 잡히면 논죄하는 일.

을유(1705)

- 2월 남도포(南桃浦)에 표류한 한인(漢人) 선박에서 물화를 건져내는 일.
- 4월 문서를 구입한 역관에게 가자(加資)하는 일.

병술(1706)

- 역관 변정욱(卞廷郁)과 최상집(崔尙曷) 등의 가자를 환수하는 일.
- 8월 변홍연(卞弘衍) 등의 상언(上言)을 시행하지 않음.
- 송유적(宋裕績) 등이 상언한 삼압물(三押物)의 체아(遞兒)를 복구하는 일.
- 9월 서울 서민으로서 나이 80 이상을 인솔하여 주육(酒肉)을 먹임.
- 오부의 서민을 인솔하여 음식을 먹이는 절목.
- 오부의 노인을 인솔하여 먹일 때의 절차를 당상(堂上) 및 영상(領相) 앞에서 확정할 것.

무자(1708)

- 정월 왜인이 우리나라 여인을 범하여 간통한 일을 양국 관원이 자리를 같이하여 조사 심문하는 일.
- 5일 개시의 혁파 여부
- 3월 보자은(寶字銀)을 통용하는 일로 서계.
- 윤3월 교간(交奸)한 시골 여인에게 왜인과 같은 법률을 적용함.
- 왜인이 뚫고나온 일로 훈도 벌차 등을 잡아다 심문함.
- 5월 철물 변통.
- 공작미에 물을 타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5일 개시를 혁파하는 일.
- 6월 훈도 오윤문(吳允門)이 죽어 대신을 차출함.
- 10월 우리나라 시골 여자와 간통한 왜인에게 같은 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도중(島中)에 서찰을 보냄.
- 10월 통영 왜학 신지현(申之濂)을 파직하여 내쫓고 대신을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차출하는 일.
- 11월 이수두(二手斗)의 일은 그냥 두고 상역(商譯)의 정원을 혁파하는 일.

기축11709)

- 정월 왜관 개시(開市)는 아침 이전에 한하여 시행을 허락함.
- 5월 간통을 범한 왜인의 일로 문위역관(問慰譯官)을 정배(定配)하고, 언천(彦千)의 도서(圖書) 대체를 허락하지 않음.
- 6월 간통을 범한 왜인의 일과 언천의 도서 대체에 대한 일.
- 7월 간통을 범한 왜인의 일과 언천의 도서를 대체하는 일을 다시 더 책망하여 타이르는 일.
- 7월 호송장 조라포(助羅浦) 만호를 파직하여 내쫓는 일.
- 8월 표류한 왜선에는 좌도는 별차를, 우도는 거제 왜학이 문정하고, 우도에 표류한 왜선에는 별차를 중첩하여 보낼 필요가 없다는 일.

경인(1710)

- 은화 천금을 여러 역관 및 여러 상사리(上司吏)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통절하게 금하는 일.
- 4월 초9일에 왜인이 뚫고나온 일로 별차를 파직하여 내쫓고 그 대신을 선발하여 보냄.
- 4월 왜인이 뚫고나온 일로 훈도 별차 등에게 곤장을 칩.
- 거제 왜학 김시박(金時璞)에게 곤장을 치는 일.
- 5월 왜인의 인원 수가 서로 어긋나서 훈도 별차 등을 잡아다 심문함.
- 6월 왜인과 간통한 감옥(甘玉) 및 중만(仲萬)을 짐짓 그대로 가두었다가 죄를 범한 왜인을 잡아보낸 뒤에 처단할 일.
- 8월 관수왜에게 철공(撤供)을 되돌려 주고 최상집(崔尙嶮)은 유배된 곳으로 되돌아 떠남.
- 9월 궁정의 헌가(軒架)에 사용되는 종과 석경(石磬)을 호조와 공조에서 함께 정밀하게 제조함.
- 종과 석경의 조성청(造成廳) 당상과 낭청(郎廳)을 차출함.

신묘(1711)

- 3월 5일 색리(色吏)를 혁파하는 일.
- 4월 재신(宰臣)을 보내어 위로하는 어첩(御帖)의 예단(禮單)을 분부함.
- 5월 팔성은화(八成銀貨)를 복구하여 통용하는 어부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
- 6월 팔성은의 화폐를 통용하는 일.
- 7월 은화를 복구하는 일로 도주의 서계에 회답하는 일.
- 9월 사역원의 우어청(偶語廳) 훈장을 정하여 과정을 권장하는 일.

- 12월 팔성은의 통용을 허락하되 부사는 추고하고 훈도와 별차는 곤장을 침.

임진(1712)

- 5월 빈 배의 관자를 내보낸 서계의 일로 훈도 별차 등에게 곤장을 치는 일.
- 12월 금년조 1특송사왜에게 주는 회답 서계를 받지 않아 부사를 추고하고 훈도와 별차에게 곤장을 침.

계사(1713)

- 10월 왜관의 일공 잡물을 쌀로 넣어주는 일.

을미(1715)

- 6월 왜사의 연향 때 여악(女樂)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본(手本)에 휘를 범한 일로 훈도와 별차를 잡아다 심문하고, 부사는 파직함.

정유(1717)

- 배종(陪從) 낭청(郎廳)이 온양으로 나갔으므로 첨부한 계목에 써 넣지 못함.
- 9월 거제 왜학 정동기(鄭東基)가 상중에 있어서 대신을 차출하여 보냄.
- 우리나라의 표류한 사람 등이 뚝고나가 소란을 부린 일로 특별히 서계를 바쳤는데, 서계를 가져온 두왜(頭倭)에게 양식과 반찬을 지급하는 일.
- 우리나라 사람이 표류하여 나가사키[長崎]에 있을 때 소란을 부린 일로 별도로 바친 서계 원본.
- 9월 왜공미(倭供米)와 왜공목(倭供木)의 방납(防納)을 엄금함.
- 왜공미와 왜공목의 거두지 못한 것을 조사하고, 훈도 홍순명(洪舜明)을 임명하여 곧바로 부임하는 일.
- 응련(鷹連)의 일로 동래부사의 보장(報狀).
- 연례 구청 응련(鷹連)을 우선 마련하여 동래로 운반하여 보내는 일.
- 연례로 지급하는 응자(鷹子)는 세전을 따지지 말고 잇달아 들어주는 일.
- 왜인의 예단(禮單) 응자를 계속 마련하여 동래부로 옮겨 보내는 일.

무술(1718)

- 정월 비변사의 회계. 무릇 차왜(差倭)가 나오면 즉시 숙배(肅拜)와 사은(謝恩)을 행하여 연기하지 말게 하며, 상을 논하는 일로 병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
- 2월 동청(銅靑)을 진헌(進獻)한 일로 인삼 근을 보내는 일.
- 6월 1년의 원래 응자 수량 56연 가운데 30연은 본색으로 들어주고 26연은 가격 상당의 쌀로 들어 줌.

- 7월 돌아간다고 고한 차왜(差倭)가 가져가는 서계(書契) 가운데 ‘도(島)’자를 고쳐 주는 일을 비변사에 달하(達下)하여 확정된 뒤 추가로 본조에 왔으므로 이 아래 등본을 올리는 일.

기묘(1699) 윤7월 18일

동래부사 정호(鄭滸)¹⁾가 7월 27일에 성첩(成貼)한 장계. 이달 25일 인시(寅時: 오전 4시전후)에 도부(到付)²⁾한 부산첨사 이홍(李泓)의 치통(馳通)³⁾ 내용. 방금 접한 훈도 박유년(朴有年)⁴⁾과 별차(別差)⁵⁾ 최억(崔億)⁶⁾ 등의 수본(手本)⁷⁾에, “왜관(倭館)에 가서 사정을 물었더니 왜선 두 척과 우리나라 배 한 척 중, 제1척은 가재관 차왜(假裁判差倭)⁸⁾ 정관(正官) 등직량(藤直良)이, 제2척은 전일 제주(濟州)에서 표류한 사람 가운데 두 명이 사쓰마[薩摩州]에서 병으로 죽어서 그대로 매장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파내어 옮겨 심고 오느라 사공왜(沙工倭)⁹⁾ 1인, 격왜(格倭)¹⁰⁾ 30명이 노인(路引)¹¹⁾을 가지고 나왔으며, 제3척은 우리나라 배인데 바람에 표류한 사람 16명 등이 함께 타고 나왔거늘, 그 섬의 사정과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재판차왜가 말하기를 ‘대마도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거니와, 전 재판왜(裁判倭) 평성상(平成常)이 교체된 뒤에 나를 대신 차출하였으므로 이에 알릴 일이 있어서 나왔다’고 하거늘, ‘그 고할 것이 무슨 일이나?’고 물었더니, 왜인이 ‘이야기가 너무 많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 다례(茶禮)¹²⁾ 뒤에 조용히 본부 영감 면전에서 진술하겠다’고 하거늘, 비

- 1) 정호(鄭滸, 1648-1736): 언일 정씨로 자는 중순(仲淳), 호는 장암(丈巖)이다. 우암 송시열의 문도로 숙종 9년(1684)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서 1698년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함경도 관찰사와 대사간·대사헌을 역임하고, 예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 2) 도부(到付): 공문 등의 전달 문서가 도착하여 접수함.
- 3) 치통(馳通): 역마(驛馬)를 통하여 급히 전달하는 통보.
- 4) 박유년(朴有年, 1641-?): 남포 박씨로 자는 자구(子久), 현종 3년(1661)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 5) 별차(別差): 왜관에 출입하면서 왜어(倭語)를 익히고 왜인의 출입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왜관의 장시(場市)에 보내는 일본어 통역.
- 6) 최억(崔億, 1648-?): 경주 최씨로 자는 무경(茂卿)이다. 숙종 1년(1675)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 7) 수본(手本): 하급관원이 공적인 일과 관련하여 자필(自筆)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문서.
- 8) 가재관차왜(假裁判差倭): 임시 재판 차왜. 재판차왜는 왜관(倭館) 내에 판결하여야 할 사안이 있을 적에 왜측에서 차출하여 파견하는 차사(差使)이다.
- 9) 사공왜(沙工倭): 배의 운행을 책임지는 왜인.
- 10) 격왜(格倭): 격군 노릇을 하는 왜인. 격군(格軍)은 ‘결꾼’으로 배의 운항을 위해 사공(沙工)을 돕는 보조인원을 가리킨다.
- 11) 노인(路引): 관청에서 병졸이나 장사꾼에게 내어준 여행권이 노인인데, 여기서는 왜관에 출입하는 배임을 증명하기 위해 대마도에서 발급한 문서를 가리킨다.
- 12) 다례(茶禮): 부산에 도착한 왜의 무역 사절을 맞이하여 조선 측에서 처음에 거행하는 간단한 접대 절차.

직(卑職)¹³⁾ 등이 말하기를 ‘그 대강을 들은 다음에 알릴 수 있겠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공작미(公作米)¹⁴⁾ 및 본 공목(公木)¹⁵⁾ 가운데 한 가지로 지정하는 결말을 지으려고 나왔다’고 하거늘, 비직 등은 ‘그렇다면 조정에서 회신(回信)으로 내려온 사연대로 재판(裁判)의 실언과 연한을 명시하는 연유를 서계(書契)¹⁶⁾ 가운데 이치로 따져 놓았는가?’ 하였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공작미를 처음 만든 것은 본디 공목(公木)의 품질이 영성한 데서 나온 것인데, 그 때 재판 한 사람이 편의대로 따지고 말았을 뿐 본디 서계가 없을 뿐 아니라, 가신(家臣)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주인에게 죄를 순수히 인정하게 하는 것은 실로 천만 궁색하여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로, 저희들이 장차 이런 사정을 갖가지 말로 진술할 계획이다’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만약 연한을 알린 서계가 없다면 본부에서 장계를 진술할 길이 만무하니, 설령 백 명의 재판이 있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고 종전에 회신으로 내려온 내용의 엄중한 사연을 자세히 한 바탕 설명하였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이는 바로 이 자리에서 사정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곡절을 자세히 진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관수왜(館守倭)¹⁷⁾ 또한 만나보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이제 도중(島中)¹⁸⁾의 사서(私書)를 보니, 웅천(熊川)에서 표류한 사람을 데려오는 차왜(差倭) 등정중(藤貞重)에게 예조(禮曹)에서 보낸 회답 서계(書契) 가운데, 「약속을 어긴 조항은 뒤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등으로 한 말이 있는데, 에도(江戸)를 번거롭게 할 의도가 있으니, 품신하여 깎아달라고 청한 것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임술년(1682) 통신사(通信使) 때 청한 일은 감히 어기지 못하는데, 귀국 사람이 저희 고을에 표류해 올 때 죽은 사람이 없거나 배가 파손되지 않는 경우는 차왜를 보내지 말고, 인편을 따라 순부(順付)¹⁹⁾하는 일은 에도(江戸)에 품신하지 않고 사사로이 스스로 애써 따르기로 하였는데, 이 답서(答書)를 에도에 알리면 일이 어떻게 되겠는지, 누누이 간청하였는데 이제 3년이 되도록 아직도 허락받지 못하니, 형편이 부득이하여 장차 이 서계를 받아 오게 하여 에도에 전달할 계획이거니와, 다만 에도에서 만약 마음대로 했다고 책망하여 순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희 대마도에서 책망받는 것은 고사하고, 귀

13) 비직(卑職): 직책을 가진 하급 관료가 상관에게 자신을 낮추어 하는 말.

14) 공작미(公作米): 왜관 무역의 공식 거래 수단인 공목(公木: 무명베)을 대신으로 바꾸어 지급하는 쌀. 당초에 공목 중 400동(20,000필)은 쌀로 바꾸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공목은 8세(升) 40자의 무명베를 1필로 하여 공목 2필 내지 3필을 쌀 1섬으로 환산하였다.

15) 공목(公木): 조선 후기 왜관 무역의 공식 거래 수단인 무명 베. 8세(升: 640울) 40자의 무명베를 1필로 하여, 조선측에서 1.121동 44필 가량을 공무역의 기본 금액으로 산정하고, 대마도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각종 물자를 실어와 납입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16) 서계(書契): 동래부와 대마주를 중개로 하여 조선과 일본 사이에 거래하던 공식 외교문서.

17) 관수왜(館守倭): 관수(館守). 부산 왜관에 상주하면서 왜관에 거류하는 일본인을 관리하는 동시에 외교 무역 사무 등을 관장하던 대마도주(對馬島主)의 가신(家臣).

18) 도중(島中): 대마도(對馬島).

19) 순부(順付): 특별히 전달할 인원을 정하지 않고, 이미 통행하고 있는 인편을 통하여 부침.

국에 어떤 양심을 품을지 알 수 없지만, 비록 그러하나 시비를 헤아리지 않고 억지로 받아가게 한다면 오직 명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운운하였으니, 이 사연을 진달하여 분부를 받아 회답해 달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임술 약조 뒤에 표류한 사람을 순부하는 일은 없는 해가 없었으니, 이제 예도에 품신하지 않은 것을 탈로 잡아서는 안되며, 통신사 때 이미 약조가 있었으니 더욱이 계속 변경하는 것은 부당함이 분명하거늘, 이제 예도의 무게를 빙자하여 은근히 순부하는 약속을 무너뜨리고자 함은 전혀 성신(誠信)의 뜻이 아니니, 교묘하게 꾸며대지 말고 서계를 받아들이고 차왜를 들여 보내라'는 일로 이치에 근거하여 책망하였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통신사 때 예도에 품신하지 않은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인데 무슨 핑계 대는 사단이 있으며, 혹시라도 일을 망칠까 염려하여 과오를 수습하기에도 힘이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묘하게 꾸미겠는가? 반드시 분명한 말씀을 받들어 받아보내려고 계획하는 것은, 뒷날 귀국에 품신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다시 앞서 이야기를 고집하며 중언부언하였음. 차왜가 지닌 예조로 보내는 서계(書契) 별폭(別幅)²⁰⁾ 등은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치겠다고 운운하였기로 동 서계와 별폭의 등본 및 시신을 실어온 왜선의 노인 한 통을 아울러 감봉(監封)²¹⁾하여 올려보냄"이라고 하였기로, 동 노인 및 서계 등본을 받아 올려보낸다고 하였음.

상항의 재판(裁判)이 이미 공작미 및 본디 공목(公木) 가운데 한 가지로 지적하여 결말을 짓기 위해 나왔다고 하면서 반드시 신(臣)과 조용히 면대하여 진술하겠다고 운운하였는데, 신은 송사(送使)²²⁾에게 연회를 베푸는 이외에는 원래 불시에 접촉하는 규정이 없는지라, 형편상 장차 앞으로 접위관(接慰官)²³⁾으로 다례를 행할 때 그 수작하는 설에 의거하여 추가로 장계로 알릴 계획이오며, 관수왜가 청한 회답 서계 가운데 약조를 어겼다는 등의 말을 해 놓은 것을 깎아 고치는 한 가지 일은 신의 천박한 견해로는 대개 교린(交隣)의 도리에 있어서 오직 그 일이 큰 의리나 큰 이해에 관계되는 곳이 있으면 굳이 견고하게 약조를 지켜 일체 엄하게 물리쳐 구구하게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해야 하겠으나, 이렇게 그다지 크게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면 당초 그들이 청하는 바에 따라 편의대로 고치도록 허락해도 난처한 사단이 없을 듯하고, 또한 조정의 체면에도 손상이 없을 것인데, 이제 일체 허락해 주지 않아 피차간에 서로 3년 동안이나 오래도록 버티다가 일의 형세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갑자기 고치도록 허락할 수는 없으나, 이제 관수가 그 섬에서 보내온 사서(私書)를 근거로 곡절을 갖추어 누누히 말할 뿐만 아니라, 끝내는 시비를 헤아리지 않고 억지로 받아

20) 별폭(別幅): 본 문서에 첨부한 별도의 문서. 대개 인원의 왕래와 관련한 예물(禮物) 물목(物目)을 적은 단자(單子)이다.

21) 감봉(監封): 문서 등이 변조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봉함하는 일.

22) 송사(送使): 일본 측에서 무역 등의 일로 보내오는 사절(使節).

23) 접위관(接慰官): 외국인을 접대하기 위해 임시로 차출하는 직책.

가게 한다면 오직 명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운운하여, 반드시 이런 사연을 조정에 진달하여 분부를 받아 회답하는 것이 또한 도리이겠기로, 짐짓 그들이 청하는 대로 감히 이렇게 품신(稟申)하는 장계를 올리오니, 묘당(廟堂)²⁴⁾에 명하여 다시 상의 확정하여 편리할 대로 분부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禮曹)에서 계목(啓目)²⁵⁾을 첨부하였으니 계하(啓下)²⁶⁾하시기를. 이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니 제주도에서 표류한 사람 두 명의 사체(死體)를 찾아가라는 뜻으로 해조(該曹)에서 관문(關文)²⁷⁾을 발송하여 본 제주목(濟州牧)에 분부하도록 하였으며, 재판차왜는 표류한 사람을 순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무로 서찰을 가지고 나온 일이라 전례대로 접대해야 마땅하겠기로, 접왜관(接倭官)을 차출하여 정하라는 뜻으로 도신(道臣)에게 알리고, 증정하는 예단(禮單)²⁸⁾ 잡물은 해조에 명하여 전례를 비추어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하라 하였는 바, 상항의 제주에서 표류한 사람의 시신을 찾아 가라는 일은 장계대로 본 제주목사에게 분부하여 과 가게 하며, 재판차왜를 접대하는 일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별폭의 회답 사례 및 연례(宴禮)의 예단 잡물은 전례대로 마련하여 들이겠거니와, 모든 선박이 멀리 바깥 바다로 나가지 못하도록 일찍이 금령(禁令)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신칙하지 못하여 이러한 폐단이 있게 하였으니, 원적(原籍)의 관원인 웅천현감(熊川縣監)은 유사(攸司)²⁹⁾에 명하여 엄중하게 추고하여 뒤를 징계하게 하는 일로 아울러 회이(回移)³⁰⁾함이 어떠할지. 강희(康熙) 38년(1699) 윤7월 18일 동부승지 신 권지(權持)³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비국(備局)³²⁾에 계하하여 탐전(榻前)³³⁾에서 확인한 뒤 본조에 보내어 회계함.]

기묘(1699) 9월 13일

이번 9월 13일 주강(晝講)에 입시(入侍)하였을 때 지사(知事) 이유(李濡)³⁴⁾가 계품(啓稟)하기를, “부산 훈도를 잡아오고 대신으로 훈도 박재흥(朴再興)³⁵⁾을 새로 차

24) 묘당(廟堂): 국가의 대사를 논의 결정하는 의정부(議政府)의 별칭.

25) 계목(啓目): 관청에서 국왕에게 보고 건의한 문서의 목록.

26) 계하(啓下): 품의 내용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결정하여 해당 관서로 내려보내는 일.

27) 관문(關文):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 전달하는 공문서.

28) 예단(禮單): 예물단자(禮物單子). 즉 예물의 목록.

29) 유사(攸司): 해당 관청.

30) 회이(回移): 특정 업무에 대한 결정 사항을 문서로 회답하면서 업무를 이관하는 절차.

31) 권지(權持, 1656-17095): 안동 권씨로 자는 군경(君敬)이다. 숙종 3년(1677) 알성문과에 급제하고 정언과 지평, 장령 등을 거쳐 승지를 역임하였다.

32) 비국(備局): 비변사(備邊司).

33) 탐전(榻前): 국왕이 앉는 자리 앞.

34) 이유(李濡, 1645-1721): 전주 이씨로 자는 자우(子雨), 호는 녹천(鹿川)이다. 현종 9년(1668)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출하여 즉시 내려보내야 마땅한데, 요즘 듣건대 현재 밀양 땅에 있다고 하니 전례대로 그곳에서 곧바로 동래로 가라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다.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 하셨음. [본도에 이문(移文)함.]

경진(1700) 정월 20일

동래부사 정호가 12월 28일에 성첩한 장계. 당년조 평의진(平義眞) 원역(員役)³⁶⁾ 등의 하선연(下船宴)³⁷⁾을 이달 25일로 정하였는데, 신은 병세가 아직도 더욱 위중하여 참여하러 가지 못하고, 부산첨사 이시재(李時宰)가 혼자 가서 전례대로 진상(進上)³⁸⁾ 숙배(肅拜)한 뒤 하선연을 그대로 베풀었음. 새 은화(銀貨)를 통용하는 일로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본부(本府)³⁹⁾에서 회답하는 서계(書契)의 초고를 예조에서 내려보냈거늘, 관수왜에게 써 주었더니, 훈도 박재흥과 별차 김상윤(金尙濶)⁴⁰⁾ 등이 바친 수본에, “일찍이 대마도 도주가 새 은화 일로 보낸 서계에 대한 본부의 회답 서계를 금년 10월에 관수왜에게 들여 주었는데, 방금 왜인의 말이 ‘동 서계를 받은 뒤 서계에 한 말 가운데 우리에게 꺼리는 곳이 있기로 그 때 등분을 도중(島中)에 보고하였는데, 도중에서 온 답신에 말하기를, 「일본에서는 새 은화를 통용하는 규정에 수량을 더 계산하는 일이 없는데, 대마도에서는 귀국에서 새 은화의 통용을 허락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더 계산하는 일을 임시로 시행하였으나, 이제 등분에 한 말을 보니 예도에서 보기에 크게 거리낄 것이 있으니, 서계 말단의 「품질이 낮은 것은 수량을 더한다[劣品加數],」는 데서부터 「끝내 반드시 가짜가 늘어날 것[終必滋僞],」이라는 등의 곳은 모두 깎아 없애 달라 운운」 하였는바, 이는 참으로 도중(島中)의 실제 사정인지라, 이제 이 서계는 결코 도중에 들여보낼 수가 없다’고 도로 내어 주었으며, 상항의 꺼리는 곳을 깎아 없애는 일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달라고 누누히 말하여 그치지 않기로, 부득이하여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 하였기에, 치통(馳通)하고 수본을 이첩(移牒)한다 하였음. 이제 이번 회답 서계 가운데 사용한 말을 깎아 고치는 일은, 일의 체면을 헤아리건대 그들의 간청을 굽혀 따라서 계속하여 고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불가할 뿐 아니라, 저번에 조절하여 통용하는 은화가 나온 수량이 적

35) 박재흥(朴再興, 1645-?): 무안 박씨로 자는 중기(仲起)이다. 현종 4년(1663) 식년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36) 원역(員役): 책임을 맡은 관원(官員)과 그 소속의 잡역(雜役) 일꾼.

37) 하선연(下船宴): 왜관무역에서 공식 무역 사절이 도착한 뒤에 접대로 베푸는 잔치.

38) 진상(進上): 사절(使節)이 국왕에게 예물을 올리는 절차. 배를 타고 온 왜인들이 부산 왜관에 모신 전패(殿牌) 앞에 왜인이 가져온 예물을 올려놓고 절을 하였다.

39) 본부(本府): 대마도주(對馬島主)와 상대하는 주체인 동래부(東萊府).

40) 김상윤(金尙濶, 1665-?): 김해 김씨로 자는 이택(而澤)이다. 숙종 22년(1696)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가선대부에 이르렀다.

었으므로, 상인과 역관들로 하여금 상세히 저쪽의 사정을 탐지하라 하였더니, 새로운 은화 한 조목에는 의심스러운 사단이 많으며 앞으로도 새 은화의 사용을 막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제 이번 새 은화에 대한 회답 서계는 짐짓 고쳐 주지 말고 앞으로 일의 형편을 관망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으니,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정호의 장계를 보니, 훈도 별차 등의 수분에, 관수왜 등이 새 은화의 통용에 대한 회답 서계의 등분을 도중에 보냈더니, 회답 서찰에 말하기를, 일본에서는 새 은화를 통용하는 규정에 수량을 더하여 계산하는 규정이 없는데 도주가 귀국에서 허락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수량을 더하는 일을 임시로 시행하였으나, 등분에 사용한 말은 예도에서 보기에 크게 거리낄 것이 있으니, 서계 말단의 「품질이 낮아서 수량을 더한다」는데서부터 「끝내 필시 가짜가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곳은 모두 깎아 없애달라고 도로 내어주었는바, 일의 체면을 헤아리자면 그들의 간청을 굽혀 들어주어 계속하여 고치는 것은 불가하고, 새 은화 한 조목에는 의심스러운 사단이 많아 구 은화로 새 은해를 매꾸는 일이 없지 않을 듯하니, 이번 이 서계는 짐짓 고쳐주지 말고 앞으로 일의 형편을 관망하는 일로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당초에 새 은화의 통용을 청할 때 이미 왜인의 실정을 믿기 어렵다고 염려하여 반드시 도주의 서계가 있는 뒤에 통용을 허락하겠다는 뜻으로 분부하였는데, 그 뒤 대관왜(代官倭)⁴¹⁾가 나올 적에 수표(手標)⁴²⁾를 내어 보이면서, 이제부터 이후로는 매 1관목(貫目)에 270목(目)씩 값을 더하기로 굳게 약속하게 하라 운운하면서, 또 말하기를 전일 왜관에 있는 대관왜 등의 수표와 비교하면 경중이 절로 달라 서계에 직접 쓴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거늘, 연경(燕京)의 시장에 사용하는 은화의 규정은 반드시 10분(分)을 기준으로 하니 새 은화 또한 이 사례를 사용하여 한결같이 약속을 따라 그 열등(劣等)의 수량을 헤아려 영구히 사용하자는 뜻으로 엄한 말로 서로 약속한 뒤에 통용을 허락하게 한다는 뜻으로 훈도 별차 등에게 분부하여 관왜에게 언급하게 하여, 후일 위반하는 폐단이 없게 하였는데, 이미 통용을 허락한 뒤로 문득 전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일이 매우 근거가 없거늘, 훈도 별차 등이 전일의 약속한 글로 이치에 근거하여 준엄하게 책망하여 물리치지 않고, 부득이하다고 흐리멍덩하게 받아 둔 것은 이미 극히 해괴하거늘, 본부에서도 더 책망하지 않고 간청하는 바를 굽혀서 따라주는 것은 불가하니 고쳐주지 말고 일의 형편을 관망하자고 대충 말하여 운운한 것은, 약속한 글을 준수하지 않고 느긋하게 수작한 것이 또한 매우 해괴하니, 부사 정호를 추고(推考)⁴³⁾하고 훈도 별차 등은 수사(水使)에게 명하여 곤장을 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전

41) 대관왜(代官倭): 조선시대 대마도주가 부산 왜관에 파견하여 공사 무역을 관장하게 한 왜인.

42) 수표(手標): 돈이나 물건을 거래하는 증표로 주는 문서.

43) 추고(推考): 관원의 과실을 법률 조문에 따라 추리 적용하여 견책하는 일.

에 약속한 글에 의거하여 엄한 말로 준절하게 책망하게 하며, 지난번에 나온 새 은화는 수량이 적어 짐짓 받아내지 말라는 뜻으로 본부의 보고대로 제송(題送)⁴⁴⁾ 하되, 은화가 더 나올 일이 없는데 장사꾼들이 물화(物貨)를 일방으로 피집(被執)⁴⁵⁾ 하여 제한이 없게 되면 이익이 왜관에 있게 되고, 은화가 나올 기약이 없는데 장사꾼들이 중간에서 농간하는 폐단은 매우 통절하고 해괴하니, 은화가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물화를 일체 엄금하여 이전처럼 피집하는 일이 없게 하되, 금령을 범하는 자는 한결 같이 잠상(潛商)⁴⁶⁾으로 논단하자는 뜻으로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강희 39년(1700) 정월 20일 좌부승지 신 허지(許墀)⁴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동래부사 정호가 정월 초7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훈도 박재흥과 별차 김상윤 등의 수본 내용 요약. 관수왜 및 재판왜 등이 비직 등을 만나볼 것을 요청하여 말하기를, “왜관 동관(東館) 서관(西館) 중관(中館) 세 곳의 대청(大廳)과 동헌(東軒)과 서헌(西軒) 및 동(同) 대청 세 곳의 좌우 행랑과 재판왜가 거처하는 가사(家舍) 등의 기와가 바람에 벗겨지고 빗방울이 떨어져서 부패하여 파괴된 것이 많아 장차 거처하기가 어려워 일찌감치 수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귀국에서 잇달아 흉년이 들어서 공사를 일으키거나 물자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일 뿐 아니라, 공사를 시작한 뒤로는 송사왜(送使倭) 등이 거처할 장소가 없어, 당년조의 아홉 번 송사(送使)는 신관(新館)을 창립할 때의 사례대로 내보내지 않음이 마땅하다고 역관 등이 운운한 바 있기로, 도중에 송사(送使)를 정지한다는 서계(書契)가 나왔다”고 내어 보였는데, 동래 부산으로 봉행왜(奉行倭)⁴⁸⁾ 등이 바치는 서찰이거늘, 비직 등이 말하기를, “이전에 송사(送使)를 정지할 때 봉행 등이 또한 서찰을 바쳤기로, 그 때 물리치려 하였다가 이미 온 서찰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여, 짐짓 지금은 받아 올리고 뒤에는 사례를 원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정녕 언급하였는데, 이제 또 이러한 일은 체면을 해아려 보건데 또한 외람되지 않은가? 도주(島主)가 예도에 가서 섬에 없을 때는 봉행이 서찰을 바치는 것이 비록 간혹 부득이 하지만, 이번에는 도주가 대마도에 있는데 어찌 꼭 봉행에게 맡겨서 서찰을 바치게 하는가?”하고 이처에 근거하여 책망하였더니, 관수왜가 말하기를 “동지(同知)⁴⁹⁾ 등이 말하는 바가 비록 혹 그럴 듯하나, 이 일에 있어서는 또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 일이 두 나라에 관계되니

44) 제송(題送): 특정 사건에 대한 지령문을 써서 보냄.

45) 피집(被執): 물건을 사기로 작성하고 대금 결제를 미룬 채 미리 잡아 둠.

46) 잠상(潛商): 관원의 감독을 벗어나 비밀리에 상품을 거래하는 일. 밀무역(密貿易).

47) 허지(許墀, 1646-?): 양천 허씨로 자는 옥경(玉卿)이다. 숙종 4년(1678) 문과 정시에 급제하여 관직이 승지에 그쳤다.

48) 봉행왜(奉行倭): 봉행(奉行). 대마도의 도주를 보좌하는 관직 명칭.

49) 동지(同知): 동지중주부사(同知中樞府事)의 별칭이나, 조선후기에는 특별한 직책이 없는 일반 사람을 존중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일을 통보하지 않을 수가 없고, 도주(島主)가 마땅히 서계를 하여야 하나 이번에 송사를 정지하는 일은 이미 약조로 시행하는 일이 아니고, 또 두 나라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므로, 봉행 등으로 하여금 서찰을 바쳐 사사로이 통지하게 하고 마는 것일 뿐이다. 무릇 체례(體例)에 손상될 일이 어찌 있겠는가? 또 이전에 봉행이 서찰을 바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그 사이 곡절 또한 이런 데 불과했을 뿐이니, 모름지가 막지 말고 이것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전례에 따라 받아주도록 허락하면 다행이겠다”고 운운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왜관 건물의 수리는 금년 내에 공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송사왜 등이 전례대로 나온다는 뜻을 또한 고하여 달라”고 운운하였음. 동 봉행 등이 바친 서찰을 이제 짐짓 받아 본부로 올려보내는 일로 치통하고 수분한다 하였음. 왜관을 수리하는 공사로 인하여 봉행왜 등이 본부에 서찰을 바치는 것은 사리와 체면이 부당한데, 관수왜가 송사를 정지하는 일은 원래 약조대로 응당 시행하는 일이 아니고 또 두 나라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므로, 봉행왜로 하여금 서찰을 닦아 들었으며 또한 전례가 있다 하기로, 이전의 등록을 살펴보니, 임술년 통신사 때 송사를 정지할 때 이미 봉행 등이 서찰을 바친 일이 있어서, 이제 준절하게 물리치는 것은 불가하기로 이제 짐짓 받아서 감봉(監封)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이렇게 이어진 흉년을 당하여 백성을 움직여 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참으로 우려할 일로되, 전 부사 신 조태동(趙泰東)⁵⁰⁾이 재임할 때 이미 장계로 알려 가을을 기다려 수리하는 일로 회답이 내려온 뒤, 송사왜 등을 정지하는 일은 미처 조정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때 관수왜의 말이 왜인 목수를 불러와서 들어갈 재목과 물력을 마련한 뒤에 비용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그들이 스스로 담당하여 수리하겠다고 하였기로 그 때 즉시 거행하지 않았는데, 그 뒤 관수 및 대관왜 등이 관수왜 및 대관왜 등이 들어갈 재력을 마련하여 값을 산정하니 7,000여 냥에 이른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위의 은화 비용 외에 들어갈 일꾼 및 기와, 산자(撒子)⁵¹⁾, 외목(椶木)⁵²⁾, 대나무, 짚, 새끼줄, 숙마(熟麻)⁵³⁾, 산마(山麻) 줄 등의 잡물은 별도로 갖추어 주어야 담당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수리하는 물력이 비록 크다고 하오나 은화 가격의 수량이 이렇게 너무 많고, 일꾼과 기와 잡물 등을 별도로 지급해 달라고 청하는 것은 극히 해괴하고, 그 은화 비용의 수량 및 다른 잡물을 갖추어 지급하는 수량은 도리어 우리가 노력하여 수리하는 것이 나을 듯하니, 별도로 목수와 감색(監色) 등을 정하여 바야흐로 수리할 곳을 살펴보고 마련할 계획이거니와, 이제 이번 수리하는 공사는 이전보다 곱절이 되니 전례대로 차사원(差使員) 및 감동(監董)⁵⁴⁾ 역관 등을 일찍 차출하되, 역관은 이제

50) 조태동(趙泰東, 1649-1712): 숙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무인(戊寅, 1698)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관직이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다.

51) 산자(撒子): 지붕 서까래 위나 고미 위에 기와를 까는 알매 흙을 받치기 위해 까는 가는 나뭇가지나 수수깡 등의 재료.

52) 외목(椶木): 흙을 바르기 위해 벽속에 엮는 땃가지나 수숫대 또는 싸리 등의 나뭇가지.

53) 숙마(熟麻): 잿물에 삶아 희고 부드럽게 만든 삼 겹짚.

내려와 출사하는 역관 가운데서 일을 능히 이해하고 감당할 만한 자를 가려서 일을 살피게 하는 것이 편하고 합당할 듯하며, 그 밖의 여러 가지 거행할 일은 회답이 내려오기를 기다려 도신(道臣)⁵⁵⁾에게 보고하여 적당하게 변통할 계획이며, 연유를 우선 처통하오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니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관수왜와 재판왜 등이 왜관의 세 곳 대청과 동헌(東軒) 서헌(西軒)⁵⁶⁾과 행랑 등의 장소에 부패하여 파손된 곳이 많아 일찌감치 수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년조 아홉 송사는 신관을 창립할 때의 사례대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대마도의 서계가 나왔다고 내어 보이는데, 이는 봉행왜 등이 동래부산에 바치는 서찰이온데, 이미 임술년(1682)의 사례가 있기로 지금은 짐짓 받아 올리며, 왜관을 수리하는 일은 전에 이미 장계로 알려 가을을 기다려 수리하는 일로 회답이 내려온 뒤로, 미처 조정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관수왜 및 대관왜 등이 들어갈 재력의 가격을 산정하니 7,000여 냥에 이르며, 일꾼과 기와 등의 잡물은 별도로 갖추어 달라고 하였는바, 도리어 우리가 수리하는 것만 못하기로, 전례대로 차사원 및 감동 역관을 조속히 차출하되, 제반 거행하는 일은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여 변통할 계획이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일찍이 본도 감사의 장계로 말미암아 송사를 만약 내보내지 않으면 그 비용의 쌀로 수리하고 단장하는 공사를 그들이 반드시 담당할 것이니, 비록 값을 지급하는 비용이 있더라도 백성을 부리는 폐단은 제거할 수 있기로, 명년 가을을 기다려 수리하는 뜻으로 복계하여 분부하시되, 왜인 등이 정한 가격의 수량이 이렇게까지 많고, 일꾼과 잡물을 또 요구하니 참으로 지나침이 있으니, 별도로 일을 아는 차사원을 정하여 본부의 검색과 기술자 등을 데리고 수리해야 할 곳을 일일이 살펴보고 들어갈 재목과 물력을 마련하여 거행하되, 이미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계절이 늦은 뒤에 이제 비로소 장계로 알리는지, 매우 심하게 늦춘 것이거니와 비용을 지급하여 수리하는 것과 여기서 부역하는 편리 여부와 이해를 우선 상세히 헤아려 장계로 알리라는 뜻으로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39년(1700) 정월 20일 좌부승지 신허지(許擢)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진(1700) 3월 21일

이번 3월 20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이세백**(李世

54) 감동(監董): 공사를 감독하고 독려하는 책임자.

55) 도신(道臣): 관찰사(觀察使).

56) 동헌(東軒) 서헌(西軒): 왜관의 동관(東館)인 동대청과 서관(西館)인 서대청을 가리킨다.

白)이 계품하기를, “지난번에 경상감사 이세재(李世載)가 왜관을 수리하는 일로 장계를 올렸는데 미처 회계하지 못하였기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진달합니다. 왜관의 공사는 극히 거대한데 만약 오로지 저들에게 위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고 들어가는 모든 물자와 인력을 값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그 비용이 8천여 냥에 이른다 고 하는데, 산정한 비용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도에서 차원(差員)을 정하여 보내어 들어갈 비용을 마련하였더니,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는 없고, 그 정책으로 본다면 고쳐야 할 곳은 300여칸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 예전 재목 또한 쓸만한 것이 많아서 물자와 인력이 대단하지는 않다고 하고, 팔 구천 냥을 계산하여 주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각 관청의 재정이 모두 남김없이 없어져서 갑자기 장만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만약 값을 정하여 계산해 주어도 저들이 오직 대충 완성하는데만 힘써 견고하고 치밀하게 하지 않는다면 오륙 년이 지나지 않은 뒤에 다시 중수해 달라고 청할 것이니, 매양 비용을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수리하여 주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하였고, 판돈녕부사 최(崔)가 말하기를, “무릇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그 편의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왜관의 공사는 목재 물자가 너무 많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변방 해안의 나무가 점차 드물어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나, 신이 그 마련한 것을 보니 300칸에 들어가는 것이 체목(體木)이 200여 그루에 불과하고 연목(椽木) 또한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물자와 인력이 대단하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비용을 정한다면 비록 다시 문서를 오고가며 그 정해진 수량을 줄이더라도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지어주 주는 것이 비록 백성을 부리는 것이 엄중하고 어렵지마는 고군(雇軍)을 세워 공사를 하면 농사에 별로 방해될 우려가 없습니다.”라고 하였고, 이(李)가 말하기를, “농민을 부려 공사하는 것이 참으로 매우 엄중하고 어려워서 본도에서는 오로지 저들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지금 비록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무릇 일을 준비할 즈음에 절로 7월의 농사일을 쉴 때가 될 것이고, 일찍이 이전에도 각 진포(鎭浦)의 토졸(土卒)들을 공사에 부리는 규정이 있었고, 왜관 근처에 또한 노는 일손이 많으니 만약 고군을 세워 공사에 부린다면 비록 크게 백성의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공사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반드시 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본도에 명하여 잘 요량하여 우리나라에서 지어주도록 함이 적합할 듯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우리 쪽에서 지어 주는 것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보다 나을 듯하니,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경진 4월 22일

이달 4월 21일 주강(晝講)⁵⁷⁾에 입시(入侍)하였을 때 기사관(記事官) 윤지화(尹志

和)⁵⁸⁾가 계품한 바, “신이 지난번 폭쇄(曝曬)⁵⁹⁾하는 일로 내려갔을 때 왜인접대약조(倭人接待約條)를 상고하여 오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내려간 뒤에 임진란 뒤로 처음부터 끝까지 20년 동안의 실록(實錄)을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약조는 끝내 나오는 곳이 없어 베껴 올리지 못한다는 뜻은 이미 서계(書啓) 가운데 진술하였고, 뒤적일 즈음에 왜사(倭使)가 내도하였을 때 좌차(座次)와 배례(拜禮)에 대하여 서로 다투는 일이 있음을 보았으며, 또 세선(歲船)⁶⁰⁾의 수를 정한 일이 있고, 또 왜사를 접대할 때 약조를 인용한 일이 있으므로, 이러한 서너 조목은 혹 뒷날 근거로 상고할 사단이 있을 듯하여 베껴 나왔는데, 이미 약조가 아니니 또한 감히 무단히 올리지 못하고, 복명한 뒤에 대신에게 갔더니 대신이 비변사에 이송(移送)하게 하였는데, 막중한 비사(秘史)에 실려 있는 설을 제멋대로 옮겨보내는 것이 일의 체면에 미안하여, 별단(別單)에 써 넣어서 이것을 비변사에 계하(啓下)하도록 할 것인지, 이미 탐전(榻前)에 진달하였으니 곧바로 비변사로 이송할 것인지, 확정된 뒤에 봉행할 수 있겠는지라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진달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상감께서는 “이미 베껴 왔으면 별단을 써 넣어서 비변사에 계하함이 옳다”고 하셨음.

경진(1700) 5월 초2일

이번 4월 29일 대신(大臣)과 비변사의 당상(堂上)을 인견(引見)하여 입시(入侍)할 때 좌의정 이세백(李世白)⁶¹⁾이 계품한 바, “새 은화를 당초에 통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이미 논의가 없지 않았으나, 대개 서울의 은화가 매우 귀한데다 또한 연시(燕市)에서 통용하기 때문이었다. 그 뒤에 저쪽 사람들의 행위가 당초와 다른 점이 많이 있어서 도리어 도성 주민의 병폐가 되었다. 전자에 동래부사 정호(鄭濞)의 장계에 ‘근래에 은화를 내어 보낸 것이 매우 적은데, 이제 만약 저들이 보내오지 않는 데 따라 다시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오래지 않아 예전 은화로 새 은화를 막을 가망이 있을 것이고, 물화(物貨) 또한 피집(被執)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반드시 조급해질 것이

57) 주강(書講): 군주가 학문이 높은 신하들과 함께 경서를 강론하는 자리인 경연의 하나. 아침에는 조강(朝講), 낮에는 주강(書講), 저녁에는 석강(夕講), 밤에는 야대(夜對)라고 하였다.

58) 윤지화(尹志和, 1660-1704): 칠원(漆原) 윤씨로 자는 혜보(惠甫), 호는 남강(南岡)이다. 숙종 25년(1699)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 시강원설서, 사간원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59) 폭쇄(曝曬): 서고에 보관한 서적을 벌레에 썩어 말리는 일.

60) 세선(歲船): 세견선(歲遣船). 조선 후기 왜관무역을 위하여 해마다 대마도에서 보내는 배의 숫자를 정해 두었는데, 그 중 세견선은 17척으로 한정하였다.

61) 이세백(李世白, 1635-1703): 용인 이씨로서 자는 중경(仲庚)이고 호는 우사(霧沙) 또는 북계(北溪)이다. 숙종 1년(1675)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황해도 관찰사, 평안도 관찰사, 도승지, 대사간, 선해청 당상, 한성부 관윤, 예조판서, 호조판서, 이조판서, 대사헌, 공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니, 짐짓 받아들이는 것을 정지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또한 그 장계대로 복계하여 분부하였는데, 이제 본사(本司)에 보고한 문장(文狀) 가운데 '새 은화 3만 냥이 또 나왔다'고 하니, 전후 합하여 계산하면 12만 4백여 냥이다. 장사꾼들이 이미 계산하여 받았고, 또 내일 개시(開市)⁶²⁾부터 새 상품 또한 전례대로 피집할 것이라고 하니, 설령 일의 형편이 이렇다 하더라도 다시 장계로 알려 복계(覆啓)⁶³⁾의 분부를 기다렸다가 거행하여야 마땅한데, 먼저 장계를 급히 보내지 않고 곧바로 논보(論報)하였고, 또 청한다고 품신하는 말이 없이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하였으니, 그 조처한 일이 이미 극히 한심하며, 당초 9만 냥이 나왔을 때는 받지 않다가, 이제 3만 냥이 나오니 곧장 받도록 허락하는 것은 매우 심히 가벼운데다가, 또한 그 보장(報狀) 가운데 12만냥 은화의 품질 열등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으니, 다만 소루하기 막심할 뿐 아니라, 또 이 은자 또한 반드시 육성(六成)⁶⁴⁾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 이는 당시 상역(商譯)들이 가운데서 농간한 소치인데도, 변방의 신하가 일을 그르쳐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관계되는 바가 사소하지 않으니, 동래부사 정호 및 훈도와 별차 등을 함께 잡아다가 죄를 확정하고, 조정에서 모르는 일을 변방의 신하가 잘못하여 제멋대로 허락한 일을 이제 그대로 시행하게 할 수 없으니, 적은 수량의 새 은화는 받아들이기를 허락하지 말고, 물화를 또한 피집하지 말라는 등의 일을 전일의 계하 사연대로 시행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음.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품의하지 않고 스스로 임의대로 한 변방 신하의 소행은 매우 잘못된 것이니, 진달한 바가 참으로 옳다.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호조판서 김구(金構)⁶⁵⁾가 말하기를 "정호의 일은 실로 전도된 데다가 또한 극히 몽롱하여, 이전에 피집한 물건을 공공연히 저들에게 맡겨 그 값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하고, 또한 저 사람들과 교역하는 것은 서로 교환하는 것과 다른데, 변방 신하의 처사는 비록 매우 근거가 없으나, 이제 이번에 이미 받은 은화는 되돌려주기가 어려울 듯하다"고 하였음. 좌상(左相)은 말하기를 "이미 받아들인 물건을 되돌려 주는 것은 불가하며, 이 뒤로는 결코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각별히 책망하여 타이름이 마땅하다"고 하였음. 예조참의 이인엽(李寅燁)⁶⁶⁾은 말하기를 "무릇 개시(開市)를 철폐할 즈음에 반드시

62) 개시(開市): 정기 개설 시장. 조선후기 부산 왜관에서는 매월 상순 중순 하순마다 각기 3일과 8일에 상인들이 동래부에서 발행하는 껌을 받아 상품을 가지고 왜관의 수문(守門)에 가서 훈도(訓導)와 별차(別差) 및 수세관(收稅官), 개시감관(開市監官) 등의 감독 하에 장부에 기록하고 왜관(倭館)에 들어준 뒤 별도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63) 복계(覆啓): 하부 관청에서 올린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관청에서 의견을 달아 국왕에게 올려 결정을 기다리는 일.

64) 육성(六成): 금속의 순도(純度) 60%를 가리킴.

65) 김구(金構, 1649-1704): 청풍 김씨로 자는 자궁(子肯), 호는 관복재(觀復齋)이다. 숙종 8년(1682)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황해, 충청, 진라, 평안도의 관찰사와 대사간, 육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우의정에 이르렀다.

66) 이인엽(李寅燁, 1656-1710): 경주 이씨로 자는 계장(季章), 호는 회와(晦窩)이다. 숙종 12년(1696) 문

시 말할 만한 단서가 있어서 피차간에 할 말이 있었을 터인데, 조정에서 만약 구 은화를 사용하여 새 은화를 막을 의도가 있다면 새 은화를 일체 받지 말고 구 은화가 나올 때까지 물화를 피집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번 철시는 단서가 없는 것이 될 듯하니, 마땅히 무슨 일로 철시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확정한 다음에 분부하여 거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고, 좌상은 말하기를 “저쪽에서 피집한 물건이 있는데 이미 육성은을 허락한 뒤에도 오히려 은화를 보내지 않고, 또한 서계를 보내라는 청이 있으니 정상이 극히 간교한데, 이로써 말한다면 할 말이 없지 않다”고 하였고, 김구(金構)는 말하기를 “당초 새 은화를 육성은(六成銀)⁶⁷⁾이라 칭하였다가 이제는 그 은의 색깔을 보니 육성은에 미치지 못할 듯하여 어영청(御營廳)에서 받은 것은 물리쳐 받지 않은 것이 많다고 하는데, 이제 만약 육성은이 육성이 되지 않아 당초 정한 약조에 어긋남이 있다는 까닭으로 말을 하여 도로 막는다면 할 말이 없지 않다”고 하였음.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성을 한도로 한 지 일찍이 얼마나 되었다고 이렇게 중간에 변경하는지 이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지 않다”고 하였음. 좌상이 말하기를 “왜인의 요청한 ‘품질이 열등하다[計劣]’는 한 조목을 깎아 없애자는 것은 더욱이 극히 간사하니, 물화를 피집하는 등의 일을 이제부터 일체 방색하면 그 농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김구는 말하기를 “당초 새 은화의 통용을 허락할 때 이미 이런 우려가 있으리라 염려하였는데, 은화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이 이제 이미 이러하니, 이는 모두 상역(商譯)의 무리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소치이니, 어찌 감히 육성이 되지 않는 은을 제멋대로 올려보낼 수 있는지? 그들이 두려워할 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처음 시작이 이러하니 장래의 폐단을 어찌 이루 말하겠는가? 별도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그대로 엄하게 조목을 세워서 뒷날의 폐단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였고, 관윤(判尹) 김진구(金鎭龜)⁶⁸⁾는 말하기를 “이 일은 당초 허락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나, 조정에서 가벼이 조처하였다가 이제 와서 또 이런 사건이 있고, 정호의 소행은 매우 근거가 없으나 그러나 이미 받은 은화는 되돌려 주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그 받은 것을 비록 미처 제련하여 보지 않았으나, 색깔로 보자면 또한 육성에 부족함이 있으니 더욱 극히 놀랍다. 이는 비록 부사가 모두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나, 훈도와 별차들이 농간을 부려 속인 죄는 별도로 징벌하여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이번 4월 29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이세백(李世白)이 계품한 바, “저번에 동래부사와 경상감사의 장계를 보니 왜관을 보수하는 공사

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서 강화유수, 이조판서, 홍문관대제학에 이르렀다.

67) 육성은(六成銀): 순도 60%의 은.

68) 김진구(金鎭龜, 1651-1704): 광산 김씨로 자는 수보(守甫), 호는 만구와(晩求窩)이며 광성부원군 만기(萬基)의 아들이자 인경왕후(仁敬王后)의 오빠이다. 숙종 6년(1680)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좌참찬,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에 이르렀다

를 왜인에게 시켜 담당하게 하면 그 비용이 많게는 팔 구천 냥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비용으로 사용할 은화가 나올 곳이 이미 없을 뿐 아니라 이 일은 또한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는데, 만약 우리가 만들어 주면 마련하는 물자와 인력이 아마도 대단한 데 이르지 않는 듯하고, 또한 왜관 근처에 놓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사역하게 한다면 또한 생각건대 백성의 힘을 크게 손상하지는 않을 듯하니, 우리가 지어 준다는 뜻으로 확정하여 분부하였는데, 이제 그 보고한 장계를 보니 '가사(家畝)를 헐어낸 뒤에는 고쳐야 할 곳이 대개 철거하기 이전에 보았을 때보다 더함이 있는데, 이미 앞으로 수리하고 고쳐야 할 분량이 얼마가 될 지 모르고, 들어갈 재목 조건 또한 비록 많지는 않지만, 형체가 크고 또한 길어 평상시 재목과 다르니, 먼 곳에서 벌목하여 운반하는 노임이 적지 않으며, 또한 왜관 근처에 거주하는 유민(遊民)⁶⁹⁾도 기근을 겪은 뒤로 남아 있는 자가 매우 드물어서, 일꾼을 모집하기도 또한 어려워, 우리가 지어 주는 것도 절절이 편치 않으므로 다시 저쪽 사람들과 논의하여 정하였더니 지급해야 할 은화 비용이 당초보다 많이 감소되어 이제 5,000냥에 이른다'고 한다. 비록 우리가 지어 주더라도 그 허다하게 들어갈 물자와 인력을 계산한다면 그 마련해야 할 비용이 필시 5,000냥에서 내려가지 않을 줄 어찌 알겠는가? 더구나 일꾼을 고용하는 일 또한 장치 쉽지 않을 것이니, 이런 때에 백성을 부리는 것 또한 극히 더욱 어려우니, 다른 곡절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당장 오직 비용을 줄이는 것을 위주로 하여 이로써 여러 신하들과 상의하였더니, 모두들 그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함이 편하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일의 형세가 이전에 확정할 때와는 다름이 있으니, 다시 저쪽 사람들이 스스로 담당하여 수리하라는 뜻으로 명하여 분부함이 마땅할 듯하므로 감히 이렇게 우려러 진달하며, 비용 은화의 출처는 본도에 통지하고 의논하여 별도로 조치하여 지급함이 어찌할지?"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지금 일의 형세가 이전과 다름이 있으니 비용을 지급하여 저쪽 사람들로 하여금 조성하게 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경진(1700) 8월 11일

동래부사 김덕기(金德基)⁷⁰⁾가 7월 28일에 성첩한 장계 요약. "신이 도임(到任)한 뒤 몇 일 만에 훈도 송유양(宋裕養)⁷¹⁾과 별차 한진흥(韓振興)⁷²⁾ 등이 와서 고하

69) 유민(遊民): 일정한 직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성.

70) 김덕기(金德基, 1654-1719): 선산 김씨로 자가 재이(載而)이다. 숙종 8년(1682)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동래부사, 황해도 관찰사를 거쳐 관직이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71) 송유양(宋裕養, 1649-?): 죽산 송씨로 자는 성헌(聖獻)이다. 숙종 1년(1676) 식년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72) 한진흥(韓振興, 1662-?): 청주 한씨로 자는 기지(起之)이다. 숙종 8년(1682)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기를 '왜인 등이 물화를 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모두들 의아한 마음을 품고 자못 우려하여 장계를 올려 개시(開市)를 청하여 달라고 한다'고 하거늘, 신은 '당초 조정에서 물화를 들여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단지 새 은화의 통용을 허락하는 서계를 가지고 돌아와서 고쳐주기를 청한 것과, 지난해 새 은화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및 새 은화의 색깔과 품질이 초년에 나왔던 것만 못하다는 등 세 가지 일이었는데, 왜인의 마음과 태도가 교활하여 믿기 어려움이 매우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위의 세 가지 일을 한결같이 조정에서 분부한 대로 준수한 뒤에 장계로 알릴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왜인이 비록 날마다 간청하더라도 일체 와서 고하지 말라'고 거듭 밝게 분부하였으며, 서계를 속히 돌려 받으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더니, 그 뒤로 왜인 등이 감히 다시 개시를 청하는 말을 하지 못하였는데, 서계에 이르러서는 매우 '새 은화는 이미 예도에서 품질이 열등하다 하지 않았는데 이 서계가 예도로 들어가면 도주(島主)가 죽을 죄를 받게 되니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운운하였다'고 훈도와 별차 등이 와서 고하거늘, 신이 '왜국 또한 한 나라인데, 도주가 당초 어찌 감히 예도에 품의하지 않고 사사로이 다른 나라에 품질이 열등한 것을 통용하기를 청하겠는가? 말이 되지 않아 거짓 정상이 절로 드러난다. 너희들은 반드시 속히 책망하고 타일러 되돌려 주라'고 엄하게 신칙하여 분부하였더니, 10만 냥의 은화가 이제 갑자기 나왔는바, 이는 조정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반드시 황력(皇曆) 연행(燕行)⁷³⁾ 때에 맞추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로되, 서계는 아직까지도 훈도 별차가 거주하는 곳에 머물러 둔 채 끝내 되돌려 받을 의사가 없는 것은, 그 계획이 아마도 반드시 요청을 이루려는데 있는 듯하니, 정상과 태도가 가증스럽거니와, 피차간에 개시를 정지한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고, 은화가 이제 이미 나왔으며, 앞으로 절사(節使)⁷⁴⁾가 출발하기 이전에 또한 마땅히 계속하여 나와야 하겠는데, 그 수량의 다소는 짐짓 미리 확정할 수 없지만, 물화를 한결같이 들여주지 않는 것은 또한 어떠한 지 알 수 없겠기에, 감히 이렇게 치계(馳啓)⁷⁵⁾하오니, 지금 온 은화를 받아내는 것과 물화의 피집 여부를 묘당(廟堂)에 명하여 속히 품의 조처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김덕기의 장계를 보니, 왜인 등이 물화를 들여주지 아니함으로 모두 의아한 마음을 품고 또 자못 우려하여 장계를 올려 개시를 청하려는 바람이 있다고 하거늘, 신이 당초 조정에서 물화를 들여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데는 단지 서계를 다시 가져와서 고쳐주기를 청한 것과, 새 은화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및 새 은화의 색깔과 품질이 초년

73) 황력(皇曆) 연행(燕行): 황력은 중국에서 만든 책력이고, 연행은 청나라의 수도인 연경(燕京) 즉 북경에 사신이 가는 것을 말함이니, 곧 중국에 새해의 책력을 요청하여 받아오는 사절(使節)의 행차이다.

74) 절사(節使): 중국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에 파견하던 사신. 초기에는 절일마다 사신을 보냈으나 인조 22년(1644)부터 매년 동지 때만 보냈으므로 동지사(冬至使)라 하였다.

75) 치계(馳啓): 역마를 통하여 급하게 장계(狀啓)를 올림.

과 같지 않은 등의 일인데, 위 세 가지 일을 한결같이 조정의 분부대로 따른 다음에 장계로 알릴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비록 날마다 간청하더라도 와서 고하지 말라고 거듭 분명하게 분부하였더니, 10만 냥의 은화가 이제 갑자기 나왔으니, 이는 조정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황력 연행에 맞추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거니와, 피차간에 개시를 정지한 것이 이미 여러 달이 지났고 은화가 이제 이미 나왔는데 물화를 한결같이 들어주지 않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으며, 은화를 받아내고 물화를 피집하는 여부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우리나라 물화를 해마다 들어주어 그 값으로 받아야 할 것이 누천 만금에 그치지 않거늘, 한 번 새 은화의 통용을 허락하면서 왜인들이 도리어 허다한 계교를 내어서 은화가 나온 것이 매우 적었고, 이미 그 전에 받아야 할 값을 받아내지 않은데다가 또 새 물화를 계속하여 들어 주어서 그들의 간사한 계교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은 매우 부당하겠기로, 개시를 짐짓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대개 여기서 나온 것이며, 이제 10만 냥의 은화가 비로소 나왔는데, 이는 정축(1697) 무인년(1698) 이후로 피집한 물건의 가격을 6성 3푼의 수량에 따라 우선 계산하여 받은 뒤에 받아야 할 값에서 밀리거나 빚지는 것이 없거든 개시는 전례에 의거하여 다시 허락하고, 그렇지 않고 아직도 결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결코 곧바로 개시를 허락하여 끝까지 기만당하여서는 부당하니, 이 뜻을 훈도 별차 등에게 분부하여 저들을 타이르도록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강희 39년(1700) 8월 11일 좌부승지 신 조태동(趙泰東)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경진(1700) 9월 초9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대전(大殿) 탄일(誕日)에 각 도에서 봉하여 올리는 방물(方物) 가운데 제주목사 남지훈(南至熏)⁷⁶⁾이 봉하여 올린 방물은, 본조에서 품질을 검사하는 날짜에 미처 도착하지 못하였으므로 계본(啓本) 가운데 탈이 있다고 기록해 놓았는데, 어제 제주 방물(方物)⁷⁷⁾을 가지고 온 정도흥(丁道興)이 본조에 소지(所志)⁷⁸⁾를 가져와서 바치기를, ‘배가 출발한 뒤 바람 따라 표류하다가 황급한 가운데 선장(膳狀)⁷⁹⁾을 잃어버리고, 진성공사(陳省公事)⁸⁰⁾를 받아 올리겠다고 운운’하면서

76) 남지훈(南至熏, 1653-?): 의령 남씨로 자는 훈숙(熏叔)이다. 숙종 9년(1683)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제주목사와 승지에 그쳤다.

77) 방물(方物): 지방에서 올리는 특산물.

78) 소지(所志): 관청에 하소연하는 내용을 적은 민원서류.

79) 선장(膳狀): 조선시대 각 지방에서 한 달에 두 번 초하루와 보름을 기준으로 올리는 식선(粥膳)과 망선(望膳)의 진상 물품을 적은 목록.

80) 진성공사(陳省公事): 지방 관아에서 올리는 물품의 종류, 수량, 진상 날짜 등 세세한 내용을 적은 공문서. 진성장(陳省狀).

인하여 그 진성(陳省)을 바쳤으므로, 후록(後錄)⁸¹⁾ 물종(物種)을 가져다 보았더니 과연 수량에 맞았으나, 방물은 전례대로 품질을 검사하여 들이는데 막중한 방물을 이미 기일에 맞추지 못하였고, 봉진선장(封進膳狀)을 또 중도에서 잃어버렸으니,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건너는 험난한 곡절 때문에 굽혀서 용서하는 것은 불가한지라, 목사 남지훈을 추고하고 가져온 사람은 되돌아간 뒤에 본 목사에게 명하여 엄중하게 죄를 주도록 함이 어떠할지. 전교에 이르기를 ‘윤희한다’ 하였음.

경진(1700) 10월 14일

승정원에서 입계하기를 “어제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니, 지난번 예조에서 회답한 서계(書契) 전면에 ‘대보(大輔)’ 두 글자를 쓰지 않아 고쳐 써서 내려 보낸 일이 있었는데, 매우 살피지 못한 일인지라 예조(禮曹)의 당해 당상(堂上)을 추고(推考)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이르기를 “윤희한다” 하였음.

신사(1701) 2월 16일

동래부사 김덕기(金德基)가 2월 초9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4일 훈도 김유양(金裕養)과 별차 한진흥(韓振興) 등이 와서 고하기를 “제4선(船)에서 제17선에 이르기까지의 회답 서계 및 예단(禮單)을 어제 들여주었더니, 서계 가운데 ‘내인(來人)’ 두 글자를 잇달아 썼다고 받지 않기에, 누누히 서로 따졌으나 끝내 듣지 않기로, 동 제4선 이하의 서계(書契)와 별폭(別幅)을 아울러 가져왔다”고 하거늘, 신이 “제2 제3선의 서계 가운데 사용한 말과 서식이 이와 다름이 없는데도 이전에는 이미 순순히 받고는 이제 도리어 받지 않는 것은 매우 극히 의아할 뿐 아니라, 지난해 송사(送使)가 오지 않아 서계를 오는 배에 부쳤으니, 해조(該曹)에서 연달아 써서 내려보낸 것은 아마도 여기에서 말미암은 듯하니, 이렇게 타일러 다시 들어 주라”는 뜻으로 분부하였더니, 제2 제3선의 회답 서계를 이제 또 도중에서 되돌려 왔는바, 대개 회답 서계의 규정은 이전부터 저쪽 사람과 관계되는 말이면 반드시 줄을 달리하여 써서 주는 것이 이미 내려온 규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부에서 송사(送使)가 나오지 않았던 정사년(1677)과 임술년(1682) 두 해에 서계를 부쳤을 때 회답한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전계수료(轉啓收了)’ 아래에 ‘온 차사[來使]’ 두 글자를 과연 줄을 달리하여 썼는데, 이로써 살펴보면 왜인이 말을 고집하며 받지 않는 데는 근거가 없지 않은데다, 이런

81) 후록(後錄): 공문서의 뒤에 첨부하는 기록.

사소한 절차로 저들과 서로 버티다가 끝내 받지 않으면 도리어 피곤한 일이기로, 도중에서 되돌아온 서계 두 통과 제4선 이하 각 선박의 서계 14통에 별폭을 아울러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오니, 고쳐 쓰는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김덕기의 장계를 보니, 경진조 세건 제2선 제3선의 회답 서계 가운데 ‘내인(來人)’ 두 글자를 연달아 썼으므로 도중에서 내어보냈고, 제4선에서 제17선까지 회답 서계를 들여주었더니, 서계 가운데 ‘내인(來人)’ 두 글자를 또한 이어서 썼다고 하면서 받지 않아, 누누이 서로 힐난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으니, 고쳐 쓰는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이제 이번 제2선 이하의 회답 서계 서식은 평년과 다름이 있기로 이어 써서 내려보냈는데, 해가 바뀐 뒤로 탈을 잡아 되돌려 보내는 정상은 일이 매우 해괴하오나, 고쳐 쓰는 한 가지는 대단한 일이 아닌 듯하니, 위의 제2선 이하의 서계를 승문원(承文院)에 명하여 전례를 살펴 보고 고쳐 써서 내려보내는 일로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0년(1701) 2월 16일 동부승지 신 이세재(李世載)⁸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신사(1701) 6월 12일

이번 6월 초10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신 이세백(李世白)이 계품하기를, “이 동래부사 김덕기의 장계를 보면 차왜가 요청한 공작미(公作米)의 일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데, 공작목(公作木)⁸³⁾을 미곡으로 대신 지급하다가 이미 정해진 기한을 지낸 뒤로 또 기한을 물리기를 청하였으므로 혹은 5년 혹은 3년에 한하여 지급한지 이미 50년이 지났는데, 정축년(1697)에도 3년에 한하여 지급할 것을 허락하면서 기한이 지난 뒤에는 다시 청하지 말라는 뜻으로 언급하였더니, 왜인들이 도리어 당초 정해진 기한이 없다고 말을 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그 교활함을 깊이 미워하여 또 방색하여 허락하지 않다가, 저들이 이에 과오를 인정하고 애걸하므로 도로 지급을 허락하였는데, 이제 정한 기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다시 이렇게 와서 간청하는 것은 대개 대마도의 형편이 만약 이 쌀이 없으면 실로 살아갈 수 없는지라, 그들이 와서 간청하는 것은 실제 사정에서 나온 것이며, 영돈령부사 윤지완(尹趾完)⁸⁴⁾은 일본 사정을 깊이 알고 또 일찍이 말하기를, 만약 이

82) 이세재(李世載, 1648-1706): 용인 이씨로 자는 지숙(持叔)이다. 숙종 20년(1694)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서 동래부사와 대사간, 도승지, 경상도와 평안도, 경기도의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83) 공작목(公作木): 공목(公木)

84) 윤지완(尹趾完, 1635-1718): 파평 윤씨로 자는 숙린(叔麟), 호는 동산(東山)이다. 현종 3년(1662)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경상도관찰사와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임술년(1682)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고, 어영대장, 예조판서, 병조판서, 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좌참찬, 우의정에 이르렀다.

쌀을 얻지 못하면 대마도는 결코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니 영구히 막아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우리 나라 백성의 병폐로 말하자면 당초 지급한 공목(公木)의 품질이 극히 정세하였는데, 이제 만약 예전에 지급한 것만 품질이 못하여 왜인의 점퇴(點退)⁸⁵를 당하게 된다면 그 폐단은 장차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니, 차라리 지급하여 편한 것만 같지 못합니다. 저들로서는 이미 매우 절박한데다 우리로서도 또한 손해될 것이 없는데 어찌 한결같이 견고하게 고집하겠습니까? 왜인이 간사하고 앙큼하여 매사를 비록 모조리 믿기는 어려우나, 만약 그 중 허락할 만한 일은 즉시 허락해야 마땅하고 방색할 수 있는 것은 일체 흔들리지 않음이 옳습니다. 어찌 반드시 부득이하게 되기를 기다린 뒤에 허락해 주겠습니까? 여러 대신 이하의 신하들에게 의논하면 모두들 허락해야 마땅하다고 하니 감히 이렇게 우러러 진달합니다”라고 하였음. 우의정 신완(申琯)⁸⁶은 말하기를 “이 일은 신묘년(1651)부터 시작하여 기한이 넘으면 물리기를 청하여 혹 10년 혹 5년 혹 3년씩 차례차례 기한을 물려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대개 들건대 대마도의 땅이 매우 척박하여 밭 갈고 씨뿌릴 만한 땅이 없어서 이 쌀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무오 연간에 암행어사로 동래부에 왕래하였는데, 그 때 그곳의 물정을 들으니 왜인에게 만약 이 쌀이 없으면 지탱하여 살아가기 어렵다고 하니, 이제 막기가 어렵고, 저들은 반드시 청하여 이루고야 그만둘 것이니 끝내 막지는 못합니다. 또한 들으니 공목(公木)의 새(升)의 품질이 매우 정세한데 이제는 전일에 지급하던 포목을 얻기가 어려우니 저들이 반드시 점퇴하는 폐단이 있을 것인데 이 또한 하나의 폐단입니다. 쌀로 대신 지급하면 저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되고 우리로서는 손실이 없으니, 짐짓 그 청대로 쌀로 대신 지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고 하였음.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일찍이 전에 익히 들었다. 저들은 생명이 관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의 폐단으로 말하자면 쌀을 지급하는 것이 포목을 지급하는 것보다 낫다. 대신의 말이 옳다. 지급하도록 허락함이 옳다.”고 하였음. 좌의정 이(李)가 말하기를 “진실로 성교(聖教)대로 지급을 허락함이 마땅하나, 일찍이 전에는 혹 5년을 한정하고 혹 3년을 한정하였으며, 혹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형편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혹 쌀이 귀하고 포목이 천할 때가 있으면 난처하게 될 염려가 없지 않으니, 짐짓 3년 동안 허락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정하겠습니까?”라고 하고, 상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비록 3년을 한정하더라도 기한이 지난 뒤에 반드시 다시 와서 청할 것이고, 계속하여 지급을 허락하는 것은 일의 체면에 손상됨이 없으니, 5년에 한하여 지급을 허락함이 옳다”고 하였다.

85) 점퇴(點退): 흙을 잡아 물리침.

86) 신완(申琯, 1646-1707): 평산 신씨로 자는 공헌(公獻), 호는 경암(綱庵)이다. 박세채(朴世采)의 문인으로 현종 13년(1672)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도승지와 대사헌을 역임하고 예조판서와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장(文莊)이며 평천군(平川君)으로 책봉되었다.

동일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이(李)가 계품하기를, “얹 꼭 조시(朝市) 한 조목을 비변사에 논보(論報)하였습니다. 왜관에는 날마다 조시(朝市)가 있는데 그 때 매하는 것은 채소 등의 잡물에 불과하여 아침에 열었다가 즉시 파하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용한 이후로부터는 저쪽이나 우리 사람이나 매양 돈을 교역의 밑천으로 삼는데, 이 일에는 뒤의 염려가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전 경상병사 유한명(柳漢明)이 재임할 때 이 폐단을 갖추어 알고는 막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신(臣)에게 와서 말하였으므로, 신이 특별히 엄금하는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제 보고한 바를 보니 왜인의 교묘한 속임수가 특별히 심하여 전화(錢貨)의 위조가 생겨나고, 또 구리 쇠는 곧 왜관에서 나오는 것인지라, 엄하게 금지 조목을 세워 뒤의 폐단을 방지하지 않아서는 안되고, 금지하는 법률은 반드시 조정에서 의논하여 확정된 다음에야 변방 수령이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피차간에 교역할 때 공연히 돈을 사용하는 것이 이미 극히 해괴하거나와 구리 쇠가 왜관에 많이 있고, 왜인들은 평소에 손재주가 있어서 그 사이에 농간하는 폐단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만약 통절하게 금지하여 끊지 않고 예사로 조처한다면 필+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만약 조시에서 돈을 사용하다가 발각되는 자는 잠상율(潛商律)로 논단한다는 뜻으로 조목을 정하여 훈도와 별차 등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각별히 금단하게 함이 어떠할지.” 하였음.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 하셨음.

신사(1701) 7월 25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왜인에게 지급하는 예단에 찍는 본조에서 사용해온 검은 도장(黑照)이 해가 오래되어 전각의 획이 마멸되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바야흐로 고쳐 만들어 이문(移文) 가운데 찍어 보내니, 지금 이후로는 왜인에게 증정하여 주는 예단에 찍는 검은 도장을 살펴보고 들어 주라는 뜻으로 훈도 별차 등에게 분부하여 시행하되, 도부(到付) 일시를 첩보할 것.

신사(1701) 8월 19일

동래부사 김덕기가 8월 11일에 성첩한 장계 요약. 황력재자관(皇曆賚咨官)⁸⁷⁾이 연경(燕京)에 갈 기일이 박두하여 멀지 않은데, 왜인의 은화가 이전에 온 4만 냥 이

87) 황력재자관(皇曆賚咨官): 중국에 새해의 역서(曆書)를 요청하는 자문(咨文)을 가져가는 관원.

외에 수량이 더 나오지 않기로, 신이 초8일 개시(開市)할 때를 당하여 장사꾼의 물화(物貨)를 일부러 들여보내지 않았고, 황력(皇曆) 사행(使行)의 은화가 또 기일에 맞추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조정을 속인 정상을 통절하게 미워한다는 뜻을 훈도 별차 등에게 전령(傳令)하여, 그들로 하여금 관수왜(館守倭) 등에게 엄한 말로 간절하게 책망하게 하였는데, 훈도 변정욱(卞廷郁)⁸⁸과 별차 이석린(李碩麟)⁸⁹ 등이 바친 수본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일일이 재관왜, 관수왜, 대관왜 등에게 엄하게 책망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황력은 일로 지난달 초승에 대관(代官) 한 사람이 도중(島中)으로 들어가서 비선(飛船)⁹⁰으로 왜경(倭京)에 통지한 것이 이미 여러 달인데, 그 뒤로 그 일자를 계산하면 황력 사행에 맞추어 올 수 있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저희들도 매우 염려하고 있으며, 어찌 동지(同知) 등이 재촉하기를 기다려 마음을 움직이겠는가?’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또 말하기를 ‘공 등은 매양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로 묻는 데 따라 대답하여 임시로 기만하니 그 마음 쓰는 것이 참으로 통절하게 밍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답하기를 ‘비선을 보낸 뒤로 머리를 쳐들고 동쪽을 바라보며 손을 폼아 기다리는 형편은 동지 등도 모두 보고 알면서 뜻밖의 말로 의심하지 않을 곳에 사람을 의심하니 억울한 심정을 견디지 못한다’고 일제히 말하기로,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수본하였음. 은화가 만약 이달 보름에서 스무날 사이에 도착하면 출발 기일에 맞출 수 있겠고, 왜인 등이 또한 머리를 쳐들고 손폼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일제히 입에서 내었다고 하기로 짐짓 나오도록 기다리겠거니와, 끝내 만약 기만을 당한다면 신은 마땅히 한편으로는 개시를 정지하고 한편으로는 급히 알릴 계획이오며, 연유를 우선 치계(馳啓)하는 일임.

신사(1701) 9월 12일

동래부사 김덕기가 9월 초1일에 성첩한 장계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김덕기의 장계를 보면 이제 이번에 나온 왜선에는 금도왜(禁徒倭)⁹¹ 1인이 분명하게 타고 나왔는데, 통영(統營) 왜학(倭學)이 사정을 물은 가운데 거론하지 않아서, 별차 이석린(李碩麟)이 사정을 물은 것과 서로 어긋나 소홀하여 누락한 죄를 면하기 어렵기에,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상고하여 품의

88) 변정욱(卞廷郁, 1638-?): 밀양 변씨로 자는 문경(文卿)이다. 숙종 4년(1679) 증광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정헌대부에 이르렀다.

89) 이석린(李碩麟, 1660-?): 해주 이씨로 자는 성서(聖瑞)이다. 숙종 4년(1678)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관직이 직장(直長), 품계가 가선(嘉善)에 이르렀다.

90) 비선(飛船): 대마도와 부산 왜관 사이에 급한 연락이 있을 적에 오가는 작은 배. 두왜(頭倭) 1인과 격왜(格倭) 예닐곱 명이 타고 왕래하였다.

91) 금도왜(禁徒倭): 일본인 내부의 감찰 단속을 맡는 직책의 왜인. 메스께[目付].

조처하게 하였는바, 자신이 역관이 되어 상세히 사정을 묻지 않아 과연 소홀히 누락하여 서로 어긋난 폐단이 있었으니, 변방의 사정에 있어서 그대로 둘 수 없기에 바야흐로 장계를 올려 책임을 논하려고 하였는데, 통제사(統制使) 유성추(柳星樞)의 장계를 보았더니 동 왜학 정욱(鄭郁)이 사정을 묻고 돌아와 수본한 내용에 '무인조 3특송사의 선격(船格)⁹²⁾ 30명 및 교대하는 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였는바, 이는 별차 이석린(李碩麟)이 사정을 묻은 사연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데, 가덕진(加德鎭)에서 전통(傳通)⁹³⁾할 때 금도왜 1인을 무슨 연유로 누락하여 쓰지 않았는지, 또한 각 진의 전통에 소홀하여 누락된 소치가 없지 않은지라, 오로지 역관에게만 허물하는 것은 불가할 듯하니, 본도에 명하여 상세하게 조사하여 장계로 알린 뒤에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40년(1701) 9월 12일 동부승지 신 윤지인(尹趾仁)⁹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율허함.

신사(1701) 9월 15일

동래부사 김덕기가 9월 초7일에 성첩한 장계. 신이 지난달 25일에 왜인이 전후로 가지고 온 은화 7만 냥을 공제(公除)한 뒤에 들여보내어 장사꾼들이 받아낸다는 뜻으로 이미 치계(馳啓)하였는데, 이번 초5일에 들여보낸 장사꾼의 기묘년 조의 수금하지 못한 물화 값 중에서 공목(公木)으로 계산하여 갚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은화 55,125냥을 새 은화로 대신하면서 더 계산하여 70,000냥을 수량대로 받았고, 장사꾼의 물화도 전례대로 개시(開市)하여 그대로 피집할 계획이며, 앞으로 절사(節使)가 있을 때는 경진년 조의 받지 않은 은화를 다수 내어오라는 일로 훈도 별차 등에게 분분하여 대관왜에게 엄하게 신칙하게 하였음. 근래에 왜인들이 조정의 명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짐짓 모진 일을 하여 난처한 일은 없거니와, 두 나라 사이에서 말을 전하며 주선하는 책임은 오로지 역관에게 있는데, 이제 훈도 변정욱(卞廷郁)과 별차 이석린(李碩麟) 등은 모두 자못 국가의 일에 마음을 다 바쳐 왜인들을 조절하므로, 관왜들도 특별히 전처럼 조정 명령을 어기는 우환이 없는데, 이제 들으니 이석린의 임기가 멀지 않아 교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역관들을 대략 살펴보면 사람됨이 거의 모두가 용렬하고 또 왜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전연 나라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의사가 없이 한갓 왜인에게 잘 보여 자신에게 이롭게 하려는 계획만 품고 있기로, 이전부터 왜인들이 교만 방자하게 설친 것도 역관들이 제멋대로 아첨한 데서 꼭

92) 선격(船格): 배의 격군(格軍). 노를 짓는 사람.

93) 전통(傳通): 여러 곳을 거쳐 차례 차례 전달하는 통지.

94) 윤지인(尹趾仁, 1656-1718): 과광 윤씨로 자는 유린(幼麟)이다. 숙종 20년(1694)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평안도 관찰사, 대사헌, 도승지를 역임하고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나오지 않았던 것도 아니거늘, 훈도 별차를 차출할 때 해당 사역원(司譯院)에서 그 사람됨이 어떠한 지를 헤아리지 않고 단지 그 가운데서 순서를 따라 구차하게 총원하여 차출하여 보내니, 변방의 사정으로 헤아려보자면 실로 우려할 일인데, 별차 이석린이 임기가 만료되어 대신하는 역관은 사역원에 명하여 해당 차례의 여부를 헤아리지 말고 반드시 부지런하고 유능하며 말을 이해하는 자로 각별히 가려 보내어 변방의 일을 그르침이 없게 함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김덕기의 장계를 보면 별차 이석린의 임기가 만료되어 교대하는 역관은 차례에 해당하는 여부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부지런하고 일을 알며 말을 이해하는 자로 각별히 가려 보내어 변방의 일을 그르침이 없도록 하라 하였는바, 이석린의 교대는 장계대로 각별히 가려 보내라는 뜻으로 해당 사역원에 분부함이 어떨할지. 강희 40년 9월 15일 동부승지 신 윤지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사(1701) 10월 28일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 유성추(柳星樞)가 10월 초9일에 성첩한 장계. 신의 수영(水營) 왜학 정욱(鄭郁)이 지난 8월 27일에 가덕(加德) 경내의 정거리(碇巨里) 앞 바다에 옮겨 정박한 왜선 한 척에 문정(問情)하고 돌아와 수본(手本)한 내용의 사연과 부산 별차 이석린(李碩麟)이 문정한 수본이 서로 부합하거늘 즉시 날날이 거론하여 치계하였는데, 그 때 문정한 사연을 각 진에 전통(傳通)하기 위하여 수본 한 건을 가덕진에 적어 지급할 즈음에 동 정욱이 왜선에 함께 타고 있었던 금도왜(禁徒倭) 1인을 몽롱하게 누락하였는바, 막중한 변방 정세를 전통하는 일을 이렇게 소홀하게 누락하였으니, 그 직분을 지키지 못한 죄상이 매우 심히 놀라워서 결코 구차하게 그대로 둘 수 없겠기로, 앞의 사항으로 왜학 정욱을 파직하여 내쫓았으니, 그 대신을 해조에 명하여 별도로 가려 차출하여 속히 내려 보내 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통제사 유성추의 장계를 보니 왜학 정욱 왜선에 함께 타고 있었던 금도왜 1인을 몽롱하게 누락한 것은 결코 구차하게 그대로 두는 것이 불가하니 그 대신을 해조에 명하여 별도로 가려 차출하여 급속히 내려 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떨할지? 강희 40년(1701) 1월 28일 우승지 신 김진규(金鎭圭)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사(1701) 11월 초3일

동래부사 김덕기가 10월 초9일에 성첩한 장계. 재판왜(裁判倭)가 데려온 원역(員役)에게 제공할 잡물은 다른 각 선박의 송사(送使)에 비하여 배로 많을 뿐만 아니라, 금년의 차왜 평성상(平成尙)은 전후로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 10여차에 이르러 제공 물품을 탐내어 돌아가기를 잊는 것이 늙을수록 더욱 심한데, 그의 하는 일을 이미 허락 받은 뒤에는 즉시 배를 되돌려 가야 마땅한데도 혹은 짐짓 도주(島主)의 회보(回報)를 기다린다고 칭하거나 혹은 그가 탈 배가 오지 않았다고 칭하면서 도무지 돌아들어갈 생각이 없거늘, 신이 임역(任譯)⁹⁵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혹은 엄치로 타이드르고 혹은 머물러 있는 것을 책망하여 상선연(上船宴)⁹⁶을 겨우 넘겨 행하여, 이제는 비록 짐짓 왜관에 머물러 있더라도 우리가 제공해 주는 폐단은 별로 없거니와, 그가 나와서 다례(茶禮)를 행한 뒤로부터 상선연에 이르기까지의 날짜에 그에게 공급한 물자의 수량과 각 고을의 많은 물종(物種)을 계산하면 한 해 동안 여러 송사에게 제공하는 데 충당하기에 족한데, 금년의 농사가 흉작이 되어 각 고을 백성의 힘이 지탱하기 어려운 가운데 신민(臣民)에게 복이 없어서 또 국가의 애통한 일을 당하여 민간의 각종 잡역이 평상시보다 배로 더하여, 이런 시기에 왜인에게 제공하는 적지 않은 물자를 또 독촉한다면 도내의 백성 일이 참으로 염려되기로, 평성상에게 제공하는 물자를 모쪼록 줄인다는 뜻으로 임역 등에게 분부하였더니, 훈도 변정욱(卞廷郁)과 별차 이석린(李碩麟)과 차비역관(差備譯官)⁹⁷ 정찬주(鄭纘周)⁹⁸ 등의 수본에 “재판차왜 평성상이 이제 이미 일을 마치고 장차 돌아가려고 하기로 비직 등이 때를 타서 타이드르기를, ‘그대가 여기에 와서 해를 넘기며 우리나라의 쌀과 콩과 잡물을 많이 많아 폐하를 준 것이 해야될 수 없다. 올해 농사가 흉작이라 백성들이 모두 황급한 날 허다한 쌀과 콩을 모조리 추심하여 돌아가겠느냐? 엄치가 있는데 마땅히 되돌려 생각해야 할 뿐 아니라, 계유년 연간에 나왔던 재판왜 평성진(平成辰)이 돌아들어갈 적에는 그에게 제공할 쌀과 콩을 이미 감하여 받은 사례가 있으니, 그대도 또한 이대로 하여야 마땅하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부끄러운 기색이 있는 듯하게 답하기를 ‘동지 등이 하는 말은 근거가 없지 않으니 모조리 감해야 마땅하나 받은 원래 수량이 많지 않고 바다를 건너는 양식 밀천 또한 전연 없어서는 안되니 일공잡물가(日供雜物價)⁹⁹의 미곡 원 수량 내에 270섬 및 요미태(料米太)¹⁰⁰ 60섬을 감하여 귀국의 백성의 힘

95) 임역(任譯): 책임을 맡은 역관.

96) 상선연(上船宴): 왜관무역에서 공식 무역사절이 떠날 때 베풀어주는 잔치.

97) 차비역관(差備譯官): 특별한 임무로 차출된 임시 역관.

98) 정찬주(鄭纘周, 1666-?): 하동 정씨로 자는 선경(善卿)이다. 숙종 15년(1690) 증광시의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에 종사하였다.

99) 일공잡물가(日供雜物價): 왜관에 거주하는 수직(受職) 왜인에게 지급하는 일상 용품의 비용.

100) 요미태(料米太): 급료로 지급하는 쌀과 콩.

을 늦추겠다'고 운운 하여 그대로 수표(手標)를 만들어 주기로, 동 수표 한 장을 아울러 감봉(監封)하여 동래부로 올려보내는 일로 수분한다"고 하였음. 감하는 쌀은 즉시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하였거니와, 이제 이번에 감한 수량이 비록 넉넉하지 않으나 흉년에다 잡역이 번거로운 날을 당하여 백성의 힘을 늦추는 것은 실로 적지 않으며, 중간에서 주선한 세 역관이 비록 함께 시종 마음을 다하였으나, 석린의 공이 가장 많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김덕기의 장계를 보니 훈도 변정욱과 별차 이석린과 차비역관 정찬주 등의 수분 내용에 재판차왜 평성상이 일을 마치고 장차 되돌아가는데 비직 등이 때를 타서 타이르기를 '여기 와서 해를 넘기며 우리나라 쌀과 콩을 받아 끼친 폐단이 적지 않은데, 계유 년간에 재판왜 평성진이 돌아들어갈 적에는 그에게 제공할 쌀과 콩을 크게 감하여 받은 사례가 있으니 이대로 하라' 하였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수량을 모조리 감해야 마땅하나 바다를 건너갈 양식은 또한 전연 없어서는 안되니 일공잡물가의 미곡 원 수량 내에서 270섬 및 콩 60석을 감하여 조금이나마 귀국의 백성의 힘을 덜어주겠다'고 수표를 만들어 주었기에 감봉하여 동래부로 올려보내고, 이제 이번에 감한 수량이 비록 넉넉하지 않은 듯하나, 흉년에다 잡역이 번거로운 날을 당하여 백성의 힘을 늦추어 주는 것이 적지 실로 않은데, 중간에서 주선한 세 역관이 비록 함께 시종 마음을 다하였으나 석린이 가장 공이 많다고 하였는바, 이제 이번에 감한 쌀과 콩의 수량은 과연 넉넉하지 않은 듯하나 이렇게 농사가 흉작이 되고 백성의 잡역이 빼곡하게 중첩되는 시기에, 쌀과 콩을 감한 수량이 장차 400석 가까이 되어 각 고을의 백성의 힘이 조금이나마 늦추어지게 된 것은 또한 다행이며, 이전에 이렇게 주선하여 감하는 일이 있으면 모두 경중에 따라 상을 내리는 일이 있었는데, 상항의 훈도 변정욱과 별차 이석린, 차비역관 정찬주 등은 뒷날 사람들을 격려하는 도리에 있어서 또한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으니,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상고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40년(1701) 10월 21일 우승지 신 김진규(金鎭圭)¹⁰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이에 근거하여 이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에, 동래 훈도 벽정욱과 별차 이석린과 차비역관 정찬주 등에게 상을 논하는 일로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상고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바, 전례를 가져다 살펴보니 올해년(1695) 차왜가 왜관에 머무를 때 훈도 한천석(韓天錫)¹⁰²⁾과 차비역관 윤세홍

101) 김진규(金鎭圭, 1658-1716): 광산 김씨로 자는 달보(達甫), 호는 죽천(竹泉)으로, 영돈령 만기(萬基)의 아들이다. 숙종 12년(1686)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성, 대제학, 예조판서, 공조판서 등을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다.

102) 한천석(韓天錫, 1653-?): 청주 한씨로 자는 성초(聖初)이다. 숙종 1년(1675)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尹世興)¹⁰³ 등이 차왜에게 지급할 쌀 200섬을 주선하여 깎아내린 공으로 한천석은 품계를 올리고, 윤세흥은 참하관(參下官)¹⁰⁴으로 준직(准職)¹⁰⁵을 주었는데, 이제 이번 훈도 별차와 차비역관 등은 재판차왜에게 제공할 쌀과 콩의 수량을 3백 수십 섬을 감하였으니, 한천석 등에게 비하면 감한 수량이 지나칠 뿐 아니라 그 중간에서 주선한 공은 참으로 가상하니, 변정욱과 이석린은 한천석의 전례대로 품계를 올리는 은전을 베풀고, 정찬주는 이미 참하관(參下官)이니 윤세흥의 전례대로 본 아문(衙門)에서 준직(准職)을 수여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한데, 은혜로운 상을 내리는 중대한 은전은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상감께서 결재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40년(1701) 11월 초3일 좌부승지 신 이국방(李國芳) 차지로 입계하여 회계(回啓)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동래부사 김덕기가 10월 25일 성첩한 장계 요약. 왜선 한 척을 데려다 관소(館所)¹⁰⁶에 부쳤다는 봉군(烽軍)의 진고(進告)와 초탐장(哨探將)¹⁰⁷의 치보(馳報)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변정욱(卞廷郁)과 별차 이석린(李碩麟)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 내용에, “왜관에 가서 사정을 물었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무인조 2특송사 수목선(水木船)¹⁰⁸ 한 척에 격왜 20명이 대관왜에게 보내는 은화 1만냥을 싣고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기(沙器)를 구워 만드는 차지왜(次知倭)¹⁰⁹ 1인, 번조왜(燔造倭) 3인, 화공왜(畫工倭) 2인, 조각왜(彫刻倭) 2인 등이 동래 부산으로 봉행(奉行)이 바치는 서찰 한 통을 가지고 또한 같이 타고 나왔거늘, 그 연유를 물었더니 관수왜의 말이 ‘에도의 여러 집정(執政)¹¹⁰ 등이 요구하는 다완(茶椀)과 각종 도기(陶器)를 구워만들기 위하여 나왔는데, 이 사연을 동래 영감 전에 잘 고하여, 지급할 각색 흙 및 송토목(松土木)은 전례에 비추어 들여 주며, 일할 곳의 임시 가옥도 이전대로 만들어 주며, 솜씨 좋은 기술자 두 세 명과 일꾼 대여섯 명을 정하여 지급하면 마땅히 값을 지급하여 일을 돕게 하겠다’고 하였음. 동 바친 서찰 한 통 및 노인 한 통을 아울러 받아 올리는 일로 수본한다” 하였음. 상항의 봉행 등이 바친 서찰 한 통은 받아서 이전대로 보내거니와, 이른바 봉행 등이 바친 서찰을 가져다 살펴보니 서식이 전에 비하여 크게 달라 놀랍고 분통함을 견디지 못하겠음. 전에는 서찰 표면의 ‘동래부산 두 영공[東萊釜山兩令公]’ 아래에 ‘대인(大人)’ 두 글자가 있었

103) 윤세흥(尹世興, 1661-?): 파평 윤씨로 자는 기지(起之)이다. 숙종 9년(1683)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에 종사하였다.

104) 참하관(參下官): 조선왕조시대의 관직제도 중 7품 이하의 관직.

105) 준직(准職): 품계에 맞는 실제 직책.

106) 관소(館所): 멀리서 온 객이 머무는 장소.

107) 초탐장(哨探將): 사정을 탐지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군관(軍官).

108) 수목선(水木船): 선단(船團)에 물과 땀감을 공급하는 작은 배.

109) 차지왜(次知倭):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왜인.

110) 집정(執政): 일본 막부(幕府)의 관직인 대로(大老), 노중(路中), 가로(家老) 등의 직책.

고, 그 성명 위에 ‘가신(家臣)’이라 썼는데, 이번에는 ‘동래부산 양 영공’ 아래에 대인 두 글자를 제거하였고, 성명 위에 ‘재신(宰臣)’이라 썼으며, 서찰의 말에 또한 공손한 뜻이 없는바, 동래 부산이 이미 도주(島主)와 서계(書契)를 서로 통하고, 이른바 봉행은 도주가 부리는 사람에 불과한데, 그가 어찌 감히 구걸(求乞)을 하면서 곧바로 서찰을 보내왔으며, 또한 어찌 오만한 말 건방진 말씨로 전혀 공손하거나 두려운 기색이 없는가? 임신 년간에 구워만드는 일로 봉행 등이 서찰을 바쳤으나 본부에서 사례에 의거하여 물리치지 아니함으로써 도리어 교활한 왜인의 교만한 버릇을 열어 주어 지금까지 체면을 잃은 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때 서식(書式) 또한 오늘에 보낸 서찰같은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병자년(1696)에는 봉행 등이 서찰을 보냈기 때문에 서식이 비록 오만하지는 않았으나 본부에서 물리쳐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치계 하였으니, 봉행 등이 이미 감히 서찰 따위를 통하지 못하는데도 또 이렇게 오만하고 공손하지 않은 서찰이 있었으면, 임역(任譯) 들이 당초 받아올리지 않아야 마땅함에도 어리숙하게 받아 내온 것은 극히 해괴한 일이며, 이른바 구워만드는 것은 이전에 시행을 허락한 일이기는 하나, 한 번 허락한 뒤로 반드시 수년을 겪으면서 각 고을에 분정(分定)하는 물자를 또 점퇴(點退)하여 그 사이 폐단이 이미 적지 않았는데, 왜관 가운데 한가로이 노는 하인 왜인이 그 수가 참으로 많아서 누군들 일을 시킬만한 무리가 아닐까마는, 왜인의 풍습이 이곳에 온 뒤로는 함부로 스스로를 높이고 중히 여겨 크고 작은 일을 헤아리지 않고 반드시 우리 사람을 시켜 부리고, 값을 주어 사역한다고 칭하면서 마치 노예와 같이 보고 절도 없이 포학하게 부리니 이것이 매우 한탄스러울 뿐 아니라, 일꾼들을 유인 협박하여 또한 약속을 어기고 함부로 희롱하는 일까지 있기에 이르렀으나, 본부는 30리 먼 곳 밖에 있어서 날마다 하는 행위를 일일이 관찰하기 어렵고, 역관들이 왜관 밖의 목구멍이 되는 곳에 날려 있으면서 보고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본디 상품을 거래하며 이익을 노리는 무리들인지라 매양 왜인들을 거스릴까 염려하여 조금도 검찰하여 금지하는 일이 없으며, 간혹 도리어 그들에게 붙어서 농간을 부리기까지 하기로, 본부의 여론은 모두 조정에서 곧장 구워만드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에 청하는 것은 다른 무역 요구와는 다름이 있어서, 이미 ‘에도의 여러 집정이 요구하는 다완(茶椀)’이라 하였으니, 관계가 그다지 매우 긴요한 것은 아닌데, 조정에서 반드시 굽혀서 부응하는 것이 벌써 피곤한 일이고, 교활한 왜인을 조절하는 것은 왜관 문 안팎으로 피아의 사람들이 서로 통하는 것을 금하는 데 있거늘, 왜인의 교묘한 악행이 날로 점차 측량할 수 없어, 도리어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해를 넘기며 마음대로 출입하게 하여 그들의 이욕을 채운 뒤에 그만 두게 한다면 우려할만한 사단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다, 더구나 금년에 바닷가의 지역은 이미 가뭄으로 빨갛게 탔는데 이런 때 백성을 부려서 흠을 파내는 것은 결코 차마 할 수 없기로, 신은 우선 봉행의 서찰을 받은 실수로 임역을 엄하게 책망한 뒤, 동 바친 서찰을 되돌려 물려 보내어 준절하게 책망하여 왜인에게

들어주게 하고, 구워만드는 차지와 역시 속히 돌아 들어가게 하였고, 동 바친 서찰의 등본은 해조(該曹)로 올려보내오며, 연유를 치계하거니와, 교활하고 모진 종자가 아마도 신의 한 마디 말로 곧장 즉시 돌아들어가지는 아니할 듯하나, 이 뒤로 시끄럽고 번거로운 청이 필시 장차 지루하더라도,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여 지휘하여 들어서 엄한 말로 통절하게 방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김덕기의 장계를 보니 관수왜의 말이 여러 집정 등이 구하는 다완과 각종 도기를 구워만들기 위한 차지와가 나와 여러 색의 흙과 송토목과 가가(假家)와 솜씨 좋은 장인과 역군 등을 정하여 달라고 운운하였는데, 봉행 등이 바친 서찰을 가져다 보니 전에 비하여 크게 달라 전례에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라 서찰의 말씨 사이에 또한 공손한 뜻이 없기로 우선 봉행의 서찰을 받아들인 실책을 임역에게 엄하게 질책한 뒤, 동 서찰을 되돌려 물리쳐 보내어 준절하게 책망하여 들어주고, 구워만드는 차지와 역시 속히 돌아들어가라는 뜻으로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거니와, 해조에 품의 조치하여 지휘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동래 부산에서 이미 도주와 서계를 서로 통하는 즈음에는 절로 평상시의 사례가 있거늘, 이제 이번에 바친 서찰을 서식이 크게 전례에 어긋나는 바 그 서찰 말씨의 공손함이 모자라는 여부는 따질 것도 없이 그 정상이 극히 해괴하니, 본부에서 책망하여 타이러 물리친 것은 참으로 체면을 세운 것이거니와, 구워만드는 일에 이르러서는 원래 전례에 따라 시행하는 일이 아닌데다가, 이렇게 굶주리는 흉년을 당하여 백성의 잡역이 중첩되는 날 그들의 청을 굽혀서 따르는 것은 불가하니, 이런 뜻으로 훈도 별차 등에게 분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엄한 말로 준절하게 책망하여 뒷날 번거로이 청하는 폐단을 막도록 하며, 당해 훈도 등이 만약 잘 봉행하지 못하면 마땅히 엄중하게 책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0년(1701) 11월 초3일 좌부승지 신 이국방(李國芳)¹¹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신사(1701) 11월 13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동래부사 김덕기가 진상(進上) 왜물(倭物)을 봉진(封進)하면서 간품별단(看品別單)¹¹²⁾을 써 넣었는데, 평의진(平義眞)의 진상 가운데 흑칠(黑漆) 화진갑(華箋匣)의 두껍(蓋頭) 아래 칠한 곳이 조금 손상되었고, 관수왜(館守倭)의 진상 가운데 채화원분(彩畵圓盆) 10개 중 2개는 한 쪽 다리의 아교로 붙인 곳

111) 이국방(李國芳, 1641-?): 전의 이씨로 자는 방경(芳卿)이다. 현종 7년(1666)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승지에 이르렀다.

112) 간품별단(看品別單): 물품을 점검 확인한 목록 단자(單子).

이 거의 떨어졌고 2개는 두 다리의 아교로 붙인 곳이 거의 떨어졌으나, 이는 먼 길에 운반하여 올 즈음에 마모 손상되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반드시 깊이 허물할 것은 아니로되, 수납중청명(粹鑑中淸皿)¹¹³⁾ 10개 가운데 한 개가 원래 수량에서 모자라는 것은, 왜인이 본부에 바친 것을 본부에서 감봉하여 올려보낼 적에 필시 이런 폐단이 없었을 터인데, 원래 수량 가운데 이렇게 한 개의 수량이 모자라는 일은 아마도 모셔 오는 사람이 삼가하지 못한 소치인지라, 모셔온 감색(監色)¹¹⁴⁾를 유사(攸司)에 명하여 추고하여 다스려서 뒷날을 징계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傳敎)에 이르기를 “유히한다” 하셨음.

신사(1701) 11월 25일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 유성추(柳星樞)가 11월 14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10일 가덕도 경계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한 척에 사정을 묻기 위해 신의 수영 전 왜학(倭學) 정욱(鄭郁)을 정하여 보내는 연유는 치계하였거니와, 신의 수영 전 왜학 정욱은 초10일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이 11일에 곧장 떠나서 다대포로 인계하였으니, 미처 저쪽에 가서 사정을 물을 형편이 되지 않았으나 이미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회보하는 일이 없는 것은 일이 매우 해괴하여 지속의 사연을 조사하여 처지할 계획이거니와, 근래에 동북풍에 잇달아 불어서 왜선이 표류하는 일이 전에 비해 빈번한데 사정을 물을 사람이 없어서 번고에 대비하는 병도가 극히 우려되니, 신의 수영 왜학은 반드시 왜어(倭語)에 능통한 자로 해조(該曹)에 명하여 가려 차출하여 속히 내려 보내 주시라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통제사(統制使) 유성추의 장계를 보니 본영의 왜학 정욱이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의 사정을 묻기 위해 정하여 보낸 뒤에 곧장 배가 떠나 다대포로 인계하였으니 저쪽에 가서 사정을 물을 형편이 아니었으나, 이미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직도 돌아와 고하는 일이 없으니 일이 매우 해괴하여 조사하여 조처할 계획이거니와, 근래에 동북풍이 잇달아 불어서 왜선의 표류가 전에 비하여 회수가 빈번한데 사정을 물을 사람이 없어서 극히 우려되니, 반드시 왜어에 능통한 자를 해조에 명하여 가려 차출하여 급속히 내려 보내 달라고 하였는바, 지난번 10월 28일 통제사 유성추의 장계로 인하여 왜학 정욱이 왜선에 함께 타고 있었던 금도왜(禁徒倭) 1인을 명칭하게 누락하였기에 결코 구차하게 그대

113) 수납중청명(粹鑑中淸皿): 수납(粹鑑)은 순수한 납이고, 청명(淸皿)은 요강과 같은 변기이니, 납으로 만든 중간 정도 크기의 요강을 말함이다.

114) 감색(監色): 감관(監官)과 색리(色吏). 감관은 금전 출납을 맡은 사람이며, 색리는 관련 업무 담당 관리이다.

로 둘 수 없기로 정육을 파직하여 내치고, 그 대신을 해당 사역원(司譯院)에 명하여 각별히 가려서 차출하여 급속히 내려 보내라는 뜻으로 복계(覆啓)하여 윤희를 받아 해당 사역원에 분부하였는데, 계하(啓下) 분부한 뒤로 거의 한 달이 되었음에도 아직 차출하여 매끼 넣고 본조에 보고하여 알리는 일이 없으니, 해당 사역원의 소위(所爲)가 매우 극히 해괴하여 뒷날을 징계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되었으니, 해당 사역원 장무관(掌務官)을 본원(本院)에 명하여 엄중하게 벌을 시행하게 하며, 정육의 대신을 급속히 차출하여 밤낮 없이 내려 보내라는 일로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0년(1701) 11월 25일 동부승지 신 어사휘(魚史徽)¹¹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신사(1701) 12월 17일

비변사(備邊司)의 계목(啓目)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김덕기의 장계를 보니, 상역(商譯)들이 교활한 왜인과 부동(符同)¹¹⁶⁾하여 은화(銀貨)를 적게 내어온 폐단을 극구 진술하였는데, 지금의 계획으로는 그 연조(年條)를 일체 맞추어 받아낸 뒤에라야 저쪽이나 이쪽 사람의 허다한 농간의 폐단을 막을 수가 있겠기에, 이런 뜻으로 엄하게 상역 등에게 신칙한다 하였으며, 동래와 부산은 모두 왜인을 접대하는 관아로 쌀가루(米糲) 등의 물건은 본부(本府)에서 들여 주고, 여섯 가지 물건 및 땀감은 부산에서 지급하거나, 본부에서는 연례(年例) 송사(送使) 및 별차왜(別差倭)의 기한이 이미 끝나 상선연(上船宴)을 지낸 이후로는 모두 음식 제공을 거두는 것이 전례인데, 부산의 땀나무와 숲은 기한이 끝나거나 끝나지 않았거나 상선연을 행하였거나 행하지 않았거나를 물론하고 오직 왜인이 돌아 들어갈 때까지를 한도로 하여 날마다 운반하여 준다고 하는바, 사례를 참조하면 왜인에게 지급하는 규정이 본부와 부산이 달라서는 합당치 않으니, 지금 이후로는 연례의 각 송사선 및 별차왜 등에게 지급하는 땀감 역시 본부의 사례에 의거하여 그 기한이 끝나고 상선연을 치르고 나면 들여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임역(任譯)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변진(邊鎭) 폐단을 조금이나마 제거함이 어떠할지,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새 은화의 통용을 허락하면서부터 절절이 교활한 왜인에게 기만당하여 국가의 체면이 손상됨이 이보다 큰 것이 없고 각종의 폐단은 말할 겨를이 없으니, 이제 이번의 이른바 상역들이 부동(符同)하고 농간하여 기만한 소치라 한 것은 실로 그 실정과 폐단을 깊이 알아낸 말이니, 이제부터 이후로는 그 연조를 계산하여 일체 맞추어 받아내고 장계대로 시행하게 하되, 상역들이

115) 어사휘(魚史徽, 1654-1706): 함중 어씨로 자는 미재(美哉)이다. 숙종 12년(1686)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부승지를 역임하였다.

116) 부동(符同): 옳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 몇 사람이 결탁함.

만약 이전의 버릇을 그대로 따라 하여 중간에서 속여서 은화를 내올 적에 여전히 조종하거든, 그 중 우심한 자를 적발하여 일일이 장계로 알려져 별도로 처단하도록 하며, 물건 종류의 다소를 막론하고 왜인을 접대하는 규정은 고을에 따라 다름이 없어야 하거늘, 부산에서 땀나무와 솥을 들여주는 것이 본부의 사례 규정과 다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극히 해괴하니, 본진에서 책임지는 폐단은 짐짓 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피차간에 서로 접촉할 때 약조를 흔들며 고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후일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려가 되니, 이제부터 시작하여 연례 송사 및 별차 등에게 지급하는 땀나무와 솥은, 기일의 한도가 이미 끝나고 상선연을 행한 뒤로는 즉시 철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또한 장계에 진술한 대로 정식으로 거듭 밝혀 시행하되, 임역들이 만약 안면(顔面)에 구애되어 규정 외로 지급할 것을 청하거든 그에 따라 즉시 장계로 알려 엄중하게 죄를 주어 그 폐단을 막음이 마땅하니, 이렇게 본도 감사에게 회이(回移)하고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0년(1701) 12월 17일 우부승지 신유명(兪命)¹¹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오(1702) 정월 초10일

동래부사 박태항(朴泰恒)¹¹⁸⁾이 정월 초3일에 성첩한 장계 요약. 해당 사기(沙器)를 구워만드는 왜인들이 이전에 예조의 복계로 인한 관문에 따라 속히 물리쳐 보내게 하라는 뜻으로 역관들을 시켜 엄한 말로 책망하여 타일렀는데, 저들이 다시 가망이 없자 기계를 철거하고 세전(歲前)에 배를 타고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들어갔기에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

임오(1702) 4월 초3일

동래부사 박태항이 3월 25일에 성첩한 장계. 왜선이 표류하여 우도(右道)로 향할 때 본부의 황령산(荒嶺山)과 간비오(干飛鳥) 두 곳 봉군(烽軍)들이 잘못 관측함을 면치 못하였기로 본부에서 전례대로 잡아다가 곤장을 쳤거니와, 연례 송사왜(送使倭)가

117) 유명(兪命): 『숙종실록』에 의하면 이 무렵의 우부승지는 유명웅(兪命雄)이었다. 원본의 기록에는 '웅(雄)'자가 빠져 있다. 유명웅(兪命雄, 1653-1721)은 기계 유씨로 자는 중영(仲英), 호는 만휴정(晩休亭)이다. 숙종 8년(1682)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도승지, 강원도 관찰사, 형조판서, 예조판서, 한성관윤,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18) 박태항(朴泰恒, 1647-1737): 반남 박씨로 자는 사심(士心)이다. 숙종 13년(1687)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동래부사, 승지,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 대사간, 대사헌, 강원 경기 관찰사, 형조판서, 예조판서, 좌참찬을 역임하였다.

나오는 규정에는 본디 차례가 있어서 만쇼오잉(萬松院) 송사왜(送使倭)는 전례로는 제1선 송사왜 등이 나온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마땅하고 반드시 먼저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제 이번 통영(統營) 왜학 김두원(金斗元)이 사정을 물은 사연에는 대충 ‘송사선 정관(正官) 등이 원역(員役)과 함께 타고 나왔다’고 말하였는바, 그 사정을 물은 것이 극히 소루하였으니 김두원은 변방 실정을 그르친 죄를 면하기 어렵기로,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상고하여 품의 조처하시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박태항의 장계를 보니 통영왜학 김두원이 범연히 사정을 물어 서로 어긋나게 된 일은, 변방의 사정을 헤아려보건대 극히 소루한 것이라, 김두원이 변방 실정을 그르친 죄를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상고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이제 이번 통영왜학 김두원은 자신이 역관으로서 왜선의 사정을 묻는 것이 이렇게 허망하니 그 변방 사정에 있어서 매우 극히 해괴한 일이기애 엄중하게 다스림이 마땅하되, 이곳은 이미 모두 싫어하여 피하는 곳인데다 일부러 범한 소치가 없지 않은 듯하니, 동 김두원은 본도에 명하여 짐짓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도록 함이 어떠할지. 강희 41년(1702) 4월 초3일 좌부승지 이민영(李敏英)¹¹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오(1702) 4월 초8일

경상우수사 원덕휘(元德輝)가 3월 28일에 성첩한 장계. 이제 부산의 훈도와 별차의 수분을 살펴보니, 동 왜선 1척에 격왜 40명만 분명히 함께 타고 있다고 하였으며, 신의 수영 왜학 김두원(金斗源)의 수분에는 격왜 40명 이외에 정관왜(正官倭) 1인과 도선주왜(都船主倭) 1인, 봉진압물(封進押物) 1인, 반종(伴從) 3인이 동행한 양으로 범연히 문정하여 교묘하게 어긋나는 폐단이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혼미하여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대로 중대한 책임을 맡겨두는 것이 불가하기로, 위의 왜학 김두원을 우선 파직하여 내쫓았으니, 그 대신을 해조에 명하여 가려 차출하여 급속히 내려보내실 것. 왜인의 수가 같지 않은 사연을 문서를 주고받고 조사하고 묻는 사이에 자연히 지체되었기에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동래부사의 장계에 따라 통영왜학 김두원이 표류한 왜선에 문정할 때 어긋난 일이 있어서 본조에서 복계하여 이제 본도에서 곤장을 치라는 뜻으로 분부하였는데, 이 통제사 원덕휘의 장계를 보면 본영의 왜학 김두원의 수분 가운데 격왜 40명 이외에 6명의 왜인이 함께

119) 이민영(李敏英, 1653-1722): 전주 이씨로 세종(世宗)의 서자(庶子) 계양군(桂陽君)의 후손이며, 자는 사행(士行)이다. 숙종 10년(1684)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우승지, 의주부윤 등을 역임하였다.

탄 양으로 범연히 문정하여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있게 되었으니 결단코 그대로 두는 것은 불가하기에 김두원을 파직하여 내쫓았으니 대신을 해조에 명하여 가려 차출하여 내려 보내라고 하였는데, 장계대로 위의 김두원을 파직하여 내쫓고 대신을 해조에 명하여 각별히 가려서 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1년(1702) 4월 초 9일 우승지 신 이국방(李國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오(1702) 5월 초4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계하하신 내용 요약. 이번 4월 초10일에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예조판서 김(金)의 계품에 “방금 장악원(掌樂院)에서 보고한 바를 접하니 장악원 악공(樂工) 429명 내에 친제(親祭)¹²⁰할 때 종묘(宗廟)¹²¹와 영녕전(永寧殿)¹²²에 각 130명, 영소전(永昭殿)¹²³에 37명, 전정(殿庭)의 헌가(軒架)¹²⁴에 44명, 전후의 차비(差備)로 88명을 분배할 즈음에 오히려 소홀하고 간략할 걱정이 있고, 경녕전(敬寧殿)¹²⁵ 악공도 오래잖아 장차 분배할 것인데 수를 채울 수 없으니, 경녕전 악공 37명은 각 도에 나누어 배정하여 속히 올려 보내어 미리 배워 익히게 하고, 매 호에 6명의 보인(保人)¹²⁶은 비록 한꺼번에 충당하기는 어렵지만 계속하여 있는 대로 충당하라는 뜻으로 각 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는 일로 전교하셨기로, 동 악공을 분배 확정하니, 도내 각 고을의 관노(官奴)가 넉넉한 관청에서는 급속히 분정하여 이달 25일 내로 일일이 사람을 보내어 미리 음악을 익힐 수 있도록 하되, 도부(到付) 일시를 이문(移文)할 것. 충청도 9명, 전라도 9명, 경상도 8명, 강원도 3명, 함경도 1명, 황해도 4명, 평안도 1명, 경기 2명.

120) 친제(親祭): 국왕이 직접 거동하여 직접 거행하는 제사.

121) 종묘(宗廟): 조선왕조 종묘의 태조를 비롯하여 조천(祧遷)하지 않은 역대 왕의 신위를 모신 정전(正殿)을 가리킨다.

122) 영녕전(永寧殿): 조선왕조 종묘에서 조천된 신위를 모시는 곳.

123) 영소전(永昭殿): 숙종(肅宗) 비 인경왕후(仁敬王后) 김씨의 혼전(魂殿).

124) 헌가(軒架): 종(鍾), 경(磬), 고(鼓) 등의 타악기와 관(管), 약(簫), 소(簫), 적(篳), 생(笙), 우(竽), 훈(塤), 지(箎) 등 관악기를 위주로 편성한 악대(樂隊). 종묘의 대제에 사용하였다. 특종(特鐘) 특경(特磬)과 금(琴), 슬(瑟) 등을 위주로 편성된 등가(登架)의 악대와 구별하였다.

125) 경녕전(敬寧殿): 숙종 비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의 혼전.

126) 보인(保人): 군역(軍役)을 비롯한 각종 역(役)에 실제로 동원되는 대신 쓸이나 배를 대신 바치는 장정.

임오(1702) 5월 초7일

승정원에서 계품하기를, “방금 동래부사 박태항의 장계를 보니, 표차왜(漂差倭)의 회답 서계 가운데 ‘성량(盛亮)’ 두 글자를 상항에 써지 아니하였다고 받아가지 아니하므로 서계를 되돌려 올려보내는데, ‘성량’ 두 글자를 상항(上行)에 쓰는 것이 이미 전례인지라 차왜가 받지 아니하는 데는 탈을 잡을 바가 없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와 오가는 문서는 참으로 상세히 살펴야 마땅함에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여 이런 폐단이 있게 되었는데,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는지라 그냥 두어서는 불가하니, 해당 승문원 서원(書員)과 해조의 서리(書吏)를 아울러 유사(攸司)에 명하여 엄중한 죄를 부과하여 후일의 폐단을 징계하고, 해조의 당상(堂上) 또한 살피지 못한 실책을 면하기 어려우니 추고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전교에 ‘윤허한다’ 하셨음.

임오(1702) 5월 초11일

동래부사 박태항이 3월 29일에 성첩한 장계. 근래 서울과 지방에 해를 이어 흉년이 들어 공사(公私) 간에 양식이 고갈된 가운데, 금년에 차왜(差倭)가 나온 것이 이미 4차에 이르고 앞으로 또 계속하여 나오게 되느니, 이렇게 어려운 때 전례에 따라 제공하는 물자를 마련할 즈음에 온 도내의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이제 이번에 나오는 조차(弔差) 일행에게 지급하는 모든 물자를 힘써 절약하고 줄여서 곤궁한 백성에게 한 푼이라도 폐단을 제하라는 일로 임역(任譯) 등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전령(傳令)하였는데, 훈도 변정욱(卞廷郁)과 별차 최상집(崔尙集)¹²⁷⁾ 등의 내용에, “조위차왜(弔慰差倭)를 가서 만나 전령의 사연을 일일이 언급하였더니, 동 왜인은 ‘귀국의 근년 흉작은 저희들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도중(島中)에서도 다 알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제공하는 물자를 비록 절약하여 줄이려고 하나, 이것이 후일의 전례가 되면 뒷사람들에게 시비를 당할까 염려되므로 들어 주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하거늘, 비직(卑職) 등이 또 말하기를 ‘그대가 말하는 바는 또한 근거가 없지 않지만, 무릇 일을 변통하고 주선하는 것은 오직 임시 조처에 달려 있다. 장래의 일은 참으로 뚜렷하게 알기 어려우나, 대개 우리나라의 농사가 만약 보통 해와 같다면 그대에게 제공하는 것을 어찌 이렇게 구구하게 부탁하겠는가? 다만 귀도의 연례 9송사 외에 뜻밖에 한 번의 대차(大差)와 한 번의 조위(弔慰), 두 번의 표차(漂差)¹²⁸⁾가 나왔는데, 앞으로 두 번의 대차가 또 나온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우리나라

127) 최상집(崔尙集, 1664-?): 무주 최씨로 자는 연보(延普)이다. 숙종 13년(1687)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정헌대부에 이르렀다.

128) 표차(漂差): 바다에서 표류한 사람을 데려오는 차사(差使).

에서 견디기 어려운 폐단이다. 그러므로 부득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바라건대 그대는 사례를 청탁하지 말고 상쾌하게 줄여서 우리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함이 어떻겠는가?’라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한참 깊이 생각하더니 말하기를 ‘동지(同知) 등이 말하는 바가 과연 실상이다. 그러니 저희들이 제공받는 것 가운데 소소한 잡물(雜物)은 일체 모두 감하겠다’고 하거늘, 비직 등이 웃으며 말하기를 ‘감하면 감하고 감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자질구레한 물건을 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웃을 꺼리도 안된다. 우리나라가 비록 피폐하지만 어찌 하나의 자질구레한 잡물로 번거롭게 그대에게 이야기해서야 되겠느냐? 바라건대 그대는 다시 더 생각해 보라’ 하였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뜻밖에 나왔다고 하는 자는 저희들만이 아니다. 어찌하여 다른 차사(差使)는 언급하지 않고 유독 이렇게 우리들만 강박하느냐?’ 하거늘, 비직 등이 또 말하기를 ‘무릇 도차(島差)¹²⁹⁾가 나오는 것은 다름이 없으나, 그대가 주관하는 것은 결코 다른 차왜(差倭)에 비길 것이 아니요, 불과 진향(進香)¹³⁰⁾한 뒤 서계(書契)를 받아 섬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그대가 문자를 알고 일을 이해한다면 일찍이 들었을 것이므로 이렇게 와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공급하는 물자를 감하고 감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수(館守) 및 대차왜(大差倭)와 한 곳에서 상의한 다음에 결단할 수 있으니, 후일을 기다려 와 달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또 말하기를 ‘보잘 것 없는 일은 한 마디 말로 결단하면 되는데, 어찌 관수와 대차왜를 청탁하느냐? 그대가 참으로 혼자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면 당장 오늘 결단하여 물리치고, 다례(茶禮)하는 일시에 장계로 알리도록 하겠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즉시 일어나 가더니 상의한 뒤에 와서는 말하기를 ‘저희들이 관수·대차와 상의하였더니, 무릇 차개(差价)¹³¹⁾에게 제공하는 물자를 줄여서 지급하는 일은 앞서 예전에 없었던 사례이니, 굳이 한 되 한 물건이라도 감하여 줄이는 것은 불가하나, 귀국의 흥작이 이미 이렇게 비참한데 대차가 나오는 것이 또한 이렇게 중첩되니, 어찌 일개 차왜에게 제공되는 물자를 아까워하면서 귀국에 폐를 끼치는 것은 돌아보지 않겠는가? 관수와 대차왜의 의견이 이렇게 귀결되었기로, 저희들에게 들어주는 모든 물건은 5일 조반(早飯)부터 익힌 음식과 급료 쌀과 콩과 5일 잡물 및 진향연(進香宴) 별연(別宴) 등의 일에 한결같이 모두 감하되, 상선연(上船宴)에 있어서는 주객 사이에 송별하는 예이니 이 상선연 하나는 하지 않아서는 안되겠기에, 그러므로 감하는 가운데 놓지 않았는데 이것이 마음에 불안하다’고 하였는데, 그 말하는 바가 또한 우연이 아니니, 상선연을 또 감한데 감하는 것은 어떨까 하여 상선연만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그 나머지 차왜(差倭) 원역(員役) 등에게 제공하는 물자는 전량을 감한 것이 실로 다행이다”라는 수본이었음. 추가로 훈도 변정욱과 별차 최

129) 도차(島差): 대마도에서 파견된 차사(差使).

130) 진향(進香): 국상(國喪)이 났을 때 신위(神位) 앞에서 제전(祭奠)을 올리는 절차.

131) 차개(差价): 차사(差使). 특별한 임무를 띠고 차출 파견된 사절.

상집 등이 바친 수본에는 “또 전령의 사연을 차왜 등에게 가서 반복하여 타일러 말하기를 ‘이번에 그대가 접대(接待)를 하나같이 줄인 일을 실로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은근히 이야기 하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지난 번에 두 차례의 연회를 감할 때 또 상선연을 감하도록 청한 것은 주인된 도리에 미안한 일이라 감히 발설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대가 이미 폐단을 제거하는데 뜻이 있다면 이 상선연을 아울러 감할 수가 없겠는가?’라고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저희들의 이런 행동은 실로 귀국을 위하여 폐단을 없애도록 함이니, 상선연만 또한 어찌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세 차례 연회의 예단(禮單)과 각종 설치하는 잡물 및 육물(陸物)¹³²⁾ 못[釘] 등을 아울러 전량 감하였기로,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로 수본한다” 하였음. 위의 차왜에게 제공하는 각종 일공잡물과 연례의 잡물, 급료 쌀과 콩, 육물을 합하여 계산하면 쌀이 221섬, 콩 19섬에 이르며, 그 밖에 범죽(帆竹)¹³³⁾ 3개, 장판(長板) 4넝, 초둔(草蓆)¹³⁴⁾ 20번, 취줄(葛絙) 3장, 및 해조에서 내려보내는 예단 잡물 등도 역시 일체 감하였기로, 감한 쌀과 콩과 잡물은 감영(監營)에서 이미 각 고을에 분정한 것은 추이(推移)¹³⁵⁾하여 다른 차왜에게 공급할 때 가져다 쓸 계획이거니와, 이제 이번에 감한 수량은 비록 넉넉하지 않다 하나 훈도 변정욱과 별차 최상집 등이 국사에 마음을 다하여 극력으로 타일러 마침내 감하여 조금이나마 백성의 힘을 편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다행이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박태항의 장계를 보면 해를 이어 흉년이 들어서 공사 간에 비축이 고갈되었으므로 이제 이번 조위차왜에게 공급할 물자를 되도록 절약하여 줄여서 한푼이라도 폐단을 없애는 일로 임역 등에게 전령하였더니,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전령의 사연을 언급하였더니 각종 일공과 연례 잡물과 급료 쌀과 콩, 육물을 모두 줄인다고 하였기로, 값으로 계산하면 쌀 221섬, 콩 19섬이며 그 밖에 범죽 등의 물건 및 해조에서 내려보내는 세 차례 연회의 예단 역시 줄여 없앴거니와, 이제 이번에 줄인 수량은 비록 넉넉하지 않다 하나 훈도 별차들이 국사에 마음을 다하여 끝내 줄여서 조금이나마 백성의 힘을 늦추어 주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이렇게 치계하였는바, 훈도 변정욱과 별차 최상집 등이 중간에서 주선한 것이 비록 직분 내의 일이지만 이렇게 경비가 고갈된 때를 당하여 연례(宴禮) 이하 각종 물건을 아울러 타일러 줄인 것은 이미 전에 없었던 일일 뿐 아니라, 비록 세 차례 연례의 예단으로 따지더라도 그 수량이 또한 매우 적지 않으니, 격려하는 도리에 있어서 상을 베푸는 은전이 없어서는 안되겠으니, 해조에

132) 육물(陸物): 배에 사용되는 공석(空石), 황죽(篋竹), 고초(藁草), 초둔(草蓆), 초석(草席), 숙마줄(熟麻絙), 갈줄(葛絙), 철정(鐵釘), 장판(長板), 범죽(帆竹) 등과 같은 잡다한 물건.

133) 범죽(帆竹): 돛대에 사용하는 대나무.

134) 초둔(草蓆): 띠나 부들 따위로 엮어 비나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적.

135) 추이(推移): 비용의 명목을 바꾸어 옮겨 사용함.

명하여 사례를 상고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41년(1702) 4월 26일 우부승지 신 이희무(李喜茂)¹³⁶⁾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한 일임.

이에 의거하여 이조(吏曹)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예조의 복계(覆啓)로 동래 훈도 변정욱과 별차 최상집 등에게 상을 주는 일로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상고하여 품의 조처하라는 일로 윤택이 내렸는데, 전례를 가져다 살펴보니 훈도 한천석(韓天錫)이 차왜에게 지급할 쌀 200섬을 주선하여 감하였고, 한후원(韓後瑗)¹³⁷⁾은 별증미(別贈米) 40섬 및 연향에서 증정하는 명주, 모시, 면포 약간 필을 주선하여 영구히 감한 공으로 모두 가자(加資)¹³⁸⁾하였는바, 이제 이번 훈도 변정욱과 별차 최상집 등이 감한 각종 일공 연례 잡물을 쌀로 계산하면 220여 섬에 이르고, 세 차례 예단 역시 감하여 그 주선하여 줄인 수량이 이전의 한천석 등에 비하여 더함이 있는 듯하니, 앞의 여러 사람의 사례대로 품계를 올리는 은전이 있어야 하겠는데, 은전에 관계되는 일은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상감께서 재량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41년(1702) 5월 11일 우승지 신 이민영(李敏英)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회계하여 시행하라 하심.

임오(1702) 윤6월 11일

이번 윤6월 초10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부승지 여필용(呂必容)¹³⁹⁾이 계품하기를** “근래 역관 무리들이 함부로 품계를 올린 자가 매우 많은데, 동래 훈도 변정욱과 별차 최상집에게 가자(加資)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은 가만히 개탄하는 바가 있어 이렇게 감히 우러러 진달합니다. 한 번 차왜(差倭)가 나오면 비용이 적지 않은데, 역관들이 또한 반드시 이로 인하여 농간을 부리는 일이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전부터 국휼(國恤)의 내상(內喪)¹⁴⁰⁾에는 왜인이 분디 조위(弔慰)하는 일이 없었는데, 갑자년에 처음으로 조위한다고 칭하면서 왔으나, 오히려 조정에서 물리칠까 염려하여 바람에 표류한 사람을 데려 오는 차왜〔領漂風差倭〕를 검하여 오자, 그 때 조정에서는 사퇴하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접대하여 마침내 전례가 되었습니다. 무릇 차왜가 나올 때는 왜관에서 서로 통지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136) 이희무(李喜茂, 1649-1708): 덕수 이씨로 자는 무경(茂卿)이다. 숙종 17(1691)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1695년 동래부사로 부임하였고, 이후 승지와 강원도관찰사, 대사간, 호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137) 한후원(韓後瑗, 1659-?): 청주 한씨로 자는 백옥(伯玉)이다. 숙종 4년(1678)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138) 가자(加資): 조선시대 관리의 품계를 올리는 일.

139) 여필용(呂必容, 1655-?): 함양 여씨로 자는 휴경(休卿)이다. 숙종 9년(1683)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승지를 역임하였다.

140) 내상(內喪): 왕비(王妃)의 상. 세자빈(世子嬪)이나 세손빈(世孫嬪)의 상은 소내상이다.

그러므로 지난해 겨울 승지 김덕기(金德基)가 동래부에서 교체되어 올 때 훈도 별차 등에게 말하기를 ‘이번 내상(內喪)은 전일과 달라 조위차왜가 별도로 나올 일이 없으니, 너희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운운하였는데, 봄 사이에 차왜가 나왔으나 비록 조위(弔慰)라고 칭하기는 하여도 사실은 또한 바람에 표류한 사람을 데려온 차왜입니다. 인솔한 원역(員役)이 이전의 조위 일행에 비하면 그 수가 아주 줄어들었으니, 이로 보면 저들이 오로지 조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또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당초 이치에 근거하여 물리쳐야 옳으나, 이미 그 서계를 받았으니 지금 비록 국저(國儲)¹⁴¹⁾의 매우 애통한 일을 당했으나 어찌 역관들로 하여금 대충대충 그들에게 제공할 물자를 감하도록 이야기 하게 하여, 공을 이루고 상을 바라는 바탕으로 삼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훈도와 별차 등이 당초 나와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가운데서 전례를 인용하여 물리쳤다가 이제 도리어 말을 꾸며서 조정을 기만하고 은전을 받기에 이르렀다면 그 정상은 더욱이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왜역(倭譯)¹⁴²⁾은 청역(淸譯)¹⁴²⁾과 다름이 있어서 왜관과 서로 뒤섞여 거쳐하면서 동작 하나 하나를 모두 통하여 알지 않음이 없는데, 만약 공이 없음에도 상을 받는다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론이 해괴하게 여겨 오래 갈수록 더욱 답답합니다. 지난번에 예관(禮官)이 상소를 올려 허물을 자책한 것은 대개 이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들으니 훈도 변정욱은 지난해 재판왜(裁判倭)에게 제공할 쌀과 콩을 감한 일로 가자되었다고 하는데, 설령 미미한 노고가 있더라도 어찌 꼭 해마다 가자해야 하겠습니까? 이번에 상으로 가자(加資)하는 것은 결코 그대로 주는 것은 불가하니, 대신에게 물어보시고 조처함이 어떠할지?” 하였음. 좌의정 이세백(李世白)이 말하기를 “신은 바야흐로 사역원(司譯院) 제조(提調)로 죄를 기다리고 있으나 일찍이 이 일의 전말을 몰랐습니다. 아마도 사역원을 거치지 않고 해조에서 복계하여 상을 논한 듯한데, 물러나간 뒤에 문서를 살펴보았더니 과연 분수에 넘치는 일인지라 마땅히 다시 품의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고, 행병조판서 이유(李濡)¹⁴³⁾는 말하기를 “이제 들으니 승지가 진달한 조위차사가 나온 것은 비록 전례가 없으나, 만약 이치에 근거하여 물리치지 않았다면 참으로 잘 접대하여야 마땅한데, 반드시 그 제공할 물품을 감하려고 한 일은 매우 구차스럽고 또 큰 체면을 손상함이 있습니다. 역관들이 혹 중간에서 주선하는 일이 있으면 또한 어찌 상을 논할 방도가 없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도리어 먼 데서 온 사람에게 모욕을 당할 듯한데, 이로 인하여 가자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니, 승지의 말이 옳습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묘당에 명하여 문서를 상고한 뒤 다시 품의 조처함이 옳겠다”고 하였음.

141) 국저(國儲): 태자.

142) 청역(淸譯): 청국어(淸國語) 즉 여진어 역관.

143) 이유(李濡, 1645-1721): 전주 이씨로 자는 자우(子雨), 호는 녹천(鹿川)이다. 현종 9년(1668)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임오(1702) 7월 24일

승지 여필용(呂必容)의 상소. 앞서 생각건대 신이 경연(經筵)에서 동래 훈도 변정욱과 별차 최상집 등에게 가자(加資)를 함이 적절치 않다는 일로 진달할 즈음에, 이른바 조위차왜(弔慰差倭)가 데려온 원역(員役)이 이전의 조위(弔慰) 일행에 비하여 그 인원 수가 아주 줄었다고 한 것은, 갑자년과 같은 경우에 겸하여 데려온 표류민의 사례를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당초 장계를 보고 경솔하게 진달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비록 데려온 인원이 줄었더라도 조위의 명분 외에 달리 겸하여 소관하는 일이 없다고 하니, 신은 지극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개 이번 국가의 애통한 일¹⁴⁴은 갑자년과 달리 당초에 이치에 근거하여 물리치지 않고 이미 그들의 진향(進香)을 받고서는 그들에게 제공하는 물자를 구구하게 비용을 줄여서, 국가의 체면을 크게 손상하고 먼 곳의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였고, 또한 중간에서 농간하여 말을 꾸며서 상을 바라는 계획이 없지 않았으니, 그 정상을 논한다면 더욱 통탄스러운 일인지라 결코 함부로 은혜로운 자금을 올려주어서는 안되는데, 조위하는 왜인이 소관하는 일을 겸하였는지의 여부는 굳이 논할 겨를도 없이, 신이 진달한 한 마디가 어긋남을 면치 못하였기에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고 감히 상감께서 기운을 조용히 조섭하시는 가운데 함부로 더럽혀 욕되게 하였사오니, 신의 죄는 이에 이르러 더욱이 도망할 곳이 없는지라, 앞서 애걸하옵건대 거룩하고 밝은 임금님께옵서는 먼저 신이 잘 살펴서 아뢰지 못한 죄를 다스리시기를 바라오며, 신의 이 상소를 조정에 내리시어 복계할 때 참고하도록 하시기를, 신은 황송하여 방황하는 마음 지극하여 견디지 못합니다.

임오(1702) 9월 26일

이번 9월 2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사직(司直) 이인엽(李寅燁)이 계품한 바, “북방의 흉작이 더욱 심하여 도신(道臣)이 진대(賑貸)¹⁴⁵할 밑천을 청하였으니 구획하여 주어야 마땅하나, 영남 연변(沿邊) 각읍의 곡물이 병자(1696)·정축년(1697)에 두 번 북방으로 운반한 뒤로는 남은 것이 많지 않아 이제 손을 댈 곳이 없기에, 부득이 하여 장차 저치미(儲置米)¹⁴⁶ 및 감영과 통영 등의 곡물을 추이(推移)하여 수량을 채워 보내자니, 국가에서 곡물을 비축해 두는 데는 의도가 있고, 또 명년의 농사가 어떠한 지 알 지 못하는데 비축한 쌀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

144) 애통한 일: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의 죽음을 일컫는 것임.

145) 진대(賑貸): 관청에서 봄철에 곡식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가을걷이가 끝난 뒤에 거두는 방식으로 빈민을 구휼하는 제도.

146) 저치미(儲置米): 비축용 미곡.

이 참으로 민망한데, 이전에 정축년간에는 왜공목(倭公木)¹⁴⁷⁾을 쌀로 만들어 진대(賑貸)의 자본으로 보충하여 주었으니, 지금 역시 이전대로 쌀로 만들려고 하나, 반드시 공목(公木)의 사용과 쌀로 만드는 편의 여부를 안 뒤에라야 품의 확정할 수 있겠기에 우선 이 뜻을 본도에 물어보고 조처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이를 감사에게 분부함이 좋겠다”고 하셨음.

임오(1702) 12월 초3일

동래부사 박태항이 11월 14일에 성첩한 장계. 초9일 오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순곤(李順坤)의 치통 내용. 나왔던 왜선 두 척 중에 작은 배 한 척은 동일 해시(亥時)에 데려다가 관소(館所)에 부쳤고, 큰 배 한 척은 당일 자시(子時)에 데려다가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哨探將) 정지상(丁之相)의 치보(馳報)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변정욱과 별차 최상집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은 뒤의 수본 내용에, “비선(飛船)에는 두왜(頭倭) 1인, 번조왜(燔造倭) 1인, 격왜(格倭) 7명이 관수왜(館守倭)에게 보내는 사서(私書) 및 서계(書契)와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島中)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으나 새 도주(島主)가 명년 2월에 에도로 들어가는데, 이전에도 귀국에서 각색 흙으로 다완(茶碗)을 구워 만드니, 여러 곳에서 이것을 기이하고 귀하게 여겨 예사로 봉진(封進)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서계를 가지고 이 일을 위하여 나왔으니, 급히 전달하여 각색 흙 및 사용되는 뿔나무를 전례에 따라 장만하여 주어 진작에 구워만들어 돌아가도록 해 달라’고 하기로, 동 서계와 노인 한 통을 받아 올려보내는바”라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서계와 노인 각 한 통을 부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위의 사기(沙器)를 구워만드는 일로 흙을 요구하는 한 조목은 지난해 봉행(奉行) 등이 바친 서계 가운데 ‘재신(宰臣)’이라 써 넣음으로써 전례에 어긋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전례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일이 아닌데도 매양 부응하여 허락함으로써 후일의 잘못된 폐단을 더하여서는 불가하다고 이미 물리쳐서 허락하지 않았거늘, 이제 또 구워만드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지루하기로, 이런 사연을 이치에 근거하여 책망하여 타이른 뒤에 서계를 되돌려 주고 즉시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임역 등에게 전령(傳令)으로 분부하였더니, 훈도 변정욱과 별차 최상집 등이 바친 수본에, “전령에 의거하여 내려보낸 서계를 가지고 관수왜에게 가서 이치에 근거하여 책망하여 타이러 들여주었더니, 동 왜인의 말이 ‘도주가 새로 부임하는 초기에 에도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별도로 마련하여 생색을 보이려는 계획으로 도장(陶匠) 1명을 오로지 내어 보내어 구워

147) 왜공목(倭公木): 왜인에게 공무역의 대금으로 지급할 공목(公木).

만들게 한 것은 실로 부득이한 형편에서 나온 것인데, 지난해에 봉행이 바친 일은 규정에 어긋나서 막은 적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하려고 친히 서계를 올려 별도로 만들기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평상시와는 다름이 있거늘, 조정에 품의하지 않고 여기서 앞질러 먼저 막는 것은 과연 교린(交隣)에 후하게 대접하는 뜻이 아니니, 다시 이런 뜻으로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잘 계품하여 속히 부응을 허락하면 천만 다행이겠다'고 하며 서계를 받지 않고 시종 애절하게 간청하기로, 연유를 우선 수분하는 일로 수분한다'고 하였거늘, 이미 막은 일을 결단코 허락을 들어줄 이가 없으니 각별히 다시 책망하고 타일러 기어코 들어보내라는 뜻으로 전령하였더니, 동 훈도 별차 등이 또 바친 수분에, "전령에 다시 더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라는 것에 의거하여 말하기를 '이른바 사기를 구워만드는 것은 전에 일찍이 비록 간혹 억지로 따라서 임시로 허락한 때가 있었으나 매양 사례를 인용하는 것은 불가하거늘, 사리를 헤아리지 않고 이제 또 와서 청하여, 도중(島中)의 사사로운 일로 다른 나라에 폐를 끼치려는 것은 극히 근거가 없으며, 그대는 관수(館守)의 책임을 맡고 있으니 마땅히 피차의 형편을 헤아려서 행하여야 하거늘, 이제 이루기 어려운 일을 다른 나라에 청구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정만을 주장하여 염치를 살피지 않음이니 애석하지 않겠는가? 또한 회답이 돌아오기 전에는 결코 돌아 들어가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또한 미혹된 견해를 고집하여 심히 깨닫지 못한 것이다. 가져온 서계가 사리에 합당하다면 마땅히 서찰을 만들어 답할 것이거니와, 이렇게 규정 밖의 일을 억지로 다른 나라에 청하고서 물려 보내라고 하면 또 반드시 답서를 받은 뒤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도 이렇게 까지 강박하는 것인가? 많은 말 할 것 없이 속히 들어보내라'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정색하여 말하기를 '비록 규정 밖이라고 하나 이미 전례가 있는데 지사(知事) 등이 성신(誠信)의 본뜻을 생각하지 않고 억지로 규정 밖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그 도리가 아니며,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닌데 오직 제가 관수를 할 적에 서계를 바치지 못하고 구워만들지 못한다면 저는 장차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 도주를 뵈겠는가? 천 번 생각하고 만 번 헤아려도 요청을 이루지 못하면 자결하는 일만 있을 뿐이다. 저의 정세가 만분 가련하다'고 하면서 시종 발악하며 행동이 평상시와 매우 다르기로 부득이 동 서계를 받아서 보내며 연유를 아울러 수분하는 일로 수분한다'고 하였음. 지난해 사기를 구워만드는 청은 곧 봉행이 바친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사용한 말이 탈을 잡을 일이 있었기로 막아서 허락하지 않았거니와, 이번에 있어서는 도주가 친히 서계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전례가 있는 일을 한결같이 지나쳐 버리는 것은 미진한 일이기로 동 서계와 노인 각 한 통을 받아서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오니, 부응을 허락할 지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실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지난해 사기를 구워만드는 왜인이 나올 때 봉행 등이 바친 서찰의 서식이 전례를 크게 어겨서 구워만드는 일은 원래 전례대로 시행해야 하는 일이 아니니 굵혀서 그 청을 따라주어서는

안되며, 기근이 든 해에 백성을 부리는 일의 중대하고 어려움 또한 매우 우려되므로 동 사기를 구워만드는 일은 엄한 말로 물리치라는 뜻으로 복계(覆啓)하여 분부하였는데, 이제 동래부사 박태항의 장계를 보니, 새 도주가 명년에 예도로 들어가는데 이전에 예도 귀국의 각색 흙으로 구워만든 다완 등을 여러 곳에다 예사로 봉진하는 규정이 있기로 서계를 가지고 이 일을 위하여 나와서, 각색 흙 및 쓰일 뿔나무를 전례대로 장만하여 지급하여 구워만들도록 해 달라고 운운하였는데, 훈도 별차 들에게 이치에 근거하여 책망하여 타이른 후 서계를 되돌려 주었더니, 동 왜인의 말이 지난해에는 봉행이 바친 서찰은 규정에 어긋나 막은 바 있었으나, 이번에는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하려고 친히 서계를 바쳤으니 이는 평상시와 다름이 있다고 서계를 받지 않고 시종 애절하게 간청할 뿐 아니라, 이미 전례가 있는 일을 한결같이 외면하는 것은 미진한 일이기로 부응을 허락할 지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지난해 왜인의 사기를 구워만드는 요청을 본조에서 복계하여 막았던 것은 그 서찰의 말이 전례에 어긋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전에 비록 간혹 참작하여 지급을 허락한 일이 있었으나 매양 굽혀 따라서 후일의 폐단을 더하는 것은 불가하며, 또한 흉년에 백성을 부리는 일이 엄중하고 어렵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이번 새 도주의 뜻은 비록 예도 여러 곳의 선물로 또 힘껏 청하였지만, 변방의 신하기 전일 복계한 본 뜻을 생각하지 않고 또 이렇게 치계하여 번거로이 청한 것은 매우 타당하지 못하며, 훈도 별차 등이 잘 거행하지 못한 실책 또한 매우 놀랄만한 일이니, 동 사기를 구워만드는 일을 훈도 별차 등에게 다시 분부하여 엄한 말로 물리치게 하며, 동 사기를 구워만드는 것을 청하는 서계는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되돌려 내려보낸다는 뜻으로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1년(1702) 12월 초3일 동부승지 신 이진수(李震壽)¹⁴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계미(1703) 3월 초8일

이번 3월 초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행(行) 예조판서 김(金)이 계품하기를, “소신은 장악원 제조로서 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악공의 일로 감히 진달할 것이 있습니다. 당초 악공의 녹을 주는 체아[祿遞兒] 자리가 41 체아(遞兒)¹⁴⁹⁾인데 중간에 12 체아를 줄여서 이로써 선발[試取]하여 율번으로 부쳤으나, 악

148) 이진수(李震壽, 1648-?): 전주인으로 자는 춘장(春長)이다. 숙종 16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유수(留守)를 역임하였다.

149) 체아(遞兒): 현직을 떠난 관리가 실적이 없이 대기하고 있는 자리. 녹을 받는 체아 자리와 녹이 없는 체아의 구별이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악공(樂工)의 녹이 있는 체아 자리가 46원으로 정리되어 있다.

공의 인원수는 많고 체아 자리는 수가 적어 윤행으로 부칠 적에 항상 구차한 걱정이 있는데, 지난해 경녕전(敬寧殿) 악공 37명을 이미 더 정함으로써, 본래 인원 수가 적은 체아 자리에 윤행으로 부칠 수가 없어 생계가 극히 우려되고, 이제 이러한 흉년에 모든 일을 되도록 줄여야 마땅하지 증가시키는 것은 합당치 않으나, 악공은 다른 인원과 달라서 제향(祭享) 때 쓰이니 마땅히 보존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니, 감한 12 체아 자리를 비록 모조리 복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약간의 자리는 참작하여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더니, 상감께서 “약간의 체아 자리를 참작하여 복구하는 일로 해조에 분부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계미(1703) 3월 12일

이조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이번 3월 초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예조판서 김(金)이 계품하기를, “소신은 죄를 기다리고 있는 장악원 제조로서 악공의 일로 감히 전달할 바가 있습니다. 당초 악공의 녹을 주는 체아 자리가 41 체아였는데, 중간에 12 체아를 줄여서 이것으로 선발하여 번을 돌려 부치자니, 악공의 수는 많으나 체아 자리의 수가 적어 윤행으로 부칠 적에 항상 구차하여 걱정이었는데, 지난 해 경녕전(敬寧殿) 악공 37명을 이미 인원수를 더하여 확정함으로써 본디 수가 적은 체아 자리로는 윤행으로 부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극히 우려되어, 지금 이러한 흉년에 매사를 줄이도록 힘써야 마땅하지 증가해서는 안되지만 악공은 다른 인원과 달라 제향에 쓰이니 특별히 염려하여 보존될 수 있게 하여야 하겠기에, 이전에 감한 12 체아 자리를 비록 모조리 복구하기는 어렵더라도 약간의 체아 자리를 참작하여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더니, 상감께서는 ‘약간의 체아 자리를 참작하여 복구하는 일을 해조에 분부함이 옳겠다’고 하신 일로 명이 내렸는데, 장악원의 부록(付祿)¹⁵⁰ 사례를 가져다 살펴보니 악공(樂工)과 악생(樂生)을 합하여 거의 300명에 이르나 녹을 주는 체아 자리는 29 자리이며 이것을 윤행으로 돌려 녹을 부치는데, 경녕전에 추가한 악공 27명의 녹과(祿科)로 이제 만약 다시 3 체아 자리를 설치한다면 당연히 300명과 29 체아가 서로 맞게 될 것이니, 전성(典聲) 1과(科)와 부전성(副典聲) 2과를 합하여 도합 3과를 복구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150) 부록(付祿): 직급에 따라 정해진 녹봉을 지급함.

계미(1703) 3월 16일

이번 3월 1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堂上)을 인견하여 입시할 때 **우의정 신(申)이 계품하기를** “지난번에 동래부사 박태항의 장계 가운데 첩공(撤供)¹⁵¹과 첩시(撤市) 하는 일로 계청(啓請)하였는데, 지난번 등대(登對)할 때는 첩공(撤供)만 논하고 첩시(撤市) 한 조목은 미처 계달(啓達)하지 못했는데, 당초 첩시는 비록 책망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나 오래도록 첩시하여 이웃 나라와 교역하는 길을 끊어서는 불가하니 또한 첩거하게 하지 말라는 뜻을 한꺼번에 분부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여,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계미(1703) 3월 27일

이제 3월 25일에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신(申)이 계품하기를**, “이것은 곧 동래부사 박태항의 장계인데, 상단은 왜선이 왕래할 때 사정을 물었던 일이고 하단은 시체를 가져온 일입니다. ‘시체를 끌어낸 것이 혹은 두 사람이라 하고 혹은 네 사람이라 하여 이미 목격한 것이 아니라서 또렷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또한 저들이 말하기를 ‘차왜(差倭)가 삼가지 못한 데는 마땅히 엄중한 죄를 시행해야 하나,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대개 예도에 알려져 끌어낸 시체를 그대로 엄습하려는 계획이었지 늦추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찍이 없었던 일인지라 그러므로 저들 역시 놀라고 측은하여 부의(賻儀)하는 물자를 넉넉하게 주고 은과 쌀과 포목의 수량이 번다하였으니, 도주가 놀라서 감히 늦추거나 소홀하지 않았다는 정상은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조정 명령이 있기 전에 감히 먼저 받아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지 모르겠으므로, 단자(單子) 및 부의 물자를 이제 짐짓 머물러 두고 등본을 올려보내오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시고, 또한 시신을 가져온 차왜는 비록 감히 전례에 따른 접대를 희망하지는 않으나 이미 서계를 가져 왔으니 또한 접대해야 마땅한데, 이 역시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시며, 첩공(撤供)과 첩시(撤市)에 있어서는 정지하여 걷은 지 이미 오래되어, 왜관에 가득한 왜인들이 양식을 조달할 길이 끊어져 차례대로 되돌려 허락해 달라고 날마다 간절하게 애걸한다고 운운” 하였습니다. 당초 동래부사가 지나치게 의심하고 가혹하게 책망한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하였는데, 이제 배가 과선된 이유를 이미 또렷이 알았으니 증정한 부의 물자는 시신의 친족에게 나누어 주어야 마땅하고, 차왜는 또한 잘 대접해야 마땅한데, 첩공 첩시의 일은 이미 분부하였으니 이제 다시 분부하지 않고, 부의

151) 첩공(撤供): 규정에 따른 음식 제공(供饋)을 거둠.

물자를 나누어 주는 것과 차왜를 접대하는 두 가지를 분부함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 하셨음.

계미(1703) 11월 13일

경상감사 박권(朴權)¹⁵²⁾이 11월 초2일에 성첩한 장계, “동지(冬至) 방물(方物) 진상(進上) 가운데 궁대(弓袋:활집)와 통개(筒筒:화살통)를 좌우 병영에서 감독 제조하여 봉진하는데, 우병영에서 만든 것으로는 표범 가죽으로 바꾸어 만드는 아다개(阿多介:갈개) 대신으로 궁대와 동개 7부를 감봉하여 진상하였고, 좌병영에서 만든 것으로는, 궁대와 통개 1부와 환도(環刀) 대신으로 1부와, 단검(短劍) 대신으로 1부와, 요구창(要鉤槍) 대신으로 1부와, 표범 가죽으로 바꾸어 만드는 아다개 대신으로서 5부, 등 도합 9부이나 장식이 정밀하지 않은지라, 분수와 의리에 있어서 감히 봉진하지 못하여 아울러 물리쳐 보내어, 한결같이 견양(見樣)대로 각별히 정밀하게 만들어 추가로 봉진할 계획이오며, 감조(監造:제조감독)한 관군(官軍) 색리(色吏:담당아전)는 엄중하게 죄를 정하려고 지금 바야흐로 관문을 발송하여 잡아왔거니와, 위에 올리는 막중한 물건의 장식을 정밀하게 하지 않아서 수량을 모두 봉진하지 못하고 단속하여 검사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려운지라 신은 황공함을 견디지 못하여 죄를 기다리고 있다는 일”이라 하였는데, 전교에 이르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라는 일로 회답하여 타이르라”고 하셨음.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 경상감사 박권(朴權)의 장계를 보면 동지 방물로 진상하는 궁대와 통개 9부가 장식이 정밀하지 않아 감히 봉진하지 못하고 아울러 물리치고 추가로 봉진하겠다고 하였는바, 좌병영(左兵營)에서 진상하는 통개의 감조가 한 두 번에 그치지 않는데 이렇게 정밀하지 못하여 추가로 봉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이 매우 해괴하여, 경계하고 책망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하니, 좌병사(左兵使) 정홍좌(鄭弘佐)를 엄중하게 추고함이 어떠할지. 강희 42년(1703) 11월 13일 우부승지 신 황일하(黃一夏)¹⁵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이번 11월 15일 동지는 국가의 기일(忌日)과 서로 겹쳐 진하(陳賀)를 16일로 물려서 행하는 일로 이미 계하하였는데, 지방에서 봉진하는 방물의 전문(箋文) 및 정부(政府)와 육조(六曹)의 물선(物膳)은 전례대로 16일에 봉진한

152) 박권(朴權, 1658-1715): 호는 귀암(歸菴). 숙종 12년 문과에 급제하여 정축(丁丑, 1697)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계미(癸未, 1703)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고, 형조판서, 병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53) 황일하(黃一夏, 1644-?): 창원 황씨로 자는 자우(子羽)이다. 숙종 22년(1696) 정시에 합격하여 관직이 대사헌에 이르렀다.

다는 뜻으로 감히 계품함”이라 하였는데,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음.

계미(1703) 11월 23일

이번 11월 20일 대신과 비변사의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호조판서 조태채(趙泰采)¹⁵⁴가 계품하기를, “동래 왜관의 개시는 한 달에 여섯 차례인데, 이는 조정에서 허락하였으나 그 뒤에 왜인에게 찬(饌)을 보내는 일로 또 5일에 한 차례 시장을 여는 잘못된 규정이 있어서, 장사꾼 외에 잡인 및 본부의 관리가 연속하여 출입함으로써 실로 남잡(濫雜)한 폐단이 많고, 또한 우리나라의 은밀한 일이 왜관의 왜인에게 몰래 전달되는 일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운데, 조정에서 비록 방지하는 금령이 있더라도 동래부에서는 거기에서 세금을 거두기에 그대로 두고서 폐하지 않으니 참으로 극히 한심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통절하게 이 폐단을 고쳐서 만약 이전대로 출입하는 일이 있으면 훈도와 별차들은 발각되는 대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동래부사 또한 잘 받들어 시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이로써 엄하게 신칙하여 시행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는데, 좌의정 이어(李翕)¹⁵⁵가 말하기를 “왜관의 방지 한계가 점차 폐기 이완되어, 지난번에 왜관에 들어가 소란을 부린 일로 본다면 평상시 출입에 꺼리는 바가 없음을 알 수 있으니, 참으로 극히 한심하여 엄하게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고, 조는 말하기를 “후일에 적발되면 엄중하게 죄를 논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갑신(1704) 3월 11일

이번 3월 초10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신완(申琬)의 계품한 말에, “이것은 경상감사 박권(朴權)의 장계입니다. ‘일찍이 동래부사 이야(李壘)¹⁵⁶의 장계로 말미암아 왜관에 공급하는 공작미(公米) 및 공작목(公木)의

154) 조태채(趙泰采, 1660-1722): 양주 조씨로 자는 유량(幼亮), 호는 이우당(二憂堂)이다. 숙종 12년(1686)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대사간, 동부승지, 한성판윤, 육조 판서를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155) 이어(李翕, 1645-1718): 덕수 이씨로 자는 자삼(子三), 호는 포음(浦陰)이다. 숙종 6년(1680)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대사성, 대사간, 도승지, 대제학을 역임하고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56) 이야(李壘, 1648-?): 완산 이씨로 자는 중선(仲先)이다. 숙종 17년(1691)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계미(1703) 4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을유(1705) 2월 충청감사로 옮겨갔으며, 뒤에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매년 각 고을에서의 미수(未收)¹⁵⁷가 수 만여 섬에 이르는데, 대관(代官) 등이 운송을 재촉하라는 뜻으로 간청하여 마지않고, 앞으로 만약 연속하여 들어주지 않으면 두 왜(頭倭)가 오래지 않아 나와서 재촉하겠다고 운운하였는데, 만약 과연 나온다면 접대할 무렵에 그 폐단이 적지 않고 또한 곤란한 일이 생길 우려가 없지 않아, 미수된 각 고을을 조사하여 장계로 알리게 하였는데, 이제 각년 조의 미수된 각 고을을 뽑아 내어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시되, 각 고을의 미수의 다소가 같지 않으나 그 중에 경주(慶州)의 미수가 가장 많아서 한명상(韓命相)¹⁵⁸이 으뜸이고 유이복(柳以復)¹⁵⁹이 그 다음이라 운운' 하였는바, 왜관에 공급할 쌀을 이렇게 미루어 공급하지 않은 소치로 왜인들의 할책이 있으니 일이 해괴하기로 이렇게 심할 수가 없습니다. 유이복은 단지 임오년 한 해에 겨우 7개월 재임하였으니 이는 그래도 용서할 방도가 있으나, 한명상은 3년 내에 미수가 많아서 쌀 3,000여 섬과 포목 수십 동(同)에 이르러 죄를 논하는 일이 없어서는 불가하니, 유사(攸司)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심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갑신(1704) 3월 28일

이번 3월 27일 사은사(謝恩使)를 대기시켜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부사(副使) 서문유(徐文裕)¹⁶⁰가 계품하기를, "신 등이 이번 걸음에 해적(海賊)의 소식을 알리고 역관(譯官)들을 시켜서 탐문하게 하였지만 달리 물을 만한 길이 없었는데, 이전에는 뇌물을 사용하면 문서를 구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역관들이 사재(私財)로 문서를 매입하였음은 이미 별단(別單)에 진달하였는데, 재자관(賚咨官)¹⁶¹ 이유량(李惟亮)¹⁶²을 방금 이미 이일로 시상한다고 하는데, 이번 역관들이 얻은 문서는 비록 그 허실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연로(沿路)에서 들은 바와 경보(京報)의 제주(題奏)로 살펴보건대 근거가 있는 듯하니, 한 가지로 상을 논하여 격려함이 있어야 마땅하므로 황공하여 감히 진달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별단에 써 넣는 것이

157) 미수(未收): 수납하지 못한 금전이나 미곡.

158) 한명상(韓命相, 1651-?): 청주 한씨로 자는 군섭(君燮)이다. 숙종 16년(1690) 정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경주부윤을 역임하였다.

159) 유이복(柳以復, 1653-?): 전주 유씨로 자는 군휴(君休)이다. 숙종 15년(1689)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감사에 이르렀다.

160) 서문유(徐文裕, 1651-1707): 달성 서씨로 자는 계용(季容)이다. 숙종 10년(1684)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서 대사간, 대사성, 도승지, 전라관찰사, 형조와 예조의 판서, 우참찬을 역임하였다.

161) 재자관(賚咨官): 다른 국가의 관청과 서로 주고 받는 공문서인 자문(咨文)을 전달하는 관원.

162) 이유량(李惟亮, 1640-?): 강음(江陰) 이씨로 자는 자명(子明)이다. 현종 3년(1662) 역과에 급제하여 한학(漢學)으로 종사하였다.

좋겠다”고 하였고, 좌승지 김덕기(金德基)가 말하기를 “이미 별단에 써 넣으라고 하교하셨는데, 비변사에게 분부해야 하겠지요?”라고 하자,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 하셨음.

갑신(1704) 8월 초2일

동래부사 이야(李壘)가 7월 23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21일 부산첨사 이순곤(李順坤)의 치통에, 왜인의 작은 배 두 척을 데려다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황재량(黃在亮)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이석린(李碩麟)과 별차 오만창(吳萬昌)¹⁶³⁾ 등에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한 뒤의 수분에, “왜관에 가서 사정을 물었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 한 척에 두왜 1인, 격왜 7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관수왜의 말이 ‘소통사(小通事) 김은봉(金銀奉)을 살해한 죄인을 처단한다는 뜻을 도중(島中)에 통기하였는데, 이제 이 배 편에 도중에서의 회보를 보니, 이는 이전에 없었던 변고라 성신(誠信)의 도리에 있어서 극히 놀랍고 참담하니, 동 고하길 우위문(古賀吉右衛門)의 몸을 약조대로 왜관 문 밖에 효수하여 보이려는 일로 사서(私書)가 내도하였다’고 하였음. 가져온 노인은 밤을 무릅쓰고 나올 무렵에 풍랑에 젖어서 매우 깨끗하지 못하기로 물리쳐 받지 않고 고쳐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분에 의거하여 연유를 치통하는 일이었음. 22일 훈도 이석린이 와서 고하기를 “관수왜의 말에 ‘김은봉이 살해된 계미년(1703) 10월 초9일에 나온 일꾼 왜인 고하길우위문(古賀吉右衛門)의 몸을 도중에서의 회보에 따라 당일 왜관 문 밖에서 형을 시행할 계획이니 형을 감독할 장교(將校)를 내려보내어 입회하여 효시(梟示)¹⁶⁴⁾ 하겠다’고 운운하였기에 와서 고한다”고 하기로, 본부의 중군(中軍) 송성표(宋星杓) 및 장교 등을 왜관 문 밖으로 내려보냈더니, 동 중군이 돌아와 고하기를 “동 죄인 왜인을 당일 훈도 별차 및 도도금도왜(都都禁徒倭) 등과 함께 왜관 문 밖에서 효시하였다”는 중군의 보고 및 임역의 수분이 있었음. 소소통사(小小通事) 김은봉을 살해한 죄로 왜인 고하길우위문(古賀吉右衛門)이 그 도중에서의 회보에 따라 이달 22일 왜관 문 밖에서 법대로 효시되었거니와, 저쪽과 이쪽 사람이 사사로이 서로 빛을 내어주는 한 가지는 전후로 금령이 지극히 엄중하거늘, 위의 김은봉이 금령을 지키지 않고 몰래 왜인과 사사로이 빛을 주었다가 이렇게 피살되게 된 재앙은 극히 놀랍기로, 지금 이후로 통사들이 왜인과 사사로이 채무를 서로 주는 것은 일체 통절하게 금한다는 뜻을 임역 등에게 전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

163) 오만창(吳萬昌, 1668-?): 해주 오씨로 자는 천로(天老)이다. 숙종 15년(1689) 증광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봉사(奉事)를 역임하였다.

164) 효시(梟示):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고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형벌.

이르게 하였으며, 또 소통사 등에게 엄하게 단속하였다는 일을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갑신(1704) 11월 14일

이번 11월 13일 우의정 이유(李濡)와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¹⁶⁵가 청대(請對)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이(李)가 계품하기를**, “서북(西北)의 인삼 채취 금령은 지극히 엄중하고 우리 경내에서도 채취를 허락하지 않는데, 장사꾼들이 인삼을 가지고 동래에 폭주하여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이니, 이미 그 국가의 금령이 시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또 농간하는 폐단이 있어서 납 등의 잡물을 인삼 피육(皮肉) 사이에 끼워 넣어 무게를 늘여서 왜인에게 적발되어 되돌려 물리기까지 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인삼의 교묘한 속임수가 도리어 교활한 왜인에게 배척되는지라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후로 엄중하게 조목을 세워서 이렇게 농간하는 무리들은 적발되는 대로 엄중한 죄로 처단할 뿐 아니라, 동래부에서 세를 거둘 때 그 원래 수량 내에서 추첨하여 절단해 보고 만약 잡물을 삼입한 것이 있으면 우선 일체 공물로 귀속하고 물주는 가두어서 그 구입한 맥락을 차례 차례 끝까지 조사하여 법률대로 처치하며, 서울과 지방의 사람이 사사로이 서로 매매할 때에도 또한 이 법을 적용하여, 증거를 잡아 관청에 고발하면 그 인삼을 고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범한 자는 죄를 논한다면 농간을 부리는 폐단을 거의 막을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신칙하여 내외에 알림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을유(1705) 2월 초7일

이번 2월 초6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이여(李翕)가 계품하기를**, “남도포(南桃浦)로 표류한 선박에서 건진 물화(物貨)는 상층에 실었던 수량 뿐이고, 그 배의 가운데와 아래 칸에 실었던 것이 더욱 많은데 봉함을 견고하게 하였기에 해엄쳐서 꺼내지 못하여 그대로 두고 건져내지 못하였는데, 중국인이 간 뒤로 조정의 의논이 혹은 ‘이 물건은 이미 값을 지급한 가운데 들어 있지 않아서 조정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다만 그대로 두어서 민간에서 가져다 쓰는 데 맡겨 두어 혹 건지거나 혹은 건지지 않거나 조사하여 물을 필요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것은 이미 중요한 재물인데 만약 백성들이 각자 사

165) 민진후(閔鎭厚, 1659-1720): 여흥 민씨로 자는 정순(靜純), 호는 지재(趾齋)이다. 숙종 12년(1686)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 예조판서,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우참찬에 올랐다. 경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고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사로이 취한다면 강한 자가 반드시 차지할 따름이요 난잡한 폐단을 먼저 못할 것이며, 또 허다한 물건이 만약 나라 안에 유통된다면 끝내 국가에서 알 바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니 조사하여 단속함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두 말이 모두 소견이 있으나 때가 몹시 추운 겨울인지라, 짐짓 본국 및 본보(本堡)에 명하여 착실하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요사이 잇달아 수사(水使)의 보고 장계를 보니, 표류한 선박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서 풍파에 손상되어 삼판(杉板)¹⁶⁶이 계속 떠올라 나온다고 하며, 포장 또한 반드시 견고하지는 않아서 시장 가운데 흑각(黑角)¹⁶⁷과 소목(蘇木)¹⁶⁸ 등의 물건을 훔쳐 팔다가 잡히는 자가 있다고 하니, 이는 마땅히 구별 조치하는 방도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조정의 여러 신하 가운데는 '건져낸 이후에 수량이 만약 많으면 저쪽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저쪽에서의 조치를 따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하는 이가 많아서, 이 말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은 얼었던 것이 녹아서 풀릴 때가 멀지 않으니 수사에게 검사 신척하여 건져내어 수량을 안 뒤에 조치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지난 가을 경연에서 이런 설이 있었다."고 하자, 우의정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그 때 과연 확정된 바 있으나 혹은 물화의 원래 수량이 이미 많은데 건져낸 뒤에 만약 수량이 맞지 않으면 저쪽에 들여보내더라도 의심을 받을 사단이 없지 않으니, 방치하여 백성들이 건져내는 대로 맡겨두는 것만 못하며, 조정에서 미리 알 바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상감께서 말씀도 이러하였는데,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하고 또한 그 형편을 들으니, 처음에는 비록 결코 건져낼 수 없다 하고 저 사람들의 말 역시 모두 인력으로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듯하니, 시험삼아 본도에 명하여 착실하게 건져내게 하고 그 건져낸 수량을 살펴서 저쪽에 자문을 보내어 그들의 지휘를 기다려 조치함이 마땅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이 건져내도록 맡겨두어 허다한 물화가 국내에 가득하게 된다면 비록 조정에서 미리 알 바 아니지만 이익을 취하는 자는 우리나라 백성이니, 참으로 마음에 불안합니다. 다소를 막론하고 저쪽에 자문을 보내면 우리의 신의를 보이기에 족하며 필시 의심할 이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병조판서 유득일(兪得一)¹⁶⁹이 말하기를 "바다에 표류한 사람이 지나갈 때 그들은 물화 중에 진귀한 것은 아래 칸에 많이 있었다고 하면서 당초에 가라앉은 배와 함께 물화를 버린 듯이 여겼으며, 상층에서 건져낸 물건은 이미 값을 쳐서 지급하였는데, 아래 칸의 물화를 비록 백성에게 임의로 건져내게 하면 저쪽에서 반드시 의심할 것입니다. 지난번 재자관(賚咨官)의 수본(手本)에 바다에 표류한 사람이 저쪽 땅에 도착하여 가졌던 물화를 모조리 팔아서 여행 식량을 스스로 마련하고 간혹

166) 삼판(杉板): 배의 밑바닥에 댄 판자.

167) 흑각(黑角): 빛이 검은 물소 뿔. 활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168) 소목(蘇木): 단목(丹木). 열대지방에서 생산되는 작은 상록 교목의 이름. 나무 속의 붉은 부분을 깎아 붉은 색의 염료로 사용하거나, 약재로도 사용한다.

169) 유득일(兪得一, 1650-1712): 창원 유씨로 자는 영숙(寧叔), 호가 귀와(歸窩)이다. 숙종 3년(1677)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 강원, 전라, 함경 관찰사와 대사성, 대사헌, 형조·병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간신히 걸어서 돌아가기도 하였다고 하였는데 또한 불쌍한 일입니다. 건져내도록 분부한 뒤에 물화의 수량이 많으면 예부(禮部)에 자문을 보내어 처치를 기다리는 것이면 곳의 사람을 회유하는 도리에 합당할 듯 합니다.”라고 하였고, 이유(李濡)는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로 표류하였다가 그 물화를 잃어버리고 왔는데 다른 나라에서 추후에 수습하여 보내주면 우리나라 백성들로서는 어찌 그 신의를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처치를 바꾸면 모두 그러합니다. 이것이 건져내어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먼저 수량을 안 다음에 품의 조처함이 좋겠다”고 하였고, 이유가 말하기를 “이것을 수사에게 분부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을유(1705) 4월 21일

이조(吏曹)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이번 4월 초6일에 돌아온 동지사 정사(正使)와 부사(副使)와 서장관(書狀官)을 대기시켜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정사(正使) 이이명(李頤命)¹⁷⁰이 계품한 바,** ‘저쪽의 문서(文書)를 구입하는 곡절은 이미 진달하였는데, 역관 박세화(朴世和)¹⁷¹ 안자신(安自新)¹⁷² 한흥오(韓興五)¹⁷³ 세 사람이 앞뒤로 낸 사재(私財)는 사람마다 각 80냥인데, 대개 문서를 구입하는 데는 이 밖에 다른 길이 없어서 이 길을 단절해서는 안되는데, 각인이 쓴 비용이 또한 적지 않고 또 이는 문서의 진본이니 상을 베풀지 않아서는 불가하니,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상고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라고 함에,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 하신 일로 명이 내렸습니다. 근래의 연행(燕行) 때 조정에서는 이미 이전과 같이 지급하여 보내는 물건이 이미 없으나, 저쪽에서의 긴요한 문서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누차 상을 논하여 그 길을 열어 두었는데, 이제 이번 박세화 등은 이미 사재를 들여서 진본 문서를 구입하였으니 이인해(李仁楷)¹⁷⁴ 등의 근래의 사례대로 가자(加資)하는 상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나, 일이 은전에 관계되는 지라 상감께서 결

170) 이이명(李頤命, 1658-1722): 전주 이씨 세종(世宗)의 아들 밀성군(密城君)의 6대손으로, 자는 지인(智仁) 또는 양숙(養叔)이며 호는 소재(疎齋)이다. 숙종 6년(1680)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강원도 관찰사, 대사간, 예조판서, 대사헌, 한성판윤,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에 올랐다.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171) 박세화(朴世和, 1653-?): 영해 박씨로 자는 자유(子柔)이다. 숙종 10년(1684) 역과에 올라 청학(淸學)으로 종사하였다.

172) 안자신(安自新, 1637-?): 순흥 안씨로 자는 여욱(汝勳)이다. 현종 1년(1660) 역과에 올라 한학(漢學)으로 종사하였다.

173) 한흥오(韓興五, 1671-?): 청주 한씨로 자는 계량(季良)이다. 숙종 16년(1690) 역과에 올라 한학(漢學)으로 종사하였다.

174) 이인해(李仁楷, 1642-?): 함천이씨로 자는 계헌(季憲)이다. 현종 1년(1660) 역과에 올라 한학(漢學)으로 종사하였다.

재하심이 어떠할지?”라고 하여, 상감께서는 “모두 가자하라”고 하셨음.

병술(1706) 4월 21일

이번 4월 20일에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계품한 바**, “임오년 여름에 승지 여필용(呂必容)이 진달한 바, ‘동래 훈도와 별차의 가자(加資)를 되돌려 거둔다는 일은, 대개 신사년(1701) 국휼 때 내상(內喪)에는 조위(弔慰)하는 일이 없는데 왜인이 빙자하여 온 것을, 그들이 좋은 말로 막지 못하고는 능히 비용을 줄인 공이 있고 접대한 노고가 있다고 하여 가자하기에 이르렀으니 극히 과람하다고 운운’ 하였으며, 그 뒤 여필용이 또 상소를 올려 이 일을 논하자, 판부사(判府事) 이유(李濡) 역시 그렇다고 하여 문서를 살펴본 뒤에 다시 품의하겠다는 청이 있어서 윤허를 받았습니다. 신이 동래의 장계 및 예조의 서계(書契)를 가져다 살펴보니, 일의 실상이 과연 두 사람에게 가자하는 것이 너무 외람된 듯한데, 그 때 예조판서 또한 이렇게 상소를 올린데 허물을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비록 수년이 지난 뒤이지만 그대로 두는 것은 불가하니 두 역관의 가자를 환수(還收)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여, 상감께서 “가자를 모두 환수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병술(1706) 8월 29일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전 절충(折衝) 변홍연(卞弘衍) 등이 기한 내에 현신(現身)¹⁷⁵⁾하고 호구(戶口)를 현납(現納)¹⁷⁶⁾하여 신정(新呈)¹⁷⁷⁾한 것이 분명하거나와, 이 상언(上言)의 사연을 보니 “일찍이 임오년(1702) 조위차왜가 나왔을 때 변홍연의 아버지 변정욱(卞廷郁)이 훈도가 되고, 최수창(崔壽昌)¹⁷⁸⁾의 아버지 최상집(崔尙曺)이 별차가 되어 동래부사의 전령에 따라 마음을 같이하고 주선하여 차왜의 일공 물품과 각종 잡물을 줄인 수량이 값으로 계산하여 미곡 222섬, 콩 19섬, 그 밖에 범죽(帆竹) 등의 물건과 예조의 예단(禮單) 등을 또한 모두 줄여서 이것으로 모두 품계를 올리는 은전을 받았는데, 뜻밖에도 일단의 근거없는 설을 승지가 탐전(榻前)에 진달(陳達)하기에 이르러 5년이 지난 뒤에 비로서 외람하다고 청하여 이에

175) 현신(現身): 본인 스스로 나타남.

176) 현납(現納): 본인 스스로 나타나 바침.

177) 신정(新呈): 민간인이 관청에 민원 문서를 접수하여 바치는 일. 신정(申呈).

178) 최수창(崔壽昌, 1684-?): 무주 최씨로 자는 백흥(伯興)이다. 숙종 31년(1705) 역과에 올라 청학(淸學)으로 종사하였다.

환수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람의 자식된 정리로 애통하고 절박함을 견디지 못하여 이런 호소를 하니 해조에 명하여 동래부의 장계 및 해조의 복계(覆啓)를 가져다 살펴보고 그 아버지 등의 가자를 환수하는 명을 잠재워달라”고 호소하였는바, 변정욱(卞廷郁)과 최상집(崔尙嶮) 등에게 가자한 것을 겨우 연신(筵臣)¹⁷⁹의 진달로 인하여 외람하여 환수한다고 하였으니, 이제 이 변흥연 등이 비록 아버지를 위하여 원통하다고 일컫는 것은 극히 외람하니, 상언(上言)의 사언을 시행하지 않음이 어떠할지. 강희 45년(1706) 8월 29일 동부승지 신 조태로(趙泰老)¹⁸⁰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전에 전함(前啣) 송유적(宋裕績)¹⁸¹이 기한 내에 헌신하고 호구를 헌납하고 신정한 것이 분명하거니와, 이 상언의 사언을 보니 본원(本院)의 여러 역관에게는 특별히 연경(燕京)에 가는 각종의 체아(遞兒) 자리를 설치하여 생계를 보존하게 하는데, 병자년(1696) 이후로 각 체아 자리를 모두 임시로 줄였다가 대부분 복구하였으나, 단지 압물(押物)¹⁸² 세 체아 자리 중 체아 자리 하나를 아직도 복구하지 못하였으니, 해조에 명하여 다른 체아 자리의 사례대로 압물 체아 세 자리 역시 복구하여 직업에 부지런히 힘쓰도록 하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는바, 본원에서 줄인 체아 자리는 이미 모두 복구하였으니 유독 압물 체아 한 자리만 복구하지 못한 것은 과연 균등하지 못하니, 다른 체아 자리의 사례대로 복구하여 재능을 연마하도록 차출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해당 사역원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5년(1706) 8월 29일 동부승지 조태로(趙泰老)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병술(1706) 9월 초5일

영의정 최(崔)의 차자(筭子). “앞드려 생각건대 이제 이번 진연(進宴)의 거행은 실로 우리 동방에 전에 없었던 성대한 일로서 대소 신료들이 모두 손모아 기뻐하는 마음 간절한데, 계속하여 사륜(絲綸)¹⁸³이 내려와 노인을 우대하는 생각을 미루어 은혜를 베풀어 백성에게 혜택을 주고 죄수를 돌보기에 이르시니, 화기(和氣)를 되돌려 내어서 상하가 함께 즐거워하려는 의도가 아닌 것이 없는지라, 무릇 보고 듣는 이라

179) 연신(筵臣): 경연(經筵)에 참여한 신하. 경연관(經筵官).

180) 조태로(趙泰老, 1658-1717): 양주 조씨로 자는 인수(仁叟), 호는 지산(地山)이다. 숙종 22년(1696)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강원도 관찰사와 승지를 역임하고 대사성, 개성유수, 부제학, 강화유수를 거쳐 평안도 관찰사에 이르렀다.

181) 송유적(宋裕績, 1665-?): 죽산 송씨로 자는 성원(聖元)이다. 숙종 10년(1684) 역과에 올라 한학(漢學)으로 종사하였다.

182) 압물(押物): 외국 사신의 행차 중에 진상(進上) 교역(交易) 등의 물품을 관리하는 직책.

183) 사륜(絲綸): 국왕의 유시(諭示).

면 누군들 공경하는 마음이 불쑥 일어나 경탄하고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가득 찬 시기에는 항상 덜어내고 누를 것을 생각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곳에서는 위험함을 잊지 않아서, 앞서간 성왕(聖王)이 조심하고 삼가하며 국가를 보전한 것은 이 두 가지 큰 요령에 있었습니다. 시¹⁸⁴에 이르기를 ‘큰 것을 가진 자는 가득 채워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월(越)나라의 범려(范蠡)는 말하기를 ‘가득찬 것을 유지하는 자는 하늘과 함께하고 사물을 절제하는 자는 땅과 함께 한다’고 하였는데, 가득 찬 것을 유지하고 사물을 절제하는 것은, 진실로 흥하고 쇠하며 난을 다스리는 기본입니다. 만약 가없는 복을 기르고 자손을 위한 좋은 계획을 물려줌에 진실로 그 요령을 찾는다면 참으로 또한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앞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행동하고 말하는 사이에 한결같이 삼가 짐작하여 절도에 맞추어 절약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법도를 물려주어 복을 이어가는 방도로 삼으시고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 역시 이미 경연에서 확정하였으나, 물러나 생각하니 참으로 다시 수작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로(耆老)에게 잔치를 하사하는 것을 비록 거행하지 않더라도 피륙과 쌀과 고기를 특별히 하사하여도 덕을 즐기는 의도를 펴기에 족하고, 서로(庶老)¹⁸⁵에 있어서는 90 이상은 가자(加資)의 은전을 입고, 80 이상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흠이 있는 은전이니, 무릇 예를 행하는 법규는 천한 자를 우선으로 하고, 혜택을 미루는 도리는 백성에게 미치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사대부에게는 혹 소략하더라도 서민에게는 더 돌보아야 마땅한데, 이제 을유년(1705)에 만든 호적을 상고하면 도성의 상한(常漢)¹⁸⁶ 남정(男丁)으로 나이 80 이상 250여인 가운데 졸(卒) 이상이 26인이고, 백세를 넘는 자가 3인이니, 그 수가 대단히 많지 않으며, 만약 10여 섬의 쌀과 몇 마리의 소로 술과 고기를 장만하고 간략하게 노래와 음악을 갖추어 넓은 곳에서 그 예관(禮官)이 인솔하여 먹인다면, 일이 번거롭지 않으면서 은혜로운 상을 전하여 장수하는 나라의 태평시대를 노인들이 노래할 것이니, 은덕과 혜택을 미루어 넓히는 데 있어서 거의 적합함을 얻을 것이며, 진실로 후대의 미담이 될 것입니다. 인하여 연청(宴廳) 당상(堂上)과 낭관(郎官)이 행사를 마련하고 감독한 수고는 비록 직분 내의 일이지만, 분주하게 다니면서 부지런히 노력한 것이 거의 한 달이 넘었으나, 당초 전하께서는 일이 자기의 의사에 관계된 것이라 하여 중간에는 살펴서 수록하라는 명이 없었는데, 뒤에 연주(筵奏)로 말미암아 비로소 명하여 서계(書啓)하게 하시니 진실로 수고를 위로하는 도리에 합당하지만, 다만 신(臣)은 진작관(進爵官)으로서 역시 안장(鞍裝)과 말을 하사받았으니, 일찍이 수고를 한 일도 없이 외람되어 상을 주는 은전만 차지하여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 불안합니다. 신은 외람되어 모든 관료의 우두머리에 있으면서 술잔을 올리는 반열에 참

184) 인용된 내용은 『주역(周易)』 서괘(序卦)에 나오는 말이다.

185) 서로(庶老): 평민 신분의 노인.

186) 상한(常漢): 상놈 즉 평민.

여하게 되었으니 그 영화와 행복이 이미 지극한데, 격식 외의 은혜를 어찌 또 요행으로 차지하겠습니까? 엿드려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이루어진 명을 도로 거두시어 어리석은 분수를 안심시켜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사오니, 조처해 주시기를” 하는 일이었음. 답하여 이르기를 “차자(筭子)를 살펴보고 내용을 잘 았았노라. 경(卿)이 전후로 간절하게 깨우쳐 진술한 것은 오로지 우려와 사랑에서 나왔으니 가슴에 간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마는, 차자 가운데 진술한 바는 이대로 시행하되, 말을 하사한 은전을 지나치게 사양하는 것은 적합지 않으니 안심하고 수령하라” 하시고, 이어서 전교하시기를 “사관(史官)에게 유시(諭示)를 전하라”고 하셨음.

병술(1706) 9월 초6일

예조(禮曹)의 단자. 영의정의 차자(筭子)로 인하여 나이 80세 이상의 서민에 대하여 예관(禮官)이 인솔하여 음식을 접대하게 한 일로 하교하시어, 이번 9월 16일에 시행하는 일을 알려져 거행할 것인데, 시행할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마련하였으니 이에 의하여 거행함이 어떠할지?

- 一. 장소는 예조에서 설치하여 행하되 자리를 배치하고 시설하는 등의 일은 선공감(繕工監)과 전설사(典設司)와 장흥고(長興庫)와 사도시(司導寺)와 군자감(軍資監)과 광흥창(廣興倉)에 명하여 거행하게 함.
- 一. 잔치 상에 올릴 술과 고기 등의 물자는 호조(戶曹)에 명하여 삼사(三司)에 분정(分定)하고 전담하여 거행하게 함.
- 一. 오부(五部)에 거주하는 서민은 한성부(漢城府)에 명하여 책자를 만들어서 정리하여 대기하게 함.
- 一. 풍물(風物)은 장악원(掌樂院)에서 정돈하여 대령하게 함.
- 一. 잡인을 금하는 부장(部將) 및 군사는 좌우 포도청(捕盜廳)에 명하여 정하여 보내게 함.
- 一. 미진한 조건은 추가로 마련할 것.

강희 45년(1706) 9월 초6일 계품하여 계품한 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셨음.

병술(1706) 9월 15일

정랑(正郎) 이회원(李會元)¹⁸⁷의 품목. 이제 이번 노인연(老人宴)은 실로 세상에

187) 이회원(李會元, 1659-?): 경주 이씨로 자는 수초(遂初)이다. 숙종 13년(1687) 문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역임하였다.

없었던 성대한 은전이나, 이미 의거할 만한 전례가 없고 또 조처하기 어려운 절목이 많아서 품신하여 그 규정 조목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래와 같이 기록하여 지휘를 기다리는 품의임.

- 一. 노인의 다소에 따라 그 끼는 자리의 너비를 정하되 그 지세에 따라 두 줄로 자리를 설치하며 북쪽을 뒷자리로 할 것.
- 一. 노인 중에 귀천의 차이와 희수(希壽)¹⁸⁸와 기수(期壽)¹⁸⁹의 구별이 있으니 귀천은 벼슬로서 차례를 정하고 희기(希期)는 나이를 차례로 할 것.
- 一. 당해 관원은 호조와 예조의 낭청(郎廳)이 노인의 상석에 동서로 나누어 앉고, 삼사(三司)와 오부(五部)의 관원은 또 낭청 아래 자리에 나누어 앉을 것.
- 一. 노인이 각자 잔을 들 적에 만세를 부르는 예가 없을 수 없으나, 노인이 일어나 을 들 때마다 하기가 어려우니, 미리 북향하여 먼저 사배(四拜)할 것.
- 一. 상을 들 적에 연주하는 음악은 반드시 두 줄 가운데의 빈 자리에 설치하여 좌우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할 것.
- 一. 노인이 잔을 권할 때 좌우 낭청에게 먼저 줄 것.
- 一. 잔치를 베풀 때 잡인을 금해야 마땅하나 또한 일체 금지하는 것은 불가하니, 자리 밖으로 너댓 걸음 떨어진 곳에 긴 나무를 세우고 새끼줄로 묶어서 내외 한계를 표시할 것.
- 一. 잡인을 금하는 한 가지는 한성부와 오부(五部) 포도청 차지로 감결(甘結)할 것. 당상(堂上)의 수결(手決) 내용에 ‘아울러 그대로 하되 배례하고 만세를 부를 때 반드시 여창(臚唱)¹⁹⁰ 인의(引儀) 두 사람을 대령하여 거행할 일’로 분부함.

무자(1708) 정월 16일

이번 정월 1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최석정(崔錫鼎)¹⁹¹이 입계하기를**, “동래부사 한배하(韓配夏)¹⁹²의 장계에 ‘왜인(倭人)이 마을 여인과 간통한 일로 마을 여인 및 동조한 사람이 신문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공초하여, 죄를 범한 왜인과 같은 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관왜(館倭)에게 말하였더니, 왜인은 간통을 범한 일이 없는데 우리쪽 사람이 거짓으로 자백했다고 하여,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타이르게 하였더니 듣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이럴 때 또한 책망하여

188) 희수(希壽): 연세 70세의 노인.

189) 기수(期壽): 연세 100세의 노인.

190) 여창(臚唱): 홀기(笏記)를 읽은 사람.

191) 최석정(崔錫鼎; 1646-1715): 완산 최씨로 자는 자는 여시(汝時), 호는 명곡(明谷),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현종 신해년(1671)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192) 한배하(韓配夏; 1650-1721): 숙종 계유(癸酉, 1693) 알성 문과에 급제하여 병술(丙戌, 1706)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관직이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타이른 일이 있었으나 끝내 돌려서 듣지 않아서 그대로 두고 묻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방치하여 묻지 않을 것인가 하고 운운'하였습니다. 대개 왜인 수백 명이 왜관에 항상 거주하여 우리나라 사람과 섞여 있으니, 그 사이에 간혹 간사하고 과람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명(明)나라 청(淸)나라와 우리나라는 대국과 소국의 사이인데도, 봄가을로 개시(開市)하여 기일을 정하여 왕래하지만 본디 간통하는 폐단은 없습니다. 왜인은 강화한 이후로 문득 이웃나라가 되었으나, 바닷길이 육로와 달라서 선박에 물화를 싣고 그 기한을 정하여 왕래하며 개시하는 것이 더욱이 편하고 마땅함에도, 다른 나라 사람이 머물 곳을 우리 국경 안에 설치하여 가까이 두고 여러 해를 항상 머무르니, 당초 제도를 정할 적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사리로 헤아려보건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또 도주(島主)는 속국(屬國)의 변방 신하로서 감히 예조참판(禮曹參判)과 맞서서 예를 행하지 못하고 겨우 참의(參議)와 서찰을 통하니, 왜관에 머무는 장왜(將倭) 및 재판왜(裁判倭) 등은 곧 도주의 차인(差人)이라, 무릇 우리나라와 간여되는 일에 매양 반드시 제 뜻을 이루고야 말려 하고, 우리나라에서 다투어 변론하는 일을 매양 듣지 않아서, 조정에서는 따지고 다투다가 피곤하여 부득히 그냥 둠으로써 이것이 버릇이 되었으니, 어찌 매우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땅히 훈도 별차 등에게 다시 더 책망하여 기어코 마음을 돌려 듣게 하고, 또한 두 나라 관원이 자리를 같이하여 조사하도록 청하여, 저들이 만약 누차 듣지 않으면, 비록 도주에게 서찰을 보내는 것도 그냥 두지는 못할 일이고, 훈도 별차 등도 또한 각별히 죄를 논할 것이니, 이런 뜻으로 신칙하여 분부하여 전일처럼 그냥 두지 말도록 하며, 또한 동래부에서는 오직 다시 명하여 책망하여 타이르게 함이 마땅함에도 곧바로 청하고는 덮어두고 묻지 않았으니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한배하를 추고(推考)함이 어떠할지?" 하였음. 상감께서는 "당초 왜관을 설치할 때 왜인을 머물게 한 일은 잘못을 먼저 못하여 참으로 괴이하고 의아한데, 대신이 진달한 것이 참으로 옳으니 이대로 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이번 정월 1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이유(李濡)**가 **계품하기를** "왜관의 온갖 일들 가운데 우려할 만한 것이 한둘이 아니지만, 근래에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농간하는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대개 듣자하니 우리가 접대하고 수응하는 사이에 먼저 그 도리를 잃어서 모욕을 당하기에 이릅니다. 그 책임은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있으니 진실로 잘 골라 보내어 왜인으로 하여금 꺼리는 바가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5일 개시(開市)는 가장 농간하는 폐단의 단서가 됩니다. 동래부에서는 거기서 세금을 징수하기에 그대로 두어 과하지 않는 일은 지극히 부당하고, 왜공미(倭供米)에 있어서는 각 고을에서 와서 납부할 때 수량에 맞추어 받지 않는 것이 아니건만, 왜인에게 들려줄 적에는 물에 타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많아서 한 섬의 쌀이 12말[斗]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 어찌 이웃나라와 성실하게 교체하는 도리이겠습니까? 나라의 체면에 손상되는 것이 또한 크니, 엄하게 더욱 신칙

하지 않아서는 안되겠고, 앞으로 어사가 내려갈 때 엄탐하게 하여 아직도 이전의 버릇을 따르고 있다면 각별히 엄중하게 조치함이 옳습니다.”라고 하였고, 지중추부사 이인엽(李寅燁)은 말하기를 “왜공미를 훔치거나 농간하는 버릇은 참으로 극히 해괴하니,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각별히 신칙하여 이전과 같은 폐단이 없게 하고, 앞으로 어사가 내려가 또한 엄탐하여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물을 타서 농간한다는 설은 들으니 놀랍다.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고, 5일 개시는 혁파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우선 본부에 물어 품의 조치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무자(1708) 3월 초4일

일본국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방(平義方)이 올리는 글. 조선국 동래 부산 두 영감 합하(閣下).

생각건대 귀국이 맑고 태평하고 본국이 매우 편안하니 모두 즐겁고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로 보(寶)자표 은화(銀貨)를 제조하여 나라 안에 통용함을 고하오니, 간절히 바라건대 귀국에서도 또한 여러 상인으로 하여금 대관과 상의하여 통용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사에게 말로 설명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보영(寶永) 4년(1707) 정해 7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방.

이는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불에 불려 보게 하였더니 도리어 육성삼(六成三)의 본디 은화보다 못한데, 이미 해가 지나도록 다시 고하는 일이 없었으니 초고(草稿)의 회답이 부당할 듯하다는 일로 탐전에 진달하였더니, 상감께서는 “그렇다”고 하교하시어 거행하는 조건을 내지 아니함.

무자(1708) 윤3월 11일

이번 윤3월 초10일에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이유(李濡)가 계품하기를**, “전에 마을 여자와 간통한 왜인을 동일한 법률로 다스리는 일로 동래부사에게 분부하여 훈도 별차 등을 시켜서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는데, 이제 부사 한배하의 장계를 보니, ‘관수왜 등이 시종 굳게 거절하여 결단코 마음을 돌려 들을 뜻이 없는데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는 것은 한갓 무익할 뿐 아니라 도리어 국가의 명령을 욕되게 한다’고 하였는데, 당초에 덮어 두고 묻지 않았다면 그래도 되겠지만 이제 와서 중지하면 일의 체면을 손상하는데, 저들이 듣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두어서는 불가하니, 다시 엄하게 더 책망하고 타이러 그들의 소위를 살펴보고,

혹 서계(書契)로 도중(島中)과 상의하여 약속하여 두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저들이 듣고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덮어두고 묻지 않는 것은 불가하니, 엄한 말로 책망하고 타이르라는 뜻으로 다시 분부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행이 조판서 이인엽(李寅燁)은 말하기를 “조정에서 분부한 일은 진실로 연속하여 책망하고 타이러서 기어코 조사하여 같은 법률로 조처해야 하는데, 이제 장계를 보니 두세번 책망하고 타이른 뒤에 이렇게 품의 조처하라는 청을 하였으니, 변방 신하의 일의 체면이 매우 부당하니 경계하고 책망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됩니다”라고 하였고, 이유는 말하기를 “동래부사 한배하가 곧바로 먼저 품계한 것은 과연 부당하니 추고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진달한 바가 참으로 옳다. 추고하여 경계하고 책망함이 옳다”고 하셨음.

이번 윤3월 초10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이유가 계품하기를** “동래부사 한배하가, ‘왜인이 왜관 서쪽 담장 밖의 서로 바라보이는 곳에 나오는 것을 수문(守門) 군관(軍官) 및 훈도 별차 등이 금단(禁斷)하지 못하였는데, 그 죄상을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는 일로 장계를 올렸는데, 이는 비록 뛰쳐나와 소란을 부리는 일과는 간격이 있으나, 이미 금표(禁標) 밖으로 나와서 약조(約條)를 어겼다면 금단하지 못한 죄는 진실로 법에 의거하여 엄중하게 다스려야 마땅하니, 여러 신하에게 물어서 조처함이 어떠할지?” 하였음. 상감께서는 “각기 소견을 진술함이 옳겠다”고 하자, 행이조판서 이인엽이 말하기를 “이것은 비록 뛰쳐나와 소란을 부린 자와 다름이 있으나, 이미 금표 밖으로 나왔는데 금지하지 못한 일은 변방의 정세와 관계되는지라 엄중하게 죄를 따져야 마땅할 듯하다”고 하였고, 한성군(韓城君) 이기하(李基夏)¹⁹³는 말하기를, “이미 약조를 범하여 금표 밖으로 나왔으니 죄를 논함이 마땅할 듯하다”고 하였고, 동돈령(同敦寧) 김석연(金錫衍)¹⁹⁴은 말하기를 “이인엽이 진달한 말이 옳은 듯하다”고 하였으며, 이인엽은 말하기를 “경상좌수사의 장계에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고 하였으므로 이미 해조에서 훈도는 금부(禁府)로 이송하고 별차는 죄를 정하는 일로 복계하여 윤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공사(公事:공문)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고, 이유는 말하기를 “이미 왜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금표 바깥으로 다니게 하였으니, 잡아다 심문하여 조처함이 마땅하되, 이는 변방의 정세에 관계되는지라 해조에서 비록 수사(水使)의 장계로 말미암아 이미 복계하였더라도 묘당에서 또한 확정하여 분부함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는

193) 이기하(李基夏, 1646-1718): 한산 이씨로 자는 하경(夏卿)이며 어영대장 여발(汝發)의 아들이다. 문음(門蔭)으로 출사하여 여러 무관직을 거쳐 총융사(摠戎使), 삼도수군통제사를 역임하고 한성군(韓城君)에 책봉되었으며 한성좌윤, 어영대장, 훈련대장을 역임하였다.

194) 김석연(金錫衍, 1648-1723): 청풍 김씨로 자는 여백(汝伯)이고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우명(佑明)의 아들이며, 현종비 명성왕후(明聖王后)의 아우이다. 문음으로 출사하여 한성우윤, 강화유수, 어영대장,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데, 상감께서는 “변방의 사정이 엄중하니 잡아서 심문함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자(1708) 5월 15일

이번 5월 12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이유가 계품하기를**, “이것은 곧 동래부사 한배하가 철물(鐵物)을 변통하는 일로 올린 장계입니다. 지난해 4월에 비변사에 계하(啓下)하였으나, 일이 중대한지라 즉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소신(小臣)의 생각으로는 본디 방색(防塞)하는 것이 불편하였던 것은 대개 피차간에 매매하는 것으로 백사(白絲) 인삼(人蔘) 등의 물품을 파는 것은 은화로 하고, 그 밖에 잡화의 값은 철물로 서로 교환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엽전을 통용한 이후로 간사한 백성이 사사로이 주조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철물을 방색한 것은 이 때문이었으나, 이로 인하여 돈을 통용하는 길이 좁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철물은 돈을 주조하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 무릇 온갖 병기(兵器) 역시 이것을 바라고 나오니, 여러 해 방색하면 공사 간에 모두 절실합니다. 근래에 동전이 흔하여 기구를 주조하는 이익만 못하니, 비록 다시 통용을 허락하더라도 사사로이 주조할 염려는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길이 매우 어려워 송곳 꽃을 곳도 없는 때에 우리나라 상인들이 이문(利文)을 잃는 것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왜인이 철물을 버리고 오로지 은화로만 값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므로 손해 봄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장차 그들의 환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원임(原任) 대신의 뜻도 역시 신과 다름이 없는 자가 있으므로 감히 진달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매양 방색하는 것 역시 어려우니 그대로 함이 옳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5월 12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이유가 계품하기를**, “동래 왜관에서 공작미(公作米)를 물에 타는 폐단 및 5일 개시(開市)의 일로 저번에 서연(書筵)에서 소신이 진달하여 본부에 조사하여 물어보라는 명이 있었는데, 동래부사 한배하가 이를 장계로 알려 왔으므로 품의 확정하려 합니다.”고 하자, 상감께서는 “물을 타는 한 가지는 암행어사 박봉령(朴鳳齡)¹⁹⁵⁾의 서계(書啓)에도 있었다”고 하였고, 이유는 말하기를 “어사 박봉령의 서계는 이 장계와 대략 동일한데, 물을 타는 일을 한배하의 장계에는 ‘도중(島中)에 서찰을 보내어 더 받는 폐단을 금단하게 하자’고 하였고, 어사의 서계에는 ‘이미 당초의 약조가 아니니 우리 쪽에서 금지하는데 무슨 말 못할 우려가 있겠는가? 속히 묘당에 명하여 동래부에도 이수두(二手斗)¹⁹⁶⁾를 속히 과하도록 분부하게 하라’고 하였으며, 조시(朝市) 한 조목에 있어서는

195) 박봉령(朴鳳齡, 1671-1718): 말양 박씨로 자는 공서(公瑞)이다. 숙종 25년(1699)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경상도 암행어사로 나갔고, 전라도 관찰사, 이조참의, 대사성을 역임하였다.

196) 이수두(二手斗): 사절(使節)에게 식량으로 공급하는 곡물. 수두(手斗)는 왜인이 곡물을 계량(計量)하

동래부의 장계가 신이 진달한 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조시는 왜관 문 밖에서 생선과 채소 등의 물건을 교역하여 아침에 열었다가 정오에 파하는 것입니다. 5일 개시라고 하는 것은 쌀곡식 등의 긴요한 물자를 색리(色吏)를 정하여 장부를 만들어 두고 세금을 걷은 뒤에 표를 지급하여 왜관에 들어가 매매하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잡된 무리들이 임의로 출입하게 하면 혹 여러 날 왜관 가운데 잇달아 머물기도 하여 일이 극히 해괴하나, 본부에서는 세를 거두어 비용을 보충하기 때문에 금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장계 가운데 5일 개시 한 조목을 조시와 혼동하여 일컬어 매우 뚜렷한 구별이 없으나, 왜역(倭譯)을 불러다 실상을 자세히 알아보니, 조시는 생선과 채소를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이니 이는 굳이 혁파할 수 없고, 쌀 섬을 매매하는 것 역시 금단할 수는 없는데, 만약 조시에서 교역하게 한다면 좋을 듯하나, 이세재(李世載)가 동래부사였을 때 이렇게 변통하였더니, 대관(代官)과 차왜(差倭)들이 왜관 밖에 나가서 교역하는 것이 편치 못하다고 하므로 끝내 시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변통하는 방도로는 조시는 이전대로 그대로 두고, 이른바 5일 개시는 상인들이 한 달에 여섯 차례나 왜관 안에 들어가서 매매할 때 훈도와 별차 및 동래부의 군관이 함께 들어가 감독하는데, 아침에 들어갔다가 정오에 나오는데 불과하다고 하니, 무릇 미곡 등의 물건을 팔려고 하는 자는 미리 장부에 적어두고 이전대로 세를 걷되, 한 달에 여섯 차례 기일이 되기를 기다려 들어가서 교역하고 나온다면 머물러서 혼잡한 폐단은 없을 것이니 이대로 규정을 정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입시 승지가 일찍이 동래부사를 역임하여 이런 일을 또한 상세히 알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좌부승지 박태항(朴泰恒)이 말하기를 “신이 여러 해 동래부에서 대죄(待罪)¹⁹⁷⁾하면서 이런 사정을 또한 일찍이 갖추어 알았습니다. 대개 공작미를 들여주는 일은 지난 기묘년간부터 시행하여 장차 백년이 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비로소 이수두로 공갈하는 말이 있으니, 교활한 왜인의 정상이 매우 극히 밍습니다. 비록 도중에서찰을 보내더라도 필시 듣고 따르지 않을 것이라서, 부질없이 국가의 체면만 손상할 따름입니다. 매년 감영(監營)에서 전답의 결세(結稅)¹⁹⁸⁾로 나오는 쌀을 각 고을에 분정(分定)하여 부산창(釜山倉)에 운반하여 놓으면, 동래부의 군관(軍官)이 받아서 창고에 넣고 들여줄 때, 부산첨사와 군관이 입회하여 운미감관(運米監官)¹⁹⁹⁾에게 수량을 헤아려 지급하는데, 수량을 헤아려 지급할 적에 자연히 흩어져 떨어지는 쌀이 있고, 또한 운미감관이 주고 받은 뒤에 물을 타서 남는 것을 자기 밀천으로 넣으면서, 이수두(二手斗)를 더 받아 원래 수량에 감축됨이 있다고 하여 부득히 물을 탄다고 하는 것은 극히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감관의 말대로 과연 줄어드는 일이 있으면 흩어

는 단위로서, 1수두는 조선의 2되 7홉[二升七合]에 해당한다고 한다.

197) 대죄(待罪): 검책을 받아 죄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

198) 결세(結稅): 전답의 경작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

199) 운미감관(運米監官): 미곡을 운반하여 수납하는 감독관.

져 떨어지는 쌀을 거두어 모아서 그 감축된 수량을 보충하여도 불가하지 아니합니다. 그 일의 체면에 있어서 오직 마땅히 감관에게 엄중히 신칙하여 물을 타지 못하게 하면 그만이지, 어찌 더 걷을 우려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음. 행병조판서 조태채(趙泰采)는 말하기를 “부산창에서 받아들일 때 남은 쌀이 육 첵 백 섬이나 된다고 하며, 받아들일 때의 휘[斛]²⁰⁰가 들어 줄 때의 휘보다 자못 크다고 하는데, 만약 받아들이는 쌀에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없이 곧바로 들여준다면 어찌 줄어들 이가 있겠습니까? 비록 간혹 줄어들더라도 남은 쌀의 수량이 많으니 추이(推移)하여 들여주기에 족한데, 들어 줄 때 물을 타는 것은 곧 감색이 농간을 부리는 일입니다. 이미 물을 타는 폐단을 금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소한 일로 도중에 서찰을 보내는 것은 더욱이 사리에 합당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고, 이유는 말하기를 “공작미에 물을 타는 일은 먼 나라 사람을 대하는 도리에 있어서 성신(誠信)이 크게 모자람이니 진실로 엄금하되, 이수두를 더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흘러온 잘못된 규정인지라 또한 서찰을 보내어 금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를 받아올릴 때 휘[斛]에 3되[升]를 올리는 전례가 있고, 또 낙정미(落庭米) 간색미(看色米) 등 각 조목이 있으니, 백성에게 거두는 것이 부족하지 않는데다 동래부에서 받는 것도 이미 남은 것이 많으니, 이것으로 수량을 보충하면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조태채가 말하기를 “들여줄 때 차원(差員)을 정하여 보살피게 한다면 아마 이런 폐단이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동래부의 장계 및 여사의 서계 가운데 모두 이수두를 더 받는다고 말하였으니, 설혹 줄어드는 일이 있더라도 도중에 서찰을 보내는 것은 국가의 체면에 손상이 있으니, 이제부터 물을 타서 농간하는 폐단을 엄금하고,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효시(梟示)하더라도 과중하지 않으니, 진달한 바 대로 분부함이 옳겠다. 병조판서가 진달한 바 차원(差員)을 정하여 보살피게 하자는 것 또한 편리하고 좋다”고 하셨음. 조태채가 말하기를 “별도로 정하지 말고 부산첨사가 차원을 정하여 관장하게 한다면 착실할 듯합니다”라고 하자, 상감께서 “부산첨사가 차원을 정하여 관장하라는 일을 한 가지로 분부함이 옳겠다”고 하였고, 이유가 말하기를 “조시의 일은 진달한 바대로 분부할까요?” 하자, 조태채가 말하기를 “갑신년(1704)에 신이 5일 개시를 혁파하는 일로 진달하였는데, 그 때 부사 이야(李壘)가 혁파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논보(論報)하여 아직 혁파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조시 때 쌀을 가진 자는 몇 되 몇 말에 지나지 않고, 왜인들이 이것으로는 양식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이런 5일 개시의 잘못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상인이 잡다하게 물화를 가지고 왜관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으면 은밀한 일을 누설할 우려가 없지 않으니, 이제부터 5일 개시를 혁파하고, 대신이 진달한 대로 6차의 개시 때 쌀섬을 들여보내

200) 휘[斛]: 곡물을 계량하는 단위. 1휘[斛]는 본디 10말[斗]이나, 조선 후기 환곡(還穀) 제도에서는 15말을 1휘로 계산하였다고 한다.

도록 허락하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고, 이유는 말하기를 “한 달 내 여섯 차례 개시하는데 미리 팔려고 원하는 물화를 기록하여 놓았다가 차례가 되는 날 훈도 별차와 군관이 같이 들어가 검찰한다면 피차간에 생계를 이어가는 도리에 조금도 장애가 없으며, 동래부에서 세를 거두는 규정도 또한 혁파하지 않으면서 종전대로 혼잡한 폐단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5일 개시는 혁파하고 대신이 진달한 대로 한 달에 여섯 차례 개시하면 농간을 방지할 수 있으니 피차간에 편리하고 좋겠다”고 하셨음.

무자(1708) 6월 16일

이번 6월 초8일 동래부사 한배하가 성첩한 장계. 이달 초8일 미시에 도부한 부산 첨사 윤이경(尹以經)의 치통에, “방금 도부한 가훈도(假訓導) 김현문(金顯門)²⁰¹과 가별차(假別差) 최대제(崔岱齊)²⁰² 등의 수본에, ‘훈도 오윤문(吳允文)²⁰³이 당일 사시(巳時)에 죽었다’고 하였기로 연유를 치통하는 일”이라 하였는데, 위의 왜학(倭學) 훈도 오윤문이 죽어 대신할 자를 급급히 차출하여 밤낮없이 내려보내는 일로 해조에 명하여 속히 거행하되, 근래에 왜인의 사정이 이전과 점차 다른 것은 오로지 임역(任譯)을 누차 그른 사람이 역임하였기 때문이니, 이번에는 각별히 선발하여 보내라는 일로 아울러 해조에 분부하여 주시도록 하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한배하의 장례를 보니 부산 훈도 오윤문이 죽어서 대신할 자를 급급히 차출하여 밤낮 없이 내려보내되 근래에 왜인의 사정이 이전과 점차 다르니 이번에는 각별히 선발하여 보내라는 일로 해조에 명하여 속히 거행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훈도가 죽어 대신할 자를 선발하여 보내지 않을 수 없으니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각별히 선발 차출하여 밤낮 없이 내려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7년(1708) 6월 16일 행도승지신 강선(姜銑)²⁰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201) 김현문(金顯門, 1675-?): 우봉 김씨로 자는 양보(揚甫)이다. 숙종 28년(1792)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가선대부에 이르렀다.

202) 최대제(崔岱齊, 1679-?): 청주 최씨로 자는 용경(隆卿)이다. 숙종 36년(1710) 증광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관관(判官)을 역임하였다.

203) 오윤문(吳允文, 1646-1708): 해주 오씨로 자는 자화(子華)이다. 현종 13년(1672) 식년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204) 강선(姜銑, 1645-?): 진주 강씨로 자는 자화(子和)이다. 숙종 1년(1675-)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충청도 관찰사, 강원도관찰사, 도승지, 형조참판을 역임하였다.

무자(1708) 10월 초5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한배하의 장계를 보니 초량의 여인이 왜인과 간통하였는데 심문하여 사실을 밝히고 같이 그 법률을 시행한다는 뜻으로 임역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반복하여 책망하고 타일렀으나, 이 일로 서로 버틴 지 이미 반년이 지나도록 관수(館守) 등이 시종 굳게 항거하여 결단코 마음을 돌려 들을 의사가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간통한 여인 및 동조한 사람을 우선 법률에 의거하여 처단하고, 앞으로 바다 건너 역관(譯官)이 들어갈 때 도중(島中)에 서찰을 보내어 이제부터 피차간에 같은 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을 약조에 첨가하여 넣어서 영구히 정식으로 한다면 거의 후일의 간통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하여 지휘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당초 왜관에 있는 왜인이 마을 여인과 간통한 실상은 여인 및 중만(仲萬)의 전후 공초(供招)에 이미 뚜렷하게 드러났거늘, 피차 간에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자는 뜻으로 누차 책망하여 타일렀으나 따를 생각이 없고, 그 뒤에 또 부산첨사와 관수왜가 자리를 같이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사실을 알고 처단하자는 뜻으로 언급하였더니, 또한 인정하려는 기색이 없어서 전후로 책망하고 타이른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도, 이미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조정하여 결말을 볼 가망이 없어 그 정상이 극히 통탄스럽거니와, 범왜(犯倭)²⁰⁵를 조사하기 전에 감옥(甘玉) 및 동조한 사람을 곧바로 먼저 처단하는 것은 불가한데, 이전에는 약조에 실리지 않은 일은 도주에게 서찰을 보내어 추가로 규정을 정하는 일이 간혹 있었고, 이제 이번에 간통을 범한 죄인을 만약 엄하게 처치를 가하지 않는다면 후일 이러한 폐단을 금단할 수 가 없을 것인데, 앞으로 역관이 바다를 건너갈 때 이번 범왜를 그대로 두는 것은 불가하니 피차의 관인이 자리를 함께하여 사실을 조사한 뒤에 범대로 처단하고, 이후로 간통을 범하는 일이 있으면 피차간에 같은 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약조 가운데 첨가해 넣어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는 일로 서계(書契)를 들여보내고, 그대로 역관들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봉행(奉行) 등 여러 왜인에게 타일러 사리를 명백하게 진술하면 저들이 비록 교활하지만 마음이 흔들려 들을 이치가 없지 않으니, 승문원(承文院)에 명하여 좋은 말로 서계를 지어 내어서 문위역관(問慰譯官)²⁰⁶의 걸음에 붙여 보내는 것이 일에 합당할 듯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7년(1708) 10월 초5일 부승지 신 임순원(任舜元)²⁰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205) 범왜(犯倭): 죄를 범한 왜인.

206) 문위역관(問慰譯官): 왜인과의 특별한 교섭이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대마도에 파견한 역관.

207) 임순원(任舜元, 1653-?): 풍천 임씨로 자는 사거(士舉)이다. 숙종 12년(1686)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강원도관찰사에 이르렀다.

무자(1708) 10월 24일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통제사 오중주(吳重周)²⁰⁸의 장계를 보니 왜학 신지헌(申之憲)이 사정을 묻은 사연의 말이 모호한 곳이 많을 뿐 아니라, 왜선 5척과 우리나라 배 2척, 도합 7척이 나왔거늘, 문정(問情)한 수본(手本)에는 몇 척이 나와서 분산되어 표류하였는지 형편을 전연 거론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감감하게 직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번고를 대비하는 중요한 곳에 그대로 두는 것이 불가하여, 동 왜학 신지헌을 우선 파직하였으니 그 대신을 해조에 명하여 선발하게 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내 달라 하였는 바, 막중한 변방의 사정을 묻는 것이 이렇게 허술하여 매우 해괴하니, 장계대로 신지헌을 파직하여 내쫓고 그 대신을 해조에 명하여 선발하여 수일 내로 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7년(1708) 10월 24일 좌부승지 신 김홍정(金弘楨)²⁰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무자(1708) 11월 초3일

이번 10월 30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최(崔)가 계품하기를, “동래부사 한배하가 5일 개시의 일 및 이수두(二手斗)를 채우기 어렵다는 뜻을 다시 장계로 알렸는데, 개시(開市)의 일은 이미 처분이 있었으니 이제 거론할 필요는 없으나, 이수두는 당초 묘당에서 낙정미(落庭米)²¹⁰ 및 가승미(加升米)²¹¹로써 추이(推移)하여 저쪽 사람들에게 채워주게 하였는데, 다만 낙정미와 가승미는 다만 공가(公家)의 긴요한 비용으로만 할 뿐이라 실로 추이할 도리가 없고, 또한 그 수량이 삼 사 백 섬에 불과하여 또한 이수미 900석의 수량을 충당하여 줄 수가 없어 그 조처의 형편이 난처할 듯하여, 부사의 생각으로는 이수두가 이미 잘못된 규정인데 규정 이외에 더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도주에게 서찰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관왜(館倭)에게 타일러 금단하게 하고, 저쪽에서 만약 끝까지 듣지 않으면 공작미(公作米)를 결코 들여보내주기 어렵다는 뜻으로 엄하게 더 책망하고 타이른다면 저

208) 오중주(吳重周, 1654-1735): 해주 오씨로 자는 자후(子厚), 호는 야은(野隱)이다. 숙종 6년(1680)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평안도 병마절도사, 춘천부사, 충청도 병마절도사, 삼도수군통제사, 금군별장, 포도대장 등을 역임하였다.

209) 김홍정(金弘楨, 1649-?): 강릉 김씨로 자는 여간(汝幹)이다. 숙종 7년 식년시에 급제하여 관직이 승지에 그쳤다.

210) 낙정미(落庭米): 세미(稅米)를 징수하면서 말이나 되로 계량할 때 땅에 떨어져 흩어지는 양을 보충한다는 명분으로 더 받아들이는 쌀.

211) 가승미(加升米): 세미(稅米)를 징수할 때 죽이 나는 것을 예상하여 미리 더 받아내는 쌀. 대체로 한 섬에 3되를 더하였다.

쪽에서 필시 듣지 않을 이가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수두가 비록 잘못된 규정이나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어 참으로 갑자기 변통하기가 어렵지만, 저쪽에서 비록 따르지 않더라도 공작미를 시종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 형세가 또한 쉽지 않은 바 있으니, 이전대로 지급을 허락하는 것이 편함만 못하고, 본부의 비용에 있어서는 편리한 대로 값을 줄임이 적당할 뜻한데, 입시한 여러 신하에게 편의 여부를 물어보고 조처함이 어떠할지?” 하였음. 상감께서 “여러 신하는 각기 소견을 진술하라” 하시자, 관돈령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왜인의 교묘한 속임수가 점차 심하여 끝내 허락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허약함을 보일 따름이니 도리어 이전대로 하는 것이 나은 것만 같지 못합니다”라고 하였고, 행예조판서 이인엽(李寅燁)은 말하기를 “이수두를 더 걷는 것이 비록 무리하지만 이는 그들의 목숨과 관계되는 것이라 어찌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다투다가 안되어 끝내 다시 지급하게 되면 위엄만 많이 손상될 것인데, 당초에 다투지 않는 것이 나은 것만 같지 못하고, 동래부에서 이미 낙정미와 가승미로 수량을 충당하였다면 본부로 하여금 이전대로 추이하여 지급하게 함이 좋을 듯하며, 5일 개시에 대하여 운운한 것은 본부에서 색리(色吏)를 정하여 매 5일마다 양식과 찬을 왜관에 지급하게 하여 들여줄 때 물화를 교역하는 사례가 있으니, 만약 색리에게 세금을 지급한다면 모두가 물화를 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개 왜관의 개시는 한 달에 여섯 차례로 본디 5일 색리를 둔 이래로, 6차에 구매되지 않고 원근에서 매매하는 데 장애되는 바가 없어 남잡(濫雜)한 폐단이 많이 있어서, 이 때문에 일찍이 혁파하자는 명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혁파하지 못한 것은, 그 거두는 세금을 본부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제법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만약 그 남잡한 대로 일임한다면 변방의 사단이 매우 우려될 만하니, 혁파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고, 호조판서 김우항(金宇杭)은 말하기를 “이전부터 왜인과 다투어서 이긴 적이 없었는데, 처음에 다투다가 끝내 이기지 못하기 보다는 도리어 이전대로 허락하여 주는 것이 나은 것만 못하며, 또 생각하면 왜관을 설치하여 서로 간에 매매를 허락한 것은 그 물자의 유무를 통하기 위함인데, 근래에는 이쪽에서 들여보내는 물자가 매우 많으나 은화가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대개 당초에는 상인의 정원을 정하지 않고 오로지 훈도 별차에게 책임을 맡겼는데, 한 번 정원을 정한 뒤로 권리가 상인에게 있어서 왜인들과 부동하여 중간에 교묘한 농간의 폐단이 없지 않은데, 지난해 판부사 김(金)이 호조판서였을 때 이미 정원을 파기하기로 확정하였으나, 그 뒤 그대로 두어 아직도 거행하지 않으니, 지금 이후로는 그 정원 수를 파기하고 훈도 별차로 하여금 상고(商賈)를 주관하게 하고, 매년 황력(皇曆) 절사(節使) 때 은화가 나오지 않으면 오로지 훈도 별차에게 책임 지워 혹 잡아다 심문하여 죄를 따지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라고 하였으며, 최(崔)는 말하기를 “이전에는 상인의 정원이 없었으므로 난잡한 폐단이 많이 있었으나, 그 뒤 30명으로 정하면서 상인들이 손해를 본 자가 많았는데, 이제 출입하는 자는 20명이 되지 않아서 매매하는 길이 이로 말미암아 좀

아지게 되었는데, 이들 또한 저쪽 사람들에게 부채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화가 나오지 않는 것은 반드시 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원을 혁파하기로 일찍이 확정하였다면 지금 와서 폐기하는 것은 일이 매우 타당하지 못하니. 이제는 곧바로 분부하여 신칙하면 그만입니다.” 라고 하였고, 판윤(判尹) 김석연(金錫衍)은 말하기를 “이수두의 일을 여러 신하가 진달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공조참판 민진원은 말하기를 “이(李)가 진달한 바가 맞습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이수두의 일은 만약 처음에 다투다가 끝내 허락한다면 국가의 위엄만 손상할 뿐이니 다투지 말고 그냥 두는 것이 옳겠고, 색리가 세금을 거두는 일은 신칙하여 금함이 옳겠다. 상인의 일은 이전에 확정된 대로 그 정원을 혁파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기축(1709) 정월 16일

이번 정월 1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최(崔)가 계품하기를**, “동래부사의 장계로 품의 확정할 일이 있으므로 감히 진달합니다. 연전에 5일 개시(開市)만 허락하면서 생선과 채소만 허락하고 쌀의 교역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조정에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타이르게 하였는데, 그들의 생계가 단지 조시(朝市) 때의 미곡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 혁파한다면 일이 매우 절박하고, 5일 개시 때 비록 쌀 곡식의 매매를 허락하더라도 미곡 상인이 매우 적어 매양 식량이 모자라는 걱정이 있어서, 매일 개시할 때 그 미곡과 채소를 아울러 허락하는 것은 또 약조에 실려 있다고 하는데, 조시에서 미곡의 매매를 아울러 허락하는 것을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어 이제 갑자기 고치기가 어렵고, 먼 곳 사람의 양식이 모자라는 것 또한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동래부사의 장계에는 약조(約條)에 있다고 하니 조시에서 미곡을 허락하는 것은 무방할 듯하니, 동래부에 신칙하여 조시와 개시 때에 아울러 미곡을 허락하고 그 남잡한 폐단을 금하게 한다면 뒤의 폐단이 없고 또한 먼 곳 사람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을 듯하니, 여러 신하에게 물어 봄이 어떠할지?” 하였음. 상감께서 “여러 신하는 각기 소견을 진술함이 좋겠다”고 하시자, 행(行) 판윤 조태채(趙泰采)가 말하기를 “신이 호조(戶曹)에서 대죄(待罪)할 때 개시에서 세금을 거두는 데 폐단이 있어 혁파하는 일로 진달한 바 있는데, 그 때 동래부사 이야(李壘)가 갑자기 혁파하기 어렵다고 묘당에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그 뒤 부사 역시 조정의 명을 받들어 시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아직 결정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계품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조시는 아침 전에 한정하여 생선과 채소를 매매하고 해가 늦은 뒤에 시장을 파하여 무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지만, 근래에는 이름은 조시이지만 밤이 되도록 매매하며, 동래부에서 색리(色吏)를 정하여 보내지만 그

남잡함을 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따라서 물건마다 세금을 거두는데, 심지어는 쟁신 등의 물건까지도 또한 세금을 거두어 들인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고, 조시에는 비록 생선과 채소를 허락하지만 쌀의 매매 또한 허락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매일 개시할 때 식전에만 한정하고 해가 늦은 뒤로는 일체 그 내왕을 허락하지 않고, 그대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혁파한다면 피차간에 남잡한 폐단은 없을 수가 있겠는데, 한배하가 올린 장계에는 세금을 거두는 색리를 혁파한다고 하지 않고 조시에서의 미곡 매매를 과한다고 운운한 것은 그 의견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고, 지사(知事) 유득일(兪得一)은 말하기를 “조태체가 이전 일의 곡절을 갖추어 알고 있어서 이미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신은 오래도록 첩거 중에 있었기에 조장에서 동래부에 분부한 것이 어떠한지 모르나, 이제 장계를 보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시와 개시는 이미 시행해온 사례인데, 먼 곳의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에 있어서 미곡을 매매하는 것을 어찌 허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피차의 사람들이 아침과 낮을 분간하지 않고 드나들어 매매하는 것이 극히 남잡하다고 하는데, 이제 만약 세금을 거두는 것을 혁파하지 않으면 그 폐단을 끝내 막을 수 없으니, 단지 조시에서 세를 거두는 한 조목만은 영구히 혁파하도록 허락함이 옳습니다”라고 하였고, 공조참판 민진원은 말하기를 “신은 이 일의 곡절을 알지 못하나 단지 조시에서 해가 늦은 뒤에 때도 없이 교역하는 것만은 영구히 혁파하도록 허락하고 조시 당일 색리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한 조목 역시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조태영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라고 하였고, 최(崔)는 말하기를 “무릇 세금을 거두는 규정은 큰 매매에는 전례가 있으나 조시와 같이 영세한 교역에서는 어찌 종류마다 세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저쪽과 우리 사람이 통상할 때 검사하는 색리가 없어서는 불가하나, 조시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은 금지함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개시는 아침 전에 한하여 여는 것을 허락하고 해가 늦으면 즉시 과하며, 세금을 거두는 색리도 또한 혁파하게 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기축(1709) 5월 초7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번 문위역관(問慰譯官)이 바다를 건너갈 때 초량 여인과 간통한 왜인에게 사실을 심문 조사하여 그 법률을 동일하게 시행한다는 뜻으로 예조의 서계(書契)를 붙여 보내었더니, 이번 동래부사 권이진(權以鎭)²¹²의 장계를 보니, “간통한 왜인에게 같은 법률을 시행한다는 예조의 서

212) 권이진(權以鎭, 1668-1734): 숙종 갑술(甲戌, 1694)에 문과에 급제하여 기축(己丑, 1709)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관직이 호조판서에 이르렀다.

계를 왜인이 받지 않아 되돌려 가져 왔고, 동 죄를 범한 왜인 연식(連食)만 잡아서 재판선(裁判船)에 부쳐서 관수왜의 처치를 받게 하였다고 하였는바, 교활한 왜인의 정상이 대개 이를 청탁하여 약속을 받들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조정의 처치에 미루어 청탁하더니 끝내는 결말을 지을 바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당당한 큰 나라의 조정에서 일개 작은 섬의 오랑캐에게 서찰을 하사하여도 앞드려 받지 않고 되돌려 가져오게 하였는데, 이는 국가가 생긴 이래로 없었던 모욕이라 두 역관이 사명을 형편없이 받은 죄는 결코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없으니, 국가의 체면을 해아리자면 복명하지 않고 왜관 문 밖에 효시하게 하여도 국가를 모욕한 죄를 갚기에 부족하고, 간통한 여인의 일은 다시 제기하여 그들의 속여서 농간하는 모욕을 거듭 받아서는 부당하며, 언천(彦千)의 교체 도서(圖書)²¹³⁾에 대한 일도 조정에서 이미 그 모욕을 당했으니 평상시의 사례에 비추어 그들의 소청을 시행해주는 것은 부당하기에, 변방을 지키는 직책에 있으면서 외람되게 소견을 진술하오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왜관에 있는 왜인이 마을 여인을 속여서 간통한 정상은 이미 적발된 뒤에 조정에서 피차간에 사실을 조사하여 같은 법률로 처단한다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누차 책망하여 타일렀으나 이미 해가 지나도록 끝내 들을 생각이 없으니, 정상이 가증스러운데, 간통죄를 범한 죄인을 만약 드러내어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후일의 폐단을 장차 금단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서계는 예사 서계와 비교되지 않는데 역관들이 만약 십분 놀랍게 생각하고 엄한 말로 준엄하게 책망하였다면 저들이 비록 교활하고 사납다 하더라도 마음을 움직여 듣지 않을 이가 없고, 저쪽에서 비록 이 서계를 받으면 장차 예도에서의 책임 추궁을 면치 못한다고 하여 이렇게 말을 고집하더라도 두 역관은 마땅히 죽기로 힘써 싸워 그대로 도중(島中)에 머무르면서 조정에 품의하여 처분을 기다려야 마땅함에도, 조금도 어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끝내 가지고 돌아오기에 이르렀으니, 역관이 왕래함에 비록 사절(使節)의 명을 내리는 격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국가에 모욕을 끼친 죄는 참으로 매우 통탄스럽고 놀라우며, 간통을 범한 왜인은 이미 도중에서 잡아 부쳐 왔으니 서계를 부친 일은 전연 허사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 비록 곧장 효수(梟首)의 법률을 시행할 필요는 없더라도 당해 두 역관은 모두 참작하여 변방 먼 곳으로 유배하여 후일을 경계하도록 함이 마땅하며, 간통을 범한 왜인이 이미 나왔으니 부산첨사와 관수왜가 자리를 함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것은 이전대로 확정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며, 언천의 대체 도서에 대한 일은 본디 격식 외의 간청에서 나온 것이니 결코 시행을 허락함이 부당한지라 다시금 더 엄하게 꾸짖어 다시 또 청하지 못하게 함이 합당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마땅하며, 다른 나머지 일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48년(1709) 5월 초5일 동부승지 신 조태억(趙泰億)²¹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213) 도서(圖書):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印章).

기축(1709) 6월 초5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저번에 동래부사 권이진(權以鎭)의 장계로 인하여 “간통을 범한 왜인이 나오면 부산 첨사가 이전대로 확정하여 관수왜(館守倭)와 같이 사실을 조사하고, 도서(圖書)는 결코 시행을 허락할 수 없으니 다시 더 엄하게 질책하라”는 뜻으로 복계하여 분부하였는데, 이 권이진의 재차 치계(馳啓)를 보니, “왜인의 정상을 자세히 관찰하니 원래 같은 법률을 같이 적용하려는 의사가 없고, 비록 자리를 같이하여 사실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법을 칭탁하여 찬물을 먹이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핑계하여 도중(島中)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설혹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혹은 그 나라의 법을 칭탁하여 멀리 유배한다고 일컬으며 되돌려 보내는 데 지나지 않을 따름이온바, 받지 않는 것이 이미 지극한 모욕이요 거만함인데다 당초 잡아보내는 모양을 하였으나 끝내 같은 법률을 적용할 의도가 없이 오로지 우리나라를 떠보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만약 우리나라 관리가 사실을 조사하였다가 끝내 같은 법률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정녕 그들의 간사한 계책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미 핑계하여 서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록 범인인 왜인을 잡아보내는 일이 있더라도 본디 조정의 명령을 시행할 의도가 아니요, 단지 역관이 사사로이 청하여 와서 얼굴을 가리는 밀천으로 삼은 것이니, 조정의 체면으로서는 그 왔는지 여부를 묻는 것은 부당하며, 도서(圖書) 한가지는 예조의 답서에 ‘사례로는 허락해야 마땅하나 의리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엄중하게 더 책망하여 타이르고, 저쪽의 왜인이 도서를 얻으려고 탐내어 다시 서계를 바쳐 같은 법률의 적용을 청한다면 국가의 체면이 조금은 높아지게 될 듯하고, 비록 같은 법률을 적용할 것을 다시 청하지 않더라도, 오로지 그냥 덮어두려고만 일삼아 한결같이 겁을 내어 따라주는 폐단에는 이르지 않을 듯하니, 아울러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그 논하고 인용한 바가 왜인의 사정을 잘 파악한 듯하고, 당초부터 범왜(犯倭)를 한 가지로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누차 책망하고 타일렀으나, 저쪽 왜인이 시종 조정의 명령을 어기고 항거하여 서계를 받지 않고는 단지 범왜(犯倭)를 부쳐내어보내기만 하였고, 또 동래부로 보낸 사서(私書)에는 전혀 조정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뜻이 없어서, 그 범왜의 처지를 위하여 베푸는 계교가 매우 교묘하여 필경에는 자백을 받아서 같은 법률로 적용하지 못하는데로 돌아가도록 하려 한 것을 뚜렷이 볼 수 있으며, 묘당의 여러 논의 역시 이미 여기까지 요량하였지만, 범왜를 내어보내는 것은 역관이 전하는 말로만 있었을 뿐이니, 그 일의 체면에 있어서 그가 왔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부당한 것은 참으로 변방 신하의 견해와 같으며, 상대하여 조사한 뒤에

214) 조태억(趙泰億, 1675-1728): 자는 대년(大年), 호는 겸재(謙齋), 시호는 문충(文忠), 양주인(楊州人)이다. 숙종 입오년(1702)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경자년(1720)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으며, 좌의정에 이르렀다.

저쪽의 왜인이 그 나라 법을 핑계하여 마침내 끝까지 다스려 같은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가의 체면이 더욱 더 손상 모욕될 것이므로, 같이 조사하여 단정하는 것은 이미 앞서 명이 있었으니 갑자기 정지하는 것은 불가한데, 이제 도중에서 대조(大朝)의 서계를 받지 않은 것은 이는 역관들이 아주 형편이 없어서 조정의 명령을 잘 전달하지 못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고, 도중(島中)의 일도 역시 극히 통탄스럽고 해괴하여, 간통을 범한 죄인은 본디 상대하여 조사하고 우리 쪽 사람과 같은 법률을 적용하여야 마땅한데, 도중에서 죄인을 내어보내면서 당초 조정에 상달하는 문자가 없었는데 무엇에 근거하여 믿겠습니까? 이제 도중에서 반드시 서계를 와서 바쳐 같은 법률을 적용할 것을 청한 연후에야 이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수신(守臣)²¹⁵⁾을 시켜 다시 더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고, 그 대답을 살펴보고 그 실정과 형편을 관찰하여 장계로 알린 뒤에 조정에서 다시 상의하여 처분함이 마땅할 듯하며, 도서에 대한 일은 죄를 조사하는 건과는 조목이 각기 달라서, 조정에서 저쪽 섬에 대하여 매번 성신(誠信)으로 대접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쪽을 책망하는 것은 아마도 조종함이 있는 듯하여 조정의 대체(大體)가 아닌 듯하며, 아명(兒名)의 도서가 당초에 비록 격식 외에 특별히 하사하는 데서 왔으나, 조정에서 매양 도주의 간청을 허락하는 것이 이미 은혜로운 사례가 되었으니, 이제 꼭 끝까지 아껴서 먼 곳 사람의 바라는 것을 끊을 필요는 없고, 이제 이 일은 본디 평상시의 형식이 아니고 전일에 지급하여 줄 적에 이미 뒤로는 전례로 인용하지 말라 한 적이 있으니, 이제 이번 요청은 굳이 들어주는 것이 부당하나, 조정의 은혜가 두터워 끝내 재량하여 조치하려는 의도가 있으니, 또한 수신에게 명하여 차왜에게 베풀어 타이르게 하며, 도금도왜(都禁徒倭)가 상대하여 조사한다는 설은 탐지해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더욱이 사리에 어긋나고 오만합니다. 관수 등의 여러 왜인 역시 감히 부산의 변방 신하와 동등하게 교제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그 도금도왜와 같이 낮고 미천한 자와 상대하겠습니까? 설령 자리를 같이하여 조사하여 심문하는 일이 있더라도 굳이 엄하게 물리쳐서 그들의 간사하고 방종한 버릇을 막하여 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찌할지? 강희 48년(1709) 6월 초5일 우부승지 신 홍중하(洪重夏)²¹⁶⁾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215) 수신(守臣): 지방 수령.

216) 홍중하(洪重夏, 1658-1716): 숙종 갑자(甲子, 1684)에 문과에 급제하고, 갑술(甲戌, 1694)에 부교리(副校理)의 신분으로 접위관(接委官)이 되어 부산에 와서 일본인이 말하는 죽도(竹島)가 우리나라 울릉도임을 밝혀 왜인의 울릉도 내왕을 금하게 하였다. 전라도 관찰사를 거쳐 강원도 관찰사로 임지에서 죽었다.

기축(1709) 7월 24일

비변사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전후 두 차례의 장계를 보면, 그 하나는 간통한 왜인의 일 및 도서의 일인데, 돌아온 관문(關文)의 의도를 훈도와 별차를 시켜 관왜(館倭)에게 들어가 타이르게 한 뒤에 또 전령(傳令)을 하여 여러 가지로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고, 그 문답한 이야기와 관왜의 사정을 자세히 따져 나열하고 그대로 그 의견을 덧붙여 진술하였는데, 대개 이러합니다. “도중(島中)에서 서계(書契)를 받지 않고, 간통한 왜인을 같은 법률로 적용하려 하지 않으려고, 관수왜를 시켜 봉행(奉行)의 서찰을 가져다 보여주었는데, 서면(書面)에는 지향(指向)하는 곳도 없이 아무렇게나 썼으며, 도왜(島倭)와 최상집 등의 이야기는 남을 업신여기고 저만 잘난 척하여 방자한 것이 어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이미 조정의 뜻을 받아 다시 받아볼 이가 없음에도, 도왜(島倭)는 이것을 청탁하여 신이 받아본 뒤를 기다려 처치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은 심분 통탄스럽고 가증스럽거니와, 결코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 억지로 시끄럽게 타이르더라도 끝내 받들어 행하지 않는다면 또한 조정의 수치가 되겠으니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이 일을 아직 종결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도서(圖書)의 지급을 허락한다는 의도로, 죄인을 조사하여 다스리는 것과 도서의 사건은 조목이 각기 달라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책망하는 것은 큰 도량에 손상이 있고 또 조절하는 듯함이 있다 한 말이 있었으나, 사리에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동래부에 있는 전해온 등록을 두루 상고해보면 이전에 언삼(彦三)과 언만(彦滿)의 도서는 모두 그 아버지의 충성과 노고로 하사하였고, 그 뒤 조흥(調興)의 도서를 고쳐달라는 청은 사신(使臣)이 무례하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고, 우경(右京)의 도서 역시 특별한 은전은 전례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아서, 동 왜인이 감히 억지로 청하지 못하고 끝내 빈손으로 돌아갔으니, 조정의 처치가 참으로 엄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마도에서 조정에 청하는 일이 있거나, 재판(裁判)이 입으로 진술하는 것을 원래 서계에 거론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이전부터 말하는 바가 이러할 뿐 아니라 임오년(1702)과 병인년(1686) 이전의 전례가 또한 모두 이러하였고, 설령 서계로 진술하여 청한다면 마땅히 별도의 서계로 하여야 공경하고 삼가하는 도리가 되는 것인데, 이제 답서에 함부로 청하는 설을 진술하는 것은 대개 병인년(1686)부터의 전례이나, 조정에서는 도서의 일로 작성한 서계 가운데에는 없었던 것으로 단지 변방 신하에게 명하여 책망으로 타이르게 하였지 조정에서 회답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답서 가운데 뒤섞어 언급하여 이것을 가지고 조정을 헐박하여 답장을 받기를 바라는 계획을 하였으나, 용의의 간교함이 이러함에도 조정에서는 그들에게 위문 서찰을 내리면서 다른 말은 섞어 넣지 않고 간통을 범한 왜인의 일은 별도의 서계로 하였는데, 그들의

답서가 어찌 감히 이리할 수 있습니까? 서계의 무례함이 이러한데, 말하는 대로 답장을 하여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여서는 불가합니다. 이제 예조(禮曹)의 답서에 도서(圖書)의 일로 별도의 서찰을 답서 가운데 삽입해 넣지 않고, 무례하다는 뜻으로 엄한 말로 답장하거나, 혹은 서계가 전례가 아니기에 변방 신하에게 명하여 타이르게 한다는 뜻으로 답장함이 어떠하올지? 이전에는 충성스럽고 부지런하여 은전을 얻었지만 지금은 공손치 못하여 은전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거늘, 일체 묻지 않고 지급하여 그 의도에 맞추어준다면, 앞서 조정에서 하사한 것은 은전이 되지 못하고 오늘에 하사하는 것은 곧 외람스러운 것이 되어, 국가의 체면이 손상됨이 이보다 심한 일은 없을 것이니, 묘당에 품의하여 조처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해조에서 대마도에 답하는 서계 가운데 다만 ‘전례가 아니라서 도서를 허락하지 않는다’고만 하였는데, 저쪽 왜인이 서계를 받지 않는 것은 참으로 조정의 수치임에도 답서에 전언 끝까지 따지지 않아서 약함을 보이는 것이 너무 심하다”고 하였고, 또 세 가지 조목을 나열하여 청하였는데, 그 뜻은 대개 그 전의 장계의 사연을 채택하여 답장 서계 가운데 엄중하게 타이르거나, 혹은 이미 변방의 신하에게 명하여 타이르게 한다는 뜻으로 답장하거나, 혹은 그대로 지금 온 서계를 들여주게 한다면, 동래부에서 답장하면서 도서(島書) 가운데 이치를 따져서 책망하여 타이르겠다는 뜻으로 진청(陳請)하면서, “답장의 사연을 초고로 읽어 올리오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대마도에서 예조의 서계를 받지 않는 것은 그 의도가 대개 범왜(犯倭)를 같은 법률로 적용하려 하지 않는 데서 나온 것이고, 또 죄인을 내어보낸다고 하는 것도 또한 문자로 믿을 만한 근거가 없어서 조정에서 모욕을 받음이 지극하니, 이는 변방의 신하로 하여금 다시 더 관수(館守)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해야 할 것이고, 그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 정황을 살펴보아서 다시 상의하여 처분할 것이 있으며, 도왜(島倭)가 동래부에 보낸 서찰을 받아보지 못하게 한 것 역시 그 무례함을 배척하는 뜻이나, 도서(圖書) 한 건은 전후로 특별히 하사하여 곧장 은전의 사례가 되었지만, 만약 혹 간청하면 끝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이제 굳이 거절하고 굳게 막아서 먼 곳 사람의 바람을 끊을 필요가 없으며, 또 책망하는 한 조목과는 조목이 각기 달라서 이것으로 저것을 막는 것은 조절하는 데 가까운 듯하여 오랑캐를 정성으로 대접하는 의도가 아닌 듯하기로, 책망하여 타이르기를 적에 그 뜻을 미미하게 드러내었던 것은 대개 의도가 있어서이지만, 이제 변방의 신하가 이전의 사례를 근거로 고찰하여 전후에 장계로 알린 것을 조목으로 나열하여 명백하고 상세하게 갖추었는바, 대마도 봉행의 서찰을 동래부에 보여준 것은 대개 최상집과 문답한 이야기로서, 예조의 서계를 받아볼 수 없고 간통을 범한 왜인을 같은 법률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등의 말에 불과한데, 저쪽에서 이미 예조의 서계를 받지 않았으니, 수신(守臣)이 저쪽의 서찰을 보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할 말이 있는 것이니, 다시 더 엄한 말로 책망하여 타이르면, 저들이 어찌 감히 시종

곧게 거절하여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을 것이며, 도서를 허락하는 의도를 비록 이미 미미하게 노출하였으나, 언삼 언만 도서를 대를 이어 특별히 지급한 것은 모두 그 아버지의 충성스럽고 부지런함을 포상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고, 그 뒤로 조흥이 고쳐달라고 한 요청이나 우경이 받기를 요청하여 누차의 간청에도 허락하지 않은 데는,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있어서 저들 역시 감히 억지로 청하지 못하고 끝내 빈손으로 돌아갔으니, 이번에 조정에서 도중(島中)에 축하를 한 것은 본디 이웃나라의 우호를 위한 의도이지만, 저쪽에서 이제 먼저 그 예를 벗으셨으니, 구기(拘忌)²¹⁷⁾를 청탁하여 서계를 받아보지 않은 것이 그 실례가 하나요, 범인을 내어보내면서 또한 문서가 없는 것이 그 실례가 둘이요, 도서를 받기를 청하면서 사례를 어기고 답서 가운데 덧붙여 진술한 것은 그 실례가 셋이며, 또한 그 말의 의도가 남을 업신여기고 저만 잘난 체 하여 종전의 충성스럽고 부지런하며 꺾듯이 참가하던 습관에서 크게 어긋나 감히 격식 외의 특별한 은전을 요구하니, 그 정상이 참으로 지극히 통탄스럽고 가증스럽습니다. 이런 말로 변방 신하에게 시켜 다시 엄하게 더 책망하고 타일러 도왜(島倭)로 하여금 서계를 고쳐 작성하여 과오를 뉘우치고 간절하게 진술한 뒤에라야 해야리고 생각하여 조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번에 해조에서 내려보낸 서계는 짐짓 전해주지 말고 되돌려 올려보내어 사역원(司譯院)에 명하여 진작 고쳐 지으면서, '변방 신하에게 명하여 타이르게 한다'는 뜻을 첨가해 넣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하며, 해조의 답서는 이미 변방의 신하에게 명하여 타이르게 한다는 뜻으로 말하였으니, 추후의 장계 가운데 동래부에서 대마도에 답하는 서찰에 한 말을 중첩할 필요는 없을 듯하여 이제 논할 것이 없으니, 이런 뜻으로 예조와 사역원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8년(1709) 7월 24일 좌부승지 신 허윤(許琿)²¹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기축(1709) 7월 27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규정 외로 나온 왜선을 속히 되돌려 보내라는 뜻을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타이르게 하였거니와, 동 왜선이 돌아와 관소에 정박할 즈음에 호송장(護送將) 조라포(助羅浦)²¹⁹⁾ 만호(萬戶) 김광하(金光河)와 안골포(安骨浦) 유진장(留鎭

217) 구기(拘忌): 미신 등의 이유로 꺼리는 일.

218) 허윤(許琿, 1645-1729): 양천 허씨로 자는 율옥(允玉), 호는 계주(桂洲)이다. 숙종 9년(1683)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동부승지 병조참의 경주부윤 한성우윤 등을 역임하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219) 조라포(助羅浦): 경남 거제시 일운면(一運面) 구조라리(舊助羅里).

將) 최차수(崔次岫) 등은 왜선이 지나간 뒤 뒤따라 도착하였으니 그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이제 이번에 규정 외로 나온 왜선은 임의로 머무르는 것은 부당하니 속히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엄하게 역관에게 신칙하여 관수 왜에게 타이르게 하였으며, 무릇 왜선을 호송하는 데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거늘, 위의 왜선이 관소에 돌아와 정박할 즈음에 조라포 만호 김광하와 안골포 유진장 최차수 등이 배가 손상되었다고 청탁하면서 왜선이 지나간 뒤에 비로소 뒤따라 도착한 정상은 참으로 극히 놀라우니, 김광하는 파직하여 내쫓고, 최차수는 통영에 명하여 감영에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도록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8년(1709) 7월 24일 좌부승지 신 허윤(許琿)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기축(1709) 8월 초10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왜선이 좌도(左道)와 우도(右道)로 표류하여 도착할 즈음에 부산 별차(別差)가 달려가서 사정을 물었으나, 가덕(加德) 등으로 표류하여 도착한 뒤 사정을 묻기 위해 통영(統營) 왜학(倭學)을 이미 거제로 옮겨 두었고, 또 본부에서 통사(通事) 한 사람을 정하여 보내어 사정을 물었는데, 별차가 또 가서 사정을 묻는 것이 첩상(疊床)일 뿐만 아니라, 별차가 왕래할 즈음에 거느리고 가는 하인과 통사들을 각 진과 포구에서 음식을 접대하는 그 폐단이 적지 않으며, 별차와 훈도는 늘 왜관에 있으면서 그 살피는 책임이 번거롭고 무거운데, 사정을 묻기 위해 나갔다가 바람 때문에 여러 날 돌아오지 못하는 사이에 훈도로 하여금 혼자 변방의 사정을 전담하여 말을 주고받게 하기에는 혹 일의 기미가 뒤틀릴 우려가 없지 않으니, 지금부터 이후로 왜선이 좌도로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는 이전대로 별차를 정하여 보내고, 우도로 표류하였을 때는 거제의 왜학통사(倭學通事)로 하여금 사정을 물어 전보(轉報)하게 함이 어떠할지,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근래 훈도 별차 등의 역관들이 조정의 명을 전하거나 먼 나라의 사정을 살피는 일 등에 직분을 거행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또 별차를 시켜 간혹 표류한 선박의 사정을 묻게 하여 멀리 우도로 보내어 혹은 여러 날이 되도록 돌아오는 기일을 늦추기까지 하여, 왜관에서의 대응과 접촉을 훈도 한 사람이 전담하게 할 때가 있으니, 변방의 사정에 있어서 실로 불편한 일이고, 거제에 있는 왜학이 절로 우도로 표류한 선박의 사정을 물을 수가 있으니 별차를 종첩하여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수신(守臣)이 말한 바와 같으니, 지금부터는 장계대로 시행함이 마땅하니, 이로써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8년(1709) 8월 초10일 좌부승지 신 허윤(許琿)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기축(1709) 10월 초9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죄를 지은 왜인을 들여보낼 때 만류하여 중지하지 않은 일 및 훈도 별차 등이 도서(圖書)의 일로 차왜와 문답한 이야기를 날날이 거론하여 장계로 알렸고, 또 전일에 고쳐 지어서 내려보낸 서계(書契)의 등본을 차왜가 도중(島中)에 보여주려 들어간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되는데, 짐짓 10여일 정도 관망하다가 내월 초1일에 철공(撤供)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 할 뿐 아니라, 도해역관(渡海譯官)을 호송한 재판(裁判)이 오래지 않아 또 마땅히 나올 것인데, 이전부터 원래 재판을 접대하는 사례가 없어 그 형편이 거두지 않을 수가 없으니, 묘당에 명하여 좋을 대로 품의하여 조치하게 하라고 하였는바, 서계가 없이 잡아 보낸 죄를 지은 왜인을 조정에서 이미 같이 국문할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되돌아 가도록 맡겨두고 만류하여 중지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일의 체면에 맞지만, 다만 훈도 별차 등의 수본으로 보건대, 차왜(差倭)가 이른바 '남녀가 서로 간통하는 데는 원래 조건을 세워 죄를 징벌하는 일이 없었는데, 조선의 법률을 끌어와서 억지로 다른 나라 사람을 핍박하여 죽인다'고 한 것은 말의 뜻이 방자하고 쾌락하며 정상이 통탄스럽거늘, 역관들이 다시금 이치에 근거하여 엄하게 책망하여 같은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히지 않고, 다만 도서를 가벼이 허락할 수 없다는 것과 서계를 받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것과 일을 마친 뒤에는 절로 철공하는 사례 등의 말을 평상시대로 변론하여 다툼 것은 일이 극히 해괴하며, 앞으로 엄중하게 죄를 따지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하니, 수신(守臣)에게 분부하여 그로 하여금 다시 더욱 엄하게 신칙하게 하며, 서계 등본을 이미 도중에 보내어 보였으면, 회보가 도착하기 전에 갑자기 받들어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 형편이 그럴 듯하고, 재판이 왜관에 머물면서 날짜의 기한이 지난 뒤로는 전례에 따라 철공하되, 다만 그가 주간하는 일이 짐짓 조정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먼저 철공하는 것은 먼 곳의 사람을 접대하는 도리에 흠이 있는 듯하니, 짐짓 호행(護行) 재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두 차왜를 아울러 접대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도로 사례에 근거하여 정지하고 철공함이 사리에 합당할 듯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8년(1709) 10월 초9일 우부승지 신 허윤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기축(1709) 12월 11일

이번 12월 초10일 약방(藥房)에서 진찰하러 들어가 입시하였을 때 도제조(都提調) 최(崔)가 계품하기를, "왜인의 서계(書契) 일로 확정해야 할 일이 있어서 복계한 문

서를 가지고 왔으므로 좌상(左相)과 상의하니 진찰하러 들어갈 때 틈을 타고 계품하여 확정함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당초 왜인이 언천(彦千)의 교대 도서(圖書)에 관한 일로 와서 청하자 조정에서는 들어줄 뜻을 미미하게 보였다가, 그 뒤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에 '여인에게 간통을 범한 왜인을 내보내어 법대로 바로잡은 뒤에 도서를 허락할 수 있다는 뜻으로 서계를 지어 보냄이 마땅하다'고 하여, 묘당에서 복계하여 따랐는데, 재판 차왜가 '간통을 범한 한 건과 도서는 서로 관계없으니 이 한 조목을 깎아버리지 않으면 감히 되돌려 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 일은 조건이 절로 다르니, 도서의 일을 간통을 범한 일과 합하여 한 조목으로 여기는 것은 부당한데, 이제 이번 서계에서는 비록 그대로 허락하지 않았으나 잘 말을 하여, 범간(犯奸) 한 조목은 지워버리고 즉시 철거하게 함이 마땅하니, 승문원에 명하여 고쳐서 표를 붙여 계하하게 함이 어떠하며, 또 차왜가 돌아가기 전에 재판차왜가 중첩하여 도착함에, 동래부사가 먼저 도착한 차왜의 음식 제공을 거두는 일로 장계를 올렸는데, 또한 장계대로 철거하고, 지난 해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비록 기한이 지났으나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이웃나라와 사귀는 도리에 있어서 갑자기 철공(撤供)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다시금 공궤(供饋)하게 한다면 그 철공한 날짜를 계산하여 여러 달 양식과 반찬을 일일이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웃 나라 차인(差人)을 대접함에 너무 박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한 것은 옳으나, 이미 이전에 철공한 날자를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마치 빗을 갚는 듯함이 있어 사리가 그렇지 않으니, 이제 이번에 먼저 온 차왜를 지금부터 되돌려 공궤하는 것은 혹 가하더라도 이미 철공한 곳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끝내 부당한 듯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제조 조태채(趙泰采)가 말하기를 당초에 철공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미 철공한 뒤에 곧장 되돌려 공궤하는 것은 일의 체면에 부당하고 조정의 명령이 또한 전도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서계는 진달한 바대로 고쳐 보내고, 겨우 이미 철공하였다고 또 되돌려 공궤하게 하는 것은 일이 전도됨이니 속히 되돌려 돌아감이 마땅하다"고 하셨음.

경인(1710) 3월 28일

대마도 도주(島主)가 훈도(訓導)에게 해마다 지급하는 은화 1,000냥을 여러 역관 및 여러 상사(上司)에 소속된 관리[諸上司吏]에게 약간을 나누어주게 하는 것은 시행한지 이미 오래로 이미 잘못된 전례가 되었는데, 비록 이웃 나라와 교제하는 사이에 선물로 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돈 천금을 받으면서 어찌 서로 보답할 생각을 품지 않을 도리가 있겠으며, 우리나라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의 천금을 받게 하는 것은 국가의 체면에 있어서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오

월(吳越)이 송(宋)나라에 대하여 이미 내복(內服)하였고 조보(趙普)에게 과자황금(瓜子黃金)을 준 것도 한 때의 선물에 불과하였으나 오히려 조서(詔書)로 그 수량대로 황금을 하사하여²²⁰⁾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였으니, 이 일은 결코 하루라도 그대로 두어서는 불가하나, 훈도 별차가 왜인과 응대함에 그 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이들이 고생하며 분주하게 다니는 것이 오로지 자기의 생계를 위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니, 이제 금지하여 받지 못하게 하더라도 필시 받들어 행할 이가 없으며 일에 또한 장애 되는 것이 많아서, 반드시 조정에서 변통하여 그 수량에 준하는 대가를 지급한 뒤에야 우리 쪽에서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본부의 상세(商稅) 가운데 부산진 연향(宴享) 때의 군사 의장(儀仗) 인마(人馬)의 품삯 및 연경(燕京)에 가는 사신의 구청(求請) 비용으로 지급하는 구은(舊銀)이 300냥인데, 이는 근래에 새로 만든 일이나 만약 본부의 사례대로 대동(大同)에서 지출한다면 10리 거리를 오가는 품삯이 얼마나 된다고, 구청하는 물건 역시 어찌 꼭 본부에서 보낸 것보다 훨씬 지나치게 하겠습니까? 호조(戶曹)에서 부리는 궁각계(弓角契)²²¹⁾ 사람들은 이미 궁각(弓角)의 이익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부자가 되도록 하는데 족하였고, 또 구은 100냥을 지급하여 식량으로 삼게 하니, 비록 양식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만금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찌 양식이 없는 걱정을 하겠습니까? 만약 차인(差人)이라고 하여 반드시 양식을 지급하려 한다면 세금을 거두는 관리의 사례와 꼭 같이 하여도 불가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은자가 이미 400냥이 됩니다. 본부에서 모양(某樣)의 사사로운 비용에서 추이(推移)하여 또 300냥을 지급한다면 이미 700냥이 되고, 그 나머지 부족한 수량은 호조에 갚은 세은삼(稅銀蔘) 가운데서 덜어내어 지급하여 1,000냥의 수량을 맞추고, 도주가 주는 1000냥은 본부에서 서계를 갖추어 도해역관(渡海譯官)에게 부쳐서 도주(島主)에게 되돌려 주어 뒤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역관이 이전처럼 돈을 받는 자가 있을 경우에 일죄(一罪)²²²⁾로 논한다면 큰 비용을 쓰지 않고도 국가의 체면을 이로써 높이고 적정(敵情)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일을 도모하고 변방을 통제하는 계략에 있어서 또한 작은 일이 아닌데, 이제 신이 조목으로 나열한 것이 혹 자잘하여 꼭 위에 알릴 필요가 없을 것도 있으나, 모두 상역(商譯)들이 불편하게 여겨 원망하고 고통스스워 하는 것에 관계되는 바라 계하(啓下)한 일이 없지마는 그대로 따라 행하기는 불가하므로, 죽은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²²³⁾이 부사가 되었을 적

220) 오월(吳越)이…… 황금을 하사하여: 송(宋)나라 태조 개보(開寶) 4년(971) 겨울에 오월왕(吳越王) 전숙(錢俶)이 아들 유준(惟濬)을 시켜 신흥국 송나라의 재상 조보(趙普)에게 서신과 해물(海物) 10 병을 보내왔는데, 마침 조보의 집으로 행차하였던 태조가 이를 보고 병을 열어보게 하였더니 그 안에는 과자(瓜子:참외씨) 황금이 가득하였다. 태조는 “저쪽에서는 국가의 일이 모두 너희 서생(書生)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라고 하며 이를 모두 조보에게 하사한 일이 있었다.

221) 궁각계(弓角契): 활을 만드는 재료를 공물로 바치는 계.

222) 일죄(一罪): 사형(死刑)이나 교형(絞刑)과 같은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

223) 민정중(閔鼎重, 1628-1692): 인조 기축(己丑, 1649)에 문과에 급제하고, 무술(戊戌, 1658)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다가 이듬해에 예조참의로 갈라졌으며, 관직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에 역관이 천금을 받는 일을 논하여 장계를 올렸으나, 원망하는 말이 떼지어 일어나 소란스러워 마지않았습니다. 무거운 명망을 지녔던 선배도 오히려 이러하였는데 하물며 신과 같이 형편 없고 근거가 외롭고 돌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어찌 스스로 위태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마는, 근래에 저쪽의 실정이 날로 교만하고 국가의 체면이 날로 낮아져서 참으로 매우 통탄스러운 마음 절박하며, 이 또한 변통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기로 감히 이렇게 일일이 계품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변방의 일이 날로 점차 해이해져서 만약 차츰 정리하여 엄하게 규정을 세우지 않으면 실로 수습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아래와 같이 조목을 벌여 바야흐로 묘당(廟堂)에 명하여 익히 따져서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데, 첫째, 역관이 초량 마을에 살고 있는데 왜인이 약조 가운데 훈도 별차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하여 종일토록 민가에 있으면서 끊이지 않아, 마침내 두 호구에는 왜인이 없는 집이 없어서 혹은 한 두 사람, 혹은 서너 사람이 밤낮 없이 우리 백성과 서로 함께 거처하여, 혹은 장성한 남자가 없는데도 홀로 부녀와 상대하기도 하여 정분이 지극히 친밀하고 살림의 유무를 함께 하기도 하고, 역관은 피접(避接)²²⁴한다고 하여 각기 여염집을 차지하여 사사로이 각자 숨기도 하여, 이제 왜인과 서로 접촉하며 거주하는 공청(公廳)은 황폐하게 된지 오래되었거늘, 민간인에게 곤장을 무겁게 쳐서 경계함을 알게 하고, 역관은 재촉하여 예전 거처하던 곳으로 되돌아오게 하며, 주민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담장을 쌓고 문을 설치하여 이제는 왜인과 우리 주민이 차츰 구별이 있게 되었으며, 담을 쌓고 문을 설치한 곳에는 5일로 나누어 공청(公廳)을 지키는 도장(都將) 1인과 부장(部將) 1인 및 달리 급료로 주는 쌀을 받으면서 긴요한 직책이 없는 자 2인을 시켜 밤낮으로 지키게 하는데, 이는 반드시 조정의 정식(定式)이 있어야 영구히 준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로는 역관이 혹 소통사(小通事)라 칭하면서 밤낮으로 부리는 자들을 그 곁의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기려고 하니 점차 예전 동네로 되돌릴 계획이며, 각별히 엄하게 금하여 그 조짐을 막고 왜인이 몰래 새 동네로 오는 자는 약조대로 잡아서 관수(館守)에게 부쳐 죄를 다스리게 할 것이며, 거절한 주인에게는 잠상의 법률을 적용하고, 왜인이 몰래왔으나 즉시 관에 고하는 자는 그 죄를 면하되, 몰래 왜인과 접촉하고는 즉시 적발하지 않은 자는 그 통(統) 내의 네 집 역시 또한 죄를 무겁게 하며, 왜인이 새로 설치한 문에서 나오면 문을 지키는 자에게 각별히 죄를 무겁게 하고, 다른 곳에서 담을 넘었다더라도 문을 지키는 도장 이하의 사람들이 매양 민가에 조사하여 즉시 적발하지 않으면 도장 이하를 각별히 엄중하게 죄를 주고, 역관이 일이 있어서 거처를 옮기고자 하는 자는 본부(本府) 내로 되돌아와서 거주하고 그 근처 여염집을 사사로이 점거하지 못하며, 역관이 왜관을 출입하거나 왜

224) 피접(避接): 돌림병이나 전란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을 옮김.

인이 훈도 별차의 집에 나오는 자는 모두 인원 두 사람을 갖추어 상대하되 혼자서는 상대하지 못하게 하는 일로 규정을 정하는 일이고, 그 하나는 묘당(廟堂)의 분부로 인하여 매일의 교역을 엄금하고 여섯 번 개시(開市)하는 날에만 미곡(米穀)을 교역하게 하였는데, 왜인이 간혹 우리쪽 사람과 싸우거나 모욕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통사(通事)와 부장(部將) 20인을 별도로 정하여 대문 밖에 벌어서 피차 간의 싸움과 충돌을 방지하게 하고, 교역하면서 값을 받는 것은 왜관 문 안에서 하는 것이 예인지라 그러므로 부장 6인을 별도로 정하여 문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우리쪽 사람과 저쪽이 엮히는 것을 방지하여, 이름을 점고하여 들이고 이름을 불러서 나오며, 모두 나온 다음에 군관(軍官)과 수세관(收稅官)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하여, 시행한 지 대여섯 달 만에 이미 단서가 있게 되었는데, 만약 중간에 다시 변경하면 일이 있을까 극히 우려되니 조정에서 규정을 정하여 영구히 준행하도록 분부하여 주시라는 것과, 그 하나는 상역(商譯) 가운데 물화(物貨)를 피집(被執)한 사람이 참여하여 은을 낼 때, 왜인이 아끼는 자에게는 피집한 것이 비록 시일이 가깝더라도 수량에 맞추어 지급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시일을 늦추어 뒤늦게 하면서 또 수량에 맞추어 주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상역이 부산하게 아첨하여 다투어 저들의 심복이 되니, 국가에서 통제하는 계책에 있어서는 실로 가장 큰 우려가 되니, 지금부터는 어떤 상인 어떤 역관을 막론하고 도수(都數: 총계금액)를 받아 나와 문을 나온 뒤에 훈도 별차에게 담당하게 하여, 그들이 거처하는 곳이나 혹은 공청에서 일제히 모여 공론을 하여 한결같이 날짜의 원근과 물화의 다소에 따라 대등한 수량으로 나누고, 그 중 혹 균등하지 못한 것이 있는 자는 관에 고하여 처결하며, 물화를 대문에 들이는 기록은 곧 은을 내어오는 근본이니 이제부터 견고하게 봉함하여 서로 전하며, 만약 중기(重記)²²⁵⁾가 있으면 사본 한 건을 훈도 별차에게 지급하여 뒷날 은을 낼 때 만약 서로 어긋남이 있으면 모두 잠상(潛商)으로 논단하고, 역관이 자기 이름으로 물화를 피집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물화로 이름을 빌려주고 이익을 나누는 까닭에 역관이 왜인들의 부림을 받게 되니, 변방의 계교가 날로 우려스럽게 되는데, 들으니 이전에 역관이 팔고자 하는 물건이 있으면 서울에 사는 사노(私奴)로 일컬어 왜인으로 하여금 역관의 물건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역관의 이름으로 피집하지 말고, 호조(戶曹) 및 각 관아의 물화 역시 모두 상인의 이름으로 피집하여 국가의 체면을 높이고, 또한 각 관아에서 피집한 값을 먼저 받거나 많이 받아서 상인에게 해마다 나누어 책정된 수량을 빼앗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규정을 정하였는바, 이상의 세 조목은 대체로 모두 좋으니 이대로 규정을 정하여 엄하게 신칙하여 영구히 준행하게 하되, 그 중에 왜인과 몰래 접촉하는 자는 통내(統內)의 네 집에 미리 적용할 법률의 명분을 정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야 마땅할 듯하고, 문을 지키는 도장 이하가

225) 중기(重記): 사무를 인계할 때 전하는 문서와 장부.

민간을 조사할 즈음에는 아마도 폐단이 있을 터이니 혹 편하기 어려울 듯하고, 훈도 별차의 물화를 비록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피집한다 하더라도 이익이 있는 곳에 왜인들의 부름을 받게 되는 데는 필시 다름이 없고, 이름을 바꾸어 거짓으로 칭할 때 또한 혼잡하여 쟁탈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수신(守臣)에게 명하여 다시 조정하여 형편을 따져서 장계로 알리게 하며, 그 하나는 대마도 도주가 훈도에게 해마다 지급하는 은(銀) 1,000냥을 여러 역관 및 여러 상사(上司)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다른 사람의 돈 천 냙을 받고서 어찌 은혜를 생각하며 갚으려는 도리가 없겠으며, 우리 임인(任人)으로 하여금 저들의 천금을 받게 하는 것은 국가의 체면에 있어서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마는, 훈도 별차가 왜인을 대응하는 데는 그 비용이 적지 않은데, 이제 금지하여 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그 형편이 또한 장애됨이 많아서 반드시 조정에서 그 수량에 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도주가 준 것은 본부에서 서계를 갖추어 도해역관에게 부쳐 도주에게 되돌려준 뒤로는 이렇게 하지 말게 하고, 역관이 만약 이전대로 돈을 받는 자를 일죄(一罪)로 논한다면 국가의 체면이 높아지고 적정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하나는 훈도 별차는 고생스런 일이고 또한 중대한 직책인데, 그 급료 쌀이 스스로 먹기에도 부족하여 항상 돌려서 팔아 양식을 취하니 그 급료를 더 지급하여 청렴함을 권유하라고 하였으며, 그 하나는 연경에 가는 역관이 무역하는 백사(白絲)를 동 역관이 스스로 가져 와서 왜관에 피집하면서 공화(公貨)라고 칭하는 것은 마치 조정에서 판매하는 듯함이 있어서 이웃나라에 알리는 것이 불가하니 곧바로 동래 상인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면 값이 필시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는바, 이상 세 조항은 모두 의견이 있는데, 임역(任譯)이 해마다 천금을 받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데 조정에서 이미 혹 알았다면 마땅히 통절하게 금지하여 혁파함이 옳은 것이지 어찌 그 응대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고 하여 명분 없는 천금을 대가로 지급하겠으며, 또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면 엄하게 방지하지 않아서는 불가하나 이미 시행한 지 200년에 피차간에 마치 당연한 사례처럼 보며, 이제 비록 대신 지급하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농간을 부리는 구멍이 없이 끝내 잘못된 버릇을 바로잡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으며, 혹 이로 인하여 뜻밖에 난처한 사단이 있게 되면 국가의 체면을 손상하는 것이 도리어 더욱 심할 것이니 이제 가벼이 의논하는 것은 어렵고, 훈도 별차의 급료는 매월 쌀 1섬 콩 6말을 지급하고 이 외에 왜료(倭料)를 들여줄 때 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있으니 비록 박하다고는 하나 입에 풀칠을 못할 지경에 이르지 않는 듯하고, 이제 비록 그 수량을 더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판매를 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고, 근래에 상역들이 서로 참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만약 역관들의 물화를 상인들의 이름으로 기록하면 이름을 빌릴 때 혹 조종의 폐단이 있을 것이고 은을 낼 때에도 서로 바뀌는 우려가 없지 않으며, 꼭 공화라고 칭하지 않고 곧바로 역관의 이름으로 이전대로 피집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니 아울러 이제 집짓 그대로 두며, 시행을 허락하는 조목은 호조에서 각 관아 및 본도에

한결같이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9년(1710) 3월 28일 우부승지 신 임윤원(任胤元)²²⁶⁾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인(1710) 4월 초9일

동래부사 권이진이 3월 27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25일 관왜(館倭) 29명이 새로 설치한 문 밖으로 나왔다가 즉시 관소(館所)로 들어갔으며, 15명이 또 나와서 서화병(西化兵) 근처로 갔다가 또 즉시 왜관으로 돌아갔다는 연유는 방금 이미 치계하였는데, 이달 26일 신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조세망(趙世望)의 치통 내용에, 방금 수문군관(守門軍官) 복병장(伏兵將)의 고목(告目) 및 거리(巨里) 통사(通事)의 진고(進告) 내용에 '관왜 57명을 삼순(三巡)으로 나누어 생선과 채소를 매입한다고 칭하면서 각기 미승(米升)을 가지고 사질도(莎叱道) 구덕산(九德山) 길로 갔다'는 진고에 의거하여 치통하는 일이라고 치통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동 첨사가 또 치통한 내용에는 "당일 관왜 57명이 생선과 채소를 매입한다고 칭하면서 사질도 구덕산 길로 나갔다고 치통하였거니와, 그 중 5명이 왜관의 북쪽 담장을 넘어 나갔다고 하기로 듣고는 극히 놀라 타일러 방색하기 위하여 급히 저희 진(鎭)의 장교(將校)를 보냈고, 또 훈도 별차 등에게 전령하고 신척하였더니, 훈도 김도남(金圖南)²²⁷⁾과 별차 최한진(崔漢鎭)²²⁸⁾ 등의 수본에 '왜인 57명이 오늘 사시(巳時) 썸에 밀고 나와서 장차 사질도 경계로 향한다는 거리 통사의 내고(來告)에 의거하여 동 왜인이 도착한 곳에 달려가서 여러 가지로 타일렀는데, 교활한 왜인 등이 끝내 그대로 구덕산을 넘어서 목장촌(牧場村)으로 돌아왔기에 간신히 책망하고 타일러 그대로 데리고 신시(申時) 썸에 왜관 안으로 들여보냈거니와, 그 곡절을 물었더니 한결같이 어제 말한 바와 같이 생선과 채소를 시장에서 사지 못한 일 때문이라고 운운할 따름 다른 말은 없기로 장차 관수 왜에게 가서 다시 준엄하게 책망할 계획이며,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수본 및 치통한다" 하였고, 27일에 동 첨사가 군관(軍官) 출신 서후백(徐後白)을 보내어 신을 면대하여 말하기를 "어제 군관 서후백을 보내어 뚫고나온 사연을 관수에게 따져 묻기 위하여 왜관에 들어갔더니, 관수 이하가 모두 놀라고 기뻐하며 영접하고는 자세히 곡절을 진술하였는데, 그 말이 '이번 23일 훈도와 정녕 서로 약속하기를 24일에 올라가서 공작미와 생선과 채소 등의 일을 동래 영감 전에 진달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226) 임윤원(任胤元, 1645-?): 풍천 임씨로 자가 사장(士長)이다. 숙종 13년(1687) 문과에 급제하여 감사를 역임하였다.

227) 김도남(金圖南, 1659-?): 우봉 김씨로 자는 중우(仲羽)이다. 숙종 4년(1678)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228) 최한진(崔漢鎭, 1678-?): 경주 최씨로 자는 안국(安國)이다. 숙종 34년(1708)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통정대부에 이르렀다.

그 회보를 고대하고 있다가 뒤에 탐지하였더니 훈도는 그 집에 누워 있으면서 끝내 올라가지 않다가 25일에야 천천히 올라갔으나 끝내 한 마디 말도 없이 물러났습니다. 우리들이 고하는 사유는 오로지 훈도 별차에게 달려 있는데 이미 훈도 별차를 통하여 고할 길이 없으므로 대략 뚫고나가는 모양을 보여 동래 영감의 힐문을 받아서 변통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힐문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오늘 또 어제와 같은 일을 하였는데, 이제 부산 영감께서 사람을 시켜 와서 물으니, 이제부터는 동래 영감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회보를 기다리는 사이에 내일은 다시 감히 뚫고나가지 않으려고 하니, 청컨대 우선 훈도 별차의 죄를 다스려 달라고 누누히 이야기하였다”고 와서 고하였음. 신이 왜인의 사정을 탐지하였더니 전 공작미(公作米) 두 해 분을 내어서 한꺼번에 다 받은 뒤에 그대로 경인조(庚寅條) 공작미를 청하여 가을 사이에 또 받으려고, 처음에는 뚫고나오는 형세를 하여 위협함으로써 청하는 바를 모두 이루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 기로, 2월 말부터 비선(飛船)이 여러 차례 오간 것은 오로지 이 일을 의논함인데, 이제 와서는 훈도가 중간에서 잘못하여 생선 시장의 여인이 오지 않는 사실에 핑계를 댄 것이라, 그 정상이 절절히 해괴하고 통탄스러우나, 교활한 왜인의 공갈은 단지 이 한 가지 일에 있지만, 이제 만약 예사 일로 여겨 그대로 두고 뚫고나오면 몰아서 넣어 보내고 끝까지 터럭만큼도 놀라 움직이는 일이 없다면, 나귀의 재주가 고갈되고 보면 원래 공갈할 일이 없을 수가 있으며, 그대로 무거운 벌을 주어 마땅히 지급할 물자를 감한다면 뒤에 비록 권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을 듯하며, 별차 한찬흥(韓縑興)²²⁹⁾이 병을 칭하고 닉 달이나 아직도 수행하지 않았고, 이제 이번 관왜가 뚫고나올 때도 역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그 일의 체면에 있어서 하루라도 그대로 두는 것이 불가하여 그대로 파직하여 내쫓았으니 그 대신을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각별히 잘 선발하여 성화같이 내려보내도록 하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관왜 등이 생선과 채소를 매입한다고 칭하면서 구덕산을 넘었으므로 간신히 책망하고 타일러 데려다가 왜관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하였는바, 교활한 왜인의 공갈은 단지 뚫고나오는 한 가지 일이 있을 뿐인데, 별차 한찬흥이 병을 칭탁하여 닉 달 동안 아직도 수행하지 않아서, 일의 체면에 있어 그대로 두는 것이 불가하기에 파직하여 내쫓았으니, 그 대신을 사역원에 명하여 각별히 선발하여 성화같이 내려보내라고 하였는데, 근래 왜인이 약조를 어기고 이렇게 뚫고나오는 일이 있는 것은 변방의 정세에 있어서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니, 짐짓 앞으로 사태를 살펴서 조치하고, 별차는 병을 칭탁하여 닉 달 동안 아직도 직책을 살피지 않고 있어서 그대로 두기는 어려운 형편이니 그 대신을 해원에 명하여 각별히 선발하여 밤낮 없이 내려보

229) 한찬흥(韓縑興, 1680-?): 청주 한씨로 자는 기중(起仲)이다. 숙종 34년(1708) 역과에 올라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내라는 뜻으로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49년(1710) 4월 초9일 동부승지 신원성유(元聖兪)²³⁰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인(1710) 4월 14일

이번 4월 12일 비변사 유사당상(有司堂上)인 관돈령부사 민진후(閔鎭厚)와 행호조판서 이인엽(李寅燁)이 청대(請對)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민(閔)이 계품하기를, “대신이 유고(有故)하여 비변사의 공사(公事)를 복주(覆奏)하지 못한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 급히 품의하여 확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감히 이렇게 청대하였습니다. 이 두 통은 경상좌수사 이상집(李尙穰)의 장계이고 한 통은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인데, 모두 왜인이 뚫고나온 사건에 대한 일입니다. 다만 이상집은 훈도 별차들이 농간한 실상이 있다고 죄를 청하였고, 권이진은 왜인이 훈도 별차를 쫓아내려고 전례에 따라 뚫고나온 것이라 조정에서 훈도 별차에게 죄를 주지 않는 것이 이미 전례가 되었으니 이제 또한 죄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였더니, 상감께서는 “권이진의 장계가 옳은데, 만약 훈도 별차에게 죄를 준다면 어찌 뒷날의 폐단이 없겠는가?” 하셨음. 이(李)는 말하기를 “수영은 조금 멀고 동래부는 조금 가까운데, 훈도 별차들의 사정은 동래부에서 아마도 상세히 알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훈도 별차로서 왜관에 출입하니 왜인의 동정을 모를 이가 없고, 만약 뚫고나올 기미를 알고서 즉시 고하지 않았다면 진실로 그 죄가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아서 몽매하여 깨달아 살피지 못했다면 또한 경계하여 책망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되니, 본도의 수사에게 명하여 곤장을 친 뒤에 그대로 직책을 보살피게 함이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고, 민(閔)은 말하기를 “이상집이 이른바 농간한 실상이란 한 것이 반드시 그러한지는 알 수 없고, 또한 바깥의 논의를 듣자니 훈도 별차들이 부사를 꺼려하여 왜인과 같이 모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뚫고나오게 하여 부사를 쫓아보내려는 계획을 하였는데, 이제 부사 권이진이 훈도 별차들을 조절하느라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하나 이 또한 그것이 반드시 그런 줄은 알지 못하겠으나, 왜인이 뚫고나올 때 훈도와 별차가 필시 기미를 몰랐을 이는 없으니 잘 주선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려운바, 이렇게 곤장을 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만약 잡아다가 다스린다면 곧 왜인의 바람대로 맞춤이니 헤서는 안된다. 수사(水使)에게 명하여 곤장을 치게 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였고, 민이 말하기를 “출사(出使) 역관 등도 또한 한가지로 곤장을 치라는 뜻으로 수사에게 분부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비변사(備邊司) 예조(禮曹).

230) 원성유(元聖兪, 1640-?): 원주 원씨로 자는 명어(命汝)이다. 숙종 9년(1683)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부윤을 역임하였다.

동일 비변사의 유사당상(有司堂上) 판돈령부사 민(閔)과 행호조판서 이(李)가 청대(請對)하여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민이 계품한 바**, “이 또한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인데 거제 왜학 김시박(金時璞)²³¹이 사정을 물은 가운데 제3선의 격왜 40명이 제2선에 함께 탔다는 설은 착오를 면치 못했으니 그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 운운 하였는데,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자, 이가 말하기를 “김시박은 일찍이 다른 죄로 이미 파직되었으니 수영에서 잡아다가 곤장을 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이미 파직하였으니 곤장을 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셨음. 비변사(備邊司) 예조(禮曹)에 상감의 뜻을 전함.

경인(1710) 5월 11일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로 인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경상좌수사 이상집과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올해 2월에 나온 정해조(丁亥條) 제16선에 격왜 20명이 함께 타고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관소에서 배를 타고 돌아들어갈 때, 훈도 별차 등이 당초 숫자를 상세히 살펴 알지 못하고 수분하였다가, 그 배가 표류하여 거제 왜학이 사정을 물을 때 인원 수가 어긋난 일이 있게 되었으니 소홀하여 누락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지라 훈도 김도남(金圖南)과 가별차(假別差) 한세범(韓世範) 등의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왜선이 왕래하면서 실는 인원 수를 일일이 고하여 알리는 것은 실로 변방의 정세에 관계되는 것이거늘, 당초 격왜 20명 외에 왜인 등이 몰래 7명의 수를 더하여 실어보낸 것은 그 정상이 극히 통탄스럽고 밍거니와, 임역(任譯) 등도 전연 잘 살피지 못하여 인원수 밖의 왜인을 뒤섞어 신고 갔다가 끝내 표류 정박하여 사정을 물을 때 탄로된 것은 놀랄 만한 일로서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당해 훈도 김도남과 가별차 한세범은 아울러 잡아다가 심문하여 죄를 정함이 어떠할지? 강희 49년(1710) 5월 11일 동부승지신 허윤(許琬)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인(1710) 6월 14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간통한 죄를 범한 왜의 죄인과 비(婢) 감옥(甘玉) 및 중매한 왜의 죄인과 초랑

231) 김시박(金時璞, 1684-?): 춘천 김씨로 자는 명중(明仲)이다. 숙종 31년(1705)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교회(教誨)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의 부장(部將) 송중만(宋仲萬)은 당초에 이미 모두 일일이 자백하였으니 본디 숨긴 사정이 없고, 설령 이 일에 의심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한밤중에 담을 넘어 왜관에 밀고 들어간 죄는 원래 터럭 하나라도 살아날 방법이 없으며, 왜인과 동시에 추고(推考)²³²⁾하는 것은 이제 할 수 없는 형편이니, 동 감옥과 중만의 죄상을 역시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여 달라 하였는바, 무릇 피차간에 서계(書契)를 왕래할 때 반드시 별폭(別幅)의 예단(禮單)이 있어야 하는 것이 본디 이웃나라와 교류하는 예인데, 원래 서계의 답장을 이미 받아가지 않았으니 동 예단은 들어주는 것이 부당하나, 조정에서 이미 저쪽 왜인의 진상(進上)을 받았으면 전연 답례가 없어서는 불가할 듯하니, 가격에 상당하는 물건으로 계산하여 지급함이 마땅하며, 상선연(上船宴)의 예단도 우리가 이미 그들의 공궤(供饋)를 거두었고 그들이 또한 답장을 받아가지 않아 또한 본색(本色)²³³⁾으로 들어주는 것은 불가하니, 이 또한 가격에 상당하는 물건으로 들여주게 하며, 간통한 왜인의 죄인 등은 당초 이미 모두 자백하였으니 다시는 은폐된 사정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 반드시 죄를 범한 왜인과 동시에 추고하고자 하는 것은 대개 상세히 조사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요 그 죄상에 의심할 만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거니와, 전일 본부 장계 내용의 사연이 엄중하고 분명할 뿐만이 아니므로, 앞으로 만약 도중(島中)에서 죄를 범한 왜인을 잡아 보내어 그대로 같은 법률을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을 영구히 약조로 하기로 한 것이 과연 장계에 진술한 바와 같다면, 도중의 서계가 나오기를 기다려 다시 계품하라는 뜻으로 복계하여 분부하였거늘, 이제 도중의 회보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죄인의 처단을 청하는 것은 실로 당초 계문하여 확정된 본뜻과는 어긋남이 있어서 매우 타당하지 못하니, 동 간통한 왜인의 죄인 등은 이제 짐짓 그대로 가두었다가 죄를 범한 왜인을 잡아 보낸 뒤에 처단함이 어떠할지? 강희 49년(1710) 6월 14일 우부승지 허윤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경인(1710) 8월 28일

이번 8월 26일 약방(藥房)에서 진찰하러 들어와 입시하였을 때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계품한 바,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에 ‘관수왜에게 공궤를 걷은 지 이제 이미 여섯 달이라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피 호소하기에, 한 해의 양식을 거두어 삼가하지 못한 죄를 면죄받는 것을 변방의 신하가 저지하여 막지 못하고 이렇게 감히 사유를 갖추어 고하여 알린다’고 하였으며, 그 아래에 또 최상집의 일을 논하면서 ‘서계를 전하지 않은 죄를 가벼이 용서하는 것은 변방의 일에 있어서 관계가 극히 중대

232) 추고(推考): 죄과를 물어서 살핌.

233) 본색(本色): 본래의 명목.

하여 사유를 갖추어 품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신은 이 두 가지에 일에 있어서 가만히 각종의 소회가 있기에 한 번 진달하려 하였으나 오래도록 입시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관수왜가 어지러이 뚫고나온 죄는 진실로 공케를 거두기에 합당하나 이제 이미 여섯 달이 되었는데도 끝내 되돌려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그들이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새롭게 하는 길을 끊는 것입니다. 지난 해 공케를 거둘 때는 마침 왜인이 장차 돌아갈 때였는지라 그러므로 그대로 들어갔으나, 이번에는 돌아갈 기한이 아직 멀다고 하는데, 만약 봉록(俸祿)을 빼앗는 사례와 같이 그들이 절박하게 하소연할 때 그대로 다시 더 책망하고 타일러 되돌려 지급하도록 허락하게 한다면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시행하는 도리에 합당할 듯하고, 최상집의 일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간교한지 어떤지를 논하지 말고, 저쪽 사람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서계를 전하지 않은 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국가의 수치가 아니겠으며, 만약 혹은 역관으로 삼을 사람이 부족하여 가벼이 무거운 죄를 사면하였다고 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심하니, 사역원 도제조가 변통하여 풀어준 뒤에 여러 논의에 준엄함이 많기로 짐짓 사행(使行) 역관에는 차출하여 넣지 않았는데, 다시 해당 사역원과 묘당에 명하여 반복 상의한 뒤에 품의 조치하게 하면 어떠할지? 상감께서는 “공케를 거두는데 만약 기한이 없다면 끝내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워지게 하는 도리가 아니니, 이제 되돌려 지급하는 일로 분부하고, 최상집의 일은 동래부사의 장계가 지극히 옳으니 통신사(通信使)의 일행에는 보내지 않는 것이 옳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만약 통신사의 일행에 보내지 않는다면 전일에 입었던 죄는 어떻게 조치합니까?”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석방하도록 허락한 것은 모두 통신사의 일행에 보내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이미 보내지 않으니 어찌 그대로 두겠느냐?” 하였고, 민진후가 “그렇다면 유배지로 돌아가게 할까요?” 하였더니,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경인(1710) 9월 초6일

예조에서 복계(覆啓)하기를, “방금 접한 장악원의 보고에, 전정(殿庭)²³⁴의 헌가(軒架)²³⁵ 음악에 사용되는 종과 석경(石磬)을 제조하는 일로 일찍이 이미 판하(判下)하였으나, 종과 석경은 공사가 이미 큰 일인데다 체면이 중대하여 본원에서 홀로 감당하여 조성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본원의 등록을 상고하면 악기를 조성할 때 후 청(廳)의 칭호를 설치하기도 하고 후 조성소(造成所)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이제 이번 종과 석경의 공사는 비록 중대하다고 하지만 청을 설치하거나 조성소를 설치

234) 전정(殿庭): 궁전의 뜰.

235) 헌가(軒架): 종(鍾)과 경(磬)을 사용하는 악대(樂隊)의 일종.

하는 것은 과중한 듯하니 호조와 공조의 낭청(郎廳)에게 명하여 본원의 관원이 함께 각기 원역(員役)²³⁶ 및 기술자를 데리고 한결같이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척도대로 입회하여 정밀하게 제조하라는 뜻으로 해조 및 해당 장악원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유히한다” 하셨음.

경인(1710) 9월 15일

예조에서 복계하기를, “방금 장악원에서 보고한 바에 따라 전정(殿庭)의 헌가(軒架)에 사용될 종과 석경을 호조와 공조 낭청에게 명하여 본원의 관원과 함께 입회하여 정밀하게 제조하라는 일로 이미 유히가 내렸는데, 방금 접한 본원의 보고에는 남양(南陽)에서 옥을 채굴하는 것이 하루가 급하지만 현재 담당 당상(堂上)이 없어서 문서를 보고할 곳이 없고 품의하여 확정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지경이 되었는데, 짐짓 청(廳)이나 소(所)나 간에 호청하는 일이 없으면 특별한 공작을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속히 변통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초 호조와 공조 낭청에게 명하여 본원의 관원과 더불어 같이 정밀하게 제조하라 한 것은 대개 한푼이라도 폐단을 덜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나, 만약 담당 당상이 없으면 무릇 문서를 발송하여 거행할 때 과연 불편하고, 일의 체면이 또한 구차한 듯하여 칭호를 정하는 일이 없어서는 불가하니, 종석경 조성청(鍾石磬造成廳) 당상 낭청을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상고하여 차출하고 겨울이 되기 전에 진작 일을 마치게 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유히한다”고 하였음.

신묘(1711) 3월 27일

동래부사 권이진이 3월 18일에 성첩한 장계. 왜인의 일공 잡물을 들어주는 담당이 5일 색리(色吏)에게 있는 폐단은 전에 이미 장계로 알렸을 뿐만 아니라, 5일 색리를 혁파하는 일로 일찍이 전교(傳敎)가 있었으나 잡물을 들어주는 일 때문에 즉시 혁파하지 못하였는데, 5일 잡물을 이미 쌀로 바꾸었으면 색리를 혁파한 뒤에 색리(色吏) 차지의 생어(生魚)와 응련(鷹連)²³⁷ 등의 작미(作米) 2,000여 섬 및 이번의 작미 300여 섬을 운미감관(運米監官) 등패(等牌)의 공작료미(公作料米)로 모두 들어주되, 왜인이 매 섬에 이수두(二手斗)를 받으므로 감관이 또한 견디기 어려우니, 잡물로 주는 5일 색리 차지의 쌀은 받아올릴 때 낙정미(落庭米)를 감관 등이 취하여 사용한 뒤

236) 원역(員役): 해당 관원과 일꾼.

237) 응련(鷹連): 사냥용의 매, 응자(鷹子).

위 항목의 쌀을 감관 등패에게 시켜 들어주는 일을 묘당에 명하여 속히 품의 조처하고 분부하여 지금 즉시 거행하도록 해 주시되, 이런 일은 비록 매우 미세하지만 변방에서는 비록 터럭만한 일이라도 조정에서 분부가 있지 않으면 준수하여 거행할 수가 없기로 황공하오나 감히 연유를 계품하는 일로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권이진의 장계를 보면 왜인의 일공잡물을 들어주는 담당인 5일 색리를 혁파한 뒤로 5일 잡물을 이미 작미(作米)하였고 색리 차지의 생어(生魚)와 응련(鷹連) 역시 작미하여 이번에 작미한 300여 섬과 함께 모두 운미감관 등패의 공작료미(公作料米)로 모두 들어주되, 왜인이 매 섬에 이수두를 받으므로 감관 역시 건디기가 어려우니, 잡물로 주는 5일 색리 담당의 쌀은 받아들일 때 낙정미를 감관 등이 가져다 사용한 뒤 감관 등패로 하여금 들어주는 일을 묘당에 명하여 속히 품의 조처하여 달라 하였는바, 일의 편의 여부를 분부에서 필시 이미 살펴 해야겠을 것이고 또한 대단한 변통이 아니니 이대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50년(1711) 3월 27일 우부승지신 한배주(韓配周)²³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묘(1711) 4월 25일

비변사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재신(宰臣)을 특별히 보내어 이미 위로한다고 말을 하였으니 마땅히 어첩(御帖)의 예단이 있어야 할 터이니 승정원과 해조에 분부하여 속히 거행하게 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윤택한다” 하셨음.

신묘(1711) 5월 12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²³⁹의 장계를 보면 왜인이 구은(舊銀)을 통용하는 일로 서계(書契)를 가지고 나오면서, 예전 은화 17,000냥을 우선 비선(飛船)²⁴⁰으로 싣고 나옴으로 인하여 훈도 별차 등이 관수왜와 문답한 이야기를 진술하고 자기 소견을 덧붙여서는, “당초 육성은(六星銀)²⁴¹을 바꿀 적에 우리나라에서 누차 책망하고 타일렀는데, 이제 저쪽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다시 팔성은(八星銀)²⁴²을 통용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할 수 없으나, 임의로

238) 한배주(韓配周, 1657-1712): 숙종 을유(乙酉, 1705)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239) 이정신(李正臣, 1660-1727): 숙종 기묘(己卯, 1699)에 문과에 급제하여 신묘(辛卯, 1711)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도승지와 경기관찰사를 역임하였다.

240) 비선(飛船): 통신을 위하여 임시로 운행하는 속도가 빠른 배.

241) 육성은(六星銀): 육성은(六成銀). 순도 60%의 은.

내리거나 올리거나 감히 조종의 권한을 희롱하니 그 버릇이 가증스럽거나와, 하물며 그 육성은과 함께 통용하자는 설은 아주 매우 난잡하여 그 폐단이 우려되는데, 혹 팔성은을 사용하거나 혹 육성은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의 육성은만 사용하는 것보다 나을는지, 짐짓 그들의 청대로 그 은을 제련하여서 그 말의 허실을 시험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한데,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무인년(1698)으로부터 육성은으로 바꾸어 고친 뒤로 중간에 또 보자은(寶字銀)을 만들어 팔성은보다 낮고 육성은보다 높다고 일컬었으나, 제련하여 그 품질을 시험함에 이르러 그 계교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제 또 우리나라에 먼저 통고하여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팔성은을 복구하는 청을 하면서 곧장 구은을 내보내는 것은, 그 임의로 낮추었다 높이는 정상이 참으로 지극히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른바 도주(島主)가 그 매매의 이익을 잃음을 민망하게 여겨서 예도의 여러 집정(執政)에게 폐단을 설명하고 간쑤꾸[關白]에게 돌려 고하여 다시 구 은화를 통용하는 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것이 과연 실상인지 알 수 없으나, 육성은으로 변개할 당초에 조정에서 이미 마지막에 폐단이 있을 것임을 우려하면서 시행을 허락하였던 것은 대개 일의 형편이 부득이하였던 데서 나온 것이라면, 이제 이번 복구의 요청은 그 정상이 어떠한지를 논할 것 없이 방색하는 것이 부당한 듯한데, 이미 구은을 허락한 이후로 새 은화는 마땅히 일체 폐기하여 뒤섞여 가짜를 농간하는 폐단을 끊게 하여야 하거늘, 임역(任譯)들이 이제 육성은과 팔성은을 번갈아 내어 병행한다면 은화가 나오는 길이 점차 넓어져서 공사 간에 이익을 입을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은 뒷날의 폐단에 크게 관계되어 결코 시행하도록 허락해서는 불가하니, 이 한 조목은 내일 조정하게 한 뒤에, 이제 이번 비선에서 신고 나온 팔성은을 이전의 육성은을 제련할 때의 사례와 같이 훈도 별차 등이 관왜와 함께 입회하여 정밀하게 제련하여 살펴보고 장계로 알린 뒤에 다시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50년(1711) 5월 12일 좌부승지 신 이징구(李徵龜)²⁴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묘(1711) 6월 27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지난번에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의 장계로 인하여 비선에서 신고 나온 팔성은(八星銀)을 정밀하게 더 제련하여 살펴보고 장계로 알린 뒤에 다시 품의 조처하라는 일로 복계하여 분부하였는데, 방금 접한 동 부사의 장계에, “군관(軍官) 및 수세(收稅) 산원(算員)²⁴⁴⁾을 파견하여 상고

242) 팔성은(八星銀): 팔성은(八成銀). 순도 80%의 은.

243) 이징구(李徵龜, 1641-1723): 전주 이씨로 자는 여휴(汝休)이다. 숙종 2년(1676)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도승지와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商賈) 등을 데리고 훈도 별차 등과 함께 관소(館所)에 가서 대관왜(代官倭) 등과 함께 가져온 구은(舊銀) 17000냥을 주척하여 제련하였더니, 혹은 팔성에는 맞고 혹은 팔성의 수치를 넘기도 하여 따로 속임수를 쓴 일은 없으며, 구은을 다시 통용한 이후로 새 은화는 다시 서로 섞어서 내어오지 않겠다는 뜻으로 훈도 별차 등이 왜인과 정녕 서로 약속하였는데, 이른바 구은은 즉시 통용을 허락할지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전일에 복계하면서 이미 구은을 복구하는 청을 방색하는 것이 부당할 듯하다고 하였고, 이제 이번에 제련한 것이 또 과연 수치에 맞거나 혹은 남음이 있으면 또한 탈을 잡아 허락을 앓을 수가 없는데, 대저 재화를 통용하는 것은 정치의 요긴한 일임에도 왜인이 은화에 대하여 전후로 변경하면서 일찍이 조금도 신중하지 않았으니, 이제 만약 다시 거듭 약속을 밝혀서 그 일의 체면을 엄중하게 하지 않고 쉽사리 허락해준다면, 이번에 싣고 온 것이 비록 모두 팔성은이라 하더라도 통용한 이후로 다시 변경하는 바가 없을 지 어찌 알 것이며, 육성은 일체 폐기하여 끊는다는 뜻을 임역이 관왜와 비록 조정하였다고 하나, 이 일은 이미 도주의 서찰이 있으니 그들이 사사로서 서로 말한 것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니, 마땅히 동래부에 명하여 그 서계에 답장을 하면서 10여년 사이에 은화를 변경한 것이 세 차례나 되었으니 이해와 병폐가 어떠한 지는 말할 것도 없이 행동거지가 이처럼 심하게 전도된 것이 없으나, 조정이 관대하여 장단을 헤아리지 않고 특별히 청하는 바에 따라 팔성은을 통용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일후에 혹시라도 육성을 아울러 통용하거나 보자은을 섞어서 통용하면 영구히 물화를 교통하는 길을 끊을 것이라고 말하게 하고, 그 복서(覆書)를 받아본 이후에 비로소 상고들이 매매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뒷날 속이는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해조와 해당 동래부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50년(1711) 6월 27일 좌부승지 신 김흥경(金興慶)²⁴⁵ 차지로 임계하여 그 대로 윤택함.

신묘(1711) 7월 초2일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拾遺) 평의방(平義方) 계서(啓書).

조선국 동래 부산 양 영공(令公) 함하(閣下).

늦은 봄에 아득히 생각건대 귀국은 평안하온지? 본방 또한 그러합니다. 이에 고하오니 우리나라 은폐(銀幣)를 다시 고친 뒤로 피차간에 굴러서 바꾸는 데 폐단이 없지

244) 산원(算員): 호조(戶曹)의 산자청(算字廳) 소속의 관원.

245) 김흥경(金興慶, 1677-1750): 경주 김씨로 자는 자유(子有) 또는 숙기(叔起), 호는 급류정(急流亭)이다. 숙종 25년(1699)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서 대사간, 도승지, 좌참찬, 이조판서 등을 거쳐서 영의정에 이르고 관중추부사로 치사하여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시호는 정헌(靖獻)이다.

않았는데 이제 조정의 지령이 있어서 특별히 주조하여 우리 관내(館內)에서 예전대로 무역하게 하였으니, 간절히 바라건대 상고(商賈)에게 신칙하여 일체의 물화(物貨)를 수량을 넉넉하게 들여주어서 유무를 서로 교통하게 하는 도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넉넉지 않은 박한 처례는 웃으시며 남겨두시기를 바라오며, 살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가 갖추지 못합니다. 보영(寶永) 8년(1711) 신묘 3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방(平義方).

동래부사공 별폭: 채화(彩畵)에 받침 있는 작고 둥근 분(盆) 1개, 붉은 칠을 한 중간 크기의 연갑(硯匣) 1틀, 황련(黃連) 2근, 끝.

부산영공 별폭: 채화에 중간 크기의 층갑(層匣) 1틀, 검은 칠을 한 중간 크기의 연갑 1틀, 붉은 대로 만든 연기(烟器)²⁴⁶⁾ 20줌[握]. 끝.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대마도의 은화(銀貨)를 예전에 비추어서 무역하는 일로 온 서계에 대하여 동래 부산에서 답장하는 조고를 한결같이 묘당에서 복제한 내용의 사연대로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며, 별폭(別幅)의 회례(回禮) 잡물은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後錄)하였으니 이대로 마련하여 별도로 차비역관(差備譯官)을 정하여 가지고 내려보내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후록(後錄): 동래부산 두 곳의 회례. 각기 백면주(白綿紬) 3필, 백저포(白苧布) 3필, 흑마포(黑麻布) 2필, 백목면(白木綿) 5필, 황모필(黃毛筆) 20자루. 이상 해조에서 마련함. 진흑(眞黑)²⁴⁷⁾ 20개, 본도. 강희 50년(1711) 7월 초2일 우부승지 신 이집(李嶠)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묘(1711) 9월 초6일

이번 9월 초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이조참판 윤지인(尹趾仁)이 계품하기를**, “남북의 통사(通事)는 통역이 소중한데, 근래에 책임을 맡겨 시키기에 적합한 자가 전혀 없어서 실로 우려됩니다. 가만히 듣건대 고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이 사역원 도제조(都提調)였을 때 우어청(偶語廳)²⁴⁸⁾을 설립하여 각별히 권장하였으므로 크게 그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약간의 책임을 맡겨 부리는 무리들은 또한 그 때 학습한 힘이라고 합니다. 김경문(金慶門)²⁴⁹⁾은 이번의 재자(齎

246) 연기(烟器): 담배 피는 도구.

247) 진흑(眞黑): 진묵(眞墨)의 오자로 보임.

248) 우어청(偶語廳): 조선 숙종 때 사역원 소속으로 설치한 외국어 학습 기관. 한학(漢學)·청학(淸學)·몽학(蒙學)·왜학(倭學)의 4분과(分科)를 두었다.

249) 김경문(金慶門, 1673-?): 우봉 김씨로 자는 수겸(守謙), 호는 소암(蘇巖)이다. 숙종 16년(1690) 식년시 역과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한학(漢學)으로 종사하였는데, 숙종 37년(1711)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춤) 때의 수본(手本)으로 보건대 그대로 맡겨서 부릴만한데, 다만 간략하게 은전의 상을 베푸는 것은 보고 느껴 흥기하는 방도가 되기에는 부족하니, 만약 다시 우어청의 규정을 거듭 밝혀서 별도로 과정을 권장한다면 사람이 모자랄 한탄이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그 청은 아직도 있다”고 하자, 영의정 서종태(徐宗泰)²⁵⁰가 말하기를 “그때는 한인(漢人)을 스승으로 삼게 하여 일상 생활의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으므로 학습하기 쉬워서 매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인들이 모두 늙어 죽어서 비록 이름은 훈장이라고 하나 사실은 법률을 배우는 것과 같아서 한갓 서책에 있는 것만으로 서로 말을 하고, 또한 통역을 권장하는 방도로는 항상 소략함이 많으니, 우어청의 법은 이름만 남아 있을 따름입니다.”라고 하였고, 좌의정 김창집(金昌集)²⁵¹은 말하기를 “일찍이 이전에는 중국인 문가상(文可相)과 정선갑(鄭善甲) 등이 훈장이었으므로 크게 이룬 효과가 있었고, 또 그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매양 연행(燕行)에 보내었기에 이로서 모두들 흥기하였으며, 지금 책임을 맡겨 부리는 자로는 실로 그 때 우어청 가운데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지난번에 회환사신(回還使臣)을 인견할 때도 또한 장원익(張遠翼)²⁵²이 중국어를 잘한다고 양달(仰達)하였다.”고 하셨으며, 김창집은 말하기를 “장원익(張遠翼) 역시 그 때 사람입니다. 이제 또한 그 청(廳)을 폐하지 않았으나 스승이 없기 때문에 익히는 것이 차츰 전만 못합니다. 이제 장원익이 중국어를 잘하고, 김택선(金澤善)이 만주어를 잘하니, 이 두 사람을 특별히 급료의 액수를 정해 주고 우어청 훈장으로 차출하여 가르치는 과정을 관장하게 하면, 비록 화인이 과정을 가르칠 때와 같지 않더라도 또한 그 효험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으며, 윤지인이 말하기를 “역관에 재주가 없어서 비록 통역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도 선발하여 넣어서 과정을 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자, 김창집이 말하기를 “근래에 역관들이 본업을 버리고 다른 기술로 옮기거나 간혹 활쏘기를 배우거나 혹은 의술을 업으로 하는 등 온통 모두 이러하니 쇄환(刷還)하는 규정과 같이 본업으로 돌아가게 하여 부족할 우려가 없게 하심이 마땅할 듯합니다”고 하자, 상감께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셨음.

때 통역을 맡았다. 통문관지(通文館志)를 편찬하였다.

250) 서종태(徐宗泰, 1652-1719): 달동 서씨로 자는 군망(君望), 호는 만정(晩靜), 서곡(瑞谷), 송애(松厓)이다. 숙종 6년(1680)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승지, 대사간, 대제학, 공조판서, 대사헌, 이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251) 김창집(金昌集, 1648-1722): 안동 김씨로 자는 여성(汝成), 호는 몽와(夢窩)이고, 좌의정 상헌(尙憲)의 증손이며 영의정 수항(壽恒)의 아들, 창협(昌協)과 창흠(昌翕)의 형이다. 숙종 10년(1684) 정시 문과를 거쳐 호조, 이조, 형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252) 장원익(張遠翼, 1654-?): 배천 장씨로 자는 비경(飛卿)이다. 숙종 1년(1675) 증광 역과에 합격하여 한학(漢學)으로 종사하였다.

신묘(1711) 12월 18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의 장계를 보면, “비변사의 복계(覆啓)와 회관(回關)으로 인하여 서계(書契)의 초고를 되돌려 내려보냈는데, 이대로 써 주고 별도로 훈도와 별차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더 책망하고 타일러 기어코 순순히 받게 하라는 데 근거하여, 각별히 훈도 별차 등에게 엄하게 신칙하고 동 서계를 급속히 들여주게 하였더니, 훈도 정만익(鄭晩益)²⁵³과 별차 김상윤(金尙潤) 등의 수본(手本)에 “복계의 사연을 일일이 번역하여 두왜(頭倭) 등에게 설명하고 서계를 속히 보내라는 뜻으로 날마다 책망하여 타일렀더니, 동 왜인 등이 ‘이 서계에 사용한 말을 간빠꾸(關白)에게 들어가 보이는 것은 결코 불가하므로, 도주(島主)가 대마도에 있을 때 이미 일제히 확정하였으니 저희들로서는 변통할 길이 만무하다’고 하여, 책망하고 타이른지 이미 수십 차를 지냈으나 아직도 순순히 받으려는 뜻이 없는데, 저들이 이미 대마도가 에도에 죄를 받게 된다고 말을 하니, 훈도 별차 등이 책망하고 타이르는 것으로는 결코 순순히 받을 이치가 없다”고 하였는바, 팔성은(八星銀)을 복구하는 청은 조정에서 본디 굳이 아끼는 바가 있어서는 부당하나, 대개 전후로 은화를 바꾸는 데 일정함이 없으면 일후에 혹 이런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기에, 문자를 주고 받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제방(堤防)을 엄중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인데, 왜인들이 구절을 집어내어 함부로 헤아려서 말을 고쳐달라고 청하는 것은 참으로 지극히 외람스러우나, 대체로 그들이 팔성은의 통용을 청하는 것은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내어 명령과 약조를 어기는데 견줄 바가 아니라서,²⁵⁴ 조정에서 마땅히 허락해야 할 것인데, 그 일의 본령이 참으로 대단히 가증스러운 것이 아니고 단지 서계를 사사로이 받지 않는데 있으니, 그 정상을 구명하여 살펴보건대 도주가 에도에 죄를 얻을까 우려하여 죽기로 하고 감히 받아가지 않는 것은 그 형편이 혹 그러할 수도 있겠는바, 조정의 관대한 체면에 있어서는 오직 그 본디 사실로 따져서 허락할 만하면 허락할 것이지 절목(節目)의 일로 거듭 조정하여 마치 그 약조를 책망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으며, 청한바 팔성은을 통용하도록 허락하였으니 그대로 뒷날 혹시라도 다시 번개하는 요청이 있으면 전혀 성신(誠信)에 어긋나니 결코 허락함이 부당하다는 뜻으로 서계를 고쳐 지어 보내되, 동래부사 이정신은 전일에 추고하여 경계하고 책망한 뒤로 동 서계를 끝내 들여주지 못하였고, 이제 이번 장계 가운데 이른바 훈도 별차 등이 책망하여 타일러도 결코 순순히 받을 이치가 없다고 한 것은 먼저 스스로 정해두어서 깊이 체면을 잃은 책임이 있으니 엄중하게 추고하며, 훈도 정만익과 별차 김상윤 등도 자신이 임

253) 정만익(鄭晩益, 1664-?): 하동 정씨로 자는 대수(大受)이다. 숙종 19년(1693)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통정대부에 이르렀다.

254) 원본의 ‘作如勘出’ 운운한 ‘作’은 ‘非’의 오자로 보인다.

역으로서 주관하는 일이 무슨 일인데, 조정의 명령이 내렸음에도 엄중하게 더 책망하고 타일러 기어코 순순히 받게 할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투식에 따른 논설만으로 장황하게 수분한 일은 이보다 매우 해괴한 일이 없으니, 도신(道臣)에게 명하여 영문(營門)에 잡아다가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징계하도록 함이 어떠할지? 강희 50년(1712) 12월 18일 좌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진(1712) 5월 17일

경상좌수사 이태망(李台望)이 5월 11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예조의 계하(啓下) 관문(關文)에 의거한 본도 관찰사 신 이의현(李宜顯)²⁵⁵의 관문 내용에, “이번에 이 동래부사 이정신(李正臣)의 장계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표류한 사람을 데려 오는 차왜(差倭)가 가져온 서계(書契) 및 빈 선박의 판자를 내오는 편에 부쳐온 서계(書契) 등본을 해조로 올려보낸다고 하였는바, 등록을 가져다 상고하니 무진년(1688) 빈 배의 판자를 내보낼 때 서찰을 올린 일이 있으나 전례가 없다고 물리쳐 받지 않았다가, 기사년(1689) 재판 차왜가 누차 서로 버티므로 비변사에서 복계(覆啓)한 내용에 지금은 짐짓 허락해주지만 파손된 선박은 긴요하지 않다고 책망하여 타이르게 한 뒤 전례로 삼지 말라는 일로 명백하게 확정하였거늘, 훈도와 별차가 이런 뜻으로 엄하게 책망하여 타이르지 않은 것은 이미 극히 근거가 없고, 동래부에서 직접 서계를 배껴 보낸 것은 마치 전례가 있어서 받들어 행한 듯함이 있어서 전혀 변방 신하의 체면을 잃었으니, 훈도와 별차를 추고하는 것은 수영(水營)에서 잡아다가 곤장을 친 뒤에 첩보하라는 일로 관문하는 일”이라 하였기로, 위 항목의 훈도 정만익(鄭晩益)과 별차 김상윤(金尙潤) 등을 수영에 잡아다가 계하한 분부대로 곤장을 쳤다는 연유로 치계하는 일임.

임진(1712) 12월 28일

이번 12월 2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상감께서** “이제 동래부사 이명준(李明俊)²⁵⁶의 장계를 보면 특송선(特送船)에서 예조의 회답 서

255) 이의현(李宜顯, 1669-1745): 용인 이씨로 자는 덕재(德哉), 호는 도곡(陶谷)이다. 숙종 20년(1694)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대제학, 영의정에 이르렀다.

256) 이명준(李明俊, 1658-1715): 한산 이씨로 자는 사심(士深)이다. 숙종 정축년(1697)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숙종 38년(1712)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숙종 41년(1715)까지 재직하다가 임지에서 병으로 죽었다.

계(書契)에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연고로 교활한 왜인이 예단(禮單)을 놓아둔 채 받지 않고는 비선(飛船)을 도중(島中)에 보내어 탐문한다고 하였는데, 부사(府使)된 자가 마땅히 엄한 말로 준엄하게 물리쳐서 반드시 받게 하여야 할 것인데 방색하는 말한 마디 없이 단지 조정한 뒤 다시 장계로 알려 품의 조처하겠다 말하니, 일이 해괴하기로 이보다 심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두고는 일후의 무궁한 폐단을 막을 수가 없으니, 동래부사 이명준을 잡아다가 심문하여 죄를 바로잡고, 훈도와 별차 역시 잡아다가 심문하여 죄를 잡아라"고 하시자, 영의정 이(李)가 말하기를 "예전에 피차의 서계에 서로 문안을 하다가, 중간에는 저쪽에서는 문안을 하지 않고 우리만 홀로 문안하여 그대로 따라 하게 되었으나, 이번에 예전의 사례대로 문안하지 않은 것은 이미 이상한 일이 아님에도 교활한 왜인이 받지 않는 것은 참으로 해괴한 일인데, 동래부사가 엄한 말로 물리쳐서 받아가게 하지 않은 것은 또한 그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서계에 문안하는 것은 그 규정이 하나가 아닌데 이제 와서 받지 않고 비선을 도중으로 되돌려 보내는 교활한 왜인의 정상이 참으로 극히 통탄스럽고 가증스럽다."고 하였고, 행병조판서 조태채(趙泰采)가 말하기를 "왜인의 사정이 비록 매우 교활하고 미우나 동래부의 장계 또한 단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40년 전에 간혹 피차간에 문안할 때가 있었고, 을묘년(1675) 이후로는 저쪽에서 문안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문안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갑자기 뺄어버렸기 때문에 왜인이 받아가지 않았고, 부사가 시종 방색하지 못한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일의 형세가 용서할 만한 점이 있는데 잡아다가 심문하는 것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이(李)는 말하기를 "이미 지나간 과오를 깨달아 바로잡은 뒤에 동래부에서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하지 못한 데는 비록 그 잘못이 있으나, 만약 이제부터 피차간에 서로 대등하다는 뜻으로 왜인에게 책망하여 타일러 다시 형식을 정하게 하되, 짐짓 우선 경계하여 책망하는 것이 옳을 듯하나 잡아다가 심문하는 것은 과중합니다."라고 하였고, 조(趙)는 말하기를 "저쪽과 이쪽이 균등하다는 예를 미리 관수왜에게 말하였다면 변통할 수가 있었을 터이나, 이번에 와서 비로소 고쳤기 때문에 왜인이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반드시 다투어 고집하려 하였고, 부사가 이렇게 장계를 올린 것은 무단히 계품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책망하는 벌을 보이시어 왜인으로 하여금 징계하여 두려워할 바가 있게 하되, 잡아다 심문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듯합니다"라고 하였으며, 우참찬 김진규(金鎭圭)는 말하기를 "이 일에는 곡절이 있는데 대신(大臣)은 단지 그 대개만 진술하였습니다. 조(趙)가 진달한 것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괴원(槐院)²⁵⁷의 일인데 신은 제조(提調)로서 상세히 곡절을 알기 때문에 감히 진달합니다. 왜인의 서계 회답은 제술관리(製述官吏)인 문학관(文學官)을 시켜서 조고를 내게 하고, 도제조 및 여러 제조에게 돌려보이는데, 범연히 보아넘기고는 등록

257) 괴원(槐院): 승문원(承文院)의 별칭.

을 다시 상고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조 송상기(宋相琦)²⁵⁸가 괴원의 낭청(郎廳)을 보내어 말을 전하기를, ‘저쪽의 서계에는 단지 배를 보낸다고만 하였는데 우리가 홀로 안부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신이 비로소 깨닫고 괴원의 등록을 살펴보았더니, 인조조 이래로 간혹 궤차간에 모두 안부를 물을 때와 지금처럼 안부를 묻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을묘년(1675) 이후로는 저쪽에서는 안부를 묻지 않고 이쪽에서 홀로 안부를 물어 드디어 그대로 하여 고치지 않았으니, 이는 필시 제술관이 최근의 등록에만 의거하여 보고 지어내고 제조 역시 살피지 못한 소치였습니다. 그러므로 낭청을 시켜서 신과 그리고 송(宋)의 말로 도제조에게 품의하였더니, ‘궤차간에서식은 고루 대등한 예를 사용해야 합당한데, 이 서계는 예전 사례를 따라 고쳐 보내는 것이 옳겠다’고 하여, 신이 ‘비변사에서 서식을 고쳐 보내겠다는 뜻으로 동래에 관문을 발송하겠다’고 하였더니, 대신은 ‘이는 예전 사례를 따르는 것이라서 관문을 발송할 필요는 없고 가져 가는 역관이 동래부사 및 임역(任譯)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므로 신이 그 말을 역관에게 상세히 말하고, 그대로 괴원에 가서 등록을 보고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이제 조(趙)의 말은 마치 부사가 당초 곡절을 모르는 것인듯 한 점이 있으나, 부사는 이미 역관이 전하는 말을 들었으니 당초에 몰랐던 일은 아니지만, 문책하는 별의 경중은 아래에서 감히 논할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였고, 이(李)는 말하기를 “회답 서계는 학관(學官)들을 시켜서 전례를 상고하고 제술하게 하여 여러 제조에게 보이는데, 이번에 비로소 그 전례에 어긋남이 있음을 깨닫고는 안부를 묻는 한 조목을 빼게 하였는데, 대개 저쪽에서 안부를 묻지 않았을 때 우리가 홀로 안부를 물으면 위신이 손상됨을 면치 못하고, 이미 예전 규정을 준수하여 바로잡는다면, 이는 하는 말을 덜거나 더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새로 만들거나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때문에 서계의 문자를 완성 확정하여 복계(覆啓)하여 예람(睿覽)²⁵⁹한 뒤, 내려 보낼 때 또한 곡절을 역관에게 분부하였는데, 당초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동래부에서 모르지는 않을 듯합니다.”라고 하였고, 호조판서 조태구(趙泰耆)²⁶⁰는 말하기를 “이는 곧 예절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양국이 교제하는 예로는 이미 서계를 통한다면 참으로 안부를 묻는 일이 있어야 마땅한데, 을묘년 이후로 저쪽에서 안부를 묻지 않고 우리가 홀로 안부를 묻은 것은 실로 그 곡절을 알지 못하나, 저쪽에서 비록 실례하더라도 우리가 실례를 양지 않는 것이 무슨 손상이 되겠습니까? 야만인이 오만한 것은 굳이 책망할 것도 없는데, 30년 동안 그대로 해 오던 일을 갑자기 번개하니 저쪽에서 받아가려 하지 않는 것은 대개 여기

258) 송상기(宋相琦, 1657-1723): 은진 송씨로 자는 옥여(玉汝), 호는 옥오재(玉吾齋)이다. 숙종 10년(1684)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성, 대제학, 대사헌, 예조판서·관동령부사를 역임하였다.

259) 예람(睿覽): 왕세자가 열람함.

260) 조태구(趙泰耆, 1660-1723): 양주 조씨로 자는 덕수(德叟), 호는 소헌(素軒), 하곡(霞谷)이다. 숙종 12년(1686) 문과에 급제하여 충청도 관찰사, 대사성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왜인의 정상이 교활하여 비록 미세한 일이라도 반드시 겨루어 이기고야 말려고 하는데, 이 일은 당초 그대로 두는 것이 무사한 줄 모르고 이제 갑자기 서식을 고쳐 저쪽에서 받아가지 않았으니 그 위엄이 손상된 것이 또한 크지마는,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지금의 도리로는 오직 엄한 말로 준절하게 물리쳐서 기어코 반드시 받아가게 하여야 마땅하고, 부사 또한 책망의 벌을 내려서 저쪽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게 함이 옳을 듯합니다. 그러나 만약 끝내 난처한 지경에 이른다면 차라리 지금 진작 생각하여 조처해야 위엄을 손상하는데로 돌아가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김(金)은 말하기를 “장계에는 비선을 보내어 도중에 문의하였다는 말이 있으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받아갈지 받지 않을지 알 수 있는데, 고쳐 준다는 이야기는 너무 급한 듯합니다. 또한 저들이 반드시 우리가 문안하기를 바란다면 저쪽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먼저 문안하게 하여야 마땅합니다”라고 하였고, 형조판서 박권(朴權)은 말하기를 “왜인은 비록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다투어 고집하는데 조정에서는 매양 옳아 매는 것을 일삼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로서는 잘못이 없으니 반드시 엄하게 물리치고 일체 고쳐주지 말아야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비선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그 의도를 알 수 있으니, 일체 견고하게 고집하여 허락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셨음. 이조참판 이만성(李晩成)²⁶¹⁾이 말하기를 “소신은 장계를 보지 않아서 곡절을 상세히 모르지만 이제 여러 신하의 말을 듣고 그 대략을 알았습니다. 종전에 육성은(六星銀) 팔성은(八星銀)과 왜관을 뚫고나와 몰래 간통한 일과 서계(書契)의 도서(圖書) 등의 일에 조정에서는 굽혀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으므로, 왜인의 정상이 교활하고 간악하여 능멸하고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지 아니합니다. 이제 서찰 사이에 또한 다투는 사단이 있는데, 만약 사소한 예절이라고 미루어 고쳐 보내는 것을 또한 허락한다면²⁶²⁾ 앞으로 비록 긴급하지 않은 일이라도 또한 반드시 서로 다툰 것이니, 이는 진실로 엄한 말로 준엄하게 물리쳐야 마땅합니다”라고 하였고, 조(趙)는 말하기를 “변방 신하가 곡절을 모르고 말하였으니, 반드시 우리쪽 사람을 먼저 책망한 다음에야 저쪽이 징계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동래부사 이명준은 짐짓 우선 엄중하게 추고하고, 근년에 비록 이미 안부를 물었더라도 대등한 예는 우리에게 고집할 바가 있어서 역관이 이미 그 뜻을 전하였으니, 엄하게 더 신칙하여 일체 흔들려 고치지 아니함이 옳겠다”고 하였고, 좌부승지 신이덕영(李德英)²⁶³⁾이 말하기를 “훈도와 별차는 벌을 시행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말

261) 이만성(李晩成, 1636-1708): 전주 이씨로 자는 기숙(器叔)이다. 현종 7년(1666) 진사시에 합격한 뒤 문음으로 관직에 들어가서 성주목사, 호군을 거쳐 돈령부 도정에 이르렀다.

262) 원본의 ‘不許改送’의 ‘不’은 ‘亦’의 오자로 보인다.

263) 이덕영(李德英, 1659-1721): 전주 이씨로 자는 계형(季馨)이다. 숙종 21년(1695)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관찰사, 대사간에 이르렀다.

하자, 상감께서는 “훈도 별차는 짐짓 우선 엄중하게 곤장을 치고, 끝까지 받지 않게 되면 잡아다 심문함이 옳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사(1713) 10월 21일

동래부사 이명준이 10월 초7일에 성첩한 장계에 의거한 **비변사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명준의 장계를 보면, 왜인이 일공(日供) 및 잡물(雜物)에 대하여 본색(本色)의 징수를 독촉하여 망측함이 끝이 없는데, 만약 시일에 맞추어 변통하지 않으면 불화가 생길 우려가 없지 않으니 어떻게 할지 묘당에 명하여 품의하여 변통하게 하라 하였는바, 왜관의 일공 잡물을 본색으로 들여주는 것이 본디 전례인데 지난 해 임역(任譯) 등이 공을 바라는 계획으로 그 때 재판(裁判)과 부동(符同)하여 주었다가, 그 뒤에 사단이 탄로되어 임역들이 이미 죄를 받았거니와, 과연 이는 도중(島中)에서 모르는 일이었기에, 그 때는 쌀로 대신 지급한 것을 이미 스스로 순순히 받았다가 지금에 와서 재판왜가 이미 죽은 뒤에 일찍이 수표(手標)로 조정한 일이 없다고 핑계하며 시끄럽게 이야기하여 불화가 생길 우려가 있게 되었으니, 그 사이의 정상은 실로 측량하기 어렵거니와, 저쪽에서 이미 꼭 본색으로 되돌려 요구한다면 전례에 의거하여 들여주는 외에 달리 변통할 도리가 없으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52년(1713) 10월 21일 좌부승지 신 이세면(李世勉)²⁶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을미(1715) 6월 17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수권수(權濬)²⁶⁵의 장계를 보면, 왜사(倭使)의 연향(宴享) 때 여악(女樂)을 중도에 폐지하는 한 조목은 이미 확정된 명이 있었는데, 당년조 제1선 제2선 제3선 송사왜(送使倭) 등의 하선연(下船宴)을 이달 초4일로 정하였기로, 시험삼아 조정의 분부를 훈도와 별차에게 엄하게 신칙하였는데, 훈도 최억(崔億)과 별차 정도창(鄭道昌) 등의 수분에 “온갖 방법으로 책망하고 타일렀으나 끝내 미혹된 생각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거늘, 동 훈도와 별차를 전령으로 잡아오게 하여 다시 가서 책망하여 타이르라는 뜻으로 엄하고 분명하

264) 이세면(李世勉, 1651-?): 용인 이씨로 자는 계성(季成)이다. 숙종 36년(1710) 춘당대시에 장원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265) 권수(權濬, 1656-1718): 안동 권씨로 자는 자성(子誠)이다. 숙종 18년(1692)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관직을 거쳐 좌부승지를 지내다가 동래부사로 부임하고, 예조참의를 거쳐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다.

게 분부하여 보냈더니, 훈도 별차 등이 다시 바친 수본에 “왜인들은 ‘양국이 강화하던 당초에 이미 귀국의 은덕을 입었는데, 백여 년 이미 시행한 예를 갑자기 폐지하여 버리니, 비록 이를 도중(島中)에 통보하려고 해도 어찌 감히 서찰에 쓰겠는가?’ 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손을 내저으며 ‘다만 죽음이 있을 따름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미 발설한 뒤에 그대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 또한 매우 구차하며, 또 연향을 정지하고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니 묘당에 명하여 즉시 품의 조처하여 달라 하였는바, 저번에 암행어사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양국이 서로 접촉할 때 성기(聲妓)를 섞어 들이는 것은 실로 먼 곳의 사람을 예로 접대하는 도리가 아니어서, 도신(道臣)과 동래부에 명하여 함께 상의하고 확정하여 조목을 따져 나열하여 장계로 알리라고 하였는데, 도신의 장계에는 ‘저쪽 사람이 혹 마음을 돌려 들을 도리가 없지 않으니 훈도 별차에게 엄하고 분명하게 분부하여 특별히 방색할 계획’이라고 하였거늘, 엄하게 신칙하여 타이르라는 뜻으로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²⁶⁶하였는데, 왜인 등은 대우가 점차 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는 순종하려 들지 않으니, 이 일은 참으로 매우 미세하여 다투고 따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백여 년 동안 흘러온 사례이니 차왜(差倭)가 도주와 예도에 묻지 않고 함부로 받들기가 어렵다고 고집할 바가 없지 않으나, 이제 예로 대우하는 도리로는 기악(妓樂)을 뒤섞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지하여 없애게 하고 너희 나라에서 우리 통신사를 대우하는 사례와 같이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예전대로 따르기를 힘써 이렇게 고치기를 어렵게 여기니, 대조(大朝)에서 몸으로 덮어주는 도리에 있어서 이는 본디 미세한 절차인데 어찌 꼭 그 정원(情願)에 따라 억지로 예전대로 해야 하겠느냐는 뜻으로 다시 잘 타이르고, 이제 이번 제1선 제2선 제3선의 송사왜 등의 하선연(下船宴)은 속히 행하되 여악(女樂)은 그대로 사용하는 일로 회이(回移)하되, 조정에서 진연(進宴)할 때 음악을 사용하는 여부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 말할 만한 일이 아닌데, 훈도 별차 등이 감히 인용한 것은 참으로 극히 잘못된 망발인데다가, 수본의 문자에 어휘(御諱)를 범한 일은 이보다 놀랍기가 심한 일이 없으니, 훈도 최억과 별차 정도창을 모두 잡아다가 심문하여 조처하며, 부사 권수는 비록 승정원에서 추고하기를 청하였으나 일이 중대한지라 갖추어 묻는 것은 불가하고 파직하는 데 그침이 어떠할지? 입계하자 그대로 윤택하였음.

정유(1717) 3월 16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본조의 낭청으로 정랑(正郎) 김윤해(金潤海)²⁶⁷만 배종

266) 행회(行會): 조정에서 결정된 명령을 널리 반포함.

267) 김윤해(金潤海, 1668-?): 강동 김씨로 자는 문원(文遠)이다. 숙종 22년(1696) 문과에 급제하였다.

(陪從)하였는데, 여러 신하가 치제(致祭)하는 일로 겨우 이미 나가서 가낭청(假郎廳)도 또한 차출할 사람이 없으니, 을사년(1665)의 사례대로 계목(啓目) 공사(公事)의 낭청을 써 넣지 못한다는 뜻으로 감히 입계한다” 하자,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음.

정유(1717) 9월 초10일

통제사(統制使) 윤각(尹戩)²⁶⁸이 9월 초2일에 성첩한 장달(狀達)²⁶⁹. 방금 도부한 거제부사 이기(李岐)의 치보에, 왜학(倭學) 정동기(鄭東起)가 모친 상을 당하여 분상(奔喪)하여 돌아갔다고 치보하였는바, 근래 왜선의 표류 정박이 계속 이어져 왜학의 직임은 일시라도 비워둘 수 없으니, 동 정동기 대신을 해당 사역원으로 하여금 선발하게 하여 재촉하여 내려보내달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신목(申目)²⁷⁰을 첨부하였으니 달하(達下)²⁷¹하시기를. 이 통제사 윤각의 장달(狀達)을 보면 왜학 정동기가 모친상을 당하여 분상하여 돌아갔으니 동 정동기의 대신을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선발하여 내려보내달라 하였는데, 왜학의 직책은 오래 비워두는 것이 불가하니 그 대신을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급속히 가려서 재촉하여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56년(1717) 9월 초 10일 동부승지 신 이기익(李箕翊)²⁷² 차지로 계달(啓達)하여 그대로 준(準)함.

정유(1717) 9월 14일

동래부사 한중희(韓重熙)²⁷³가 9월 초5일에 성첩한 장달(狀達). 이달 초4일 오

268) 윤각(尹戩, 1665-1724): 함안 윤씨로 자는 여성(汝誠)이다. 숙종 25년(1699)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초계군수, 전라도 수군절도사, 금위중군을 역임하였고, 함경남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청나라 사신과 함께 백두산의 경계를 사정하였으며, 병조참관을 거쳐 삼도수군통제사와 총융사(摠戎使)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269) 장달(狀達): 조선 숙종 43년 8월 왕세자가 청정(聽政)하면서 왕세자에 해당하는 하교(下敎)는 하령(下令), 전지(傳旨)는 휘지(徽旨), 의윤(依允)은 의준(依準), 계사(啓辭)는 달사(達辭), 장계(狀啓)는 장달(狀達), 계본(啓本)은 신본(申本), 계목(啓目)은 신목(申目), 계하(啓下)는 달하(達下), 상소(上疏)는 상서(上書)라고 하여 용어를 고쳐 사용하였다.

270) 신목(申目): 왕세자가 섭정할 때 판서·병사·감사 등이 올리는 중요 문서.

271) 달하(達下): 왕세자가 대리할 때 문서를 결재하여 내려보내는 일.

272) 이기익(李箕翊, 1654-1739): 전주 이씨로 자는 국필(國弼), 호는 시은(市隱)이다. 문음으로 관직에 나갔다가 60세로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 대사간, 지돈령부사,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273) 한중희(韓重熙, 1661-1723): 청주 한씨로 자는 회보(熙甫)이다. 숙종 28년(1702)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한 뒤 숙종 42년(1716)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이듬해까지 재직하였고, 승지를 거쳐 강원도 관찰사에 이르렀다.

시(午時)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필익(李必益)의 치통(馳通)에, 방금 도부한 훈도 최상집과 별차 김진혁(金震爍)²⁷⁴ 등의 수본에. “오늘 날이 밝을 무렵에 관수왜가 사람을 보내어 보기를 청하거늘 즉시 가서 보았더니, 동 왜인이 ‘옛그제 비선(飛船) 편에 예조 및 동래로 보내는 서계 각 한 통이 나왔는데, 도중(島中)의 사서(私書)에 재판(裁判)과 서로 의논한 뒤에 바쳐올리라고 운운하였으나, 재판왜가 마침 신병이 있어서 서로 의논하기 어려운 형편이기로 진작 내보내지 못하다가, 재판왜가 비록 병으로 누워 있는 중이라도 서계를 바쳐 올리는 것이 또한 긴급하여 밤중에 재판왜를 보고 서계를 내어주는 일로 이미 서로 의논하였다’고 하면서 동 서계 두 통을 내어보이며 말하기를, ‘귀국의 연해(沿海) 어민들이 일본 각 주 각 고을로 바람에 표류하는 자가 없는 해가 없는데, 동 표류한 사람들은 대개 나가사키[長崎]에 모아두면 장기에서 양식과 반찬 의복을 지급한 뒤에 그대로 대마도로 돌려 보내어, 차왜(差倭)를 정하여 내어보내는 것이 이미 규정이 되었는데, 금년 경상도의 표류민과 전라도의 표류민들이 모두 나가사키에 모인 날, 표류민 등이 요미(料米)가 부족하여 양식을 이어가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때를 지어 나가사키 태수(太守)가 거주하고 있는 공관으로 뚫고나가 소요하며 난리를 일으켜 못하는 일이 없기로, 대마도의 통사왜(通事倭)로서 나가사키에 머물고 있는 자가 힘을 다해 타일렀으나 끝내 듣지 않고 마음대로 방종하여 꺼리는 바가 없다가, 나가사키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일제히 나가 간절히 애걸하여 겨우 만류하였는바, 나가사키 태수가 특별히 성신(誠信)의 의리를 생각하여 한 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더욱 더 후대하였으나, 뒷날의 폐단에 있어서는 침묵하여 두는 것이 불가하여 이 뜻을 에도에 품고(稟告)하였더니, 에도에서 도주에게 분부하여 이 서계를 내어보냈으니, 동 서계를 동래 영감 전에 바치고 그대로 예조로 올려보내어, 동 회답 서계를 속히 내려보내어 이번에 나온 두왜(頭倭) 편에 부쳐보내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또한 ‘이제 이번에 서계를 가지고 나온 두왜는 다른 예사 비선의 두왜에 견줄 바가 아니라 곧 도주의 군관(軍官) 중에서 직책이 있는 자를 특별히 차출하여 나왔는바, 이전에도 서계를 가지고 나온 두왜에게는 귀국에서 양찬(糧饌)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으니 이 뜻을 또한 말을 만들어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참작하여 지급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거늘, 비직(卑職) 등은 ‘이제 이 서계는 이미 우리나라 사람을 경계하고 책망하는 글이니 끝내 막는 것이 불가하기로 받아서 올려보내나, 두왜의 양찬을 지급하는 일은 전례가 분명하지 않은 일이니 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은 ‘이전에 서계를 가지고 나온 두왜가 양찬의 은혜를 받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서계를 가지고 온 자만 홀로 지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어찌 서운한 탄식이 없겠는가? 다시 바라건대 잘 고하여 기어코 양찬을 지급하도록

274) 김진혁(金震爍, 1673-?): 삼척 김씨로 자는 중명(仲明)이다. 숙종 39년(1713) 증광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였다.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비직 등이 어제 아침 사정을 물으러 갈 적에 서계가 나온 여부를 전연 모르고 예사 비선이라 여겨서 사정을 물었고, 관수왜가 또한 서계가 나온 일을 끝내 발설하지 않았으니, 서계가 나온 연유를 비직 등이 알기 어려움이 있었으며, 본진(本鎭)의 전령(傳令)이 내도한 뒤에 즉시 관수왜에게 물었더니, 재판왜가 병이 나서 미처 서로 의논하지 못하여 내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내어 주었기로, 동 예조 및 동래로 보내는 서계 각 한 통을 받아 올려보낸다"고 수분하였는데, 이에 의거하여 위 사항의 서계 두 통을 전례대로 보내며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이렇게 조그마한 일로 서계를 바치는 것은 매우 분수에 넘치는 일이니 물리쳐서 받지 않음이 마땅하나, 이미 우리나라 사람이 저쪽에 도착하여 소란을 부린다고 이렇게 서찰을 바쳤으니, 우리가 아래 사람을 단속하는 도리에 있어서 전연 물리치는 것은 일의 체면에 방해될 뿐 아니라, 관례에 따라 회답하여 주는 데는 손상되는 바가 없을 듯하기로 동 서계 두 통을 받아 올려보내거니와, 다만 왜인이 대마도에서 나오는 자가 간혹 좌도(左道)와 우도(右道)의 연해 각 진에 많이 표류 정박하여 함부로 양식과 반찬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이 적지 않으나, 족히 헤아릴 것은 없다고 하여 도수 밖에 두었는데, 이제 그 서계(書契)로 인하여 피차간에 모두 각기 금하여 단속하자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답하는 것이 또한 편하고 마땅할 듯하며, 위 항목의 서계를 가져온 두왜는, 이전부터 별서계(別書契)를 가져온 두왜에게 약간의 양식과 반찬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른바 별서계는 모두 관례에 따라 통보하는 일이나, 이제 이번 별서(別書)는 전과 다르니 어떻게 해야 하올지 연유를 치달(馳達)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신목을 첨부하였으니 달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한중희의 장달(狀達)을 보면 금년에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표류한 백성이 나가사키에 모두 모인 날 급료로 주는 쌀이 부족하다고 일컬으며 뚫고나와서 나가사키 태수가 거주하는 공관에서 소란을 부려 못할 일이 없었다는 이런 서계가 있었으니 매우 외람스럽기에 물리쳐서 받지 않아야 마땅할 것이나, 이미 우리나라 사람이 저쪽에 도착하여 소란을 일으켜서 서찰을 바친 것이니, 전연 물리치는 것은 일의 체면에 방해가 있을 뿐 아니라, 전례에 따라 회답하여 주더라도 손상될 바 없을 듯하고, 이전부터 별서계를 가져온 두왜에게는 약간의 양식과 반찬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번 별서는 이전과 다르니 어떻게 하여야 할지 연유를 치달한다고 하였는바, 일찍이 이른바 별서계는 관례에 따라 통보하는 일에 불과하여 연회를 베푸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양식과 반찬을 지급할 때가 많았으니, 이제 이번 서계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표류한 사람들이 저쪽에 도착하여 소란을 부린다는 말을 하였기에 일의 체면이 이전과는 더욱 구별되니, 본부에 명하여 전례를 상고하여 되도록 간략하게 양식과 반찬을 지급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56년(1717) 9월 14일 우승지 신 정필동(鄭必東)²⁷⁵ 차지로 계달(啓達)하여 그대로 준(準)함.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방(平義方) 봉서(奉書).

조선국 예조 대인(大人) 합하(閣下) 찰조(剝棗).

엿드려 생각건대 생활이 진중하신지, 우러르고 의지하는 마음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이에 말씀드리는 것은 귀국 경상도 표류민 배 한 척에 7명과 전라도 표류민 배 세 척에 45명이 나가사키(長崎)로 향하여 제멋대로 왔기에 듣고서는 놀랐으나, 돌이켜보건대 어리석은 백성들의 행위는 깊이 추궁할 필요가 없지만, 비록 그러나 교린(交隣)의 우의에 있어서 폐단이 없는 것이 요령인지라 사유를 동래부에 알렸으니, 더욱 총명하게 살피어 미리 거둬 엄하게 신칙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기에 달려가 서찰을 바치오니, 이 뜻을 살피서 천만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이렇게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향보(享保) 2년 정유(1717) 8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방.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방 계서(啓書).

조선국 동래부사 합하(閣下).

서늘한 가을에 멀리 생각건대 맑은 거동이 편안하신지 위안드리며 부러운 마음 번갈아 간절합니다. 이번에 진달하는 것은 무릇 귀국의 백성이 우리나라로 표류하여 오면 그 지방에서 나가사키(長崎)로 돌려보내고, 나가사키에서는 한결같이 현관(縣官)이 하는 접대의 지급을 받는데, 굳이 원래의 형식이 있어서 여러 고을에서 임시로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 경상도 표류민 배 한 척에 7명과 전라도 표류민 배 세 척에 45명은 양식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2월 22일에 공해(公廩)의 문을 뚫고나와서 진대(鎭臺)에 장자(狀子)를 투서하였습니다. 무릇 지급의 풍성하고 검약함은 본디 정해진 규정이 있고, 표류한 손님을 가련하게 여기는 데는 전후에 다름이 없는데, 그들이 체통을 돌아보지 않고 예식을 살피지도 않고서 함부로 하소연하여 관부(官府)에 소요를 일으키고 길거리를 소란스레 동요한 일은 객지의 곤란한 사정에 연유한 것이라 혹 용서할 수 있을 듯하나, 간사하고 교활함은 법으로 미리 방지해야 마땅한지라, 이에 바라오니 연해(沿海) 각처에 엄하게 신칙하여 긴급하게 뒷날의 폐단을 끊어주시고 교린(交隣)하는 사이에 빛을 더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우리의 유사(有司)에게는 다시 경계하고 부탁하여 먼 곳의 손님이 있을 곳을 잃는 데 이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일이 교린의 우의에 관계되는지라 어찌 감히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남궁(南宮)에 서찰을 올리오니 돌려서 전달하여 잘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명으로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이렇게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향보 2년(1717) 정유 8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방.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신목(申目)을 첨부하였으니 달하(達下)하시기를, 앞서 대마도 도주가 내어보낸 서계의 회답 및 동래에서 답하는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

275) 정필동(鄭必東, 1653-1718): 동래 정씨로 자는 종지(宗之)이다. 숙종 10년(1684)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경주부윤, 우승지를 역임하였다.

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여 금군(禁軍)을 별도로 정하여 가지고 내려보내게 하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56년(1717) 9월 14일 우승지 신 정필동(鄭必東) 차지로 계달(啓達)하여 그대로 준(準)함.

정유(1717) 9월 15일

이번 9월 13일 침(針)을 맞느라 입시하였을 때 **약방의 도제조 김창집(金昌集)이 계품(啓稟)하기를**, “동래에 하납(下納)하는 왜공미(倭供米)와 왜공목(倭供木)을 각 고을에서 기일에 맞추어 갖추어 납입하지 않는 곳이 많아, 지난해 부사 이정신이 해당 고을의 감색(監色)을 잡아다가 형벌로 추궁하고 수령에게 죄를 논한다는 뜻으로 계문(啓聞)하여 규정을 정하였는데, 근래에 이익을 노리는 무리들이 간혹 경사(京司)의 관문(關文)을 얻거나 혹은 본관에 청탁하여 가운데서 방납(防納)하기 때문에 시일을 끌면서 납입하지 않는 것이 이미 고질이 되어 해마다 미수(未收)의 수량이 점차 많지만, 동래부에서는 같은 도의 수령의 안면에 구애되어 계문하지 못하고, 각 고을에서는 예사로 여겨서 징계하여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니, 기강에 관계되는 것이라 참으로 극히 한심합니다.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하여 만약 나라가 모욕을 당하는 걱정이 있으면 어찌 매우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변통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하니, 동래부에 명하여 각 고을 각 년 미수의 수량을 조사하고 조목으로 나열하여 장계로 알리게 하여, 이로써 당해 수령을 엄중하게 죄를 따지고, 이 뒤로 방납의 폐단 또한 일체 모두 엄금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어사(御史)의 별단(別單)에 또한 이미 이 폐단을 갖추어 논하였으니 참으로 복계(覆啓)하여 품의 조처함이 마땅할 것이나, 들으니 동래부사가 근자에 사조(辭朝)²⁷⁶한다 하니 우선 확정해서 분부하여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하므로 이렇게 감히 품달(稟達)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근래 이 폐단이 심한데 진달한 바가 참으로 적합하니 그대로 함이 옳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일 약방 제조 김(金)이 계품하기를, “왜공미와 왜공목 미수(未收)의 수량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는 간혹 지적하여 징수할 곳이 없는 곳도 있고 혹은 사정이 오래된 것도 있는데, 이번에 어사(御史)의 별단(別單) 가운데 이른바 ‘동래부사의 무면목(無面木)²⁷⁷이 60동(同)’이라 한 것은 언제 있었던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왜인은 해를 끌어가며 계산하여 받으면서도 도리어 새로운 미수(未收)라고 말꼬리를 잡는다고 하였는데, 이런 따위는 한갓 빈 장부를 꺼안고 왜인의 징수 독촉을 받는 것으로, 국가의 위엄에 손상이 있어서 또한 변통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동래부에 명하여 조사 구별하여 장계로 알리고, 그 중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일을 정하여 징수하여 받고, 그중

276) 사조(辭朝): 지방 고을의 원이 부임함에 앞서 임금께 하직하는 일.

277) 무면목(無面木): 축이나서 없어진[無面] 배[木].

오래되어 받기 어려운 것은 탕감함이 마땅하며, 그 대가를 충당하여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또한 별도로 정리하여 기일을 정하여 지급함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새 부사가 내려가서 조사하여 장계로 알린 뒤에 품의 조치함이 옳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변사, 호조, 예조에서 승전(承傳)을 받음.

정유(1717) 9월 17일

경상우수사 윤각(尹戢)이 9월 초6일에 성첩한 장달(狀達). 지난 8월 28일 지세포 강 입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에 사정을 묻기 위해 왜학 정동기(鄭東起)에게 전령을 발하여 달려 보내게 하였다는 연유는 이미 치달하였거니와, 방금 도부한 동 왜학 정동기의 수본 내용에, “전령에 따라 이번 29일 해시(亥時)에 지세포에 달려갔더니,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이 과연 표류하여 동 지세포의 강 입구에 정박하여 있거늘, 가서 사정을 물으니 비선을 조사하니 중금도왜(中禁徒倭) 1인, 두왜(頭倭) 1인, 격왜(格倭) 13명 등이, 예조(禮曹)로 표류민을 알리는 일로 보내는 서신 한 통과 동래부로 표류민의 일을 알리는 서신 한 통을 가지고 오는 일로 노인(路²⁷⁸)을 가지고 함께 타고 나왔거늘, 도중(島中)의 사정 및 표류해온 연유를 물었더니, 동 왜인 등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어제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곧바로 관소(館所)로 향하다가 물마루에 이르러 바람 기세가 순조롭지 않아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였다”는 등의 일임.

이번 9월 17일 침을 맞느라 입시하였을 때 도제조 김창집이 계품한 바, “동래 훈도 최상집의 임기가 차서 그 대신으로 홍순명(洪舜明)²⁷⁹을 차출하였는데, 홍순명이 공무로 일을 보느라 이미 내려갔으니, 이전에도 임명하여 곧바로 부임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지금 또한 곧바로 부임하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유(1717) 9월 24일

동래부의 첩정(牒呈) 내용. 방금 해조(該曹)의 관문 내 사연을 훈도 별차 등에게 전령하여 분부하라 하였는데, 방금 바친 훈도 최상집과 별차 김진혁 등의 수본에, “전

278) 원본의 ‘設引’의 ‘設’은 ‘路’의 오자로 보인다.

279) 홍순명(洪舜明, 1677-?): 남양 홍씨로 자는 수경(水鏡)이다. 숙종 31년(1705)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통정대부에 이르렀다.

령으로 인하여 관수왜에게 가서 보고는 전령의 내용을 언급하였더니, 동 왜인이 실색을 하며 말하기를, '일본 국내에는 본디 응자(鷹子)가 없고 이는 곧 귀국에서 생산되는 것이므로 당초 귀국에 청하여 얻었고, 귀국에서 또한 마련하여 들여 준 것은 생각건대 우연이 아니었는데, 지난 임술년 이후로 간빠꾸[關白]가 사냥에 뜻이 없어서 응련(鷹連)을 들여 주는 일을 짐짓 정지하였다가, 이제 이번 새 간빠꾸가 자못 응벽(鷹癖)²⁸⁰이 있어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기에, 동 응자를 전례대로 본색(本色)을 들여주는 일을 귀국에 고하여 기어코 반드시 이번 겨울 이전에 에도로 가져오라고 특별히 도주(島主)에게 분부하였으므로, 도주가 간빠꾸의 분부로 인하여 관수에게 서찰을 부쳤거늘 사유를 갖추어 고하였는데, 귀국에서 도주가 중간에서 민망하고 긴박한 사정을 생각하여 무역을 요구하는 응자를 본색으로 들여주는 일을 그대로 인준하였다고 8월 보름 사이에 동지(同知) 등이 와서 말하거늘, 이렇게 인준하여 허락하였다는 뜻을 도중에 통보하여 그대로 에도에 전달하였기로, 응사(鷹師)²⁸¹ 3인이 도중에서 이미 벌써 나왔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명년부터 시작하여 들여준다고 하였는바, 이른바 사냥은 곧 겨울철에 하는 일인데 겨울이 되기 전에 주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며, 만약 들여주지 않으면 도주와 관수는 에도에 신용을 잃게 되는 데로 돌아감을 면치 못하니, 바라건대 이 뜻을 말로 만들어 고하여 다시 변통하여 속히 들여달라'고 이야기하거늘, 비직 등이 '이전에 구청한 응련을 들여 줄 때 폐단이 많이 있어서 쌀과 베로 바꾸어 지급한 것이 이미 30여년이나 오래 되었으니, 마땅히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하고 들어줄 필요가 없음이 마땅할 듯한데, 조정에서 특별히 관대한 은전을 베풀어서 전례대로 본색으로 들여주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이는 도주에게는 다행이라 할 것이며, 다만 구청(求請)한 응련이 그 수량이 적지 않아서 각 고을에 분정(分定)하였는데, 모아서 오는 데는 형편이 금년 안에 미칠 수가 없겠기로, 해조에서 명년에 들여준다고 한 것은 도로의 원근과 일의 편의를 헤아려서 이렇게 물려 정하였거늘,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기의 민망하고 절박한 것으로만 굳이 이번 겨울 이전에 얻고자 청하는 것은 해괴하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동지(同知) 등은 일본 물정을 익히 아는 사람으로 도주의 절박함을 헤아리지 않고 오로지 방색을 일삼으니, 이 무슨 중간에서 주선하는 도리인가? 전례를 가져다 상고하더라도 일찍이 이전에 구청한 응련을 들여줄 때는 새로 생산되는 응자(鷹子)를 잡는 것이 꼭 가을철이었기로 9월 10월에서 이듬해 3월 4월까지 죽 들여주는 것이 본디 전례일 뿐 아니라, 봄 가을 사이에는 때가 깃을 가는 철인지라 비록 수십 연의 응자라도 매양 일시에 죽어버릴 우려가 있어서 결코 명년 봄으로 물려서 들여주는 것이 불가한데다가, 응련을 허락한 일을 이미 통보한 뒤에 이제 명년으로 물려서 지급한다는 일을 다시 말하여 도중에

280) 응벽(鷹癖): 매 사냥을 좋아하는 버릇.

281) 응사(鷹師): 사냥용의 매를 길들이는 사람.

보낸다면, 관수가 느닷없이 무거운 죄를 입는 것은 돌볼 것도 없이, 도주가 예도에 책망을 받는 것도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운지라, 말과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저도 몰래 두려우니, 다시 바라건대 동지 등은 이렇게 만분 절박하고 긴급하여 나가도 물러서도 길이 없는 뜻을 말로 만들어 본부 영감 전에 간절히 고하여 동 응련을 한결같이 전례대로 10월 전에 맞추어 재촉하여 들여주어, 도주와 관수가 중죄를 입는 지경을 면하도록 해 주면 천만 다행이겠다'고 증언부언 하였기로, 연유를 수분하는 일"이라고 수분하였는데, 왜인의 청이 이렇게 간절하고 조정에서 이미 전례대로 시행을 허락하였으니 명년까지 나가 대기할 필요가 없을 듯하고, 이른바 새로 나는 응자를 잡는 것은 반드시 가을철에 있고, 봄과 여름 사이가 되면 바로 깃을 가는 철이라 매양 죽을 우려가 있으니 이 때에 맞추어 얻기를 청한다고 하는바, 또한 이치게 가кау니, 예조에서 다시 참작하여 행하(行下)²⁸²⁾하라는 일임.

이에 근거한 예조의 수결 내용. 사정이 이러한데 당초 어찌 계본(啓本)에 명백하게 따져 열거하지 않았는지, 강원도에서는 결코 시일에 맞출 형편이 아니고, 본도의 응자만 들여주는 일을 다시 행관(行關)하되 반으로 꺾는다는 뜻으로 훈도 별차가 왜인과 조정함이 마땅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것.

정유(1717) 9월 25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지난번에 동래부사의 장계를 비변사에서 복달(覆達)²⁸³⁾한 데 근거하여 왜인이 연례(年例)로 구청하는 응자(鷹子) 값의 쌀을 제하고 본색으로 들여주되, 금년 가을철은 거의 끝나가니 명년부터 시작하여 거행한다는 뜻으로 훈도 별차 등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명백하게 약속을 정하라는 일로 이미 동래부에 분부하였으며, 본도에서도 동 응련(鷹連)을 이렇게 알고 대령하라는 일로 행이(行移)하였으나, 방금 접한 동래부사의 보고에는 왜인 등이 응자를 잡는 것은 반드시 가을철에 있고 봄 여름 사이에는 정녕 깃털을 가는 철이라 매양 죽어버리는 우려가 있으니 기어코 이 때에 맞추어 들여달라는 일로 말을 만들어 간절하게 애걸한다고 하였는데, 조정에서 이미 시행을 허락하였으니 서로 버틸 필요는 없을 듯하나, 강원도에서는 결코 맞출만한 형편이 아니고, 본도에 분정한 응자 27연(連)을 우선 마련하여 동래부로 보내되, 도부한 일시를 이문(移文)할 것. 경상감영으로.

282) 행하(行下): 하급 부서에 명령을 내림.

283) 복달(覆達): 복계(覆啓)를 왕세자 청정 하에 고쳐 사용한 말.

정유(1717) 10월 22일

동래부사 조영복(趙榮福)²⁸⁴의 첩정 내용. 해당 왜인의 예단(禮單) 응련(鷹連)을 세전(歲前: 해가 바뀌기 전)에 맞추어 들어주는 뜻으로 전 부사(府使)가 재임할 때 예조에 보고하여 회송(回送)한 내용의 사정이 이러한데, 당초 어찌하여 장계 원본 가운데 따져서 나열하지 않았는지? 강원도는 결코 미칠만한 형편이 아니니, 본도의 응자(鷹子)만 들어주는 일로 다시 행관(行關)²⁸⁵하였기에, 절반을 들어준다는 뜻으로 훈도 별차가 왜인과 더불어 조정하는 일로 회송하였기로, 훈도 별차 등에게 전령하여 분부하였더니, 방금 바친 훈도 최상집과 별차 김진혁 등의 수본에, “전령에 의거하여 즉시 관수왜에게 가서 보고는 전령의 사연을 일일이 언급하였더니, 동 왜인이 ‘뜻하지 않게 이제 또 먼 길의 응련(鷹連)은 결코 기일에 미칠만한 형편이 아니고 본도의 응자를 절반만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바, 이제 이번 구청하는 응연을 만약 수진(手陳)²⁸⁶이로 사냥을 잘하며 재능이 있는 것으로 골라 잡는다면 수십 연의 응자는 참으로 쉽게 얻기 어렵지만, 새로 생산되어 길들이지 않은 생응(生鷹)을 수량에 맞추어 들어준다면, 이제 새로운 매를 잡는 철이 되었거니와 하물며 또 경상도는 면적이 매우 넓은데 50여 마리의 매 새끼를 얻는 것이 어찌 어려워서 이렇게 절반으로 들어주어, 저희와 도주가 모두 죄책을 입도록 하는 것인가? 당초 간절하게 애걸한 본뜻이 매우 아니다’고 하거늘, 비직 등이 ‘응연을 들어주는 것은 비록 전례가 있지만 중간에 폐기한 지 오래된 일을, 이제 다시 복구하면서 또한 폐단에 심함이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응자는 곧 우리나라 북도에서 생산되는 것이므로, 도로가 요원하여 공 등이 구청하는 기한에 미치지 못할 형편이기로, 본도에서 응련을 모아서 반절(半折)로 들어주는 것이 매우 편하고 좋거늘,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수량에 맞추어 다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실로 미안하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먼 길에 분정한 매가 비록 조금 늦더라도 한결같이 연조(年條)의 수량대로 죽 들어주어서, 에도에 올리지 못하여 난데없이 중한 책망을 받는 것을 모면하게 해 주면 천만 다행이라’고 간절하게 간청하여 마지 않았기로 연유를 다시 수본하는 일”이라고 수본하였는데, 관수왜가 ‘이제 이번 본색의 응련을 조정에서 시행을 허락한 뒤에, 이미 도중에 통보하여 그대로 에도에 전달하였는데, 이제 만약 절반으로 들어주면 도주가 반드시 죄책을 받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먼 길에 분정한 매가 비록 조금 늦더라도 한결같이 연조대로 수량을 죽 들어달라 운운’ 하였는바, 조정에서 이미 응련의 지급을 허락한 뒤로 이제 먼 길에서는 기일에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절반으로 바꾸는 것은 성신(誠²⁸⁷)信)의

284) 조영복(趙榮福, 1672-1728): 함안 조씨로 자는 석오(錫五), 호는 이지당(二知堂)이다. 숙종 40년(1714)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도승지, 경상도 관찰사에 이르렀다.

285) 행관(行關): 관아 상호간에 공문을 보냄.

286) 수진(手陳): 사냥 용 매로 집에서 여러 해 묵혀 기른 것.

도리에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라, 왜인이 이제 죽 들어달라는 뜻으로 간절하게 간청한 바 있으니, 이는 세전에 일시에 들어달라는 것과는 다름이 있어서 실로 핑계를 뉘말이 없으니, 본도와 다른 도의 응련은 분정한 수량에 의거하여 내도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일의 형편에 순조로운지라, 예조에서 참작하여 시행할 일.

이에 의거한 예조의 수결(手決) 내용. 보고한 바가 이와 같아서 강원도에도 역시 분부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방금 도부한 동래부사의 첩정 내용에, “왜인의 예단(禮單) 응련(鷹連)을 강원도에서는 결코 기한에 미칠 만한 형편이 아니고, 본도의 응자(鷹子)만 들어준다는 뜻으로 훈도 별차 등에게 전령하여 분부하였더니, 관수왜가 이제 이번에 본색(本色)의 응련을 조정에서 시행을 허락한 뒤로 이미 도중에 통보하여 그대로 예조에 전달하였는데, 이제 만약 절반을 들여주면 도주가 필시 죄책을 받을 것이니, 분정한 매가 혹 조금 늦더라도 한결같이 연조의 수량대로 죽 들어달라고 운운하였으니, 이는 세전에 맞추어 일시에 들어주는 것과는 일의 형편이 순조롭고 편하다고 첩정하였는데, 본도에 분정한 응자 29연을 세전(歲前) 세후(歲後)를 따지지 말고 계속 마련하여 동래부로 보내며, 가목(價木)²⁸⁸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호조(戶曹)로 올려보내지 말되, 도부 일시를 이문(移文)할 것.

무술(1718) 정월 19일

비변사에서 신목(申目)을 첨부하였으니 달하(達下)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조영복의 장달을 보면 “무릇 대소 차왜(差倭)가 나오면 먼저 하선(下船) 다례(茶禮)를 행하여 멀리 온 것을 위로하고, 왜인 또한 초량 객사(客舍)로 나와서 전패(殿牌)²⁸⁹에 숙배(肅拜)하고 방물(方物)을 봉진(封進)하고는 그대로 하선연(下船宴)을 행하고, 왜관에 머무는 기한이 찬 뒤에 또 상선연(上船宴)을 행하여 돌아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왜인을 접대하는 항규(恒規)인데, 이전부터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 두어 그들이 되돌아 갈 때가 임박한 때에 비로소 방물을 봉진하는 것이 이미 근자의 사례가 되었고, 그들이 장사하는 여러 일은 이에 먼저 서둘러 해야 할 일로 여기고 공헌(貢獻) 등의 절차는 도리어 나머지 일로 여겨, 조정을 가볍게 보아 업신여기는 그 의도가 절로 그 가운데 있으니, 지금 이후로는 관수왜 및 재판왜가 나온 뒤에 즉시 진상(進上) 숙배(肅拜)를 행하는 일로 묘당에 명하여 영구히 정식으로 하여 시행하며, 쇠뿔(鐵椀)을 훔쳐낸 죄인 김축상(金丑祥) 김귀생(金貴生) 등을 잡아 관에 고한 것은 실로

287) 원본의 ‘不信’의 ‘不’은 ‘誠’의 오키로 보인다.

288) 가목(價木): 값으로 지급하는 포목(布木).

289) 전패(殿牌): 각 지방 객사에 임금을 상징하여 ‘전(殿)’ 자를 새겨 모셔 둔 나무 패.

심상한 도적을 잡은 공로와는 다름이 있으니, 위 항목의 박순악의 농간을 적발하여 사로잡았던 군관 한량(閑良)²⁹⁰ 홍구범(洪九範)과 잡는 것을 도운 군뢰(軍牢)²⁹¹ 박태백(朴太伯) 및 김축상 등을 기포(機捕)²⁹² 하였던 군관 이필언(李必彦), 조포(助捕) 윤송은(尹崇殷) 등에게 특별히 상을 논하는 일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차왜가 나오면 전례로 봉진압물(封進押物) 등의 명색이 있어서 저들이 중시하는 바가 공물을 바치는 데 있으니 즉시 숙사(肅謝)²⁹³의 예를 행하고 그대로 토공(土貢)의 물건을 바치는 것이 사리가 명백하고 바른 것임은 참으로 장달(狀達)의 내용과 같거늘, 시일을 늦추어 기일이 박두한 뒤에 비로소 예를 행하는 것은 매우 미안한 일이니, 지금 이후로는 훈도 별차 등에게 시켜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무릇 차왜가 나오면 숙배하고 봉진하는 등의 예절을 진작 거행하게 하는 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전일과 같이 연기하여 끌지 말며, 상을 논하는 한 가지 일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57년(1718) 정월 19일 우부승지 신윤양래(尹陽來)²⁹⁴ 차지로 계달하여 그대로 준함.

무술(1718) 2월 18일

이번 2월 13일 약방(藥房)에서 진찰하러 들어가 입시하였을 때, **제조 민(閔)이 계품하기를**, “지난번 왜인이 동래부사를 통하여 동청(銅靑)을 진헌하였으나 제조 방법을 몰라 어약(御藥)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저쪽에서 이미 국가의 병환 일로 보내어 바쳤으면 응답하는 도리가 있어야 합당하니, 호조에 분부하여 동래부와 의논을 주고받아 인삼을 보내주는 것이 합당할 듯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진달하는 바가 참으로 그렇다. 이렇게 분부함이 옳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술(1718) 6월 초7일

이번 6월 초3일 약방에서 진찰하러 들어가 입시하였을 때 **제조 민(閔)이 계품하기**

290) 한량(閑良): 무학(武學)으로서 무과에 아직 급제하지 못한 자.

291) 군뢰(軍牢): 죄인을 다루는 병졸.

292) 기포(機捕): 기회를 포착하여 사로잡음.

293) 숙사(肅謝): 숙배(肅拜)하여 사은(謝恩)함.

294) 윤양래(尹陽來, 1673-1751): 과평 윤씨로 자는 계형(季亨), 호는 회와(晦窩)이다. 숙종 34년(1708)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 함경도 관찰사, 경상도 관찰사, 도승지, 평안도 관찰사, 한성관윤, 형조판서, 공조판서, 호조판서, 대사헌, 좌참찬,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를 역임하고, 치사하여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시호는 익헌(翼獻)이다.

를, “전일에 동래부사 조영복의 장달(狀達)을 품의하여 확정할 때 한 조목이 누락되었으므로 감히 이렇게 추가하여 진달합니다. 그 말에 ‘훈도 별차 등의 수분에 관수왜의 말이 금년조의 구청 응자(鷹子)는 이미 다 들었는데, 명년조 56연 가운데 30연은 매로 들여주고 26연은 가미(價米)로 들여주고, 응자는 반드시 미리 분정하여 금년 9월 10월에 들여달라고 하였는데, 각 읍에서 응련을 납입하러 오는 자가 왜인이 요구하는 바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간혹 돈만 낭비하여 사왔다가 실은 미리 어긋나고, 심지어 관동(關東)의 각 고을에서는 천리 멀리 데려 오느라 도중에 죽어버리는 것이 많아서 그 폐단이 더욱 심하니, 앞으로 지급할 응련은 모두 다 도내의 각 고을에 분정하였다가 그대로 매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따라 왜인에게 들여주고, 수표(水標)를 받아내어서 도부하는 고을을 정하여 본값을 받아 먹도록 허락한다면, 원근의 매 상인들이 필시 장차 폭주하여 기한 내에 다 지급할 수 있을 것이고, 각 고을에서는 본값 이외에 다른 비용이 없어서 또한 먼 길에 데려왔다가 피집(被執)하느라 머무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라 운운’ 하였는데, 변방의 신하기 이미 형편을 잘 알아서 이렇게 진품(陳稟)하였으니 시행을 허락함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무술(1718) 7월 19일

이번 7월 17일 약방에서 진찰하러 들어가 임시하였을 때 제조 민(閔)이 계품하기를, “이것은 동래부사 조영복의 장달(狀達)입니다. 재관왜와 관수왜 등이 임술년(1682) 이후로 대마도(對馬島)의 ‘도(島)’를 ‘주(州)’자로 고쳤으니, 피차간에 왕복하는 서계 가운데 도(島)를 고쳐 주(州)로 호칭하는데, 이제 이번 교환차왜(告還差倭)가 가지고 가는 예조의 답서 가운데 ‘환도(還島)’ 글자가 ‘주(州)’자와 서로 배치되므로 서계를 도중(島中)에서 되돌려보내어 ‘도(島)’자를 ‘도(棹)’자나 혹은 ‘괘(旆)’자로 고쳐 써 달라고 운운 하였는데, 환도(還島)의 ‘도(島)’자는 ‘대마도(對馬島)’를 ‘도(島)’라고 칭하는 것과는 다름이 있는데, 교활한 왜인이 본디 지식이 없어서 매양 이런 글자 구절 사이에 겨루려고 계획하니 정상이 실로 매우 가증스러우나, 한 글자를 고쳐 주는 것은 원래 긴요한 관계가 없어서 허락을 아끼는 것이 부당할 듯하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데, 이제 이번엔 ‘도’자를 고치는 청은 참으로 가소로우나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이니 승문원에 고쳐 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이 일은 관계되는 바 없으니 그 말대로 고쳐 줌이 옳겠다”고 하셨습니다.

국역 전객사별등록 제2책

원본 제2책 원목차

경자(1720)

- 7월 공생(工生) 출사(出仕)가 많은 자를 부록(付祿)함.
- 9월 공생 등 졸곡(卒哭) 전에 출사가 많은 자를 부록함.
- 11월 졸곡 뒤에 전례대로 습악(習樂)함.
- 12월 국휼 때 공생 취재(取才)는 강보(講譜)로 함.

신축(1721)

- 3월 대정(大靜)에 표류한 한인(漢人)을 육로로 북경(北京)으로 들여보냄.
- 4월 제주에 표류한 한인을 북경에 들여보냄.
- 6월 황당선이 물러갈 뜻이 없어 역관을 보내어 책망하여 타이름.
- 윤6월 진하(陳賀) 차왜(差倭)의 상선언을 베풀어 행하는 장계를 잃어버린 발군(撥軍) 조법(趙法)을 조사해 내어 형벌을 추고하여 죄를 정함.
- 11월 전서왜(典書倭)를 응대하는 역관의 사례단(私禮單).
- 12월 도해역관(渡海譯官)이 가져온 조위(弔慰) 회답 서계에 별폭(別幅)이 없어 도중(島中)에 통보하였는데, 이제 비로소 별폭을 갖추어 고쳐 지어 왔기에, 원래 서계를 되돌려 내려보내고 등본을 올려보냄.

임인(1722)

- 3월 평암환(平巖丸)의 송사(送使) 서계(書契)가 선조대왕(宣祖大王)의 휘자(諱字)를 범하였으나, 덕종대왕(德宗大王)의 처음 휘를 피휘(避諱)하지 말게 하였으니 이 사례대로 서계를 고치지 말고, 부사(府使) 추고(推考)와 훈도 별차의 곤장을 치는 일을 안서(安徐:보류)함.
- 7월 암환(巖丸)의 서계를 청한 바대로 평윤공(平胤公)으로 고쳐 주는 일.

계묘(1723)

- 10월 포핌을 모조리 없앴.
- 11월 옥포(玉浦)의 소통사(小通事) 백철동(白哲同)이 왜인과 부동하여 관리를 묶고 쌀을 빼앗았기에 법대로 처단하고 왜학(倭學) 현기(玄沂)를 잡아다 심문하여 조치함.

갑진(1724)

- 정월 경녕전(慶寧殿)에 부모(耐廟)한 뒤에 남은 수의 악공 25명을 본역(本役)으로 되돌리고 보인(保人) 150명은 양역청(良役廳)으로 이송함.
- 8월 별차 김수정(金壽鼎)이 문정(問情)을 늦춘 데 대하여 참작하여 죄를 다tm림.
- 10월 옥포 왜학 현걸(玄傑)이 문정(問情)을 살펴 하지 못한 죄상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

을사(1725)

- 공생(工生) 등의 부록(付祿) 취재(取才)를 국휼 졸곡 전에는 출사가 많은 자에게 부록하는 전례대로 부록하도록 허락함.
- 12월 왜인의 서계에 조휘(初諱)를 범한 것이 있어 부사를 추고하는 등의 일은 모두 논하지 않음.
- 참의(參議)가 당년조 부특송선의 회답을 회피하는 일로 개차(改差)를 상소함.

병오(1726)

- 2월 하왜(下倭)들이 수직막(守直幕)을 철거 훼손하여 부산첨사는 잡아와서 심문하고 동래부사는 추고하며 훈도 별차는 본부에 명하여 엄중하게 곤장을 치게 함.
- 5월 본조의 참의(參議)가 왜인의 서계 회답의 혐의를 피한다고 상소하여 체직(遞職)됨.
- 6월 옥포 왜학 김수천(金壽天)을 문정(問情)의 착오로 곤장을 쳐서 파직하고 그 대신을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선발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냄.
- 왜관 여인과 간통한 사람 순홍(順弘)을 효시하고 여인 선양(善陽)은 정유년(1717) 계절(季月)의 사례에 의거하여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하고, 순홍의 처는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정배하고, 지적하여 사로잡은 사람은 해조에 명하여 상을 논하게 함.
- 8월 비변사의 회계에 의하여 영일현감 지흠(池欽)을 추고하고 가별차 김진혁(金鎭赫)은 본부에 명하여 곤장을 치게 함.
- 9월 오도(五島)에 표류한 왜인을 들여보내는 서계의 하단에 종이가 끝나도록 여유가 없이 쓰고 발선(發船) 월일과 지명이 서로 어긋나 서계를 고치도록 청하여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

정미(1727)

- 정월 악공 김광찬(金光贊)이 상언하여 부모(耐廟) 의식에 참여한 공인(工人)에게 양가(良加)의 은전을 특별히 시행함.
- 3월 참의가 왜인에 대한 혐의를 피할 것을 상소하여 교체함.

- 윤3월 악생(樂生) 김윤해(金潤海)가 그 아버지 전악(典樂) 준영(俊英)을 위한 상을 청하는 상언을 함에 이에 따라 시행함.
- 5월 부특송사(副特送使)의 다례(茶禮) 때 부산첨사 전순좌(全舜佐)가 술에 취하여 함부로 행동한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함.

무신(1728)

- 2월 왜물(倭物) 진상 물색(物色)이 서로 어긋남.
- 7월 출사역관(出使譯官)이 시일에 맞추어 내려오지 않아 교활환 왜인의 재촉을 받게 된 해당 역관 등의 죄상을 유사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
- 7월 왜공 미태(米太)가 부족하여 등록(騰錄)을 가져다 살펴보고 다시 보고하게 함.
- 왜관 수리 감동관(監董官) 김수구(金壽九)가 훔쳐 먹은 금액을 조사해서 찾아내어 최대제(崔岱齊)에게 내어주고 모자라는 비용은 영문(營門)에서 잘라 줄 것.
- 8월 동래부에서 삼세(蔘稅)가 없어지고 부역 경감이 혁파되어 지탱할 도리가 없어 묘당에서 속히 변통함.

기유(1729)

- 정월 왜선이 웅천(熊川)과 거제(巨濟)로 일부러 표류하여 정박함에 대마도에 이문(移文)하는 일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
- 정월 훈도 현덕윤(玄德潤)이 기유조 9송사에게 지급하는 황죽(篁竹)과 호초(蒿草)를 줄이고 훈도 별차의 집과 출사청(出使廳)을 개조한 공으로 가자(加資)함.
- 2월 왕세자 상사(喪事) 때 왜인을 접대하는 복색(服色) 및 연향(宴享)의 절차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지휘하게 함.
- 3월 왜인 접대는 졸곡(卒哭) 전의 복색(服色)으로 함.
- 훈도 김시박(金時璞)과 별차 최대제(崔岱齊)에게 청한 상은 그냥 둠.
- 역관 현덕윤이 상언(上言)하여 상을 청한 것은 그냥 둠.
- 옥포 왜학 현걸(玄傑)이 문정(問情)을 잘못하였는데 그 죄상을 유사에게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
- 4월 왜인 접대 연향 때의 복색을 다시 묘당에 명하여 품의하게 함.
- 9월 전악(典樂) 박만적(朴萬績)에게 가자함.
- 9월 왜관 수리 감동(監董)인 역관 김수구(金壽九)와 유극신(劉克愼)의 죄를 논하고 빚진 돈을 징수해 내어서 최대제(崔岱齊)에게 옮겨 지급하고 최대제의 상에 대한 논의는 그냥 둠.
- 11월 왜관에서 술을 훔친 사람을 접촉한 주인에게 죄를 논하고 사로잡은 사람에게는 넉넉하게 상을 논함.
- 12월 왜선이 나오는 것을 잘못 관측한 봉군(烽軍)에게 곤장을 치고 왜관의 술을

흠친 죄인은 효수(梟首)하며 사정을 알았던 사람에게 형벌을 정하고 사로잡은 사람에게는 상을 논함.

경술(1730)

- 8월 차상통사(次上通事)의 복구 요청을 본원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
- 역관 번기화(卞箕和)가 9송사왜(送使倭)에게 지급하는 황죽(篁竹)과 고초(藁草)의 원래 태가(駄價)를 밝히고 줄여서 현덕윤(玄德潤)의 사례대로 가자하고, 이후로는 일체 방색함.
- 12월 조삼인(造蓼人)을 일죄(一罪)로 논하는 것을 호조와 지방관에 신칙함.

신해(1731)

- 정월 출사역관(出使譯官)이 일을 마치고 상경장(上京狀)을 만들어 보내어 해조와 해원에서 상고하여 책임을 논하는 일.
- 8월 고경차왜(告慶差倭)에게 참의가 회답하는 서계 가운데 '선수(先守)' 두글자는 알존(邊存)과 관계되니 반드시 '선주(先州)' '선태수(先太守)'로 고쳐 쓰고, '몰량(沒量)'의 '몰(沒)'과 '망이(亡已)'의 '망(亡)'자를 고쳐 주기를 청하였는데 '선태수(先太守)'만 고쳐 줌.
- 12월 천은(天銀)의 통용을 개시하는 것이 불가하니 팔성은(八星銀)으로 받아 내며, 옥포의 왜학 양시웅(梁時雄)이 문정(問情)을 잘못 적어 서로 어긋나기에 잡아와서 심문할 때 심문 조목을 드러내어 죄를 정함.
- 등급을 복구하기를 청하는 상언에 대하여 특별히 한학(漢學)에게 시행하고, 차상통사(次上通事)를 청학(淸學)에 옮겨 소속시킴.

임자(1732)

- 차상통사를 복구하여 청학에 옮겨 소속시키되 해당 사역원의 조기를 만들어 둠.
- 정월 왜선이 우도(右道)로 표류하여 정박함에 옥포 왜학 양시웅(梁時雄)이 문정함에 인원수가 어긋나 이미 다른 죄로 갇혀 있어서 엄중하게 조사하여 법률을 적용하였고, 농간한 아전과 소통사(小通事)에게 엄하게 형벌하고 법률을 적용하며, 훈도와 별차는 논할 것이 없음.
- 2월 상언을 거듭 바친 데 대하여 각별히 조목에 따라 다스림.
- 9월 천은(天銀) 대신 정은(丁銀)을 받아내도록 엄하게 신칙함.
- 10월 왜선이 나옴에도 전혀 관측하지 못한 수령(守令)과 변방 장수와 문정(問情)의 시각을 늦춘 별차(別差)를 잡아다 심문하고 죄를 정하며 좌수사(左水使)를 추고함.

계축(1733)

- 정월 허위로 차개(差价)를 사칭하여 함부로 양식과 반찬을 받은 중금도왜(中禁徒倭)를 묶어 도중(島中)으로 보냄.
- 왜관의 동쪽 행랑 56칸 및 다섯 곳 문에 각 한 칸이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빈 집에는 구휼의 은전을 거론할 것은 없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개조함.
- 4월 옥포왜학 김정홍(金鼎弘)을 문정(問情)의 착오와 시일을 늦춘 것으로 잡아다가 심문하고, 부산의 난파한 배와 표류민을 데려온 차왜는 단연코 접대를 허락하지 않고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엄한 말로 물리쳐 보내라고 발군(撥軍)을 보내어 신척함.
- 5월 신축년(1721)의 전서관(典書官) 왜인이 지금 일대관왜(一代官倭)로서 왜관에 머무르는데 이전대로 초목 약재(藥材)를 강론할 때 출사역관(出使譯官)을 정하여 물음에 따라 답을 함.
- 5월 삼사(蔘絲)를 피집(被執)한 값으로 천은(天銀)이 나왔는데 물리치고 고쳐 오게 하였다가 스스로 속임을 당한 훈도 별차에게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곤장을 치게 함.
- 6월 퇴직하여 쉬고 있는 차왜접위관(差倭接慰官)을 추노(推奴)한 일로 잡아와서 조처함.
- 6월 접위관 권(權)을 일을 마친 뒤에 잡아 옴. ○ 6월 인삼을 피집한 대가를 일일이 내보내라고 이치에 근거하여 장계로 알려 실정의 허위를 살펴서 속이는 폐단이 없게 함.
- 왜인에게 지급하는 공작미(公作米) 및 요미(料米)의 부족분을 이미 끌어모아 충당하여 이리저리 추이(推移)하는 폐단이 없게 함.
- 9월 비변사의 회계(回啓). 부산의 훈도와 별차가 문정(問情)을 늦춘 데 대하여 곤장을 치고 청천별장(靑川別將)이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 왜인에게 준 죄상을 잡아다가 심문 조사하여 다스림.
- 9월 비변사의 회계. 부산의 훈도 별차를 선발함.
- 12월 절행(節行) 은화의 일.

갑인(1734)

- 정월. 왜인이 수표(手標)를 내는 의도를 금단함.
- 평미일(平彌一)의 아명 도서를 방색하는 일과 훈도 현덕윤을 변정육의 사례에 의거하여 가자하고, 별차 김정균에게 준직(準職)을 제수함.
- 각 아문과 여러 궁가(宮家)의 별장(別將)과 차인(差人)을 금함.
- 접위관(接慰官)이 죽은 뒤 상선연(上船宴)에는 무오년(1678)의 사례대로 향위관(鄕慰官)을 차출하는 일.

- 5월 교린(交隣)을 성신(誠信)으로 하여 서로 속이거나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동래부에 신칙함.
- 한어(漢語) 학습을 신칙하여 권함.
- 7월 왜인 접대를 하문(下問)하여 진상(進上) 숙배(肅拜)할 때의 의장(儀仗)을 개조하고, 조량의 객사가 무너지기 전에 속히 수리하는 일을 감사에게 신칙하여 거행하게 함.
- 공목미(公木米) 및 왜인의 요미(料米)와 땀감 등을 기한 내에 납입하고 시일이 지나도록 납입하지 않은 수령은 일일이 계문(啓聞)함.
- 8월 옥포 왜학 정동기(鄭東起)가 이폐이양[以配養]의 문정(問情)에 대충 반종(伴從)이 3명이라고 하여 유사(攸司)에 명하여 죄를 논함. 부산의 난파된 배와 표류민을 데려온 차왜가 지금까지 가지 않아서 들여보내도록 책망하여 타일렀으나 잘 거행하지 않으면 임역(任譯) 등을 잡아다 심문하여 무겁게 추궁하고, 부사도 당초 엄하게 신칙하지 않아 엄중하게 추고하며, 역관들이 물화를 피집하면서 견제가 없지 않으니 엄하게 더욱 금단하되 범한 자는 크게는 장계로 알리고, 동래부에 청(廳)을 설치하여 역관을 불러모아 왜어(倭語)를 가르치는 것을 등대(登對)할 때 품의 조처하게 함.
- 8월 동래부로 내려간 왜역(倭譯)에게 청(廳)을 설치하여 왜어(倭語)를 학습하는 것은 시행하지 말며, 출사(出使)한 왜역은 일을 마친 뒤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니 올라오게 재촉하는 일을 각별히 신칙함.
- 군포(軍布)와 신포(身布)와 대동(大同)을 순목(純木)으로 정월부터 시작하여 받아 올림.
- 10월 비변사의 회계. 조량객사에 올봄부터 의장(儀仗)을 바꾸어 마련하되 물자와 인력은 본도에 보고하여 지급함.
- 우도(右道)로 표류한 왜인에게 5일 지공(支供) 이외에 만약 공급할 것이 있으면 선혜청에서 비변사에 보고하고, 임역은 규정으로 처단하고 도신(道臣)과 수신(守臣)은 문책함.²⁹⁵⁾
- 11월 몽학(蒙學)에 총민(聰敏)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상언을 해조에 품의 조처하게 함.
- 전악(典樂) 김진태(金鎭兌)가 상언하여 가자를 특별히 시행함.

을묘(1735)

- 정월. 재판차왜는 이전대로 접대하고 공작미는 엄격하게 방지하며 옥포 왜

295) 이 대목의 '논상(論賞)'의 상(賞)은 등록의 해당 일자의 기사(記事)에는 '논책(論責)'으로 되어 있으므로, 등록 본문의 기사 내용에 따라 바로잡음.

학 정동기는 잡아다가 심문하여 죄를 정함.

- 관수왜 평방광(平方廣)이 죽어서 모든 일을 재판(裁判)이 대신 살피니 일공(日供)은 감하고 진상(進上) 물건은 새 관수왜가 나와서 받아 올리며, 일찍이 부의 물자를 지급한 적은 없었다는 일.
- 3월 왜선이 기장(機張)에 표류하여 정박하였는데 양식 쌀을 5일분 외에 더 요구하며 색리(色吏)를 끌어가 배에 실었는데 책망하고 타일러 내려 보내고 주모자 왜인을 도중으로 들여보내어 치죄하는 일.
- 우도로 표류한 왜선을 차례차례 교부하되, 5일을 지나 지체하여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말 일.
- 8월 초량객사 공사를 시작함.

병진(1736)

- 정월 왜료(倭料)가 부족하여 청한 것을 그대로 보류한 도신(道臣)을 추고함.
- 7월 일공 땀감을 공급하지 않아서 왜관의 왜인이 뚫고나왔는데, 겸관(兼官) 김해부사와 훈도 별차는 잡아다 심문하고, 부산첨사는 좌수사에게 명하여 곤장 50대를 치고, 땀감을 기일에 맞추어 지급하고, 후일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첨사는 효수(梟首)하고 파수(把守)하는 각 인원은 경중에 따라 처분함.
- 8월 몽학(蒙學) 1인을 절사(節使)로 들여보내어 말을 배워 오게 함.
- 순천(順天)에서 표류한 사람을 데려오는 차왜가 나와서 등본을 올려보냈는데, 앞서 왜황(倭皇)이 죽고 새 왜황이 계승하여 연호 향보(享保)를 원문(元文)이라고 친 서계(書契)가 옴.
- 9월 공작미와 땀감을 기한이 지나도록 공급하지 않은 첨사와 수령에게 엄중한 법률로 적용하는 것으로 엄하게 신칙함.
- 왜인이 뚫고나온 것으로 관수왜의 공케를 거두는 것은 형편을 보고 처치하라 분부하고, 가훈도 변기화(卞箕和)를 그대로 훈도로 차출하는 청을 시행하지 않은 부사를 엄중하게 추고함.
- 10월 우도로 표류한 왜선에 대한 5일 양식 규정을 재판이 서로 버터 기꺼히 그 청을 허락하고, 왜관의 철공을 지급하도록 함.
- 11월 조정에서 이미 표류 왜인에게 5일 양식을 이미 허락하였으니 지세포 만호가 5일이 지나도록 지체한 것은 용서하고, 이후로는 우심한 자를 적발하여 논죄함.

경자(1720) 7월 16일

장악원의 첩정 내용. 장악원 소속 좌우방(左右坊) 악사 권신(權信) 등의 수본에 “이전부터 국휼(國恤)이 있을 때 졸곡(卒哭) 이전에는 장악원 소속 공생(工生)의 부록(付祿)²⁹⁶은 출사(出仕)가 많은 자에게 부록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경자년(1720) 추등(秋等)²⁹⁷에는 어떻게 할지 수본한다” 하였는데,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이전에 국휼 때 졸곡 이전에는 출사를 계산하여 부록하는 것이 규정이었으니, 이전대로 출사가 많은 것으로 부록하는 일로 예조에서 지휘하여 행하(行下)²⁹⁸할 일. 수결(手決) 내용 : 등록대로 시행할 일.

경자(1720) 9월 25일

장악원의 첩정 내용. 장악원 소속 공생 등의 이번 추등(秋等) 부록(付祿)은 국휼의 졸곡 이전에 출사한 것이 많은 자로 본조에 보고하여 등록대로 부록을 허락하였거니와, 이제 동등(冬等) 역시 졸곡 이전에 관계되니 전례대로 출사가 많은 자로 부록하는 연유임. 이에 근거한 수결 내용: 보고한 대로 시행함.

경자 (1720)11월 12일

장악원 첩정 내용. 본원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기축년(1649) 국휼이 있었을 때 졸곡 뒤의 습악(習樂)을 대신(大臣)의 수의(收議)를 거쳐서 시행하였고, 기해년(1659) 갑인년(1674) 두 해에도 기축년 등록대로 거행하였는데, 이번에도 이전대로 습악할지, 예조에서 지휘하여 행하하실 일. 이에 근거한 수결: 등록대로 시행함.

경자(1720) 12월 15일

장악원 첩정 내용. 이전에 국휼 때에는 졸곡 뒤로부터 연제(練祭) 뒤까지, 공생의 부록(付祿) 취재(取才)²⁹⁹는 본조와 본원에서 입회하여 모두 강보(講譜)로 하는 일

296) 부록(付祿): 녹을 주는 관직에 부침.

297) 추등(秋等): 일년의 회계 연도를 각 계절로 4등분한 분기. 3/4분기.

298) 행하(行下): 위에서 아래 사람에게 일정한 혜택을 내리는 것을 행하라 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관공서의 명령을 시행하도록 시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은 등록에 뚜렷이 실려 있는바, 오는 춘등(春等)의 부록 취재는 전례대로 강보로 해야 할지, 즉시 행하하실 일. 이에 근거한 수결 내용: 전례대로 시행함이 마땅한 일.

신축(1721) 3월 27일

비변사에서 복계하기를, “방금 제주목사 민제장(閔濟章)³⁰⁰의 장계를 접하니, 청(淸)나라 사람 18명이 표류하여 대정현(大靜縣)에 정박하였는데, 선박은 모조리 부서졌고 실었던 기물 역시 물에 떠내려 가버렸으며 비록 약간 남은 것이 있으나 이미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 불태워버리고 육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선박이 이미 부서졌으니 마른 길로 보낼 수 밖에 없는지라, 계사년(1713) 대정(大靜)의 모슬포(毛瑟浦)에 한인(漢人)이 표류하였을 때의 사례를 가져다 살펴보니, 본도(本道)에 명하여 별도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데리고 서울로 올려보내어 북경(北京)으로 돌아서 보내도록 하였고, 바다를 건널 때도 또한 본 목사(牧使)에게 명하여 별도로 일을 아는 군관(軍官)을 정하고 차사원을 부쳐, 연로(沿路)로 올라올 즈음에 타는 말과 쇠마(刷馬)³⁰¹를 별도로 정하여 주고, 양식 쌀을 지급하는 것도 또한 전례대로 거행하며, 지나는 각 고을에 엄하게 신칙하여 수호하여 바깥 사람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건져낸 물건 중에 운반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쇠마를 지급하여 차례차례 운반하며, 차사원이 하나같이 거느리고 와서 유실되는 폐단이 없게 하고, 한학(漢學) 역관(譯官) 1인을 서울에서 또한 선정하여 말을 주어 내려보내어 사정을 묻고 데려 오도록 하였는데, 이런 뜻으로 지나는 각 도 및 사역원에 분부하여 아울러 거행하며, 자문(咨文) 역시 괴원(槐院)에 명하여 지어내게 함이 어떠할지?”하였는데, 전교에 “윤희한다” 하셨음.

신축(1721) 4월 13일

이번 4월 12일 친림(親臨) 문신(文臣) 전강(殿講)에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金)이 계품하기를**, “이전부터 표류한 사람이 남경(南京) 사람이면 재자역관(賚咨譯官)을 북경으로 들여보내고, 산둥(山東) 사람이면 단지 봉황성(鳳凰城)까지만 데려다 부쳐주었는데, 이번에 제주에 표류한 한인(漢人) 중에는 또한 남경에서 온 자가 있어

299) 취재(取才): 과거 시험 이외에 재능을 건주어 인재를 선발하는 특별 시험.

300) 민제장(閔濟章, 1671~1729): 여흥 민씨로 자는 회백(晦伯)이고 호는 삼금당(三錦堂)이다. 숙종 31년(1705) 무과에 급제하여 신묘년(1711)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다녀오고 무산부사, 전라좌수사, 제주목사, 충청병사, 전라병사, 통제사를 역임하였다.

301) 쇠마(刷馬): 지방에 비치한 관용의 고마(雇馬).

문정(問情)하는 역관이 방금 이미 내려갔으니 마땅히 데려올 것인데, 그로 하여금 그대로 북경까지 들여보냄이 어떠할지?” 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축(1721) 6월 초6일

이번 6월 초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金)이 계품하기를** “황당선(荒唐船)³⁰²이 해마다 나오지만 금년처럼 방자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쫓아서 몰아낼 때 외양(外洋)으로 되돌아 나갔는데, 계속되는 황해수사(黃海水使)의 장계를 보니 쫓아서 몰아내려하면 간혹 칼을 빼어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혹은 막사를 만들고 숲을 걸어서 물러갈 뜻이 없었으며, 또 해서(海西) 수령의 말을 들으니 마을 사람들이 남녀 할 것 없이 혹 출입하면 심지어는 협박하고 약탈하는 일까지 있어서, 이 때문에 포구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감히 나타나지 못하고 농사 일을 폐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니, 일이 매우 우려됩니다. 이제 마땅히 역관 한 사람을 정해서 보내어 경계를 넘어와서는 불가하다는 뜻으로 잘 책망하여 타이르고, 또 저쪽의 자문(咨文)에 ‘사포(射砲)에 종사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포에 종사한다는 말 투대로 자문(咨文)을 하여 혹은 활[射] 혹은 총[砲]을 사용한다는 뜻을 검하여 위협하는 기색을 보이고, 그래도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이 뜻으로 자문을 보내어 금단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신축(1721) 윤6월 15일

경상감사의 회이(回移) 내용. “운운하는 일로 관문하였기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관문을 발송하여 동래부에 분부하였더니, 방금 동 부사가 보고한 바를 접하니, 진하차왜(陳賀差倭)의 상선연(上船宴)을 지난 2월 28일에 배풀어 행한 연유의 장계는 29일 신시(申時)에 봉발(封發)하였고, 접위관(接慰官)이 본부를 떠나 출발한 장계는 동월 30일에 봉발하였기로, 발군(撥軍)이 지나는 길의 각 역참(驛站)에 관문을 발송하여 조사 문의하였더니, 동 29일에 보낸 장계를 3월 초1일 신시(申時)에 철곡고평참(高平站)에서 인동참(仁同站)에 전달할 즈음, 고평참 역졸 조법걸(趙法杰)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장계를 가지고 송유원(崇儒院)에 이르러 갑자기 흉복통(胸腹痛)이 나서 길가에 엎어졌다가, 마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 돈 1전을 주어

302) 황당선(荒唐船): 국적과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배.

동 장계를 앞의 역참에 전달해 달라고 간청한 뒤에 건네주어 보냈는데,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다 하기로, 일이 극히 통탄스럽고 해괴하여 동 가져갔던 조법결은 우선 가두어 형벌로 추고하였거니와, 조사하는 일을 마치고 마지막에 법률에 비추어 처분을 마감한 뒤에 이송을 논할 계획이며, 지금 도착한 관문의 사연이 이러하니 우선 사실을 거론하여 이문하는 일임.”

이에 의거한 수결: 조법결의 일은 극히 해괴하니 형벌을 추고 마감하여 후일을 징계하며, 잃어버린 장계는 이제 되돌려 찾을 길이 없으나 이 후로 발군의 길을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허술한 폐단이 없게 함이 마땅한 일임. 회이(回移).

신축(1721) 11월 21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이제 이번 전서관왜(典書官倭)를 접대할 때 일을 아는 역관을 차출하여 보내어 응대하게 하는 일로 묘당에서 이미 확정하였기로, 가선(嘉善) 이석린(李碩麟)을 차출하였는데, 이전부터 수역(首譯)이 왜인과 서로 접촉할 때는 전례가 사예단(私禮單)을 하는 규정이 있으니, 증정할 예단 잡물을 전례대로 급히 마련하여 지급할 일.

신축(1721) 12월 초1일

동래부사 윤석래(尹錫來)³⁰³가 11월 23일 성첩하여 장계한 일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啓目)에 운운하기를**, 이 동래부사 윤석래의 장계를 보면, “이번에 도해역관(渡海譯官)이 가져온 조위(弔慰) 회답 서계(書契)에 별폭(別幅)이 없는 일은 기해년(1659)의 전례에 어긋남이 있기로, 재판왜에게 재삼 책망하여 타일렀더니, 방금 동왜인의 말이 ‘도중(島中)에서 서계를 고쳐 짓고 회례(回禮) 별폭 잡물을 내보냈으니 당초의 원래 서계를 되돌려 내려보내 달라’고 하였는바, 동 고쳐온 서계와 별폭의 등본을 올려보내오니, 전일에 올려보낸 서계를 해조에 명하여 되돌려 내려보내어 들여주도록 하게 하여 달라” 하였는바, 조위 서계에 별폭이 있는 것을 이미 고쳐 왔으니, 앞서 올려보낸 원 서계는 별도로 금군(禁軍)을 정하여 밤을 새워 내려보내되, 도해역관 등이 도중(島中)에 있으면서 한마디 말도 책망하여 타이르지 않고 몽매하게 받아와서 이렇게 오가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은 면하기 어

303) 윤석래(尹錫來, 1665-1725): 파평 윤씨로 자는 중길(仲吉), 호는 만회(晩晦)이다. 숙종 36년(1710)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숙종 46년(1720) 10월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숙종 48년(1722) 6월까지 재직하였고, 도승지와 병조참판을 역임하였다.

려운지라, 도해역관 최상집(崔尙嶮)과 이장(李樟)³⁰⁴ 등은 유사(攸司)에 명하여 죄를 따지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60년(1721) 12월 초3일 우승지 신 조영복(趙榮福)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인(1722) 3월 24일

비변사의 계목에 이르기를, “일본 암환(巖丸) 송사(送使)의 서계(書契) 등본 가운데 잘못하여 어휘(御諱)를 범하였는데, 동래부사 윤석래가 깨달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올려보냈고, 그러므로 승정원에서 몽매하게도 살피지 못한 것을 추고할 것을 청하였으며, 해조에서 탈이 있는 서계를 책망하고 타일러 고쳐 바치게 하는 일로 복계(覆啓)하여 윤택을 받았으나, 방금 접한 동 부사의 첩정(牒呈)에는, ‘천계(天啓)³⁰⁵ 병인년(1626) 이래로부터 부사가 도입한 이후까지 왜인의 서계 가운데 이 어휘(御諱)를 범한 것이 무려 수십 여 곳이지만, 전후로 이 동래부에 부임한 자가 대개 모두 전례에 따라 올려보냈는데, 이제 만약 어휘를 범하였다고 탈을 잡아 다룬다면, 교활한 왜인 역시 반드시 말이 있을 것이니, 이럴 즈음에 욕됨이 작지 않을 것이라, 일이 극히 난처하니 본사(本司)에서 좋은 방향으로 지휘하여 거행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번 서계 가운데 범한 휘자는 곧 선조대왕(宣祖大王)의 초휘(初諱)³⁰⁶인데, 일찍이 고 관서 신 민진후(閔鎭厚)의 장계에 덕종대왕(德宗大王)³⁰⁷의 초휘를 공사문자에서 피휘(避諱)하지 말라는 일로 대신의 수의(收議)를 거쳐 확정하였으니, 이제 이번 서계 가운데 범한 휘자가 이미 고친 초휘이고 정휘(正諱)와는 간격이 있으므로, 전후의 서계에 이 휘자를 범한 것을 본부에서 곧장 올려보내고 조정에서도 또한 책망하지 않았던 것은 여기에 말미암은 듯하니, 고쳐 바치게 할 필요가 없이 암환의 서계를 이전대로 올려보내며, 부사를 추고하고 훈도 별차에게 곤장을 치는 등의 일을 아울러 그냥 두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택한다” 하셨음.

동래부사의 첩정에 운운한 위와 같은 일에 의거한 **비변사의 제사(題辭) 내용**. 승문원(承文院)의 왜인서계등록(倭人書契謄錄)을 가져다 살펴보니, 이번 서계는 전례에 따라 받아올리는 것이 참으로 근거한 바가 있으니, 한결같이 보고 장계의 사연대로 시행하며, 본부 부사의 추고 및 훈도 별차에게 곤장을 치는 일은 모두, 초기(草記)는 물론 좌수영(左水營)에도 다 알려져서 곤장을 치는 일을 논하지 말라는 일로 알려

304) 이장(李樟, 1685-?): 금산 이씨로 자는 제경(濟卿)이다. 숙종 39년(1713) 역과에 올라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305) 천계(天啓): 명나라 희종(熹宗)의 연호.

306) 초휘(初諱): 선조의 조위호는 균(鈞)이다.

307) 덕종대왕(德宗大王): 세조의 장남으로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요절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는데, 성종이 즉위하자 왕으로 추존하였다.

시행할 것.

임인(1722) 7월 초5일

이번 7월 초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최(崔)가 계품하기를**, “암환(巖丸)의 도서(圖書)를 만들어 준 뒤로 서식을 ‘암환합하(巖丸閣下)’라 적어 주었더니, 도왜(島倭) 등이 모두 절박하다고 하면서 반드시 그 서식을 고치고자 하는데, 대개 아명(兒名)의 서식이 비록 등록에 실려 있지만, 이미 아명으로 하면서 또 합하(閣下)라고 쓰는 것은 경중이 도치되어 서식이 되지 않는지라, 청하는 대로 고쳐 주는 것이 무방할 듯하니, 이런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계묘(1723) 10월 20일

사역원(司譯院) 관원이 도제조(都提調)의 뜻으로 입계하기를, “본원의 계묘년(1723) 춘하등(春夏等) 포폄(褒貶)은 이제 방금 전례대로 등급을 지었으나, 신축년(1721) 추동등(秋冬等)³⁰⁸에서부터 임인년 추동등까지 잇달아 도제조가 유고하여 마감하지 못했기에, 이제 마땅히 추후로 마감하여 들여야 하나, 현임 제거(提舉)가 모두 새로 본원에 차출되어 본원 여러 관원의 기왕의 근만(勤慢)을 상세히 알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전례대로 아울러 죄를 아주 씻어준다는 뜻으로 감히 입계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계묘(1723) 11월 18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통제사 남태징(南泰徵)³⁰⁹의 장계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복제한 내용에, “소통사(小通事) 백철동(白哲同)이 저쪽 사람과 부동하여 색리(色吏)를 묶고 쌀을 빼앗은 것은 참으로 극히 절통하여 법대로 처단하여 징계하도록 하고, 왜학(倭學) 현기(玄沂)가 태만하여 잘 살피지 못하고 그가

308) 추동등(秋冬等): 일년의 회계 분기 후반기인 추등(秋等)과 동등(冬等).

309) 남태징(南泰徵, ?~1728) 의령 남씨로 숙종 때 무과에 급제하여 공주영장, 충청도 수군절도사, 금군 별장, 평안도 병마절도사, 수군통제사 등을 역임하였고, 무신년 이인좌의 난에 내용하기로 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되었다.

하는 대로 맡겨 두어서 이런 해괴한 일이 있게 된 죄는 결코 파직으로만 그쳐서는 불가한데, 일이 변방의 정세에 관계되는지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소통사들이 왜인과 부동하여 지시하고 사주하여 사단을 일으키는 폐단이 없지 않은데, 이는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진 소치가 아님이 없는지라, 진실로 나타나는대로 통절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그 흘러가는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동 철동은 지시하고 사주하여 난리를 일으켜 색리를 결박하고 양식과 반찬 값의 정해진 규정 외에 쌀 7말을 빼앗아 왜인에게 지급한 일을 이미 명백하게 진술하여 들었으니, 법대로 처단하여 뒷날을 징계하며, 왜학 현기는 철동이 왜인과 내통하면서 사건을 일으킬 때 엄하게 더 금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그가 하는 대로 맡겨두어서 쌀을 뺏고 색리를 묶는 일이 있게까지 되었으니, 그 단속하지 못한 죄는 파직으로 그쳐서는 안되니, 잡아다 심문하여 조처함이 어떠할지? 옹정(雍正) 원년(1723) 11월 17일 우승지 신 유명응(兪命凝)³¹⁰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갑진(1724) 정월 13일

예조에서 복계하기를, “방금 장악원에서 보고한 바를 접하니 이전에는 악공이 429명이었는데, 임오년(1702) 경녕전(慶寧殿)을 봉안한 뒤에 와서는 새로 분정한 악공 37명을 합하여 466명이었고, 경녕전을 태묘(太廟 : 종묘)에 부묘(祔廟)³¹¹한 뒤로는 새로 분정한 37명은 감하여 없애야 하나, 기해년에 악기 가운데 훈(塤) 2개, 생(笙) 4개, 어(敵) 3개 도합 아홉 악기를 계달(啓達)하여 복구할 때, 차비악공(差備樂工)을 더 내지 않았으니, 그 9명 및 원래 정원 가운데 부족한 자 3명 도합 12명을 새로 분정한 37명 가운데서 이미 뽑아 내어 정원을 충당하였으니, 지금은 제향 및 거동할 때 참여하는 악공이 441명이니, 나머지 인원수가 25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 수를 본원 제조의 분부에 따라 감축하고, 나머지 수의 악공과 그 보인(保人) 150명의 성책(成冊)을 수정하여 보내어, 본조에서 참작하여 변통하고, 나머지 수의 악공은 그대로 본원에 두는 것은 불가하니, 모두 본역(本役)으로 되돌려 소속시키고, 보인(保人)은 양역(良役)으로 옮겨 정하는 일로 모두 그 성책을 양역청(良役廳)으로 이송한다는 뜻으로 감히 복계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음.

310) 유명응(兪命凝, 1659-?): 기계 유씨로 자는 평중(平仲)이다. 숙종 21년(1695)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경상감사를 역임하였다.

311) 부묘(祔廟): 상례 기간을 마치고 신위를 종묘에 올리는 의식.

갑진(1724) 8월 19일

경상좌수사 한범석(韓範錫)³¹²⁾이 8월 11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예조의 계하(啓下) 관문 내용에, “해당 문정(問情)은 지극히 중대한데, 지난 6월 초5일에 대마도에서 나오다가 동래 경계의 판곶(板串) 앞바다에 멈추어 정박한 우리나라 표류인의 배에 사정을 물을 때 장석벽(張石碧)의 벽(碧)자를 백(白)자로 잘못 써서 올렸을 뿐 아니라, 동월 초6일 기장 무지포(武知浦)³¹³⁾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에 즉시 가서 사정을 묻는 것이 당연한 사리인데도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문정(問情)을 늦춘 것은 모두 극히 해괴하니, 동 별차 김수정(金壽鼎)은 본영(本營)에 명하여 잡아다가 참작하여 죄를 다스려서 후일을 징계하는 일”로 관문이 있었기에, 위 별차 김수정은 계하하여 분부한 대로 본영에 잡아다가 참작하여 죄를 다스렸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갑진(1724) 10월 20일

경상우수사 윤오적(尹五適)이 10월 초8일에 성첩한 장계에 의거한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통제사(統制使) 윤오적의 장계를 보면, 이제 이번 가덕도로 표류한 왜선 3척은 모두 비선(飛船)으로 노인(路引) 가운데 글을 써 넣었거늘 옥포 왜학 현걸(玄傑)의 문정(問情)에는 제2선과 제3선의 비선의 비(飛)자를 작은 글자로 잘못 써 넣었는바, 동 현걸은 지난 7월에 표류 왜선의 문정을 소홀히 하여 과직되었다가 이달 초4일에 겨우 교체하여 돌아왔거니와, 왜선의 문정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이제 또 살피지 못한 죄는 또한 면하기 어려우니, 변방의 사정을 중시하고 다른 역관을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교체하여 돌아오게 하여 그냥 두고 논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며, 이전에 현걸의 죄상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왜선의 문정은 지극히 중대한데 현걸이 전후로 이 직책에 차출되어 문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누차 곤장을 맞는 벌을 당하고 끝내 과직되었다가 또 이렇게 살피지 못한 실수가 있으니, 이러한 사람은 결코 역학(譯學) 가운데 그냥 두어서는 불가하니, 동 왜학 현걸은 원적(院籍)에서 빼어버리는 일을 분부함이 어떠할지? 옹정 2년(1725) 10월 21일 동부승지 신 이명의(李明諶)³¹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312) 한범석(韓範錫, 1672-?): 청주 한씨로 자는 성뢰(聖賚)이다. 숙종 21년(1695) 무과에 올라 여러 관직을 거쳐 제주목사, 경상좌수사, 함경도병마절도사, 경상우도병마절도사, 황해도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313) 무지포(武知浦): 기장현지에는 무지포(無知浦)라 적혀 있는 곳도 있는데, 현재 기장군 기장을 연화리와 대번리 일대이다.

314) 이명의(李明諶, 1670-1728): 한산 이씨로 자는 의백(宜伯)이다. 숙종 38년(1712)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수찬, 교리 등을 거쳐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을사(1725) 11월 19일

장악원의 첩정에, “국휼(國恤) 3년 내에 졸곡(卒哭) 이전에는 그대로 음악을 정지하고 악공 등의 부록(付祿) 취재(取才)는 출사가 많은 자에게 부치고, 졸곡 이후에는 강보(講譜)로 시취(試取)하여 부록하였는데, 이제 이번 추동등(秋冬等) 부록 취재를 아직 하지 않았으므로 공생(工生) 등이 날마다 호소하는바, 본원의 제조가 모두 유고(有故)하여 개좌(開坐)하여 시취(試取)할 기약이 아득하니 변통하지 않아서는 안되겠기로 사유를 갖추어 첩보하오니, 졸곡 이전에는 출사한 것이 많은 자에게 부록하는 사례에 따르고, 추동등의 부록취재는 출사가 많은 자로 부록을 허락함이 어떠할지, 하나를 지적하여 행하(行下)할 수 있도록 하실 일.”

이에 근거한 제사: 이미 전례가 있으면 보고한 바대로 시행할 것.

을사(1725) 12월 초2일

예조에서 복계하기를, “승정원의 계사(啓辭)에 ‘이제 이번 왜인의 서계(書契) 가운데 어휘(御諱)를 범한 글자가 있었으니, 동래부사 이중협(李重協)³¹⁵이 도리에 의거하여 물리치고 고쳐 보내게 하여야 마땅하나, 전례에 따라 받아들여 베껴 보낸 것은 살피지 못한 실책을 면하기 어려우니, 동래부사 이중협을 엄중하게 추고하고, 왜서(倭書)의 원본 역시 그대로 받아 두는 것은 불가하니 되돌려 보내어 고쳐오도록 하게 함이 어떠할지?’ 하여, 전교에 이르기를 ‘윤허한다’고 하신 일로 명이 내렸는데,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임인년(1722) 3월 왜인의 서계 가운데 이 어휘를 범한 것이 있었으므로 승정원에서 몽매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추고(推考)를 청하였으나, 그 뒤 동래부사의 보고와 비변사의 계사에 ‘범한 휘자는 곧 선조대왕의 초휘(初諱)이고, 일찍이 고 관서 신 민(閔)이 계품한 바, 덕종대왕(德宗大王)의 초휘(初諱)는 공사 문자에 피휘하지 않는다는 일로 대신이 의논하여 확정하였으니, 이제 이번 서계 가운데 범한 휘자가 이미 고치기 이전의 초휘라서 정휘(正諱)와는 간격이 있으니, 휘를 범한 서계(書契)를 꼭 고쳐 들일 필요가 없이 이전대로 올려보내고, 부사를 추고하는 일은 잠시 보류하되, 이번 서계 가운데 또한 휘를 범한 곳이 있었으나 승정원에서 확정된 일이 있었음에도 알지 못하여 이렇게 추고를 청하는 일이 있었고, 이미 확정하였으면 부사의 추고 및 왜서의 원본을 고쳐 오는 등의 일은 모두 거행할 필요 없이 모두 논하지 않음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허한다”고 하셨습니다.

315) 이중협(李重協, 1681-?): 경주 이씨로 자는 화중(和仲)이다. 숙종 계사(癸巳, 1713)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영조 을사(乙巳, 1725)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관직이 대사간, 공조참판, 도승지에 이르렀다.

을사(1725) 12월 28일

본조의 참의 신방(申昉)이 상소하기를, “앞드려 생각건대 신은 춘조(春曹:예조)에서 대죄(待罪)하고 있습니다. 방금 왜인과 서계(書契)를 왕복하는 일이 있는데, 이전부터 참의(參議)의 성명을 써 넣어서 보내지만, 신의 선조는 임진난에 싸우다가 사망하였기에 신의 선대에는 무릇 왜인을 접대하는 일은 일체 회피하였고 조정에서도 그 사정을 살펴 곧장 불쌍하게 여겨 허락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신이 이제 전례에 따라 이름을 써서 저쪽으로 보낸다면 사사로운 정의 애통하고 절박함을 말로 할 수가 없고, 거룩한 조정에서 신하를 부리는 도리로 해아려 보건데 또한 어찌 억지로 차마 하지 못할 일을 강제하여 그 구구한 의리를 잃게 하겠습니까? 참으로 빨리 변통을 내리어 방해되는 사단이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앞드려 바라옵건대 성명(聖明)께서는 특별히 살펴 용서하는 마음을 내리시어 즉시 신의 직책을 깎아 내도록 명하고,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돌려 주어서 공사 간에 양쪽 다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은 하늘이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바라는 마음 지극히 둘 데가 없습니다”라고 하여, 입계하면서 계자를 찍었음. 동일 참의 안중필(安重弼)³¹⁶.

병오(1726) 2월 11일

이번 2월 초10일 주강(晝講)에 입시하였을 때 동지사 이병상(李秉常)³¹⁷이 입계한 바, “이것은 곧 동래부사 이중협(李重協)의 장계입니다. 하왜(下倭)의 무리가 수직막(守直幕)을 훼손하고 절거한 일은 참으로 지극히 놀라운데, 재판왜(裁判倭)가 비록 그는 전혀 모르는 바이나 하왜는 이미 묶어서 도중(島中)으로 보내었다고 말을 하지만,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엄하게 더 경계하고 신척하지 않아서는 불가하니, 장계에 청한 대로 조성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땀감 공급을 거두고 개시(開市)를 정지함이 마땅할 듯한데, 대신의 뜻이 이러합니다”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동래부사가 해괴하다고 하여 이러한 장계의 요청이 있었지만, 그러나 조성하기 전에 공급을 거두는 것은 번쇄한 듯하니 공급을 거두는 한 가지는 그냥 두고, 개시(開市)는 짐짓 살펴보고 허락함이 옳겠다. 땀감은 본디 지급해야 하는 물건인데 부산첨사가 즉시 공급하지

316) 안중필(安重弼, 1659-1746): 순흥 안씨로 자는 몽경(夢卿), 호는 근당(謹堂)이다. 숙종 38년(1712)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장령, 사간, 승지를 거쳐 공조참판과 한성부우윤을 역임하였다.

317) 이병상(李秉常, 1676-1748): 한산 이씨로 자는 여오(汝五), 호는 삼산(三山)이다. 숙종 36년(1710)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 대사성, 대사헌, 대제학, 공조판서, 판돈령부사를 역임하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않아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으니, 교린(交隣)의 도리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한지라 부산첨사를 잡아다 심문하라”고 하셨음. 이병상이 말하기를 “방금 이어서 계달(啓達)하려고 하였는데 미처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일의 체면으로 말하자면 잡아다가 심문함이 마땅한데, 대신(大臣)은 변진(邊鎭)을 교체하여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우선 추고(推考)하여 경계하고 책망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자, 상감께서는 “장계로 본다면 뺄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평상시에 만약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시행하였다면 반드시 이런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부산첨사는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추고하고 마는 것은 불가하니 잡아다가 심문하고, 동래부사는 평상시 검속하여 단속하지 못하고 단지 공급을 거두기만 청하였으니 또한 경계하여 책망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되니 추고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이병상은 말하기를 “훈도 별차는 대신이 본부에 명하여 곤장을 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첨사를 이미 잡아다 심문한다면 이 역시 한가지로 잡아다가 심문해야 옳을 듯합니다”라고 하였고, 상감께서는 “장계로 본다면 훈도 별차는 그 때 마침 동래부에 있어서 진연 모른다고 하였으니 죄를 줄 단서가 없을 듯하나, 평상시에 검속하여 단속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직책을 잘못된 죄가 있으니, 본부에 명하여 엄중하게 곤장을 치게 하라”고 하였음. 병상이 말하기를 “개시는 개조하기 전에는 짐짓 정지할까요?”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병오(1726) 5월 11일

본조의 참의 이집(李鑠)³¹⁸이 상소하기를, “앞드려 생각건대 왜서(倭書)의 회첩(回帖)에 예조참의의 성명을 써 넣어 보내는 것이 정식 사례입니다. 신이 바야흐로 그 책임을 띠고 있는데, 도왜(島倭)의 서계가 마침 도착하여 이제 회답을 하여야 하나, 신의 증조 증도승지(贈都承旨) 신 경류(慶流)³¹⁹가 임진란에 순절하였습니다. 신은 이러한 지극히 애통한 일을 당하여 그 서신에 수응하여 답하기에는 실로 차마 못할 바가 있습니다. 종전에 신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서 이 책임을 맡은 자는 대개 호소하여 곧장 허락을 받았으므로, 감히 이렇게 외람되어 임금님의 존엄함을 범하오니, 앞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자애로이 특별히 은혜로운 용서를 내리셔서 빨리 신의

318) 이집(李鑠, 1625-1691): 본관은 전주(全州). 효종 8년(1657)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거쳐, 현종 14년(1673) 함경도 병마절도사와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으며, 경신대출척에 유배되었다가, 기사환국에 유배에서 풀려나 훈련대장이 되었다가 승지를 지내고 공조관서에 특진되어 재직하다 죽었다.

319) 이경류(李慶流, 1564-1592): 한산 이씨로 자는 장원(長源), 호는 반금(伴琴)이다. 선조 24년(1591) 문과에 급제하여 전직과 예조좌랑을 거쳐 임진왜란에 병조좌랑으로 출전하여 상주에서 판관 권길(權吉)과 함께 전사하였다. 상주의 충신지사단(忠臣義士壇)에 제향되었다.

직책을 꺾아 바꾸시고,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돌려 주시어 공사간에 편하도록 하시면 저로서는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라고 하여, 병오년(1726) 5월 11일에 입계하여 계(啓)자 도장을 찍음.

병오(1726) 6월 27일

경상우수사 신 이재항(李載恒)³²⁰이 지난달 25일 지세포(知世浦) 구조라포(舊助羅浦)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인의 중소선(中小船) 한 척을 이달 초2일 데려다가 다대포에 부쳤다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는데,

방금 도부한 이번 11일에 성첩한 부산첨사 전순좌(全舜佐)의 치계에, “당일 유시(酉時)에 도부한 훈도 김시박(金時璞)과 별차 이장(李樟) 등의 수본에, 이제 이번 지세포에서 데려온 왜인의 중소선 한 척에 관수왜(館守倭)와 함께 같이 사정을 물었더니, 동 왜인의 말이 ‘일본국 비전주(肥前州) 오도(五島) 복강(福江)의 내호기포(內戶岐浦)의 주민 장왜(壯倭) 5명과 약왜(弱倭) 7명 도합 12명 등이 배 하나를 함께 타고 행장(行狀) 2장을 가지고 고기를 잡기 위해 금년 3월 13일 광도(藿島)에 도착하여 잡어(雜魚)를 잡아 말린 뒤, 5월 23일 광도에서 본도를 향하여 돌아갈 즈음에, 갑자기 모진 바람을 만나 그대로 표류하여 같은 달 25일에 귀국 우도 구조라포에 도착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이곳에 돌아왔다’고 하였다” 하기로, 옥포 왜학(倭學) 김수천(金壽天)이 당초에 문정(問情)한 사연과 대조하였더니, 이렇게 대단히 서로 어긋나는 일이 있는데, 이제 이번 왜선은 이미 세견선(歲遣船)이 아니라 곧 혼미하고 신분이 낮은 절인고기를 만드는 왜인인지라, 말을 잘 못하여 이러한 착오는 괴이하게 여길 것이 못되나, 왜학 김수천이 소홀하게 문정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전후로 곤장을 쳐서 신칙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으며, 왜인의 실정을 탐문하는 사이에 착실하게 살피지 못하고 매양 소홀하여 누락하는 일이 이와 같으니, 이렇게 혼미하고 직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역관의 책임에 두어서는 불가하기로, 동 왜학 김수천을 잡아다가 신의 감영에서 엄중하게 곤장을 친 뒤 부득이 파직하여 내쫓았으니, 그 대신을 해당 사역원으로 하여금 선발하여 재촉하여 내려보내라는 일임.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여 운운하기를, “이 동래부사 이중협의 장계를 보면, ‘근래 왜인의 실정이 더욱 교활하고 주민의 습관이 날로 경박하여, 간사한 소인의 무리로서 법을 어기고 죄에 빠지는 자가 반드시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기로, 항상 더욱 경계하고 신칙하며 그 파수(把守) 또한 특별히 대솔군관(帶率軍官)을 보내어 여러 가지로 감시하였는데, 초량에 사는 사노(私奴) 순홍(順弘)이라는 이름을 칭하는 놈이 부

320) 이재항(李載恒, 1672-1725): 전주 이씨로 자는 군망(君望)이다. 숙종 32년(1706) 무과에 올라 여러 관직을 거쳐서 삼도수군통제사에 이르렀다.

산에 사는 여인 선양(善陽)과 몰래 왜관으로 들어가서 간통하고, 쌀 3말 5되와 은자 4전을 받았다가, 군관 변흠(卞燾)과 장교 김규(金珪) 등이 덮쳐서 사로잡아 왔거늘, 문목(問目)을 질문하며 엄하게 조사하였더니, 위의 사람 들이 범한 죄를 모두 명백하게 공초하였기에 왜관 문 밖에 전례대로 효시(梟示)해야 마땅하며, 순흥의 처 박조시(朴早時)는 간통한 왜인의 자취는 모르고 한갓 그 남편의 말만 듣고서 심부름을 시켜 데려온 데 지나지 않아, 그 본디 정상을 미루어보면 용서할 만함이 있으나 이미 유인한 죄를 범하였기에, 변방의 신하로서는 감회 경솔하게 논의할 바 아닌지라 아울러 묘당에 품의 조처하게 하며, 죄인을 지적하여 잡은 사람들에게도 규정 대로 상을 시행하는 것이 실로 격려하여 권하는 도리에 합당하다' 하였는바, 근래에 국가의 기강이 해이하고 인심이 교활하고 간악하여 변방 주민이 가벼이 금령을 범하는 일이 자주 있으니 일이 한심하기로 이보다 심한 것은 없거니와, 이제 이번 순흥과 선양 등은 모두 왜관 문 밖에서 효시하여 후일을 징계하되, 정유년(1717) 김이석(金以石)이 유인하였던 여인 계월(季月)은 지나가던 창녀로서 난데없이 헐박의 우환을 당해 용서할 만함이 있다 하여 사형을 감해서 정배하였으나, 이미 같은 정상으로 간통하였으니 결코 창녀라는 까닭으로 가벼이 용서해서는 부당하거늘 그 때 처분 결정은 끝내 타당함을 잃었고, 이제 이번 선양에게는 그 사례를 인용하여 농간하는 소인들이 범을 범하는 폐단을 열어주어서는 안되며, 순흥의 처는 단지 선양을 데리고 왔다는 까닭으로 비록 억지로 사정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불가하나, 이미 참여하였으니 또한 전연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니 참작하여 정배(定配)하며, 지적하여 사로잡은 사람들에게 상을 논하는 한 조목은 해조에 명하여 사례를 상고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옹정(雍正) 4년(1726) 6월 19일 우부승지 신 신무일(愼無逸)³²¹ 차지로 임계하여, "그대로 율허한다. 이제 이번 선양(善陽)의 일은 정유년 계월(季月)의 일과 한가지이고, 모두 창녀로서 사람의 헐박을 당한 것도 한가지이다. 이런 사람은 논개(論介)의 절개가 아니라면 용서할 만한 단서가 있으며, 정유년 논의 조처는 이미 예람(睿覽)³²²을 거친 것인데 이제 일은 같은데 벌을 달리하여서는 불가하니 또한 계월의 사례대로 시행하라."고 하셨음.

병오(1726) 8월 12일

비변사의 계목에 운운. 이 동래부사 이중협의 장계를 보면, "표류한 왜인 등이 당초 선박이 파선될 때 이달 초6일 술시(戌時)에 표류하여 도착한 양으로 훈도 별차에

321) 신무일(愼無逸, 1676-?): 거창 신씨로 자는 경소(敬所)이며 호는 백연(白淵)이다. 경종 1년(1721)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대사간에 이르렀다.

322) 예람(睿覽): 왕세자가 열람함.

게 정녕 이야기하였는데, 영일현감(迎日縣監)의 보고한 바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초5일 밤에 파선되었다고 적어 보고하였으며, 가별차(假別差) 김진혁(金鎭赫)도 홀로 문정(問情)할 때 섭주(攝州)의 장사하는 왜인이 7월 초3일에 섭주로 되돌아가다가 초6일에 표류되었다고 하였는데, 이제 훈도 김시박(金時璞) 등이 다시 문정한 것을 보니, 섭주(攝州) 이다옥포(貳茶屋浦)의 왜인이 배삯을 받고 재목을 운반하기 위해 7월 초3일에 또 시모노세키[下關]에서 곧바로 진경(津輕) 땅으로 향하다가 바람으로 인하여 표류했다 하였는바, 문정을 잘하지 못하여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일이 있게 되어 매우 심히 소홀하니, 영일현감 및 가별차가 문정을 잘 하지 못한 죄를 아울러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왜선(倭船)에 문정하는 일은 일이 긴요하고 중대하거늘 당초 자세히 살피지 않아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있어서 그 문정을 잘 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려운 바, 영일현감 지흠(池欽)은 추고하여 경책(警責)하며, 가별차 김진혁은 본부에서 참작하여 곤장을 치게 함에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옹정 4년(1726) 8월 초5일 좌부승지 신 정택하(鄭宅河)**³²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 운운. 이 동래부사 이중협(李重協)의 장계를 보면 ‘바람에 표류한 왜인이 이미 대마도의 왜인이 아니고 다른 불일이 없이 머물러 있어 공케(供饋)하는 폐단이 매우 적지 않으니, 해조에 명하여 속히 보내는 서계(書契)를 지어서 표류하여 온 왜인들이 오래 머무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는바, 동 표류한 왜인을 들여보내는 서계를 장계의 요청대로 승문원(承文院)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급히 지어내어 별도로 금군(禁軍)을 정하여 밤낮없이 가지고 내려보내게 하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옹정 4년 8월 12일 동부승지 신 조명신(趙命臣)**³²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병오(1726) 9월 초1일

동래부사 이중협(李重協)이 8월 22일 성첩한 장계. 이달 15일 왜관의 별개시(別開市)에서 상고(商賈)와 역관 등이 피집한 물화(物貨)의 대가로 은화 3만 냥을 우선 받아내었으며, 18일 술시(戌時) 쯤에 황령산 봉군 박검돌이(朴儉丕伊)와 간비오 봉군 김자은울미[金自隱耄未] 등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한 척이 등불을 달고 물마루로 나온다’고 하였고, 19일 진시(辰時)에 도부한 부산첨

323) 정택하(鄭宅河, 1693-1741): 연일 정씨로 자는 자중(子中)이다. 숙종 41년(1715)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지평, 헌납을 거쳐 승지와, 동래접위사 및 둔령부도정을 역임하였다.

324) 조명신(趙命臣, 1684-?): 순창 조씨로 자는 명중(明仲)이다. 숙종 40년(1714)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대사간에 이르렀다.

사 전순좌(全舜佐)의 치계(馳啓)에 ‘어제 술시(戌時)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등불을 달고 나온다는 석성(石城) 봉군의 진고(進告)에 의거하여, 초탐(哨探)하기 위해 본진의 유진장(留鎭將) 황재호(黃載浩)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과연 왜의 작은 배를 동일 해시(亥時)에 영솔하여 관소(館所)에 부쳤다’는 동 유진장의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김시박(金時璞)과 별차 이장(李樟) 등에게 명하여 왜관에 가서 사정을 묻게 한 뒤의 수본에, “도중(島中)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비선(飛船) 한 척에 두왜(頭倭) 1인과 격왜(格倭) 6명과 소금도왜(小禁徒倭) 2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路引)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간 일행 중의 하인(下人) 시체를 싣고 나왔다고 하거늘, 듣고는 곧장 놀라고 참담하여 그 성명 및 사망 일자를 물었더니, 하인 김돌망(金玆望)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지난 7월 그믐 뒤에 갑자기 중병을 얻어 이번 8월 초10일에 노포(蘆浦)에 도착하여 그대로 죽었기로 우선 관을 갖추어 싣고 왔으며, 바다를 건너간 일행은 이달 초10일에 좌수포(佐須浦)로 돌아왔고 오래잖아 나올 것이라고 하였기로, 동 시체는 그 일족 등에게 내어 주며, 비선의 노인 한통은 받아서 올려보낸다”고 수본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동 노인 한 통은 전례대로 보내며, 연유를 치통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위의 노인 한 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방금 도부한 비변사의 복계(覆啓) 회답 관문에, 나가사키[長崎] 경내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에 문정(問情)을 소홀히 하였던 가별차 김진혁을 이달 19일 관문대로 참작하여 곤장을 쳤음. 이제 이번 우암(牛巖)³²⁵에 정박하여 머무는 일본국 비전주(肥前州) 오도(五島)의 표류 왜인 12명을 들여보내는 서계가 해조에서 내려왔기로 임역(任譯) 등을 시켜서 관수왜에게 들여다 주게 하면서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또한 분부하였더니, 방금 바친 훈도 김시박과 별차 이장 등의 수본에, “동 서계를 들여준 뒤 속히 표류한 왜인을 들여보내라는 뜻을 관수왜에게 각별히 재촉하여 타일렀더니, 동 왜인이 ‘무릇 서계(書契)와 관계된 것은 감히 곧바로 보내지 못하므로, 우선 등본을 도중(島中)에 보고하여 그 회보를 기다렸다가 차례로 거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동 왜인이 소인 등을 만나보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나온 비선 편에 도중의 회보(回報)를 들으니, 당초 섭주(攝州) 신호포(神戶浦)에서 표류한 왜인을 들여보내는 서계 내면(內面)의 글쓴 줄 하단에, 비어 남긴 곳이 없이 거의 끝까지 붙여 써는 것은 일본 풍속에는 불경(不敬)하다고 꺼리므로 편치 못한 뜻이 많이 있으나, 사소한 일을 일일이 고쳐달라고 청하는 것은 불가하여, 비록 에도에 책망을 받더라도 이제 짐짓 받아두었는데, 이제 오도(五島)에서 표류한 왜인을 들여보내는 서계 등본을 보니, 내면의 글쓴 줄 하단에 끝나는 곳까지 붙여 좁게 써서 조금도 빈 곳이 없으니, 이것은 결코 받아서 에도에 바치기가 어려우니, 속히 고쳐 달라는 뜻을 임관(任官)에게 통기하라 하였다’고 운운하거늘, 소인 등이 ‘일본 풍속에는 종이 끝까지 붙여서 쓰는

325) 우암(牛巖): 지금의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것을 불경하다 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지는 알지 못하나, 우리나라에는 무릇 서계와 관련된 것은 종이 위쪽만 비우고 종이 끝까지 붙여서 쓰는데 무슨 불경함이 있다고 그러는가? 이전에 받은 서계의 종이 끝에 남은 부분이 한 글자 사이에 불과한데, 이제 비록 끝까지 붙여 썼다 하더라도 그 간격이 대단하지 않으니, 순순히 받아 들여보내는 것이 나음만 못하다'고 여러 가지로 다투어 따지며 누누이 책망하고 타일렀는데, 끝내 돌이켜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관수왜가 또 말하기를 '서계를 붙여서 쓴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오도에서 표류한 왜인이 당초 귀국 경상도 거제 구조라포에 표류하여 도착하던 날, 우도(右道)의 역학(譯學)이 문정(問情)할 때 금년 3월 13일 오도에서 출발했다는 뜻으로 곧바로 고하였으며, 다대포에 도착하던 날 제가 임관(任官)과 더불어 문정할 때 또 3월 13일이라 진고(進告)하였는데, 동 표류 왜인 등이 에도로 돌아간 뒤 간빠꾸(關白)가 직접 묻는 이야기를 상세히 물어보고는 비로소 의아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다시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지난 번에 3월 13일 출발했다는 뜻으로 범연히 고달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행장(行狀)을 가져간 날짜가 서로 어긋나면 이는 죽을 죄라고 하니, 그렇다면 행장 가져간 날짜를 4월 초7일로 곧바로 에도에 고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슬피 하소연하여 마지 않으니, 이 왜인들의 명맥을 보전하여 살리는 것은 오직 귀국의 서계를 고쳐 주는 처분에 달려 있으며, 오도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타고 광도에 왔다고 운운하였으나, 이른바 광(藿)자는 일본 방언으로는 네(禰)라고 일컬으며, 목(目)자와 여(女)자 또한 모두 네(禰)라고 일컬는데, 이제 이 광(藿)과 여(女) 두 글자는 방언의 음이 비록 같지만 사실은 곧 여도(女島)이니, 여도로 고쳐 지급하여 달라는 일로 도종의 회보에 말하였다'고 하는데, 그런즉 이런 글자의 방언으로 소리가 같은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주(舟:배)자와 복(腹:배)자와 이(梨:배)자가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인데, 관수(館守)가 비록 왜인이지만 그 말을 듣고서도 곧장 그 글자를 분간하지 못하고 단지 광(藿)자의 뜻으로 써 준 소치였기에, 소인 등이 또한 말로 책망하여 말하기를, '종이 끝에 붙여 써서 고쳐달라고 청하는 것은 이미 극히 불가하고, 3월 13일을 4월 초7일로 고쳐 쓰고, 광도(藿島)를 또 여도(女島)로 고쳐 쓰라고 간청하는 것은 더욱 극히 부당하다'고 이치에 근거하여 잘라 책망하였더니, 관수왜가 답하기를, '이 서계는 이미 종이 끝까지 붙여 써서 고쳐주기를 청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겸하여 사실의 연유를 진술하여 양국 사이의 간절하고 민망한 사정을 푸는 것은 오로지 또한 교린(交隣)의 후의에서 나온 것이거늘, 판사(判事) 등은 자신이 임관(任官)이 되어서 양쪽이 편할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서 있는 힘을 다해 방색하니, 이것이 어찌 먼 곳의 사람을 대접하여 일을 처리하는 도리인가? 무릇 서계와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곳이 있으면 피차간 서로 고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전에도 조정에서 특별히 고쳐 준 것이 얼마나 많았으며, 이제 이번 서계를 고쳐달라는 것은 굳이 도주로 하여금 에도에서 죄를 모면하게 하겠지만, 표류 왜인 등도 역시 살려준 은혜를 모두 감사할 것이다' 하

면서 누누이 간청하여 마지 않았는바, 소인 등은 그 표류 왜인 등을 공케하는 데 폐단이 있음을 알고, 여러 날 다투고 버티며 여러 가지로 준엄하게 책망하였는데, 관수왜는 도주가 죄를 받게 된다고 말하며 끝내 되돌려 듣지 않기로 이런 연유를 수분으로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속히 장계로 알려져 변통하여 표왜 등이 지체하여 머물러 폐단을 끼치지 않도록 하게 하여 달라”고 수분하였음. 교활한 왜인이 서계 글자의 글줄 하단 종이 끝까지 붙여 쓰는 것이 일본 서계의 격식에 어긋남이 있다고 반드시 고치기를 청하는 것은 그 정상이 매우 극히 통탄스럽고 미울 뿐 아니라, 또한 4월 초7일을 3월 13일로, 여도를 광도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고한 내용인데, 이제 또 고치기를 청함은 더욱 극히 절통하여 고쳐주는 것이 부당한데, 타일러 책망하고 다투어 따질 때 표류한 왜인들이 오래 머물며 폐단을 끼치는 것 또한 매우 적지 않으니, 동 서계를 그 원하는 대로 아울러 고쳐 주되, 글 줄 아래에 모두 서너 자를 비워서 써 주는 것이 무방할 듯하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니, 고쳐주는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속이 품의 조처하여 표류한 왜인들이 오래 머무는 폐단이 없게 할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의 장계를 보면 이제 이번 비전주 오도의 표류 왜인 13명을 들여보내는 서계가 내려와서 즉시 임역 등을 시켜 관수왜에게 들여주게 하였더니, 교활한 왜인이 서계 하단에 종이 끝까지 붙여 쓴 것은 일본의 격식에 어긋남이 있다고 반드시 청하여 고치려고 하는데, 그 정상이 매우 극히 통탄스럽고 미울 뿐만 아니라, 또 표류한 왜인이 4월 초7일을 3월 13일로 하고, 여도를 광도라고 하였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고한 사실인데 이제 또 고치기를 청하니 더욱 절통하나, 책망하고 타이르며 다투고 따질 즈음에 표류한 왜인 등이 오래 머물며 끼치는 폐단 또한 매우 적지 않으니, 동 서계를 그 원하는 대로 고쳐 주면서 글줄의 아래에 모두 서너자를 비우고 써 주어도 무방할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속히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바, 표류한 왜인의 문정(問情) 가운데 날짜와 달이 서로 어긋나고 섬 이름을 바꾸어 칭한 것은 이미 관왜 등이 고한 바인데, 이제 와서 말을 허비하며 고치기를 청하는 정상이 통탄스럽고 미울 뿐만 아니라, 서찰 하단 종이 끝까지 붙여서 쓰는 것은 참으로 근심할 바 없으니, 이제 이로 인하여 서계를 고쳐 써 주는 것은 불가하지만, 관왜(館倭) 등이 이미 도주가 예도에 죄를 모면하고, 표류한 왜인 등도 모두 살려준 은혜에 감사할 것이라고 누누이 간청하여 마지 않으니, 먼 곳 사람들을 대접하는 도리에 있어서 방색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장계의 요청대로 동 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급히 고쳐 지어,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밤낮없이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웅정 4년(1726) 9월 초3일 좌부승지 신홍현보(洪鉉輔)³²⁶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326) 홍현보(洪鉉輔, 1680-1740): 풍산 홍씨로 자는 군거(君擧), 호는 수재(守齋)이다. 숙종 44년(1718)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수찬, 교리를 거쳐 형조참관, 대사간, 대사헌, 호조참관, 한성부좌윤, 대사성, 지의금부사, 이조참관, 우참찬,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정헌(貞獻)이다.

정미(1727) 정월 21일

장악원 악공 김찬광(金贊光) 등의 상언(上言)에, “저희들은 노고가 있으면 반드시 보답이 있는 것이 국가의 성대한 은전이고, 사정을 말하지 않는 것은 신민(臣民)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므로, 간략하게 그 개요를 진술하여 예람(睿覽)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신 등 악공(樂工) 400여 인은 모두 지방의 민생(民生)으로, 부모를 떠나 고향을 버리고 한 번 서울로 올라온 뒤 오음(五音)³²⁷ 육률(六律)³²⁸을 어려서부터 배우며, 본디 비록 한 달에 여섯 번 시재(試才)하고 천지의 제사와 종묘 사직 이하 각종 의례에 직접 나가지 않음이 없고 절차에 어긋남이 없으나, 먹는 것이라고는 단지 한 달에 한 필의 배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비록 먹을 것이 적은 한탄이 있지만 감히 입에 내지 못하고 굶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디며 복무하는 실정은, 다만 조정에서 통촉하는 바일 뿐 아니라 또한 신명(神明)께서 임하여 보살피는 바입니다. 이는 이미 정한 규정이 있으므로 감히 다시 논하지 않겠거니와, 신 등은 매양 태묘(太廟)에 부묘(祔廟)할 때가 되면 절로 묘정(廟庭)에 들어가는 인원 수가 있고, 예를 성대하게 거행하므로 반드시 양가(良加)의 은전이 묘정에 들어가는 악공에게 미쳐, 그 수고에 보답하여 흥감하게 하는 자취는 예부(禮部)에 상고할 문서가 분명하게 있으니, 신묘년(1651) 인조대왕(仁祖大王)과 신축년(1661) 효종대왕(孝宗大王), 병진년(1676) 현종대왕(顯宗大王), 병인년(1686) 명성왕후(明聖王后)를 태묘에 부묘시킬 때 묘정에 들어갔던 악공 등은 대개 양가의 은전을 입었으며, 임인년(1722) 숙종대왕(肅宗大王)을 태묘에 부묘시킬 때 묘정에 들어갔던 공인(工人)들이 거개가 양가의 은전을 입어서, 장예원(掌隸院)의 추쇄(推刷) 점고(點考)를 면하도록 허락받았는데, 이번 경종대왕(景宗大王)을 태묘에 부묘시킬 때 신 등 67인은 전례대로 마음을 다하여 경건히 받들었는데, 특별히 해조에 명하여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함으로써 감격하는 방도로 삼으시고, 한편으로 양가하여 격려하는 도리를 보이시며, 한편으로 예악을 성대하게 갖추는 명을 보전하는 일로, 특별히 임금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라오니, 차례를 갖추어 잘 입게하실 일”이라 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악공 김찬광 등이 운운 하였는데, 이 상언(上言)을 보니, 그들이 모두 지방의 민생(民生)으로서 부모를 떠나 서울에 올라 와서는 굶주림을 참고 복무하여, 매양 태묘에 부묘할 때를 당하여 묘정에 들어가는 악공들이 대개 양가의 은전을 입었으며, 임인년(1722) 태묘에 부묘할 때 묘정에 들어간 공인 67인이 양가의 은전을 입고 장예원의 추쇄 점고

327) 오음(五音): 동양 음악의 다섯 가지 상대음계를 나타내는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다섯 가지 음.

328) 육률(六律): 동양 음악의 열 두 가지 절대 음계를 나타내는 십이율(十二律) 가운데 양(陽)의 소리에 속하는 황종(黃鐘)·대주(大簇)·고선(姑洗)·유빈(蕤賓)·이척(夷則)·무역(無射) 등 여섯 가지 음률.

를 면하도록 허락받았는데, 이번 태묘에 부모할 때 그들이 전례대로 마음을 다하여 경건히 받들었는데,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함으로써 몹시 감격하게 하는 일로 특별히 임금님의 은혜를 받게 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였는데, 이전부터 태묘에 부모할 때 들어가 참여한 공인들은 모두 양가의 은전을 입었으나, 그들의 하소연만 믿는 것은 불가하여 해원에 물어 조사하였더니, 김찬광 등 51인이 이번 태묘에 부모할 때 들어가 참여하였음은 틀림없이 확실하다 하니, 해조에 명하여 전례대로 거행함이 마땅할 듯하되, 은전과 관계된 일은 아래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불가하니 상감께서 결재하심이 어떠할지? 웅정 5년(1727) 정월 21일 우부승지 신 권적³²⁹⁾ 차지로 입계하였더니, 특별히 양가하라고 하심. 이조(吏曹)로 이송(移送)함.

정미(1727) 3월 20일

본조의 참의 이병태(李秉泰)가 상소하기를, “앞드려 생각건대 신의 구구한 사정과 형편은 이미 지난번에 스스로 상소에 모두 나열하였는데, 죄와 벌을 가하지 않고 시고 직책의 이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당초 면직(免職)의 간청은 허락을 받지 못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종적은 갈수록 위축됨을 느낍니다. 신은 이에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신은 근래에 또 허리와 다리가 절뚝거리는 증세가 있어서, 사국(史局)³³⁰⁾에 사진(仕進)³³¹⁾하는데도 부족하거나 실려다녀야 하고, 반열(班列)에 나가 다니는 것도 단연코 가망이 없어서, 날마다 고하라 청한 것도 당초에 부득이한 것이었으나, 후사(喉司)³³²⁾의 여러 신하들이 위에 알리기를 허락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공무의 체면이나 사사로운 의리나 모두 방해가 있으니 이것이 또한 무슨 사고입니까? 이제 춘궁(春宮)³³³⁾의 입학(入學) 의식을 거행하면서 대정(大庭)에서 헌하(獻賀)하는 절차가 있는데, 모든 관료가 모두 가지런히 줄지어 공손히 성대한 의식을 우러러보지만, 신은 사정과 병이 모두 괴로워 홀로 반렬의 말단에 나가지 못하고, 미미한 정성만 가슴속에 또렷하나 끝내 스스로 펴지 못하니, 돌이켜보건대 예를 폐한 벌을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쫓자리를 깔아 상소를 올리고 밝은 명령을 기다립니다. 또 생각하면 본조에는 바야흐로 왜서(倭書)에 회답하는 일이 있

329) 권적(1675-1755): 안동 권씨로 자는 경하(景賀), 호는 창백헌(蒼白軒) 또는 남애(南厓)이다. 숙종 39년(1713)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강화유수, 대사헌, 예조참판, 도승지, 전라도 관찰사, 병조참판, 경기관찰사, 대사성, 지중주부사, 한성부판윤, 형조판서, 좌참찬, 예조판서, 판의금부사, 우빈객 등 여러 요직을 역임하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시호는 효정(孝貞)이다.

330) 사국(史局): 사관(史官)이 사초(史草)를 작성하는 곳.

331) 사진(仕進): 관리가 규정된 시간에 출근함.

332) 후사(喉司): 승정원(承政院)의 별칭.

333) 춘궁(春宮): 왕세자의 별칭.

어 참의가 주관하는 것이 사례이나, 신은 여기에도 또한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대개 신의 집안은 일찍이 임진년(1592)의 화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년에 신의 계부(季父) 신 집(溲)이 이 직책에 있으면서 또한 이 일로 상소를 올려 하소연하여 마침내 그 청의 인준을 받았으니, 앞드려 생각건대 성명께서는 이제 혹시라도 기억하실런지요? 이 한 단락만은 더욱 일찍 지휘하여 주시기를 앞드려 바라오니, 성상께서는 자애로이 더욱 굽어 살피시어 먼저 신의 직책 이름을 꺾고, 그대로 그 전후의 죄와 벌을 논의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보이신다면, 기강을 진작하는 데 일조가 될 것이요, 신의 마음에 있어서도 어찌 다행한 마음을 건딜 수 있겠습니까? 신은 마음을 돌테 없어 운운” 하였는데, 입계하면서 계(啓)자 도장을 찍었음. 당일 정사(政事)에 참의 이중협(李重協)이 군직(軍職)으로 왔음.

정미(1727) 윤3월 13일

서부(西部) 악생(樂生) 김윤해(金潤海)의 상언에, “위에 삼가 아립니다. 운운. 저의 아버지 전악(典樂) 준영(俊永)은 본디 지방 고을 사람으로 아이 때부터 악공(樂工)의 역(役)에 소속되어 오음(五音) 육률(六律)을 밤낮으로 학습하여 재주가 특이하다고 전악(典樂)³³⁴으로 발탁되어서, 전후 30여 년 국가의 대소 경례(慶禮)를 봉행하지 않음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기해년(1719) 봄 기로연(耆老宴)을 내리던 날에는 집박전악(執拍典樂)으로서 모든 음악 거행을 폐단 없이 봉행한 뒤, 동년 가을 외연(外宴) 때 또 집박전악으로서 악공과 무동(舞童) 처용(處容)을 가르쳐 조금도 잘못된 절차가 없이 전례대로 봉행하였으며, 갑진년(1724) 내연(內宴) 때도 기생과 관현악(管絃樂)을 달포 동안 가르쳐 폐단 없이 봉행하였고, 또 감조전악(監造典樂)으로서 전후 연례(宴禮) 때 사용되는 풍물(風物) 악기를 다수 감조(監造)하였을 뿐 아니라, 이번 경종대왕(景宗大王)을 태묘(太廟)에 부모(祔廟)하는 대제(大祭) 때에도 역시 집사전악(執事典樂)으로서 여러 악공을 연습시켜 묘정(廟庭)에 인솔하여 들어가 예악의 절주(節奏)를 경건히 받들어 엄숙히 행하였으니, 전후 국가의 대소 경례에 음악을 폐단 없이 거행한 수효는 이제 논의할 겨를이 없는데, 일찍이 열성조(列聖朝)에서 태묘에 부모하는 대제 때의 집사 정윤박(丁潤璞), 김애남(金愛男), 임환(林桓), 황효성(黃孝成) 등 네 사람은 모두 은전을 입었으며, 가까운 사례로 말하더라도 숙종대왕을 태묘에 부모할 때 집사전악 권신(權信) 및 묘정에 들어간 악공이 모두 은전을 입었고, 경종대왕을 태묘에 부모할 때 묘정에 들어간 악공 등이 모두 양가(良加)의 은전을 입었는데, 신의 아버지 준영은 그 때 집사전악으로서 홀로 한가지로 보는 은전에서 누락

334) 전악(典樂): 장악원(掌樂院)의 정6품 잡직 벼슬의 하나.

되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위하여 은전을 바라는 정은 감히 다른 사람에 뒤지지 않는지라, 죽음을 무릅쓰고 성상(聖上)의 밝으신 효치(孝治) 아래에 슬피 하소하오니, 특별히 예조에 명하여 정윤박 권신의 사례를 상고하여 신의 아버지 준영에게도 고루 은전을 입게 하시는 일로 특별히 임금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기를 차례대로 잘 입게하라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앞서 악생(樂生) 김윤해가 기한 내에 현신(現身)하여 호구단자(戶口單子)를 현납(現納)하고 진히 바친 것이 확실하거니와, 이 상언을 보면 “그의 아버지 준영이 본디 지방 고을 사람으로 아이 때부터 악공에 소속되어 재능과 기예가 특이하여 전악으로 발탁된 지 전후 30여 년인데, 기해년(1719) 춘추 외연(外宴)과 갑진년(1724) 내연(內宴) 때 폐단 없이 봉행하였으며, 또 감조전악으로서 전후 연례 때 사용되는 풍물을 다수 감조하였을 뿐 아니라, 이번 태묘에 부모할 때도 또한 집사로서 여러 악공을 연습시켜 인솔하여 묘정에 들어가서 예악의 절주(節奏)를 경건히 받들고 엄숙히 행하였는데, 대소 경례(慶禮)를 거행한 것은 이제 거론할 겨를이 없으나 일찍이 열성조의 태묘에 부모할 때의 집사전악 권신 또한 모두 은전을 입었고, 묘정에 들어간 악공 등이 모두 양가(良加)의 은전을 입었는데 그의 아버지 준영은 홀로 한가지로 보는 은전에서 누락되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특별히 예조에 명하여 정윤박 권신의 사례를 상고하여 균등하게 은전을 입게 해 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였는바, 김준영이 집사전악으로서 태묘에 부모할 때 공인(工人)을 가르치고 풍물을 감조하고 전후 경례(慶禮)에 모두 공로가 있으며, 묘정에 들어간 악공 역시 이미 상을 받았으니, 김준영은 마땅히 다른 사례대로 상을 논해야 마땅한데, 일이 은전에 관계되는 것은 아래에서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니 상감께서 결재하심이 어떠할지? 옹정 5년(1727) 윤3월 13일 동부승지신 한이조(韓頤朝)³³⁵ 차지로 입게하여, “회계(回啓)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셨음.

정미(1727) 5월 초1일

동래부사 이의천(李倚天)³³⁶이 병오(1726) 12월 21일에 성첩하고, 이번 정월 초5일에 비변사에 계하한 장계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여 운운. “이 동래부사 이(李)의 장계를 보면 왜인의 연향(宴享)과 다례(茶禮)의 모든 선물 물품을 한

335) 한이조(韓頤朝, 1684-?): 청주 한씨로 자는 대관(大觀)이다. 경종 1년(1721)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를 역임하였다.

336) 이의천(李倚天, 1676-1753): 전주 이씨로 자는 사립(斯立), 호는 박직와(樸直窩)이다. 숙종 39년(1713)에 문과에 급제하여 헌납, 지평, 장령, 사간을 거쳐 좌부승지에 이르렀다.

결같이 전례대로 하여 가감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부특송사왜(副特送使倭)의 다례 때에 여러 왜인이 모두 선물 물품이 정결하다고 칭송하고 사례하여 마지 않았는데, 부산첨사 전순좌가 경박하게 술에 취하여 함부로 고함을 쳐서 저쪽 사람의 안목을 놀라게 한 것은 참으로 해괴하니, 부산첨사 전순좌의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여 교활한 왜인이 놀라 감복하도록 하며, 신도 당초에 그가 술에 취한 줄 살피지 못하고 함께 같이 들어갔다가 이러한 전에 없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으니, 검속하지 못한 죄를 또한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전순좌의 행동이 망녕되고 쾌악함은 참으로 놀라운데, 조정에서 이미 죄를 결정하였으니 이제 논할 것이 없거니와, 다만 부산첨사와 동래부사는 이미 같은 품계의 아문(衙門)이요 또 그 관할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니, 설령 죄를 줄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영에 보고하여 장계로 알려 처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본부에서 곧바로 죄를 청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없는 일이고, 또한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어 경계하여 신칙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되니, 동래부사 이의천을 추고함이 어떠할지?” **옹정 5년(1727) 4월 28일** 우부승지 신 한이조(韓頤朝)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무신(1728) 2월 초9일

예조에서 계품하기를, “동래부사가 올려보낸 왜물(倭物) 진상(進上)을 오늘 간품(看品)하였더니, 그 가운데 도주(島主)가 섬으로 되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差倭) 등안고(藤安高)가 바친 진상 물목(物目)에, ‘혁과연갑(革裹硯匣 : 가죽으로 싼 연갑)’이라 적어 놓았으나, 혁과괘연(革裹掛硯 : 가죽으로 싸서 거는 벼루)을 올려보내어, 물색(物色)과 서록(書錄)이 비록 어긋나지만, 이미 왜인이 바친 물건이라 이대로 간품하고 별단(別單)에 주를 달아 들인다는 뜻으로 감히 계품합니다.” 라고 하여는데, 전교에 “알았다”고 하셨음.

무신(1728) 7월 초5일

동래부사 민응수(閔應洙)³³⁷가 5월 14일에 성첩하고 21일에 비변사에 계하한 장계. 방금 접한 훈도 현덕윤(玄德潤)³³⁸과 별차 김세일(金世鎰)³³⁹ 등의 수본에,

337) 민응수(閔應洙, 1684-1750): 여흥 민씨로 자는 성보(聲甫), 호는 오헌(梧軒)이다. 영조 을사(乙巳, 1725)에 문과에 급제하여 무신(戊申, 1728)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경상도 관찰사를 지내고 우의정(右議政)에 이르렀다.

338) 현덕윤(玄德潤, 1676-1737): 자는 도이(道以), 호는 금곡(錦谷), 본관은 천녕이다. 숙종 31년(1706)

“당년조 제1선 제2선 제3선의 송사왜 및 이페이양〔以酹養〕 제4선 송사왜(送使倭) 등이, ‘저희들이 나온 뒤로 서계(書契)를 바친 지 이미 60여 일이 지났으나 회답 서계가 아직도 오지 않아서 참으로 민망하고 걱정스럽다’고 하며, 영덕(盈德)에서 표류한 사람을 데려온 차왜 또한 ‘제가 왜관에 머무는 날짜의 기한이 다른 송사(送使)에 비하여 길고 짧음이 전혀 다른데, 회답 서계가 만약 때맞추어 내려오지 않으면 기한을 넘기는 것이 틀림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하니, 속히 재촉하여 교활한 왜인이 한결같이 독촉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는 수본이었는데, 근래 역관 들이 각 송사왜의 회답 서계 및 예단 잡물을 예조에서 받아낸 뒤, 중간에 나오다 머물러 즉시 내려오지 않은 소치로 왜인의 재촉을 받는 것이 역관들의 고루한 버릇이 되었기로, 병오년(1726)에 본부의 장계(狀啓)로 말미암은 비변사의 복계(覆啓)에 규정을 정하여, 혹시라도 다시 이전의 버릇에 따라 임의로 가다가 머무는 자는 동래부에 명하여 그 날짜를 상고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장계로 알려져 엄중하게 죄를 정한다는 뜻으로 해조와 해원에 아울러 분부하여 시행하는 일로 관문을 보냈는바, 정한 바 규정이 이렇게 엄하고 명백하니 역관 들이 마땅히 각별히 삼가하여 봉행해야 마땅한 일임에도, 이제 이번 회서(回書)와 예물 등도 날짜가 이미 오래되어 생각건대 해조에서 이미 싸서 봉합하여 차비역관(差備譯官)에게 내어 주었을 터인데, 아직도 내도하지 않아서 왜인이 누누이 독촉하는 폐단이 있게 되었는지라, 역관의 행위가 극히 통탄스럽고 미워 부득이 치계하오니, 위 항목의 회서 예물을 어느 역관에게 내어 주어서 즉시 내려오지 않았는지 해당 역관의 죄상을 유사(攸司)에 명하여 엄중하게 조처하게 한 뒤, 그대로 밤낮없이 내려보내어 교활한 왜인이 오래 머물면서 다시 독촉하는 폐단이 없게 하시기를.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운운. 이 동래부사 민응수의 장계를 보면, 훈도 별차 등의 수본을 매거하면서, 당년조 제1 제2 제3선 및 이페이양 제4선의 송사왜 및 영덕에서 표류한 사람을 데려온 차왜가 회서와 예물 등이 날짜가 이미 오래되어, 생각건대 해조에서 이미 차비역관에게 내어 주었을 터인데 아직도 오지 않아서 왜인이 독촉하는 폐단이 있게 되었으니, 역관의 행위가 극히 통탄스러워서 해당 역관의 죄상을 유사에 명하여 엄중하게 품의 조처한 뒤 그대로 밤낮없이 내려보내게 하라 하였는바, 이제 들으니 차비역관 등이 이미 내려갔다고 하니 이제 논할 것은 없으나, 이미 조정에서 차출하여 보낸 뒤로 과연 때맞추어 떠나지 않았다가 이렇게 재촉하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임역(任譯) 등의 행위가 참으로 극히 통탄스럽기로, 차출한 날짜 및 출발한 날짜를 해원에 분부하여 조사해 내게 하였더니, 신영래(愼榮來)³⁴⁰⁾는

역과에 급제하여 부산 훈도로 재직하였으며, 신묘(1711) 사행에 왜학상통사로 수행하였다.

339) 김세일(金世鎰, 1674-?): 선성 김씨로 자는 백봉(伯朋)이다. 숙종 19년(1694) 역과에 올라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340) 신영래(愼榮來, 1694-?): 거창 신씨로 자는 달부(達夫)이다. 숙종 43년(1717) 식년시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가의대부에 이르렀다.

금년조 제1선 회답 서계를 가지고 간 역관이고, 박상눌(朴尙訥)은 영덕에서 표류한 사람을 데려온 차왜에게 회답 서계 및 예단을 가져간 역관인데, 4월 18일에 차출되어 5월 17일에 사조(辭朝)하였고, 이장(李樟)은 금년조 이떼이양 송사왜에게 회답 서계를 가져간 역관인데 5월 초3일에 차출되어 5월 23일에 사조하였다고 하니, 왜인을 접대하는 일이 중대함에도 차출한 뒤 혹 수십일이 되거나 혹은 달포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려가 교활한 왜인들의 독촉을 받게 되어 거의 일이 생길 지경에 이르렀는지라, 그 정상을 따지건대 참으로 극히 한심하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유사에게 명하여 엄중하게 죄를 정하여 징계하도록 함이 어떠할지? 웅정 6년(1728) 25일 우승지 신유수(柳綏)³⁴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무신(1728) 7월 19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 운운. 이 경상감사 박문수(朴文秀)³⁴²의 장계를 보면, 동래부사 민응수(閔應洙)의 첩정(牒呈)을 낱낱이 들어 말하기를, “매년 왜인에게 지급하는 금료 쌀과 콩 중에서 지급할 것 이외에 남는 쌀과 콩은 전례에 별차왜(別差倭) 및 훈도 별차 출사역관(出使譯官)의 수세산원(收稅算員) 소통사(小通事)와 훈도 별차의 배종(陪從) 사령(使令) 등의 식료(朔料)와 각 항목 잡비의 자본으로 하는데, 만약 차왜(差倭)의 왕래가 증첩되면 부족한 사례가 많기로, 을사년(1725) 12월부터 정미년(1727) 12월까지 각 연도(年度)에 나온 별차왜에게 공급하면서 부족한 쌀 1,230섬과 콩 360섬을 부득이 공작미(公作米) 및 저치미(儲置米)로 사용하였으나 아직까지 갚지 못하여 일이 매우 민망하고 절박한데, 동 왜공(倭供) 쌀과 콩의 수량을 늘려 지출하는 데는 또한 전례가 있으니, 참작하여 더 지급하는 일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각년의 남은 쌀과 콩의 수량이 이미 적지 않은데, 3년 내에 더 사용한 것이 또 이렇게 많으니, 피차의 문서를 비록 조사하여 맞추어 지급한다 하더라도 또한 허술할 단서가 없지 않거니와, 이전에 통신사 때 대차왜(大差倭)가 다수 나와서 비용이 매우 많았지만 또한 이렇게 부족한 폐단이 없었으니, 해당 선혜청과 본도에서 전후 등록 및 지출하고 남아 있는 실제 수량을 조사한 뒤에 다시 보고하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입계한대로 윤험함.

341) 유수(柳綏, 1678-?): 경종 신축(辛丑, 1721)에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이 승지에 이르렀다. 경종 계묘(癸卯, 1723)에 순무어사(巡撫御史)로 동래에 다녀갔다.

342) 박문수(朴文秀, 1691-1756): 고령 박씨로 자는 성보(成甫), 호는 기은(耆隱)이다. 경종 3년(1723)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남암행어사, 경상도 관찰사, 대사성, 대사간, 도승지, 충청도 암행어사, 병조판서, 함경도 관찰사, 어영대장, 황해도 수군절도사, 호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우참찬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무신(1728) 7월 28일

이번 7월 2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경상감사 박문수가 함께 입시하였는데, 동 경상감사 박문수가 계품한 바, “관수왜(館守倭)의 집 73칸과 대문 18칸, 중문 2칸, 일대관(一代官)의 개시(開市) 대청(大廳) 60칸, 재판차왜(裁判差倭)의 집 48칸, 대문 2칸, 중문 1칸, 도합 204칸을 조정에서 지급하는 저치미(儲置米) 1,550섬으로 돈 7,000냥을 만들어 204칸을 조성하게 하였는데, 감동관(監董官) 김수구(金壽九) 등이 담당하여 조성한다고 말하고서는, 단지 관수왜의 집 93칸만 조성하였습니다. 만약 돈 7,000냥을 93칸에 분배한다면 1칸에 들어간 돈이 75냥이라, 비록 집이 아방궁(阿房宮)처럼 화려하더라도 1칸에 돈 75냥이 들어가는 것은 천만 무리이고, 일찍이 들으니 전 동래부사가 이것으로 죄를 청하였다고 합니다. 대개 7,000냥을 204칸에 분배하면 1칸에 돈 34냥 3전이 들어가야 하고, 당초에 조정에서 이미 이 돈 7,000냥을 지급하여 204칸을 조성하게 하였고, 재목으로 보태 사용하면 부족할 우려가 없을 듯한데, 감동관 김수구가 204칸의 비용을 훔쳐먹고 단지 90칸만 지은 것은 참으로 형편없는 일인지라, 그러므로 김수구의 대신으로 최대제(崔岱齊)를 시켜 김수구가 짓지 못한 집 114칸을 짓게 하였는데, 집을 짓는 비용은 조정에서 마땅히 김수구가 훔쳐먹은 돈에서 추심하여야 하고, 부족한 것은 곧바로 저치미 5,000섬을 구획하고 요리하게 하여 그 이식으로 그 집을 지었는데, 전 감사가 비록 각 고을에 나누어 주었으나 각 고을에서 즉시 내어주지 않고, 시가(市價) 또한 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岱齊)가 그의 돈으로 조성하여, 이제 방금 들어간 비용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기로 구획한 저치미도 이미 다 지급되지 않았고, 이미 지급한 것은 그 이자를 계산하여 부족한 수량을 알아서 조정에서 지급한 연후에 억울하다고 할 단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마는, 비록 동래부사의 장계로 보더라도 수구(壽九)가 새로 지은 집에 예전 재목과 예전 기와를 많이 사용하였으니, 공무를 빙자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여 함부로 마련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들으니 대제(岱齊) 또한 예전 목재와 예전 기와를 많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갑진년(1724) 왜관 서관(西館) 941칸을 중수(重修)하면서 들어간 것으로 보더라도 16,000냥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은 집은 204칸인데 들어간 비용은 갑진년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동래부사가 무릇 일을 조사하는데는 극히 정밀하고 분명하니, 그로 하여금 각별히 상세하게 조사하게 한 뒤에, 영문(營門)과 상의하여 진작 장계로 알려 조치할 수 있도록 함이 어찌할지?”라고 하였음. 우의정 오(吳)가 말하기를 “이 일은 극히 절통합니다. 소신이 일찍이 경상감사가 된 적이 있어 또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역관이 왜인과 부동하여 그 폐단이 매우 많습니다. 만약 그 집을 고쳐 지으면 그들에게 큰 이익이 있으므로 매양 이와 같이 하여, 1칸을 조성하는 비용이 장차 70여 냥에 이르니 어

짜 이와 같은 이치가 있겠습니까?” 하였고, 박문수는 말하기를 “반드시 김수구가 사 용한 집 가격을 조사해 내어서 그가 훔쳐 먹은 것을 징수하여 최대제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지급해야 할 가격이 모자라면 영문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 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 하였음. 우의정 오(吳)가 말하기를 “왜관이 훼손되는 대로 보수한다는 뜻으로 별도로 절목을 만들어 신칙함이 어떠할지?” 하자, 상감께서는 “그 말이 참 좋다.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무신(1728) 8월 초3일

이번 8월 초1일 상참(常參)³⁴³에 경상감사 박문수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 **경상감사 박문수가 계품한 바**, “동래부에서 이미 삼세(蔘稅)가 없어지고 또 견역(鑷役)을 과하였기에 실로 지탱해 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삼세(蔘稅)가 있고 견역(鑷役)이 있었으므로 왜인이 자주 왕래할 때 그 접대에 드는 비용이 매우 많아도 조정에서 지급하는 바가 없었고, 군관(軍官)의 요포(料布)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절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리 추이(推移)할 도리가 없어 이 일을 속히 변통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묘당에 물어보고 즉시 변통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기유(1729) 정월 17일

이번 정월 16일 하직(下直)하는 수령과 변장(邊將)을 머물러 대기시켰다가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부산첨사 김박(金鑄)이 계품한 바**, “신이 웅천(熊川)에서 대죄(待罪)하고 있을 때 눈으로 보고 마음에 항상 개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 등대(登對)³⁴⁴하였으니 감히 이것을 진술하겠습니다. 부산에 왜관을 설립한 것은 대개 그 오가는 왜선이 대마도에서 곧바로 부산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인지 모르나 왜선 한 척이 바람에 표류되어 거제부(巨濟府)에 이르러 정박하였더니, 본부에서는 주객(主客)의 예를 갖추고 양식과 반찬을 갖추어 지급하여 웅천(熊川)으로 호송하고, 웅천에서는 또한 거제의 사례대로 접대하여 부산 왜관으로 호송하였는데, 그 이후로 왜인이 웅천 거제 두 고을의 접대를 노리고 바람의 기세가 순조로우나 순조롭지 않거나 곧장 고의로 돌아가는 길을 취하여, 거제에서부터 웅천을 돌아 부산의 관

343) 상참(常參): 의정대신(議政大臣)을 비롯한 각 중신이 매일 편전(便殿)에서 국무를 보고하는 일.

344) 등대(登對): 어전(御前)에 진알(進謁)하여 면담함.

소로 향하는 도중에 접대할 때 대동미(大同米)를 구획하여 지급하는 수량이 매년 거의 수천 섬에 이르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 폐단을 방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한 번 대마도에 이문(移文)한다면, 이전대로 곧바로 본진에 도달하여 중간에서 비용을 허비하는 폐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유(1729) 정월 23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운운. 이 동래부사 민응수의 장계를 보면, “훈도 현덕윤(玄德潤)과 출사역관(出使譯官) 김진혁(金鎭赫) 등의 수본에 의거하여 내년조 9송사왜(送使倭)에게 지급하는 황죽(篁竹) 512개와 짚 431동(同)을 줄여서 지급하지 않는 수표(手標)를 받았다고 하기로, 각 관에 분정(分定)하지 말라는 뜻으로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였거니와, 동 황죽과 짚의 원래 태가미(駄價米) 모두 173섬을 국저(國儲)에 도로 올렸으며, 훈도 별차의 가사(家舍) 및 출사청(出使廳) 70여 칸을 이제 모조리 고쳐 환하게 일신하였는데, 이제 이 현덕윤이 직무상의 일에 마음을 다하여 재물을 털어내어 공무에 보충한 정성에는 포창하여 권장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하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이전에는 훈도 및 출사역관이 모두 여염집에 있으면서 왜인과 뒤섞여 거처하였기에, 모양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난잡한 폐단과 의외의 우려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경인년(1710)에 여염집을 헐어서 옮긴 뒤로 현덕윤이 첫째 출사역관으로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여 출사청(出使廳) 수십 칸을 만들어 출사역관으로 하여금 거처할 곳이 있게 하였고, 훈별청(訓別廳)은 예전에 무너져 폐기한 그대로였는데, 덕윤이 또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로지 이 일을 위하여 내려가서 훈별청도 또한 수십 칸을 개조하여 변방의 모습을 일신하게 하였고, 또 이렇게 황죽 등의 비용 170여 섬을 줄인 일은, 이전에 본전(本錢)을 내어주고 이것을 요리하여 살아가던 자가 허실이 쉬어 있어도 또한 가자(加資)의 은전을 입었는데, 덕윤의 공로는 이에 비하면 또한 현격하게 구별된다 할 것이니, 특별히 가자하여 권장하도록 함이 어떠할지? 옹정 7년(1729) 정월 23일 동부승지 신홍정상(洪廷相)³⁴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345) 홍정상(洪廷相, 1677-?): 남양 홍씨로 자는 사보(士輔)이다. 숙종 36년(1710) 문과에 급제하여 수찬, 장령을 거쳐 의주부윤을 역임하였다.

기유(1729) 2월 21일

동래부사 민응수(閔應洙)가 2월 13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9일 유시(酉時)에 도부한 부산첨사 김박(金鑄)의 치통에, “무신년(1728) 12월 12일에 나왔던 을사조 1 특송사왜(特送使倭) 2호의 두번째 건너는 배에 격왜 30명과, 무신년(1728) 4월 17일에 나왔던 소금도왜(小禁徒倭) 1명, 무신년(1728) 12월 12일에 나왔던 을사조 제15호선 격왜 20명, 무신년(1728) 4월 17일에 나왔던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도합 두 척이 공작미를 실어가지고 당일 진시(辰時)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 하였음. 이제 이번 왕세자(王世子) 상사(喪事) 때 왜인을 접대할 때의 복색(服色) 및 연향(宴享)의 절차는 본부에 원래 근거로 할 만한 전례가 없어서 오래된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두번 지난 을유년(1645) 소현세자(昭顯世子) 상사 때 회사차왜(回謝差倭)에게 동년 5월 30일에 첫 연회를 베풀고, 6월 12일에 재차 연회를 베풀었는데, 객(客)에게만 권화(勸花)³⁴⁶하고 상화(床花)³⁴⁷는 원래 쓰지 않았으며, 기생과 약공은 진열하였으나 쓰지 않았고, 동월 18일 3차 연회 때에 음악을 연주하여 베푸는 것을 한결같이 평상시의 사례대로 하였는바, 초차(初次)와 재차 연회에 이미 음악을 사용하지 않고 유독 세번째 연회에 음악을 사용한 것은, 졸곡 전후에 같지 않은 바가 있어서가 아닌지 또한 상세히 알 수 없으며, 반찬으로 3차의 연회에 모두 고기를 사용하였고, 복색은 모두 길복(吉服)³⁴⁸으로 한 듯한데, 일이 오래되고 문서가 미비하여 또한 일일이 고증하기가 어려우며, 무술년(1658) 빈궁(殯宮) 상 때는 졸곡 전에 비록 잔치를 베풀지 않았으나 모두 건물(乾物)을 들여주었고, 졸곡 뒤에는 연향 절차를 하나같이 평상시 사례대로 거행하였는데, 지난해 12월 28일 관수왜의 다례(茶禮)가 마침 왕세자 졸곡 전에 해당되었기로, 업무를 보는 복장으로 읍례(揖禮)만 거행하여 서계를 받아 올리고 다공(茶供)은 건물로 들여주었으며, 그 뒤로 또 연향이 있었으나 신(臣)의 병고(病故)로 또한 건물로 들여주어 이미 잔치를 베풀지 않았으니, 접대하는 예절을 모두 논할 것이 없는데, 지금은 졸곡이 이미 지나고 또 바람이 온화하여 연례(年例) 9송사왜가 계속하여 나와 잇달아 잔치를 베풀어야 할 형편이나, 신의 질병은 고질로 침중하여 자력으로 나가 접대하기는 비록 그 가망이 없지만, 그 접대 예절에 대하여는 미리 강구하여 정하지 않아서는 안되는데, 오래된 등록에는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아서 이제 근거로 삼아 따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는 아직 최복(衰服)³⁴⁹을 벗지 않았는데 차왜를 접대하면서 가벼이 갑자기 순길(純吉)³⁵⁰의 성대한

346) 권화(勸花): 잔치에 가화(假花)를 머리에 꽂아 경사를 축하하는 절차.

347) 상화(床花): 잔치 상에 장식하는 가화(假花).

348) 길복(吉服): 상례를 마치고 입는 평상시의 의복.

349) 최복(衰服): 삼년상의 상복.

350) 순길(純吉): 삼년상을 마치고 입는 평상복.

예를 사용하는 것은 또한 미안한 일이기로, 삼가 이렇게 치계하오니, 해조에 명하여 상세히 전후 등록을 상고하여 속히 품의하고 지휘하여 때를 맞추어 보내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운운. 이 동래부사 민응수의 장계를 보면, 왜인 접대 시의 복색 및 연향의 절차가 본부에서는 원래 근거로 할 만한 전례가 없고, 소헌세자 및 무술년(1645) 빈궁상 때 졸곡 뒤에 연향의 절차를 한결같이 평상시 사례대로 거행하였으나, 지금 나라 안에 아직 최복을 벗지 않았는데 차왜를 접대하면서 갑자기 길례를 사용하는 것이 미안하니, 해조에 명하여 상세히 등록을 상고하여 품의하여 지휘해 달라고 하였는바, 복제(服制)를 이미 개정하여 백관이 모두 최복을 받아 입고 무릇 예절과 관계되는 것이 을유년(1645)이나 무술년(1658)에 비교하여 되도록 무겁게 따르려고 하는데, 이제 이번 왜인 접대에는 졸곡 이후에 길복을 사용하는 사례를 준용하여서는 부당할 듯하나, 일이 변례(變禮)에 관계되는지라 신의 예조에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웅정 7년(1729) 2월 24일 좌부승지 신 최종주(崔宗周)³⁵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기유(1729) 3월 초4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 운운. 동래부사의 장계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에, “왜인을 접대할 때의 복색(服色)과 연향(宴享)의 절차는 원래 근거로 할 만한 전례가 없으나 졸곡(卒哭) 뒤에 길복(吉服)을 사용하는 사례를 준용하여서는 부당할 듯한데, 일이 변례(變禮)와 관계되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바, 복제를 이미 변경한 뒤에 길례의 복색을 순수하게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천담복(淺淡服)³⁵²에다 검은 모자와 띠를 사용함이 마땅하고, 잔치상에는 객인(客人)만 권화(勸花)하고 고기를 사용하는 등의 절차는 평상시 사례대로 하며, 주인은 소찬(素饌)을 사용하며, 상화(床花)는 사용하지 않고, 기악(妓樂)은 진열하되 연주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웅정 7년(1729) 3월 초4일 복계(覆啓)하였더니, 전교에 “복제(服制)를 이미 복구한 뒤에 연향 등의 일을 이렇게 하여서는 합당치 않다. 무술년(1658) 등록이 이미 을유년(1645)과 다른 것은 대개 3년의 제도를 복구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상하가 최복을 벗지 않았고, 또한 교린(交隣)의 도리는 사대(事大)와는 간격이 있는데, 군부(君父)가 최복을 벗기 전에 번신**

351) 최종주(崔宗周, 1683-1737): 식녕 최씨로 자는 문길(文吉), 호는 자봉(紫峰)이다. 숙종 31년(1705) 문과에 급제하고, 숙종 정유(丁酉, 1717)에 접위관(接慰官)으로 동래에 온 적이 있다. 정언을 거쳐 영조 때 좌승지에 이르렀다.

352) 천담복(淺淡服): 얇게 푸른 빛이 나는 제복.

(藩臣)이 비록 소복(素服)이라도 잔치를 베풀겠는가? 하물며 사향(祀享) 이외에는 전정(殿庭)에 헌가(軒架)와 현가(懸架)의 음악을 벌인 일이 없는데, 비록 연주하지 않더라도 기악(伎樂)을 벌이는 것은 스스로 예의를 존중하여 이웃나라에 보이는 도리가 아니다. 복이 끝나기 전에는 마땅히 졸곡 이전의 사례대로 해야지, 졸곡의 선후로 가볍고 무겁게 하는 바가 있어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분부하라” 하셨음.

동래부사 이의천(李倚天)이 정미(1727) 윤3월 25일에 성첩하고 4월 초3일에 계 하한 장계. 도주(島主)의 아들 미일(彌一)의 아명(兒名) 도서(圖書)를 예조(禮曹)의 서리(胥吏)가 가지고 가서 정월 일에 이미 내도하였으나 아직 전하여 줄 기약이 없는 바, 조정에서 은전으로 하사하는 물건을 이렇게 지체하여 받지 않는 교활한 왜인의 정상이 극히 통탄스럽고 해괴할 뿐 아니라, 서리가 여러 달 기다리는 것은 매우 폐단이 있기로, 각별히 관수와 재판에게 책망하여 타일러 즉시 경건히 받으라고 하였으며, 그 사이 지체된 곡절을 또한 즉시 수분하라는 뜻으로 전령하여 임역(任譯) 등에게 분부하였더니, 방금 바친 훈도 김시박(金時璞)과 별차 최대제(崔岱齊) 등의 수분에, “이제 이번 재판차왜(裁判差倭)가 청한 바 대마도 도주의 아들 미일(彌一)의 아명 도서를 해조에서 예전 사례대로 시행을 허락하는 일로 이미 복계하여 윤후를 받아 정밀하게 만들어 내려보냈기로, 즉시 전하여 지급한다는 뜻으로 관수왜와 재판왜에게 언급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답하기를, ‘도주의 아들 아명의 도서를 예로부터 귀국에 청하여 얻은 것이 한 두 번에 그치지 않으나, 이번 도서의 청은 저희 대마주로서는 만부득이한 일이므로 감히 전례에 의거하여 와서 청하였는데, 귀국에서 전례대로 속히 만들어 지급하니 은덕과 우의에 깊이 감격하여 사례로 용납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니와, 도서를 가져가는 한 가지 일은 일의 체면이 중대할 뿐 아니라, 이전부터 도서차왜(圖書差倭)가 나와서 전담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미 옛날 규정이니, 이제 이번 도서는 재판이 결단코 가져가기가 어렵다’고 하여 전후로 다투어 따지는 것이 여러 번에 그치지 않거늘, 소인 등이 이치에 의거하여 책망하고 타일러 말하기를, ‘무릇 재판이라는 칭호는 오로지 양국의 일을 주간하는 책무에서 나온 것인데, 당초 도서를 청한 서계를 순부(順付)³⁵³하여 가져 왔으니 이제 이번 도서를 순부하여 가져가는 것은 불가하지 않으며, 아명의 도서를 청하여 얻는 일에 있어서는 비록 간혹 전례가 있었더라도 조정에서 매양 시행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 시행을 허락하는 명령 또한 관대한 처분에서 나온 것인즉 마땅히 경건히 받아도 모자랄 터인데, 이것을 생각지 않고 이제 도리어 도서차왜가 나와서 가져간다는 설을 감히 입에서 발하니, 장차 우리나라에 무한한 폐단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고, 실로 성신(誠信)으로 서로를 공경하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여러 가지로 잘라 책망하였더니, 관수와 재판이 답하기를 ‘양국의 일을 주간하는 데는 재판이 담당하지마는, 도서를 도서차왜가 가져가는 것은

353) 순부(順付): 돌아오는 인편에 부침.

분명히 법례(法例)가 있을 뿐 아니라, 하물며 도서는 곧 도중(島中)에서 더할 수 없이 큰 중요한 일이라, 그러므로 그 오가는 체면이 다른 공무와는 절로 각별하여 결코 받아가지기가 어렵다'고 아주 물리치기로, 소인 등이 다시 책망하여 타이르기를, '재판의 직책은 이미 직급이 높은 사신이 아니며, 또 도서의 왕복도 역시 공무가 아닌가? 어찌 반드시 도서차왜가 나와서 우리나라에 폐를 끼친 다음에야 체면을 세워 특별히 귀도(貴島)에서 존중받을 수 있겠는가? 오직 바라건대 여러분은 두 나라의 성신(誠信)의 지극한 우의를 생각하여, 작은 절차에 구애되지 말고 도중에 급히 보고하여 돌아가는 인편에 부쳐서 받아간다는 뜻으로 속히 변통하여, 한편으로는 교린(交隣)의 후의를 보존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끼치는 폐를 덜어, 피차간에 떠들썩 억지로 따지는 사단이 없게 하라' 하면서 달포 동안 다투며 이치로 절절이 책망하여 타이렀더니, 동 왜인이 '이제 이번에 임관이 날마다 다투어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정성을 다하여 공무를 받들려는 지극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에, 저희들이 한결같이 물리치는 것은 체면에 손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대한 일은 실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이 뜻을 일일이 도중에 통보하여 그 회보를 들어보고 난 뒤에 받아 갈 수 있겠다'고 운운하면서 특별히 비선을 보내어 도중에 통보하였는데, 대마도의 여러 봉행 등이 '분명히 전례가 있는 일을 이제 갑자기 폐하는 것은 불가하고, 또한 감히 제 마음대로 결단할 수 없다고 급히 예도의 도주가 있는 곳에 보고하였다니, 도주는 이번 아명 도서를 청하는 것이 비록 옛날 규정이라고는 하나, 조정에서 우리 대마주에 들이는 정성을 생각하여 특별히 만들어 주도록 허락하였으니 감사하기 한량 없으나, 도서를 가져오는 일은 하나의 사절을 전담하여 보내어 경건히 받들어서 사례하고 받아서 가져오는 것이 본디 옛 규정인데, 이제 훈도 별차가 반복하여 상의하는 뜻으로 보면 도서차왜를 내보내는 데 폐를 끼치는 것이 적지 않아서이니, 만약 그렇다면 재판이 이미 공무를 겸하고 있으니 순부하여 가져와도 불가하지 않다는 뜻으로 도중에서 회보가 나왔다'고 하여, 관수와 재판 두 왜인이 소인 등을 만나보기를 요구하여 말하기를 '이제 이번 미일의 아명 도서는 임관 등이 폐단을 끼친다고 다투어 고집하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도서차왜는 내보내지 않고 재판에게 순부하여 가져온다는 뜻으로 이미 조정하여 어제 대마도에서 비선이 와서 알렸으니, 동 도서를 이달 23일에 곧바로 들여달라'고 이야기하였으니, 해조의 서리(書吏)가 도서를 가지고 동일 아침 일찍 내려보내도록 하며, 이렇게 책망하고 타이르는 즈음에 날씨가 자연히 지체되어 황공함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수분이었음. 이에 의거하여 그 해조 서리 윤흥달(尹興達)이 도서를 가지고 이달 23일 관소에 내려보내어 훈도 별차 등이 입회하여 전하여 주게 하였는데, 동 서리 및 훈도 별차 등이 돌아와서 고한 내용에 "함께 관수의 집에 가서 도서를 전하여 주었더니, 관수와 재판 두 왜인이 문을 나와 경건하게 열어본 뒤에, 동 왜인 등이 두 손 모아 빌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이번 도서는 예부(禮部)에서 특별히 정밀하게 제조하여 광채가 배로 더하여 더욱 황공하고

감격함을 견디지 못하겠으니, 이 뜻을 일일이 돌아가 도주에게 고하겠다'고 하였다”는 수본 및 회고 사연이 있었음. 이전에 있어서는 도서를 청하여 받을 때는 특별히 차왜를 보낸 것이 한두번에 그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도서 지급을 청하는 서계를 재판차왜가 이미 순부하여 가져 왔으니, 동 도서를 재판이 돌아가는 편에 순부하는 것이 방해될 바 없을 듯함에도, 이미 별도의 차사가 와서 받아가는 사례가 있었으니 이제 이번에 관수왜 등이 제기한 설은 또한 근거가 없지 않을 뿐 아니라, 교활한 왜인의 정상과 태도는 본래 뒤바뀌는데는 필시 그 일을 과장하여 억지로 전례를 인용하여 갑자기 또 나오지는 않았을 터이니, 책망하여 타이르며 방색하는 사이에 또 난처한 사단이 있었음에도, 훈도 김시박과 별차 최대제 등이 평소에 국사에 마음을 다하고 공무를 받드는데 힘을 다하여, 무릇 교활한 왜인이 일을 주간할 때 지극한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기로, 근래에 교활한 왜인이 그다지 대단한 사건을 만든 일이 없었던 것은 필시 두 역관이 가운데 있으면서 잘 알선한 공로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며, 이제 이번 도서차왜가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말을 허비해 가며 다투어 고집하여 극력으로 방색함으로써 허다한 공급의 폐단을 없앤 것은 더욱 가당한 일인지라, 이전에는 비록 이처럼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임역들이 만약 간혹 가운데서 미봉(彌縫)하면 본부의 장계로 말미암아 간혹 특별히 가자(加資)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김시박과 최대제 등의 이번 공로는 전에 가자한 자와 비교하여 현격하게 다른 정도가 아니니, 특별히 노고에 보답하여 격려 권장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되겠으나, 일이 은전에 관계되어 극히 외람되나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감히 사실에 따라 처제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운운. 이 동래 전부사 이의천의 장계를 보면 훈도 김시박과 별차 최대제 등이 도주의 아들의 아명 도서를 전해줄 때 극력으로 주선하여 도서차왜가 나오는 것을 방색함으로써 허다한 공급의 폐단을 덜었고, 또한 그들이 평소에 국사에 마음을 다하여 교활한 왜인이 대단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것은 필시 두 역관이 가운데 있으면서 알선한 공에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닐 터라, 수고에 보답하여 격려 권장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되니, 해조에 명하여 전례를 상고해서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바, 김시박 등이 평일에 국사에 마음을 다한 것은 참으로 가상하지만, 이미 현저하게 지적할 일이 없고, 차왜를 막은 일로써 말하더라도 비록 약간의 폐단을 제거한 공은 있으나 또한 대단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상을 청하는 것은 매우 외람스러우니, 그냥 둬서 어떠할지? **雍正 7년(1711) 3월 초4일 동부승지 신 조명교(曹命教)³⁵⁴ 차지로 임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남부(南部) 부사맹(副司猛)³⁵⁵ 현덕연(玄德淵)³⁵⁶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예조

354) 조명교(曹命教, 1687-1753): 창녕 조씨로 자는 이보(彝甫), 호는 담운(澹雲)이다. 숙종 45년(1719) 문과에 올라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성, 대사간, 대사헌, 개성유수, 호조참판,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355) 부사맹(副司猛): 오위(五衛)의 종8품 벼슬인데, 현직이 없는 문무관과 그 밖의 잡직 벼슬아치로 임

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운운. 이 상언을 보면 그의 형 덕윤(德潤)이 신묘년(1711) 통신사(通信使) 사행(使行) 때 왜학(倭學) 상통사(上通事)로서 수행하여 일본에 가서 일을 마친 뒤 먼저 나왔는데, 먼저 나온 역관은 전례에 가자(加資)의 은전을 받았으나 그 때 사신이 연좌 파직되고 미처 서계를 못하여 그 형이 은전의 상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호소하였는바, 먼저 나온 역관에게 가자하는 것은 본디 정상의 은전이거늘, 덕윤은 홀로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억울하다고 칭하는 것은 근거가 없지 않은데, 당초에 이미 서계를 알아서 상을 받을 처지에 있었던 자가 모두 거론되지 않았으니, 현덕윤만 또한 그 호소로 인하여 홀로 은전의 상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니, 그냥 둬야 어떠할지? 옹정 7년(1729) 3월 초4일 동부승지 신조명교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기유(1729) 3월 22일

동래부사 민응수가 3월 초3일에 성첩하고 14일에 계하한 장계. 우도(右道)로 표류한 왜선 한 척이 관소(館所)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문정(問情)하여 장계로 알린다는 연유는 잇달아 치계하였는데, 이달 초5일 유시(酉時)에 도부한 부산첨사 김박(金鑄)의 치통에, “당일 진시(辰時)에 구봉(龜峰) 봉군(烽軍)이 진고(進告)하기를, ‘이제 이번 다대포에 옮겨 정박하였던 왜선 한 척이 돌아와 관소에 정박하였다’고 하였으며, 오시(午時)에 도부한 다대포 첨사의 치통에, ‘지난달 28일 본진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던 표류 왜선 한 척이 계속 바람이 불순하여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며 수호하다가 오늘 진시(辰時)에 출발하여 관소로 향하기에 호송장 서평포 만호 신규(申圭)를 정하여 보냈다’고 하였음. 일시에 도부한 동 만호 신규의 치보에, ‘위의 왜선 한 척을 영솔하여 부쳤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현덕윤(玄德潤)과 별차 한익겸(韓益謙)³⁵⁷ 등에게 명하여 다시 문정하게 한 뒤의 수본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을사년(1725) 3특송사와 2호의 재차 건너온 배에 격왜 30명과 교대차 나온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지난 달 20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발선하여 나오다가, 물마루에 미치지 못하여 비바람이 펼쳐 일어나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으므로 바다 가운데 닻을 내리고 떠 있으면서 밤을 지내다가, 21일에는 또 바람이 없어서 그대로 떠서 머물다가 22일에 표류하여

명함.

356) 현덕윤(玄德潤, 1694-?): 천녕(川寧) 현씨로 자는 계심(季深)이며, 덕윤(德潤)의 아우이다. 숙종 40년(1714) 역과에 올라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357) 한익겸(韓益謙, 1672-?): 신평(新平) 한씨로 자는 대수(大受)이다. 영조 3년(1727) 역과에 올라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구 수영(水營)의 경내인 대저도(大楮島)에 정박하였는데, 여러 날 떠서 머물면서 뿔감과 물이 모두 떨어져 부득이 육지에 내려서 인가에 가서 우물물이 있는 곳을 물었더니, 이미 말이 통하지 않고 또 뿔감과 물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모두 도망하여 피하기에, 바야흐로 목이 마르도록 번민하고 있는 중에 동일 밤중에 세 관원이 내도 하였으나 역시 뿔감과 물을 지급하지 않거늘, 그대로 발선하여 지세포 경내에 옮겨 정박하였다가 차차 전진하여 이제 비로소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 하였으며, 동 왜선이 재차 건너 나온 것은 규정 밖에 관계되기로 소지한 노인을 물리쳐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분이었음. 위 왜선이 당초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옥포 왜학 현걸(玄傑)이 문정(問情)한 가운데 을사조 3특송사왜 1호선이라 하였는데, 이제 훈도 별차의 문정한 수분을 보니 을사조 3특송사왜 2호가 재차 건너온 배라 하였거늘, 일이 매우 괴이한지라 본진에 비치한 왜선이 오고간 치부책자(置簿冊子)를 가져다 살펴보니, 을사조 3특송사왜 1호선은 금년 정월 26일에 나왔다가 2월 18일에 이미 돌아 들어갔는바, 이로써 추리하면 이제 이번 왜선은 2호선이 틀림없이 확실하고, 옥포 왜학이 1호선으로 문정에 써서 보고한 것은 잘못 살핀 것임을 면치 못하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음. 초6일 미시(未時)에 도부한 동 첩사의 치통에는 “무신년(1728) 10월 15일에 나왔던 비선 한 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무신(1728) 6월 25일에 나왔던 중금도왜 1인, 무신(1728) 12월 12일에 나왔던 비선 한 척의 두왜 1인과 격왜 5명, 금년 정월 23일에 나왔던 비선 한 척의 두왜 1인 격왜 6명 등이 함께 타고 관수왜의 사서(私書)를 가지고 도합 3척이 당일 진시(辰時)에 발선하여 돌아들어갔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표류 왜인 등이 육지에 내려 횡행할 때 금지하지 않고 또 뿔감과 물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세 관원은 부산첩사가 이미 통영에 보고하였으니 통영에서 생각건대 이미 조사하여 조치하였을 것이거니와, 위의 왜선은 이미 규정 외로 나와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 들에게 명하여 각별히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이 배가 과연 을사조 3특송사왜의 2호선이 재차 건너온 배이거늘 옥포 왜학 현걸이 을사조 3특송사왜 1호선이라고 문정에 적어 보고한 것은 잘못 살핀 것임을 면치 못하니, 그 죄상을 유사(攸司)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여 후일을 징계하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민응수의 장계를 보면 이제 이번에 나온 왜선은 과연 을사조 3특송사왜 2호가 재차 건너온 배이거늘 옥포 왜학 현걸이 잘못 을사조 3특송사왜 1호선으로 문정한 것은 잘못 살핀 것임을 면치 못하니 그 죄상을 유사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게 하라 하였는바, 왜선에 문정하는 일은 중대하여 신중하게 살피지 않아서는 안되거늘 동 현걸이 전연 삼가하지 않고 배의 호칭을 옮겨서 바꾼 것은 이미 극히 놀라울 뿐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일로 누차 죄책을 받았음에도 끝내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소홀하여서야,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는 불가하니 즉시 파직하고 그 대신을 즉시 속히 차출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해당 사역원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옹정 7년(1729) 3월 22일 좌부 승지 신 권익순(權益淳)³⁵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기유(1729) 4월 초1일

동래부사 민응수가 3월 22일에 성첩하고 29일에 비변사에 계하한 장계. 이제 비변사에서 복계(覆啓)한 회신 관문이 도착하였는데, 관하(判下)한 사연이 이미 이러한 지라, 왜인을 접대할 때 복색(服色) 및 연향(宴享)의 절차를 최복(衰服)을 벗기 전까지는 졸곡(卒哭)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거행하여야 마땅하나, 이전부터 국휼 때 졸곡 뒤에는 왜인을 잔치로 접대하는 예를 원래 폐한 사례가 없고, 신사년(1701) 국휼 때는 졸곡 전이라 진상(進上) 숙배(肅拜)할 때와 서계를 받아올리는 날만 최복으로 행하였고, 연례(宴禮)는 흑 건물(乾物)로 들여주거나 혹은 상을 차려서 들여주었고, 졸곡 뒤에는 천담복(淺淡服)과 오사모(烏紗帽)³⁵⁹에 쇠를 제거한 흑각대(黑角帶)로 잔치를 베풀었으며, 저쪽에는 고기 상을 우리 쪽에는 소찬(素餐) 상을 하였고, 상제(祥祭) 뒤에 비로소 길복(吉服)과 고기 상을 사용하였다고 하며, 경자년(1720)과 갑진년(1724) 두 해의 국휼 때도, 졸곡 이전에는 다례(茶禮)와 연향(宴享)을 베풀지 않고, 다만 상을 차려서 들여주다가, 졸곡 뒤에는 베로 감싼 사모(紗帽)와 포단령(布團領)³⁶⁰으로 예를 행하면서, 우리쪽에는 소찬 상, 저쪽에는 고기 상을 하였고, 권화(勸花)는 객인(客人)만 차리고 상화(床花)와 기악(妓樂)은 원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바, 이제 이번 왕세자 졸곡 이전에는 을유년(1705) 등록에는 왜인 접대에 근거할 만한 것이 없고 국휼 때의 전례가 또한 이와 같기로, 비록 무술년(1718) 등록에 근거하여 행하더라도 방해될 바 없겠는데, 졸곡 뒤에는 전후 국휼 때 졸곡 뒤에 연향하는 절차를 왜인 또한 이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제 만약 졸곡 전후로 한결같이 그대로 거행한다면, 왜인의 평소 약삭빠른 성격에 전례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전후를 헤아려서 사례를 인용하여 다투어 고집하는 것이 곧 그들의 기량인지라, 전후 예절이 이미 서로 큰 차이가 있으니 우리로서는 변론하여 따지기에 또한 어려운 점이 있고, 복제를 이미 변경하였으니 국휼 때의 옛날 사례가 비록 이러하더라도 이제 일체 바로 잡아 고친 사유를 아울러 타일러야 할지, 이루어진 명령 아래 참으로 다시 감히 품의 드리지는 못하오나, 일이 예절과 관계되고, 또한 먼 곳의 사람을 접대하는 도리를 변통하는 데도 관계되어, 비록 평상시 수작하는 세세한 절차라도 진실로 조정의 명령이

358) 권익순(權益淳, 1671-?): 안동 권씨로 자는 화보(和輔)이다. 숙종 39년(1713)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다.

359) 오사모(烏紗帽): 단령(團領)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검은 베로 만든 관원의 모자.

360) 포단령(布團領): 무명 베로 만든 단령(團領).

없으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거니와, 이제 세견 제1선 제2선 제3선의 송사왜가 모두 이미 나와서 다례의 연향이 차례로 이어지는 것이 박두하여 바야흐로 이제 예전 사례를 인용하면서 날마다 재촉하는데, 이미 관부(判付)³⁶¹가 있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불가하기로 지금은 비록 물리쳤으나, 교활한 왜인의 정상이 앞으로 시끄럽게 다투며 따지는 폐단이 반드시 다가올 형편이라, 변고에 대처하는 방도를 반드시 미리 정하여 품의해야 때를 당하여 궁색할 우려가 없겠기에 부득이 항공하게도 이렇게 감히 치게 하니, 다시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품의해서 지휘하여 때 맞추어 준행할 수 있도록 할 일.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운운. 이 동래부사 민응수의 장계를 보면 “이전부터 국휼 시에 졸곡 뒤에는 왜인의 연향 접대의 예를 원래 폐지한 사례가 없는데 신사년(1701) 국휼 때 졸곡 이후에는 천담복(淺淡服)과 오사모(烏紗帽)에다 쇠를 제거한 흑각대(黑角帶)로 잔치를 베풀었고 저쪽에는 고기 상을 우리쪽에는 소찬 상으로 하고, 상제(祥祭)³⁶² 뒤에는 비로소 길복(吉服)에 고기 상을 사용하였고, 경자년(1720)과 갑진년(1724) 두 해 국휼의 졸곡 뒤에는 포사모(布紗帽)와 포단령(布團領)으로 예를 행하면서 권화(勸花)는 객인(客人)에게만 배치하고 상화(床花)와 기악(妓樂)은 사용하지 않았는바, 이제 이번 왕세자 졸곡 뒤에는 전후 국휼의 졸곡 뒤의 연향을 왜인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제 만약 하나같이 졸곡 전과 같이 거행한다면, 왜인의 정상이 평소 약삭빨라서 전후를 비교하고 헤아려서 사례를 인용하여 다투며 고집하는 것이 저들의 기량인지라, 우리로서는 변론하여 따지는 데 어려운 바가 있기로, 일체 바로잡아 고치는 사유를 타이르지, 변고에 대처하는 방도를 반드시 미리 마련하여 품의하는 것이 궁색할 우려가 없겠으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하여 지휘해 달라”고 하였는바, 교린(交隣)은 사대(事大)와 다른데, 최복을 입은 몸으로 연향을 베풀기는 참으로 미안하지만, 국휼의 졸곡 전에 이미 등급을 감하여 베푸는 사례가 있어서, 이제 갑자기 변경하여 교활한 왜인이 변론하여 따지며 분쟁하는 폐단이 있게 되어서는 부당하니, 이전대로 베풀게 하되 피차간에 고기와 소찬의 구분과 권화와 상화와 기악 등의 절차를 한결같이 경자년(1720)과 갑진년(1724)의 등록대로 하되, 복색은 시복(時服)³⁶³의 백포단령에 오사모와 흑각대의 제도로 하여 경중(輕重)과 융쇄(隆殺)의 구별을 두는 것이 합당할 듯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雍正 7년(1729) 4월 초1일 좌부승지 신 권익순(權益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361) 관부(判付): 상주(上奏)한 안건을 윤택함.

362) 상제(祥祭): 삼년상의 제2주기에 지내는 제사. 기년상(暮年喪)에는 초상 뒤 13월에 상제를 지낸다.

363) 시복(時服): 관원이 입시(入侍)할 때나 공무를 볼 때 통상으로 입는 옷.

기유(1729) 9월 29일

악생(樂生) 박창엽(朴昌燁)이 상언(上言)하기를, “위 글을 삼가 아뢰. 신이 아버지를 위하여 신원하는 것은 곧 사람의 자식된 지극한 인정이요,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는 것이 국가의 성대한 은전입니다. 신의 아버지 장악원 전악 신 만적(萬積)은 본디 지방 사람으로 11세 때 장악원에 소속되어 오음(五音) 육률(六律)을 어려서 학습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으며, 뒤에 악사(樂師)로 승진하여 해가 오래되어 신의 아버지의 나이 이제 60이거니와, 대개 병인년(1686)과 경자년(1720) 두 해의 태묘(太廟)에 부모(祔廟)할 때 모두 차비공인(差備工人)으로 묘정(廟庭)에 들어갔고, 경인년(1710) 진연(進宴)할 때 신의 아버지가 풍악(風樂) 절차를 알아서 기생과 악공, 무동(舞童), 관현(管絃) 등의 정재(呈才)³⁶⁴ 대오(隊伍)를 배치하여 진퇴하는 것을 가르쳐 거행하였고, 기해년(1719) 봄 기로(耆老)에게 잔치를 내리던 날 존숭악장(尊崇樂章)의 선후 절차를 신의 아버지가 선창하여 소리를 맞추어서 지엄한 임금님의 위엄 아래 마음을 다해 가사를 불렀고, 갑진년(1724) 내연 때 각종의 풍물(風物) 및 기생들을 가르쳐 연습시키고 관현에 부착하는 물건을 신의 아버지가 홀로 담당하여 감독 제조하였고, 병오년(1726) 태묘에 부모하는 대제(大祭) 때 또 신연(神輦)을 시위(侍衛)하고 그대로 대상집사(臺上執事)가 되어 여러 공인(工人)을 인솔하고 음악과 무도 절차를 모두 신의 아버지에게 담당하게 하여 봉행토록 하였는데, 일찍이 열성조(列聖朝)의 태묘 부모 때 묘정에 들어간 차비공인은 모두 양가(良加)를 받았고, 집사 전악(執事典樂) 권신(權信) 등도 거개가 특별히 가자(加資)의 은전을 입었는데, 신의 아버지 신 만적은 권신 등과 같은 전악인데도 신의 아버지만 또한 홀로 한결같이 보는 은전을 받지 못했으니, 여기에 섭섭한 한탄이 없겠습니까? 이제 거룩하고 총명한 효치(孝治) 아래에 까마귀가 부모에게 보답하는 사사로운 정을 굶어 살피시어, 신의 아버지 만적에게 권신 등의 사례와 같이 한 가지로 가자하는 일로 앞드려 천은(天恩)을 입게 해 주시기를 바라오니, 차례를 갖추어 잘 계품해 주시기를”이라 한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기를. “앞서 악생 박창엽이 기한 내에 현신(現身)하여 호구를 직접 바친 것이 확실하거니와, 이 상언을 보면, 그의 아버지 만적이 지방 사람으로 11세에 장악원에 소속되어 악사로 승진하여 나이가 많게 되었는데, 경인년(1710) 진연 때의 정재 대오를 가르쳐 거행하고, 기해년(1719) 봄 잔치를 내리던 날 존숭악장의 절차를 지엄한 임금님의 위엄 아래 마음을 다하여 가사를 불렀고, 갑진년(1724) 내연 때 각종 풍물 등을 홀로 담당하여 감독 제조하였으며, 병오년(1726) 태묘에 부모할 때 신연시위로서 그대로 대상집사가 되어 악공을 인솔하여 음악과 무도의 절차를 담당하여 봉행하였는데, 일찍이 열성조에서 부모할

364) 정재(呈才): 대궐 안 잔치에서 여흥으로 베푸는 춤과 노래 등의 잡기 시연.

때 묘정에 들어간 공인은 모두 양가를 받았고, 집사 전악 권신 등도 모두 가자의 은전을 입었는데, 그의 아버지만 또한 한결같이 보는 은전을 입지 못하니 어찌 섭섭한 탄식이 없겠느냐고 하면서, 권신 등의 사례와 한가지로 옳드려 천은을 입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였는바, 만적이 전악으로 악공을 가르치고 풍물을 감조하여 전후 경례(慶禮)에 모두 공로가 있어서 전례를 인용하여 원통하다고 일컫는 것은 근거가 없지 않아 참작하여 상을 주는 도리를 논함이 마땅할 듯하나, 일이 은전과 관계되는 것은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상감께서 결정하심이 어떠할지?”라고 하여, 옹정 7년(1729) 9월 28일 좌부승지 신 장태소(張泰紹)³⁶⁵ 차지로 입계하였더니, “근래에 이러한 일들은 한 가지 일로 말미암아 상의 은전을 바라는 폐단으로 지금의 고질이 되었다. 갑오년(1714) 진연 때 존송악장을 부른 악사와 임인년 태묘에 부묘할 때 대상전악은 모두 다 가자(加資)하였느냐? 사례를 상고하여 다시 품의하라”고 전교하셨음.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악생 박창엽이 그 아버지 전악 만적을 위하여 상언한 데 대한 회계(回啓)의 판부(判付)에 ‘근래 이런 일들은 한 가지 일로 말미암아 상의 은전을 바라는 폐단으로 이제 고질이 되었는데, 갑오년(1714) 진연 때 존송악장을 부른 악사와 임인년(1722) 태묘에 부묘할 때 대상 전악을 모두 가자하였느냐? 사례를 상고하여 다시 품의하라’는 일로 명이 내렸기에, 등록을 가져다 상고하니 갑오년(1714) 진연 때 존송악장을 부른 악사는 이미 상언한 일이 없어서 또한 상을 논한 일이 없었고, 임인년(1722) 태묘에 부묘할 때 대상전악 권신은 이번 을사년(1725)에 열성조의 부묘에 대상전악 정윤박 등 4인이 상으로 가자한 전례를 근거로 인용하여 상언이 있었기에 본조에서 상감의 결재하라고 회계하였더니 판부에 정윤박 등의 사례대로 상을 논하라고 하셨으므로, 권신 역시 한 가지로 가자의 은전을 입었으니, 갑오년(1714)과 임인년(1722)의 전례가 이러하기로 감히 계품한다”고 하였는데, 전교에 “전례대로 가자하라” 하셨음.

기유(1729) 10월 12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운운. 이 동래부사 민응수의 장계를 보면, “왜관을 수리할 때 감독한 역관 등에게 들어간 물자와 들어간 날짜를 다시 조사하여 문서를 갑진등록(甲辰謄錄)에서 차례로 상고하였더니, 김수구(金壽九)에게 당초 저치미(儲置米) 1,550섬을 절전(折錢)³⁶⁶하여 실제 금액 6,975냥 중에, 실제로 들어간 돈은 4,035냥 1전 4푼이나, 왜장인(倭匠人)의 역가(役價)로 은화 363냥 6전과, 양식으

365) 장태소(張泰紹): 인동 장씨로 훈련대장 장봉익의 아들이다. 영조의 특별한 배려를 받아 전라좌수사를 거쳐 승지, 전라병마사, 회령부사, 금군별장, 포도대장, 평안병사, 수원부사를 역임하였다.

366) 절전(折錢): 물품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매기는 가격.

로 쓰는 쌀 30섬을 수구가 아직 들어주지 않았으니, 수구가 실제로 들인 비용 중에서 이 액수는 마땅히 일일이 징수해 내어서 최대제(崔岱齊)에게 옮겨 주어야 하며, 쓰고 남은 돈 2,939냥 8전 6푼은 또한 마땅히 모조리 그에게 되돌려 징수해야 하는데, 그 중 480냥은 역관 유극신(劉克愼)³⁶⁷이 맨 처음 대찰(代察)³⁶⁸할 때 비용으로 쓰고 갔지 않았으니, 수구 이름 아래 빚진 돈 중 극신이 쓴 480냥을 제하면 실제 부채는 2459냥 8전 6푼인바, 이를 징수하여 받아내고, 죄상은 아울러 엄중하게 품의 조처하게 하며, 한중억(韓重億)³⁶⁹은 자신이 당상임역(堂上任譯)이 되어 한결같이 수구에게 위임하여 손상 감축이 되게 하였으니, 자리만 차지하고 잃어버린 죄 또한 면하기 어려우며, 최대제는 수구가 일을 망친 나머지 물자로 책임을 받아서, 우선 스스로 비용을 대어 큰 역사를 이미 완공하여 마치고, 전 부사가 장계로 알려 상 주기를 청하기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이 3,441냥 1전 1푼에서, 저치미 1,100섬을 잘라 지급하여 만든 돈 3,300냥을 모두 계산하여 제하였으니, 이제 이번에 실제로 들어간 금액에서 부족한 돈이 아직 141냥 1전 1푼이거니와, 변통하여 지급하는 방도가 있어야 마땅하니 아울러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으며, 경상감사의 장계에 의거하여 형조에서 첨부한 계목에, “김수구와 유극신 등이 허다한 공물(公物)을 제멋대로 훔쳐 먹은 것은 극히 통탄스럽고 놀라우니 본조에서 가두어 징수해 낸 뒤에 법률대로 처단하며, 저치미(儲置米)를 계산하여 줄이는 일과 최대제에게 상 주기를 청하는 일은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바, 전후로 동래 왜관을 수리하는 공사에서 국가가 임역에게 속임을 당하여 무릇 영남 저치미가 소모된 것은 곧 여기에 말미암은 것이라 참으로 통탄스럽고 놀라우며, 갑진년(1724)에 수리하여 고치는 공사에는 그때 임역 들이 온갖 계교로 과장하여 조정을 놀라게 하였는데, 조정에서는 관대하게 청에 따라 900여 칸의 긴요하지 않은 수리를 더 허락하여 거의 15개월이나 오래 되었으나, 그 수리에는 예전에 배당된 것을 많이 사용하였고, 나무와 돌을 끌어 오고 쪼개고 연마하는 가격이나 왜장 및 우리나라 장인의 역가(役價)와 공궤(供饋) 등의 비용을 한정없이 허수(虛數)로 과장하여 청하여 받은 돈이 1만 수천 여 냥에 이르렀으니, 그 통탄스럽고 놀라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그 때 수리한 곳이 900여 칸에 이르렀는데, 이번에 임역 김수구는 200여 칸을 개조하는 비용으로 당초 받아낸 저치미 1,550섬으로 돈 7,000냥을 만들었음에도, 그가 수리한 것은 93칸에 불과하니, 이를 빙자하여 훔쳐먹은 정상이 이미 극히 천만 통탄스러우며, 이제 이번 동래부에서 갑진등록으로 수구의 공사 비용을 견주어 실제 들어간 것을 4,035냥으

367) 유극신(劉克愼, 1691-?): 청주 유씨로 자는 과회(寡悔)이다. 숙종 45년(1719) 역과에 올라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368) 대찰(代察): 업무를 대리하여 집행함.

369) 한중억(韓重億, 1660-?): 신평(新平) 한씨로 자는 시중(時仲). 숙종 8년(1682) 증광시의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으로 종사하다가 통정대부 첨중장군의 품계를 받았다.

로 정한 것 또한 매우 과람하고, 왜장(倭匠)의 역가 은화 363냥과 양식으로 쓰는 쌀 30섬을 아직 들여주지 못하여 최대제로 하여금 대신하여 들여주게 한 것은 더욱이 극히 놀라우며, 유극신이 당초 대찰할 때 480냥 돈을 쓰면서도 되돌려 갚지 않은 정상 또한 극히 근거가 없으니, 김수구와 유극신 두 사람은 해조에서 첨부한 계목에 의거하여 각별히 엄하게 가둔 뒤에 속히 일일이 징수해 내고, 국가를 속이고 재물을 도둑질하고 일을 망친 죄를 다시 유사(攸司)에 명하여 별도로 엄중하게 처단하여 이후의 무한한 폐습을 징계하게 하며, 한중역은 당상역관으로서 단속하고 감독하지 못하고 허다한 돈과 곡식을 가만히 앉아서 잃어버린 죄상은 또한 매우 놀라우니, 동래부에 명하여 엄중하게 죄과를 다스리게 하며, 왜장(倭匠)의 역가를 수구가 들여주지 않아서 최대제가 대신 지급한 것은 수구에게 또한 징수해 내어서 최대제에게 옮겨 주며, 당초 구획한 대금 4,000섬을 이미 다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것이 단지 1,100섬이고, 돈으로 만든 3,300냥을 이미 다 지출하여 이른바 이식을 불리는 것은 이제 논할 것이 없으니, 도신이 장계한 대로 곧바로 회감(會減)하며, 부족한 돈 141냥은 수구에 빚진 돈 가운데서 받아내는 것으로 대제에게 옮겨 줄 것이며, 최대제는 수구가 일을 망친 뒤에 백여 칸의 가옥을 무난히 조성하여 동래부에서 이미 상 주기를 청하였고, 도신 또한 큰 공사를 기일에 맞추어 완공하여 능히 재판차왜가 다시 와서 확정을 청하는 폐단 등의 말이 없어서 이렇게 처계하였으나, 구획한 저저미 1,300섬을 이미 다 회감하고 부족한 돈 140냥 또한 수구가 빚진 돈으로 옮겨 지급한다면, 대제의 공로는 단지 착실히 감독하여 기일에 맞추어 공사를 마친 것만으로는 직분 내의 일이라 별도로 상 주기를 논할 도리는 없으니, 그냥 둬야 어떠할지? 옹정 7년(1729) 10월 초10일 우부승지 신 김시혁(金始燠)³⁷⁰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기유(1729) 11월 초3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운운. 이 동래부사 이광세(李匡世)³⁷¹의 장계를 보면, “왜관을 뚫고 들어가서 술을 훔친 죄인 양인(良人) 박태중(朴太中)과 접주인(接主人)³⁷² 김돌이(金芻伊) 등을 조사 심문하여 자백을 받은 뒤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근래 왜관에 뚫고 들어가는 금령이 심분 해이해져 드나드는 잠상(潛商)이 한정이 없어서 특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농간하는 폐단을 막지

370) 김시혁(金始燠, 1676-1750): 강릉 김씨로 자는 회이(晦而), 호는 매곡(梅谷)이다. 숙종 34년(1708)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서 수원부사, 황해도관찰사, 대사간, 동부승지, 춘천부사, 함경도관찰사, 대사간, 강화유수, 한성부관윤, 대사헌, 공조관서 등을 역임하였다.

371) 이광세(李匡世, 1679-?): 전주 이씨로 자는 제경(濟卿)이다. 숙종 기해(己亥, 1719)에 문과에 급제하고 영조 기유(己酉, 1729)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호조참관을 역임하였다.

372) 접주인(接主人): 도둑이나 노름꾼 등을 거느리는 우두머리.

않아서는 불가하거니와, 동 태중은 몸을 숨겨 출입한 것이 이미 여러 해일 뿐만 아니라, 왜인의 기물을 훔치기까지 하였으니 그 정상이 극히 통탄스럽고 놀라우며, 신축년(1721) 수교(受敎)³⁷³가 지극히 엄중하여 혼미하고 곤궁한 백성이라고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것은 불가하여 법률대로 처단하며, 김돌이도 그가 뚫고 들어가는 사정을 관아에 고하지 않은 죄는 엄하게 징계하지 않아서는 불가하여 형벌을 2차 시행한 뒤 놓아보내고, 사로잡은 사람들은 넉넉하게 상을 논하여 격려하고 권장하도록 함이 마땅하니 분부함이 어떠할지? 옹정 7년(1729) 11월 초3일 우부승지 신 장태소(張泰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기유(1729) 12월 11일

동래부사 이광세가 12월 초2일에 성첩한 장계. 우도(右道)의 옥포(玉浦)로 표류한 왜선 1척 및 다대포에 표류한 왜선 3척 등은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렸다가 문정하여 장계로 알리겠다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는데, 지난달 20일 오시(午時)에 도부한 부산첨사 노흡(盧恰)의 치통에, “당일 진시(辰時)에 수문(守門) 소통사(小通事) 및 구봉 봉군(烽軍) 등의 진고에, ‘다대포로 나갔던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이 사서(私書)를 전한 뒤에 관소로 되돌아갔다’고 하였다”고 하였으며, 다대포 첨사의 치통 및 서평포(西平浦)³⁷⁴ 만호의 치보는 같은 내용임. 24일 술시(戌時)에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에, “다대포 첨사의 치통에, ‘본진 앞바다에 멈추어 정박한 금도왜(禁徒倭)의 작은 배 한 척은 우도로 표류한 왜선을 맞이해 가기 위해 뒤쳐졌고, 표류한 왜선 3척만 당일 오시(午時)에 출발하여 관소로 향하였다’ 하기로, 호송장 서평포 만호 신규(申圭)를 차출하여 보냈으며, 일시에 도부한 동 만호의 치보에, ‘왜선 3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한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현덕윤과 별차 박춘서(朴春瑞) 등에게 명하여 다시 문정하게 한 뒤의 수본의 사연은 당초 별차의 문정 및 옥포 왜학 정동기의 문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동 왜선 3척이 재차 건너 나온 것은 규정 밖이므로 소지한 노인은 물리쳐 받지 않고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고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30일 자시에 도부한 동첨사의 치통에는, “다대포 첨사의 치통에, ‘본진 앞 바다에 멈추어 정박한 왜선 한 척과 금도왜의 작은 배 한 척 등이 당일 사시(巳時)에 출발하여 관소로 향하였다’ 하기로, 호송장으로 본진의 이선장(二船將) 정기주(鄭起周)를 차출하여 보냈는데, 일시에 도부한 동 선장의 치보에, ‘위의 왜선 등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한 치보에 의거

373) 수교(受敎): 임금의 교지.

374) 서평포(西平浦): 지금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하여, 즉시 훈도 현덕윤과 별차 박춘서 등을 다시 더 보내어 문정한 뒤의 수본의 사연은 옥포 왜학의 문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소지한 노인(路引)의 서면(書面)에 ‘각도(各道) 각관(各官) 방어소(防禦所)’라 써 넣은 것은 격식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물리쳐 받지 않고,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등으로 치통한다” 하였기에, 나온 3척의 왜선은 재차 건너온 것이 규정 외에 해당하므로 속히 들여보내 격식에 어긋난 노인 또한 속히 고쳐 바치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음. 이제 이번 왜선 5척이 좌도와 우도로 나뉘어 표류할 때 가덕(加德)의 망군(望軍)이 잘못 6척으로 진고하였는바, 왜선을 관측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가덕에서 변방 정세를 잘못 어긴 것이 한 두 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삼가 신척하지 못하여 잘못 관측하는 일까지 있게 되었는지라,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경책이 없어서는 불가하니, 동 진의 차지 감색(監色) 등을 본부에 잡아와서 그대로 곤장을 쳤으며, 본부의 장계로 인하여 도부한 비변사의 복계 회답 관문에, “왜관에 뚫고 들어가서 술을 훔친 죄인 박태중(朴太中)은 왜관 문 밖에 전례대로 효시(梟示)하며, 박태중이 왜관에 뚫고 들어간 사정을 관(官)에 고하지 않았던 김금돌이(金金覓伊)는 관문대로 엄하게 형벌을 2차 행한 뒤에 풀어서 보냈거니와, 죄인 태중을 사로잡은 사람 장만재(張萬載)는 이미 정한 시각 없이 특별히 보낸 사람이 아니라 곧 문을 지키는 입번(立番) 파수(把守)인데, 그가 순찰하는 시각에 사로잡아 고하는 것은 본디 직분 내의 일이라 상을 논할 도리가 없을 듯하나, 관문(關文)에 사로잡은 사람을 넉넉하게 상을 논하라 하였기로 본부에서 간략하게 시상하는 일임.

경술(1730) 8월 초6일

사역원 전임(前任) 박만령(朴萬齡)³⁷⁵ 등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상언을 보면 역관이 북경에 가는 자리로는 전례에 상통사(上通事)와 차상통사(次上通事)와 압물통사(押物通事), 몽학(蒙學) 원체아(元遞兒)³⁷⁶가 있었는데, 난리 뒤로 줄였던 여러 등급과 순서를 거의 모조리 복구하였으나 오직 차상통사 한 자리만은 아직도 복구하지 못하여, 이제 사역원 가운데 사람들은 자리가 좁고 피폐하기가 특별히 심하니, 줄였던 차상통사 한 자리를 세 압물(押物) 등의 사례에 의거하여 특별히 복구를 허락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의 과정을 권

375) 박만령(朴萬齡, 1694-?): 밀양 박씨로 자는 덕수(德叟)이다. 숙종 40년(1714) 역과에 올라 한학(漢學)에 종사하였다.

376) 원체아(元遞兒): 원록체아(元祿遞兒). 현직을 떠난 벼슬아치에게 실제 직무는 없이 봉록만 지급하기 위해 만든 벼슬.

장하는 일로, 옆드려 임금님의 은혜를 입게 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였는바, 당초 감축한 등급과 순서를 전후로 되돌려 거의 다 복구하였는데, 그 차상통사 한 자리만 아직도 복구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균등하지 못한 탄식이 있고, 더구나 이제 절사(節使) 한 사행(使行)만 있어서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좁으니 변통하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하나, 일이 사역원에 관계되니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떨할지? 옹정 8년(1730) 8월 초6일 우부승지 신 김호(金浩)³⁷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술(1730) 8월 21일

비변사의 계목에 윤운. 이 동래부사 이광세(李匡世)의 장계를 보면, 훈도 별차 등의 수분을 매거(枚擧)하면서 “내년조 9송사왜에게 지급할 황죽(篋竹)과 짚의 원래 태가(駄價) 쌀 173섬을 모두 줄여 지급하지 않고 국가 비축미로 되돌려 올렸는데, 변기화(卞箕和)³⁷⁸⁾가 출사역관(出使譯官)으로서 주선하여 줄였으니, 그가 공무를 위하여 폐단을 제거한 것이 참으로 매우 가상한지라, 현덕윤의 사례에 의거하여 상을 논하여 권장하도록 하는 일로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변기화가 출사역관으로서 9송사왜에게 지급하는 황죽과 짚 값의 쌀을 주선하여 줄이고 덜어서 공무를 위하여 폐단을 줄인 것이 참으로 가상하여, 현덕윤의 사례에 의거하여 상을 논하여 권장하도록 하는 일로 부사가 이미 장계로 청하였으니, 사례를 비추어 상을 논하는 것을 그만 두지 못할 듯하여, 현덕윤의 사례대로 특별히 가자(加資)한다는 뜻으로 해조에 분부하였는데, 다만 조정에서 예사로 지급하는 물건을 훈도 별차 및 출사역관들이 가령 주선하여 줄이고 덜었더라도, 단지 이웃 사절을 대접하는 도리에 모자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의 체면에 있어서도 구차한 일이며, 하물며 또 줄여서 제하지 못한 것을 혹 사사로이 스스로 마련하여 지급하고는 상을 받는 은전을 받으려고 노리는 자가 간간이 있으니 이는 더욱 말이 안되어, 이 뒤로는 일체 방색함이 마땅하니, 다시 이런 뜻으로 신척함이 어떨할지? 옹정 8년(1730) 8월 21일 동부승지 신 유엄(柳儼)³⁷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377) 김호(金浩, ?-1755): 영조 때 정언, 수찬, 승지, 양주목사, 연안부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나 영조 31년(1755) 역률에 걸려 죽었다.

378) 변기화(卞箕和, 1686-?): 밀양 변씨로 자는 국로(國老)이다. 숙종37년(1711)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가선대부에 이르렀다.

379) 유엄(柳儼, 1692-?): 진주 유씨로 자는 사숙(思叔), 호는 성암(省庵)이다. 경종 3년(1723)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광주부윤, 대사간, 충청도관찰사, 황해도관찰사, 경기도관찰사, 예조판서, 형조판서, 한성부판윤을 역임하고 진양군(晉陽君)에 책봉되었으며 시호는 혜정(惠靖)이다.

경술(1730) 12월 25일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약 재료 가운데 인삼(人蔘)이 가장 긴요하고 소중하여 농간을 하여 만드는 자는 은전(銀錢)을 만드는 죄와 한가지로 법률을 정하는 일은 일찍이 신묘년(1711) 사이에 묘당에서 복계(覆啓)하여 확정하였는데, 근래 법령이 해이해져서 서울의 농간하는 무리 두서너 사람이 함부로 계(契)를 만들어 다른 물건을 사이에 섞고 아교로 붙여서 삼(蔘)을 만들어 그 이익을 차지한다고 하니, 이는 다만 가짜 약을 만드는 죄일 뿐만 아니라 은전을 만드는 것보다 더하고, 이제 인삼이란 물품이 우리나라에 매우 귀한 것이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못합니다. 대개 동래부의 인삼 가격이 비록 수시로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한 근의 가격이 절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한 근으로 두 근을 조작하면 그 값이 배가 되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여기서 이익을 차지하려고 인삼 철이면 미리 먼저 서북 양도의 인삼을 채집하는 곳에 가서 여러 종류의 인삼을 사들여 와서는, 아교로 붙여서 10근을 20근으로 만들고 100근을 200근으로 만들어 동래 왜관에 몰래 팔고, 왜인 역시 두 근을 한 근으로 보기 때문에 사들이는 것이 또 전과 비교하여 배가 되며, 호조(戶曹)의 삼세(蔘稅)도 이 무리들이 또한 중간에서 농간하여 교묘하게 바꾸어 조작한 삼을 납입하므로, 호조에서 연례로 동래 왜관에 보내는 것이 조작된 인삼이 아닌 것이 없으니 참으로 극히 한심합니다. 대개 만약 인삼을 조작하지 않으면 인삼 상인들이 오가는 경비를 제하고 나면 그 이익이 많지 않으므로, 상인의 인삼이 모조리 동래 왜관으로 몰려들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저절로 남는 인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인삼이란 물품이 매우 귀하여 변통할 방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뜻으로 논하더라도 또한 일찍이 이전에 확정된 것이 있으니, 이 뒤로 이들 무리가 혹 그 버릇을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인삼을 조작한다면 일죄(一罪)로 논하고, 또한 호조에 분부하여 농간하는 폐단을 방지하게 하며, 서북의 인삼을 캐는 곳에도 또한 약간 인삼을 붙이는 폐단이 있으니, 이는 지방관에게 분부하여 인삼을 조작하는 것과 한가지로 죄를 논한다는 뜻으로 인삼을 캐는 사람에게 알려 신칙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유희한다” 하셨습니다.

신해(1731) 정월 13일

비변사에서 상고할 일. 무릇 출사역관(出使譯官) 등이 일을 마친 뒤에는 마땅히 즉시 올라와야 하나, 들으니 근년에 출사역관들이 그대로 머물러 지체하면서 해가 지나고 달을 넘긴다고 하는데, 공무를 이미 마치고 무단히 지체하여 머무는 것은 필시

사사로운 일을 경영하면서 공무를 해치는 폐단이 없지 않은지라 그 정상이 극히 놀랍고, 본부에도 각 차비(差備)로 내려간 역관이 차왜(差倭)가 돌아 들어가거나 혹은 첩공(撤供)하는 일이 있으면 즉시 신척하여 서울로 올려보내는 것이 일의 체면에 당연한데도, 관리하여 조정하는 바가 없이 한결같이 그 머무는 데로 맡겨두는 것은 또한 매우 미안하니, 이제 이후로는 차왜가 돌아 들어간 이후로 출사역관 등에게 즉시 일을 마친 뒤 상경장(上京狀)을 만들어 예조 및 해당 사역원에 보내게 하여, 한없이 머물면서 폐단을 만드는 일이 없게 함이 마땅하며, 이런 뜻으로 해조와 해원에 분부하여 상경장을 살펴보고 책임을 논하도록 하니, 아울러 상고하여 시행할 일.

신해(1731) 8월 24일

동래부사 정언섭(鄭彦燮)³⁸⁰과 접위관 부사직(副司直) 유건기(兪健基)³⁸¹가 연명으로 8월 18일에 성첩한 장계. 도주(島主)의 승습(承襲) 경사를 고하는 차왜(差倭) 평성일(平誠一)의 상선연(上船宴)에 건물(乾物)을 들여준 연유는 방금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동 차왜의 예단 다례(茶禮)를 이달 초4일에 행하였기로 해조 및 본부와 부산의 회답 서계 별쪽 및 별쪽에 부치는 물건을 아울러 수량을 대조하여 들여주었더니, 동 차왜가 “이제 서계를 살펴보니 예조참의의 답서 가운데 ‘흔위몰량(欣慰沒量)’의 ‘몰(沒)’자가 보기에 길하지 않고, ‘염선수(念先守)’의 ‘선수(先守)’ 두 글자에는 ‘수(守)’자 위에 혹 ‘태(太)’자를 붙이거나 혹은 ‘주(州)’자를 붙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단지 ‘선수(先守)’라고만 쓴 것은 보기에 알존(邊存)³⁸²이고, 동래의 답서 가운데 ‘흔변무이(欣拊亡已)’의 ‘무(亡)’자는 그것이 불길한 것이 ‘몰(沒)’자와 다르지 않거니와, 이제 이번 고하는 경사는 실로 대마도의 큰 경사인데, 경사를 고하는 길사(吉事)의 문자 사이에 이렇게 불길한 글자를 서계에 싣는 것은 좋은 경사에 손상이 있는 듯한 일이라 이 서계는 받아가기 어려움이 있으니, 이 뜻을 접위관 및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속히 장계로 알려서 고쳐와서 들여달라”고 운운 하였다고 차비역관 및 훈도 별차 등이 와서 고하거늘, 등록을 가져다 상고하였더니, 을유년(1705) 간빠꾸[關白]가 저군(儲君)을 세울 때의 고경차왜(告慶差倭)가 가져온 본부의 회답 가운데 ‘희용무량(喜聳亡量)’이라고 써 주었고, 을사년(1725) 간빠꾸가 저군을 세우는 경사를 고하는 차왜가 가져온 본부의 회답서 가운데는 ‘흔하무량(欣賀亡量)’이라 써 주

380) 정언섭(鄭彦燮, 1686-1748): 동래 정씨로 자는 공리(公理)이다. 영조 원년(1725)에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숙종(肅宗) 경술(庚戌, 1730)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다.

381) 유건기(兪健基, 1682-?): 기계 유씨로 자는 체원(體元)이다. 영조 1년(1725)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대사헌에 이르고 기원군(杞原君)으로 책봉되었다.

382) 알존(邊存): 한편으로 막으면서 한편으로 남겨둔다는 억양(抑揚)의 뜻으로 한 말인 듯함.

있고, 무신년(1728) 영덕 표류민 및 영일 표류민을 데려온 차왜가 가져온 본부의 회서(回書) 가운데 모두 ‘피위몰량(披慰沒量)’이라 써 주었고, ‘선수(先守)’ 두 글자에 있어서는 본부의 등록 가운데는 혹 ‘구주수(舊州守)’로 혹은 ‘선습유(先拾遺)’로 혹은 ‘선태수(先太守)’로 써 주었으니, 이제 이번 ‘선수(先守)’ 두 글자는 또한 깎아내려서 대우하는 칭호가 아닌데, 승습(承襲)의 경사를 고하는 것이 비록 그들에게는 경사라 하나, ‘몰량(沒量)’의 ‘몰(沒)’자와 ‘무이(亡已)’의 ‘무(亡)’자는 본디 서계에 예사로 사용하는 말이거늘, 저쪽에서 이제 ‘몰량(沒量)’의 ‘몰(沒)’자를 ‘복몰(覆沒)’의 ‘몰(沒)’자로 보고 ‘무이(亡已)’의 ‘무(亡)’자를 ‘멸망(滅亡)’의 ‘망(亡)’자로 보아 매우 기괴하고 자 하는 것은 아주 매우 가소롭기로, 각별히 책망하고 타일러 다시 번거롭게 청하지 말게 하라는 뜻으로 차비역관 및 훈도 별차 등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분부하였더니, 동 역관 등이 돌아와 고하기를 “분부에 의거하여 왜관에 가서 고경차왜(告慶差倭)에게 ‘몰량(沒量)’의 ‘몰(沒)’자와 ‘무이(亡已)’의 ‘무(亡)’자는 이미 을유년(1705)과 을사년(1725)에 써 준 전례가 있으니 결코 고치기를 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선수(先守)’의 ‘수(守)’자는 알존(邊存)에 관계되니 우리로서는 또한 혐의의 단서가 없지 않고, ‘몰(沒)’자와 ‘무(亡)’자는 이미 전례가 있으면 당연히 이 뜻으로 도중에 통보하여 다시 통고하겠다고 하였으며, 서계는 별로 받지 않을 일이 없어서 전례를 따라 받았으며, 상선연의 건물(乾物) 또한 병폐 없이 들여주었다”고 하였고, 방금 차비역관 현덕윤(玄德潤) 현상로(玄尙老)³⁸³⁾ 훈도 김세일(金世鎭) 별차 홍성구(洪聖龜)³⁸⁴⁾ 등의 수본에는, “옛그제 도중(島中)에서 비선이 나온 뒤에 동 차왜가 비직(卑職) 등을 만나볼 것을 요구하여 말하기를 ‘얼마 전에 서계 문자를 고치기를 청하는 여부를 사사로이 함부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비선으로 도중에 살짝 보고하였더니 그 비선이 이제 비로소 나왔는데, 도중의 회보에는 무(亡)자와 몰(沒)자는 전례의 유무를 물론하고 감히 고치기를 청하지 않겠으나, 참의(參議)의 서계 가운데 선수(先守)의 수(守)자는 일이 알존(邊存)에 관계되고, 우리로서는 또한 깎아 내린 혐의가 없지 않으니 속히 고쳐서 오기 바란다고 하였는바, 저희들이 장차 비선을 기다려 들어가려고 하는 때 도중의 회보가 이와 같으니, 참의의 답서를 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반드시 선주수(先州守)로 하거나 혹은 선습유(先拾遺)로 하여 속히 고쳐 써 주어 먼 곳 사람이 허구하게 지체하지 않게 해 달라’고 간청하여 마지않거늘, 비직 등이 이치에 근거하여 준엄하게 책망하여 다시는 시끄럽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동 왜인 등이 이르기를 ‘도중의 회보는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되돌려 들지 않기로, 감히 이렇게 수본한다”고 하거늘, 다시 엄

383) 현상로(玄尙老, 1694-?): 천녕(川寧) 현씨로 자는 이양(而陽)이다. 숙종 46년(1720) 역과에 올라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384) 홍성구(洪聖龜, 1698-?): 남양 홍씨로 자는 대년(大年)이다. 경종 1년(1721) 역과에 올라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하게 신칙하고 차비역관 및 훈도 별차 등에게 분부하여, 차왜 등이 서계를 순순히 받아 이미 상선연을 행한 뒤에 감히 무식한 말로써 예사로 사용하는 문자 사이에 탈을 잡아 이렇게 번거롭게 떠드는 것은 참으로 극히 해괴하다고, 다시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더니, 차비 임역(任譯) 등이 고하기를, “동 차왜 등이 ‘저희들이 머무는 기한이 이미 끝나고 공급을 이미 철거하여 허다한 일행의 진퇴가 참으로 어려운데, 진실로 도종의 회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굶주림을 달가이 여기고 일을 마친 뒤에 앉아서 떠들석하게 억지로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선수(先守) 두 글자를 만약 고쳐 주지 않으면 실로 돌아가서 도중에 보고할 말이 없으니,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고쳐주어야만 비로소 배를 돌릴 수가 있다’고 하면서, 시종 미혹한 생각을 고집하여 굳이 듣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몰량(沒量)의 몰(沒)자와 무이(亡已)의 무(亡)자는 전례에 의거하여 책망하고 타이른 뒤에는 도중에서도 감히 다투어 고집하지 않았으나, 선수(先守)에 있어서는 무식한 도왜(島倭)가 알존(邊存)이라 칭하면서 이렇게 고치기를 청하는 바, 등록을 살펴보니 혹은 선태수(先太守)로 혹은 선습유(先拾遺)로 혹은 구주수(舊州守)로 써 주어 이미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이번 참판(參判) 답서 가운데 이미 선습유(先拾遺)로 써 주었으니, 참의 답서에도 한가지로 써 주어야 방해가 없을 듯하며, 동 차왜가 왜관에 머무는 기한이 이미 이달 19일에 끝났고, 상선연 예단 건물(乾物)을 영수한 것도 또한 이미 여러 날이라, 발선하여 돌아 들어가는 것이 아침이 아니면 곧 저녁의 일인데, 이 서계 한 가지 일로 다시 지체하여 머문다면 그 공급 또한 걸어 치워 파하였으니, 그들의 목말라 애타는 상황은 실로 일부러 탈을 잡아 조금 지체하여 머물러는 계획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선습유 선주수로 써 주더라도 또한 전례가 있어서, 왜인 등이 고치기를 청하는 곳은 원래 대단한 것이 아니고, 원하는 대로 고쳐 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손상되는 바가 없겠으니, 승문원에 명하여 급히 고쳐 써서 밤낮 없이 내려보내어, 많은 왜인이 머물러 지체하는 우려가 없게 하시기를. 차왜의 상선연 뒤에는 접위관이 떠나 올라가는 것이 이미 전례가 있는데, 이제 서계를 고쳐주는 한 가지 일로 이미 치계하였으니, 일이 서계를 고쳐 내려오기를 기다린 뒤에 떠나야 마땅한데, 이러한 흉년을 당하여 주전주(廚傳)³⁸⁵에 폐가 있을 뿐 아니라, 허다한 왜인들이 일을 마치고 기다리는 것도 또한 매우 폐단이 있기로, 본부 군관 유세찰(兪世札)이 장계를 배송하여 가지고 말을 지급하여 올려보내었으니, 동 서계를 고쳐 써서 즉시 본부 군관에게 주어 밤낮 없이 내려보낼 일.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정언섭과 접위관 유건기의 연명 장계를 보면, 고경차왜(告慶差倭)에게 준 참의의 답서 가운데 선수(先守) 두 글자가 알존(邊存)과 관계된다고 반드시 선주수(先州守)나 선습유(先拾遺)로 고쳐 써 달라고 하기로, 등록을 살펴보니 혹은 선태수 혹은 선습유 혹은

385) 주전(廚傳): 관리가 여행할 때 역참(驛站)에서 제공하는 식사.

구주수(舊州守)로 써 준 것이 이미 전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참판 답서 가운데 이미 선습유로 써 주었기에 참의의 답서를 한가지로 써 주어야 방해될 바가 없을 듯하니, 승문원에 명하여 속히 고쳐 써서 밤낮 없이 내려보내라고 하였는바, 일찍이 전에 고경차사에게 답한 서찰에 이미 선태수 선습유 구주수로 써 준 전례가 있으니, 이제 이번 왜인이 고치기를 청하는 것은 원래 이상한 일이 아니고, 우리로서도 또한 손상되는 바가 없으니, 승문원에 명하여 그 원하는대로 급속히 그대로 본부 관에게 부쳐서 밤낮없이 내려보내는 일로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옹정 9년(1731) 8월 24일 동부승지 신 이성룡(李聖龍)³⁸⁶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신해(1731) 12월 12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운운. 이 동래부사 정언섭의 장계를 보면, 상고와 역관 등이 인삼과 백사(白絲)를 피집(被執)한 대금이 나와, 은 46,000냥 중에 2만여 냥은 십성(十成) 천은(天銀)으로 실어왔는데, 이른바 천은은 본디 십성(十成)인데 정은(丁銀)은 팔성(八成)이라, 정은 100냥을 천은으로 대신하면 80냥이 되어야 하고, 천은 100냥을 정은으로 대신하면 125냥이 되는 것이 평상시 정한 규정인데, 하나같이 규정대로 받아내면 피차간에 원래 손해되는 바가 없는데, 새로 만드는 일인지라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이대로 줄여 계산하여 받아내는 것이 어떠할지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양국의 통화(通貨)는 일의 체면이 지극히 엄중한데, 왜인이 은화를 전후로 바꾼 것이 이제 몇 차례이로되 이제 이번엔 나온 천은(天銀)을 줄여 계산하여 받아내는 것이 비록 피차간에 손해가 없다 하고, 추천하여 제련해 보아서 또한 10성(成)의 수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왜인의 정상이 본디 교활한데 어찌 다시 그 다른 폐단이 없음을 보장할 수 있겠으며, 교린(交隣)의 모든 일은 견고하게 획일(劃一)의 법도를 지켜 혹시라도 경솔하게 고치는 일이 없어야만 조정이 엄중하고 성신(誠信)이 시행되니, 이제 이번 천은은 결코 받아들이기를 시작하여서는 불가한지라, 즉시 사례에 근거하여 물리치고 맞추지 못한 은화는 반드시 팔성은(八成銀)으로 밤낮 없이 내보내라는 뜻으로 임역(任譯)에게 시켜 엄한 말로 관수왜에게 책망하고 타이르는 것이 합당한데,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옹정 9년(1731) 12월 동부승지 신 이성룡(李聖龍)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386) 이성룡(李聖龍, 1672-1748): 경주 이씨로 초명은 성룡(成龍)이었으나 뒤에 운룡(雲龍)으로 개명하였으며, 자는 자우(子雨), 호는 기현(杞軒)이다. 숙종 40년(1714)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전라도 관찰사, 도승지, 대사간,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혜정(惠靖)이다.

신해(1731) 12월 14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운운. 이 동래부사 정언섭의 두 차례 장계를 보면, 그 하나는 왜선 8척이 표류하여 정박할 때 옥포 왜학 양시웅(梁時雄)이 달려가서 문정(問情)하면서 단지 소통사(小通事)를 시켜 오가며 문답하여 왜인의 인원수와 색목(色目)이 어긋나는 일이 있게 되었기에 죄상을 그 관청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는 일이고, 하나는 관수왜(館守倭)가 배를 타고 당초 가덕(加德)으로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옥포 왜학 양시웅이 문정한 가운데 관수(館守)의 수(守)자를 혹은 사(司)자로 혹은 소(所)자로 적었는데, 막중한 변방의 보고에 이렇게 잘못된 글이 있기에 그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옥포 왜학 양시웅은 방금 지세포(知世浦)에 표류한 왜인을 문정할 때의 착오가 있었던 죄로 이미 잡아다 심문한 일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서로 어긋나 잘못 쓴 죄를 아울러 문목을 발송하고 마감하여 조처하도록 함이 마땅하니, 본부 및 의금부(義禁府)에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雍正 9년(1721) 12월 14일 좌부승지 신 조명신(趙命臣)³⁸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신해(1731) 12월 22일

청학(淸學) 전함(前啣) 이덕륜(李德崙)³⁸⁸ 등 18인 이덕륜(李德崙) 오몽진(吳夢辰) 임제백(林齊栢) 박성춘(朴盛春) 최중구(崔重龜) 조득보(趙得輔) 이사옥(李師昱) 이진희(李震熿) 최진강(崔震綱) 한경석(韓景錫) 등 의 상언. “위를 삼가 아립니다. 신 등은 엿드려 생각건대, 국가에서 인재를 장려하여 육성하는 방도에는 진실로 피차의 다름이 없고, 일에 달려들어 공적을 이루도록 권하는 도리에는 절로 긴요하고 긴요하지 않은 구별이 있기로, 신 등은 감히 장차 구구하게 억울한 심정을 법가(法駕)³⁸⁹ 앞에 우러러 하소연합니다. 사역원에서 등제(等第:등급)를 두어 연경(燕京)에 가는 계제(階梯)로 삼은 것은 의도가 우연이 아닌데, 여러 등제 가운데 상통사(上通事) 및 차상통사(次上通事)의 책임의 중요함은 다른 것에 비교하여 자별하기로, 지난 병자년(1696) 이전에는 상통사 및 차상통사 각 20인을 정원으로 하여 한학(漢學: 중국어)에 전속시켰는데, 병자년(1696) 이후로는 저쪽에서 대응하는데 청어(淸語:만주어)를 많이 사용하므로, 한학의 두 가지 통사를 각기 10원(員)씩 감하였다가, 상통

387) 조명신(趙命臣, 1684-?): 순창 조씨로 자는 명중(明仲)이다. 숙종 40년(1714)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대사간에 이르렀다.

388) 이덕륜(李德崙, 1695-?): 진주 이씨로 자는 여군(汝郡)이다. 숙종 45년(1719) 역과에 올라 왜학(倭學)과 청학(淸學)에 종사하였다.

389) 법가(法駕): 임금의 거동할 때 타는 수레.

사 10자리를 추후에 복구하여 청학(淸學)에 이속하였으나 유독 차상통사 10자리는 아직도 복구하지 못했는바, 방금 본원에서 한학을 높여 중시하는 것은 대개 국가의 존주(尊周³⁹⁰)의 대의를 우러러 실현하는데서 나온 것인즉, 무릇 체례(體例)³⁹¹ 사이나 위치(位次)에 있어서도 한학과 청학에는 굳이 선후의 차등이 있거니와, 사령(辭令)의 수응과 공무의 담당에 있어서도 한학과 청학에는 직책을 뛰어넘는 다른 형편이 없지 않은데, 이로써 말하자면 감축한 차상통사 10자리는 또한 마땅히 때맞추어 복구하여 청학에 이속시키는 것을 한결같이 상통사의 전례와 같이 하는 것이 곧 차차 그만 둘 수 없는 일이거늘, 그대로 두어 미루면서 아직까지 거론하지 않아서 막중한 사대(事大)의 공무에 어긋나고 구차하고 소략한 한탄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또한 신 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만히 엎드려 생각건대, 본원에 우어청(偶語廳)³⁹²을 설치한 것은 요컨대 역학(譯學)의 인재 양성을 권장하는데 있으나, 이제 인원이 많게는 40에 이르러 한학과 서로 비슷하나, 오직 그 등제(等第)의 길이 한학에 비하여 매우 협소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부지런하여 재능을 이룬 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자취가 이어져 있는데도 자리에 보임(補任)되는 순서를 바라기는 마치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 끝내 불우한 처지로 늙어 죽게 되는 자가 전후로 얼마나 많겠으며, 한학에 견준다면 어찌 서운하다는 탄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데도 한결같이 그대로 두어서 특별히 격려 권장하는 일이 없다면 가만히 생각건대 아마도 후진에 있는 무리들이 필시 장차 해체되고 퇴보하여 다시는 성취할 가망이 없을 것이니, 어찌 오늘 매우 우려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화의 정치로 새로이 하여 온갖 폐기된 일이 모두 일어나는 날, 신 등의 구구한 진정한 소원을 곱어 살피시어 이전에 임시로 감축한 한학 차상통사 10자리를 한결같이 상통사의 사례대로 특별히 복구하여 청학(淸學)을 이속(移屬)시켜서, 한편으로는 사대(事大)의 공무를 무겁게 하고, 한편으로는 인재를 격려 권장하는 아름다운 규범을 펴시는 일로,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여 특별히 천은(天恩)을 입게 해 달는 일임.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 운운. 이 상언을 보면 연경에 가는 등제 가운데 상통사와 차상통사 각기 20인을 정원으로 하여 한학에 전속시켰는데, 병오년(1726) 이후로 각기 10인의 정원을 감하였다가 저쪽에서 청어를 많이 사용하므로 상통사 10자리는 추후에 복구하여 청학을 이속시켰거니와, 감축된 차상통사 10자리를 한결같이 상통사의 사례대로 특별히 복구하여 청학에 이속시켜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였는바, 당초 감축된 등제는 전후로 다시 거의 다 옛날처럼 복구하였으나, 유독 그 차상통사 한 자리는 아직 복구되지 않아 참으로 균등하지 못한 한탄이 있고, 또한 청학은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좁아서 피폐함이 특별히 심할 뿐 아니라,

390) 원본의 '존고(尊固)'의 '고(固)'는 '주(周)'의 오자로 보인다.

391) 체례(體例): 체통과 사례(事例).

392) 우어청(偶語廳): 사역원에 소속된 관청의 하나로 외국인을 상대로 통역을 연수하는 기관.

근래 연경에 가서는 청어를 많이 사용하여 변통하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하니, 감축한 차상통사 한 자리를 특별히 복구하여 청학에 이속시켜 과정을 권장하게 하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옹정(1731) 9년 12월 22일 우승지 신 성덕윤(成德潤)³⁹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원래 상언(上言)을 첨부하여 사역원으로 이송함.]

임자(1732) 정월 13일

사역원 관원이 제조(提調)의 뜻으로 계품하기를, “청학 전함 이덕륜 등의 상언으로 차통사 한 자리를 복구하여 청학에 이속하는 일로 해조에서 복계하여 윤택을 받았는데, 이 일은 이 앞에 누차 호소가 있었으나 본원에서 매양 방색한 데는 의도가 있는바, 대개 병자년 이전에는 천조(天朝 : 명나라)의 조빙(朝聘)³⁹⁴의 예가 1년에 4차의 절행(節行)³⁹⁵ 외에 또 별사(別使)가 많이 있었으므로, 상통사와 차상통사를 각기 20인을 정원으로 하여 앞서간 사행(使行)이 아직 돌아오지 못해도 뒤의 사행에 따라 출발하여, 관개(冠蓋)³⁹⁶가 오가면서 길에서 줄을 이었기에 인원 수를 넓게 둔 것이 이 때문이었습니다. 병자년(1696) 이후로는 4차의 절사(節使)를 동지사(冬至使) 한 사행으로 합하였고, 주청사(奏請使)와 사은사(謝恩使)의 사행 역시 해마다 항상 있지 않아서, 작년과 금년에 와서는 사은사는 보내지 않았으며, 별사도 절행(節行)에 순부(順付)하고, 새로운 일로 저쪽에서 자문(咨文)이 있으면 1년에 불과 한 번 가고 마니, 한학과 청학의 통사 30원도 오히려 너무 많으나, 이미 정한 인원을 비록 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혁파한 정원은 결코 다시 설치하여서는 부당한데다, 하물며 한학은 청학에 비하여 인원의 정원이 배로 많으니, 등제(等第)의 다과에 차등이 있음이 마땅하고, 사행 때 문서의 말뜻은 오로지 한어(漢語)로만 수응하니, 청학 통사는 각 청에 부응하는 다섯 인원으로 구차할 우려가 만무한데, 덕륜 등이 사사로운 바람에 절박하여 이런 호소를 하였고, 해조에서 복계(覆啓)한 것도 또한 본원의 형편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 갑자기 시행을 허락하였으나, 이제 팔포(八包)³⁹⁷가 더욱 엄중한 날 말을 타는 자리를 더 설치하는 것은 실로 허다한 폐단이 있으니 복계한 사언을 그냥 둬야 어떠할지?” 전교에 “윤택한다”고 하셨음.

393) 성덕윤(成德潤, 1689-?): 창녕 성씨로 자는 군택(君澤)이다. 경종2년(1722) 알성시에 장원급제하여 승교, 집의, 승지를 거쳐 관직이 대사간에 이르렀다.

394) 조빙(朝聘): 조(朝)는 조현(朝見)으로 사대(事大)의 외교이고 빙(聘)은 교빙(交聘)이니 나라끼리 사신을 보내는 일인데, 조선왕조 당시 중국에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일을 지칭하였다.

395) 절행(節行):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에 가는 사절.

396) 관개(冠蓋): 귀족이나 높은 관원이 타는 수레.

397) 팔포(八包): 중국으로 가는 사신 행차. 중국 사행(使行)에 사절들로 하여금 인삼 80근을 가져가서 여비를 조달하게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임자(1732) 정월 27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운운. 이 통제사 정수송(鄭壽松)³⁹⁸의 장계를 보면, “지세포와 옥포 등 두곳에 나누어 정박한 왜선 8척에 옥포 왜학 양시웅의 문정과 훈도 별차의 문정에 색목(色目)과 인원수가 서로 어긋난 곡절을 두 곳 역학(譯學)에게 조사하였는데, 이제 이번 조사 보고의 요점은 모두 수표(手標)의 진위에 달려 있으나, 표류한 사람이 만들어 준 수표가 또 이렇게 분명하고, 또 소통사가 공초(供招)한 말로 보면 훈도와 별차 등이 몸소 가서 문정하지 않았으므로 노인 외에 더 나온 왜인은 전연 모른다고 하였는바, 동 수본(手本)을 봉인하여 올려보내며, 양시웅은 전후로 문정을 소홀히 하여 누락한 것이 모두 극히 해괴하여 과직하여 내쫓았거니와, 훈도 별차 김세일과 현덕윤, 왜학 양시웅 등의 죄상을 모두 그 관청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으며, 동래부사 정언섭의 장계에는, “위의 비선이 표류하여 정박할 때 옥포 왜학이 소통사를 시켜 문정을 대행(代行)했다는 이야기가 이미 왜학(倭學)의 입에서 나왔으니, 뱃머리에 줄지어 세우고 그 인원 수를 헤아렸다고 하는 것은 끝내 범언하지 않으며,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뒤에는 원래 양식과 반찬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서 증감해도 이익이 없는데, 이것으로 논하고자 한다면 훈도 별차의 문정이 상세하고 곡진함을 이로 미루어 알 수 있고, 이른바 수표를 소통사와 색리(色吏)가 위조했다고 하는 설은 참으로 이치에 가까우며, 관소에 도착하여 정박하고 관소에서 하선하고 관소에 머물러 있으니, 이곳에만 있는 왜인이 어찌 인원수가 어긋남이 있겠는가? 수표의 진위는 짐짓 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인원수의 다과에는 실로 차이와 착오가 없는데, 통영에서 조사하여 장계로 알린 것이 있어서 감히 태연히 처분만을 공손히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였는바, 두 곳의 문정 가운데 색목과 인원수가 어긋난 것을 피차간에 서로 미루는데, 인원수의 증감은 훈도 별차에게 별로 이해 관계가 없고, 왜인이 왜관에 머문지 여러 날인지라 실제 수의 가감을 본부에서 또한 필시 모를 이가 없고, 두 진포(鎭浦)의 소통사와 색리 등이 양식을 지급할 때 중간에서 훔쳐 먹는 이익이 있어서 수를 더하였다면 그 농간을 부린 데 의심할 만한 것이 없지 않으며, 뱃머리에 줄지어 세워서 그 인원수를 헤아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밝히는 말에 불과하여 달리 명백한 증거가 없고, 수표 가운데 필적에는 그 농간한 아전이 흉내낸 상황을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어서, 허다한 투식 글씨의 동일한 글자 모양이 또한 어긋난 단서와 관계되는데, 사리로 헤아리거나 소견으로 참조하거나 분명히 위조(僞造)이니, 왜학 양시웅은 이미 다른 죄로 갇혀 있어서 이런 사연을 문목에 첨가하여 별도로 엄하게 조사하여 법을 적용하며, 소통사와 색리 등은 곤장을 치는데 그쳐

398) 정수송(鄭壽松): 영조 때 북병사, 금군별장, 경상우병사, 충청수사, 평안병사, 포도대장 등을 역임하였다.

서는 불가한지라 각별히 엄하게 형벌을 가한 뒤에 엄중하게 법률을 살펴 처치함으로써 농간의 폐단을 징계하며, 훈도 별차에 있어서는 논할 만한 죄가 없으니, 이런 뜻으로 해당 동래부 및 본도와 통영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옹정 10년(1732) 정월 27일 좌부승지 신 홍상빈(洪尙賓)³⁹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임자(1732) 2월 13일

이번 2월 초10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상감께서** “외람스레 상언(上言)하는 폐단이 요즈음보다 심한 적은 없었다. 이번 능행(陵幸) 때 상언(上言)⁴⁰⁰ 446장 중 해당 관청에 내린 것이 240장이니 이 또한 많다. 전일에 하교(下敎)한 뒤 비록 4건의 일이라도 그 가운데 긴요하지 않은 것은 빼버려도 좋은데, 승정원에서 상세히 살피지 못했으니 그 때 승지를 모두 추고(推考)하고, 상언을 거둬 올린 것은 더욱 극히 근거가 없으니 해당 관청에서 반드시 알 것이다. 이 뒤로 만약 거둬 올리는 자가 있으면 각별히 죄과를 다스림이 옳겠다.”고 하셨는데, 형조판서 이정제(李廷濟)⁴⁰¹가 말하기를 “처음 상언을 올려서 이미 시행하지 말라는 처분을 거쳤는데 다시 올려서 적발된 자는, 시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별히 죄과로 다스리는 일로 이미 정한 규정이 있으니, 이번에 외람스레 상언한 10여장은 본조에 내려서 죄과를 다스리게 하고, 상언한 사람이 혹 시골에 있거나 혹 서울에 있거나 있는 곳에 따라 속속 추고하고, 계사(啓辭)가 너무 번거롭고 외람스러운 것은 해조에서 그 경중에 따라 법률을 상고하여 죄과를 다스림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임자(1732) 9월 초3일

비변사의 감결(甘結)⁴⁰². 동래부사의 첩보에 “전일에 나온 천은(天銀)을 되돌려 들여보내고 그 대신으로 팔성(八成) 정은(丁銀)을 바꿔 오는 일로 엄하게 신칙한 지 이미 오래이나 아직도 거행하지 않아서 참으로 매우 무엄하니, 동 천은 대신 정은을

399) 홍상빈(洪尙賓, 1672-?): 남양 홍씨로 자는 광국(光國)이다. 숙종 31년(1705)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 문학, 좌승지, 형조참판을 역임하였다.

400) 상언(上言): 백성이 왕에게 직접 호소하여 올리는 글.

401) 이정제(李廷濟, 1670-1737): 부평 이씨로 자는 중협(仲協), 호는 죽호(竹湖)이다. 숙종 경진(庚辰, 1700)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大司憲),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역임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었다. 숙종 기축(己丑, 1709)에 접위관으로 동래에 온 적이 있다.

402) 감결(甘結):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내는 공문.

속히 바꾸어 내라는 일을 엄하게 신칙하는 일로 각별히 대관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더니, 임역(任譯)의 수본에, ‘위의 천은 대신 정은을 바꿔오라는 뜻으로 책망하여 타 일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십성(十成) 천은을 조정에서 엄하게 물리쳐 받지 않은 뒤로, 그 대신 정은을 바꾸어 마련하여 상고(商賈) 등에게 내어 주어야 마땅하나, 근래 저희 섬에서는 매매가 불리함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번 봄에 참혹하게 화재를 당하여 공사의 창고가 모조리 소진되고, 이로 인하여 은화가 나올 길이 더욱 극히 구차하기에 아직까지도 마련하여 내어오지 못하고, 지금 바야흐로 은화를 실은 배편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으니, 황력(皇曆) 물화(物貨) 값을 내어줄 시기가 되면 동 천은 대신에 정은을 또한 마땅히 수량을 갖추어 내어줄 계획이라고 운운’하였는데, 황력은(皇曆銀)이 나오는 것이 멀지 않은 시기에 있을 듯하니, 동 천은 대신의 정은을 그때 절로 받아올릴 것이라는 연유 운운’이라 하여 제사(題辭)가 도부하였거니와, 당초 관문에 의하여 책망하고 타일러 내도록 독촉하지 않고 또 일일이 형편을 보고하지도 않고 그들이 미루며 늦추는대로 맡겨두어, 이제 해가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형편 또한 전혀 보고하지 않다가, 이제 비로소 범연히 황력 이전에 나온다는 뜻으로 느슨하게 보고한 것은 매우 극히 해괴하니, 훈도 별차 등에게는 마땅히 별도로 죄를 논함이 있을 것임.

임자(1732) 10월 17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운운. 이 경상좌수사 유만증(柳萬增)⁴⁰³의 장계를 보면, “왜선이 염포(鹽浦) 경내로 표류 정박하였을 때 관측을 못하고 시일을 늦추었던 수령과 변장(邊將)을 재해가 든 해에 교체하여 바꾸는 것은 우려되니 죄를 논하는 것을 보류하고 감색(監色)과 봉군(烽軍) 등은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였거니와, 별차 김명채(金命埰)⁴⁰⁴는 부산에서 염포까지의 거리가 하루 일정에 지나지 않는데 문정(問情)을 늦추어서, 왜선으로 하여금 울산과 기장(機張) 경내에 지체하여 머무르게 한 지 팔 구 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으니, 그 기회를 놓치고 일을 그르친 죄는 면하기 어려운 바, 그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차하게 하라” 하였는바, 동래 바다 일대에 요망(瞭望)을 설치하여 왜선이 오고 가는 것을 관찰하게 한 것은 관계가 매우 엄중한데, 왜선으로 하여금 팔 구일이나 되도록 울산 기장 사이에 머물러 지체하게 하면서 전혀 요망을 잘못된 것은 극히 놀라운데, 구름과 안개가 가렸거나 재해가 든 해의 교체는 논할 바가 아니고, 그것은 변방을 방비하는

403) 유만증(柳萬增): 숙종 영조 때의 무신으로 영종첨사, 방어사를 거쳐 경상좌수사를 역임하였다.

404) 김명채(金命埰, 1691-?): 광산 김씨로 자는 사봉(士封)이다. 숙종 39년(1713) 역과에 올라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도리에 있어서 그냥 두어 묻지 않기가 불가하니, 당해 수령과 변장은 모두 잡아다 심문하여 죄를 정하며, 좌수사 유만증이 곧 수령과 변방 장수의 죄를 논하는 것을 잠시 표류하라고 치계한 것 또한 매우 엉성하고 우활하니 엄중하게 추고하며, 별차 김명채가 즉시 달려가서 문정하지 않고 시간을 늦춘 것은 그 관청에 명하여 잡아다가 심문하여 죄를 정함이 어떠할지? 옹정 10년(1732) 10월 17일 동부승지 신 이한필(李漢弼)⁴⁰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축(1733) 정월 초6일

동래부사 정언섭의 12월 25일 장계. 이달 22일 신시(申時)에 도부한 훈도 김현문(金顯門)과 별차 김명채(金命琛)의 수본에, 이제 이번에 기장과 울산에서 표류한 주민을 데려온 금도왜가 우도로 표류하여 정박했을 때 허위로 차개(差价)⁴⁰⁶라고 칭하며 함부로 양식과 반찬을 받았던 죄를 각별히 엄중하게 다스리기 위하여 오늘 돌아들이는 배편에 묶어서 도중으로 보낸다고 관수왜가 비직 등에게 통지하였기에 즉시 왜관에 가서 관수왜와 함께 입회하여 묶어 보냈다"고 하였거니와, 옥포에서 문정한 소통사(小通事) 유유실(劉有實)은 아직 잡아오지 않았는데, 잡아오기를 기다려 조사하여 장계로 알릴 것임.

계축(1733) 정월 13일

동래부사 정언섭(鄭彦燮)이 정월 초3일에 성첩한 장계. 지난달 27일 인시(寅時)에 도부한 부산첨사 유형(柳潐)의 치통에, "당일 자시(子時)에 도착한 훈도 김현문(金顯門)과 별차 김명채(金命琛) 등의 수본에, '26일 술시(戌時)에 왜관의 동대청(東大廳)과 동행랑(東行廊)에 불이 났다 하거늘, 들고는 곧장 놀라 즉시 왜관으로 달려 갔더니, 관수왜 이하의 여러 왜인들이 힘을 다하여 불을 꺾으나 큰 바람이 펼쳐 일어나 연기와 화염이 하늘에 가득하여 인력으로는 끌 도리가 없어, 동 행랑 56칸 및 좌우 문간 다섯 곳 각 1칸 등이 모조리 불타버리고 나무 하나 기와 한 조각도 남김없이 재가 되었으며, 불이 난 곡절을 탐문하였더니, 동 행랑에 만쇼오잉(萬松院)⁴⁰⁷ 송사왜가 들어가 있다가 겨우 이미 돌아들어가서 지금은 빈집이 되어 있는데 천만 뜻밖에

405) 이한필(李漢弼): 영조 때 무신(武臣)으로 황해수사, 공흥수사, 승지를 역임하였다.

406) 차개(差价): 차사(差使)와 같음.

407) 만쇼오잉(萬松院): 대마도주 소오 요시도모(宗義智)가 죽은 후 원당(院堂)을 지어 이름을 만쇼오잉(萬松院)이라 하였는데, 그 명분의 정례 송사(送使)가 있었다.

이런 화재가 일어났으니 실로 놀랍습니다. 대개 서관(西館)은 모두 풀이 무성하고 울창하며 사람이 드물고 집은 비어 있는 곳이라, 하왜(下倭)들이 오갈 때 생각건대 필시 낙엽이나 시든 풀 가운데 불을 떨어뜨려서 차차 옮겨 불다가 밤이 깊어 바람이 사나워지자 이렇게 모조리 불타게 된 것이라 하였다'고 하였는바, 왜관에서 불이 났다는 이야기는 극히 놀라워서 감색(監色)을 보내어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과연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 사연과 같다"고 하였는바, 왜관에서 불이 난 것이 극히 놀라워서 감색을 보내고 부산진 감색 및 훈도 별차 등과 더불어 같이 입회하여 다시 적간하게 하였더니, 본부의 감색 등의 회고(回告)와 부산첨사 유형의 처통에, "이제 이번 왜관의 동행랑 56칸 및 좌우 담장 안의 문간 목재와 기와가 모조리 남김없이 소실되었다"고 하는데, 관수왜가 자신이 온 왜관의 영수가 되어 평상시에 엄하게 하왜들을 신척하지 못한 소치로 불씨가 떨어져 큰 집을 태워버리는 일이 있게 되었기에, 매우 극히 놀람기로 엄한 말로 전령하여 각별히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거니와, 왜관에서 불이 난 것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그 화재의 경중에 따라 모두 쌀과 베로 보살피는 은전을 지급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빈 집에서 불이 났으니 보살피는 은전 한 가지 일은 거론함이 부당하며, 위의 서관은 곧 연례 송사왜 및 별차왜 등이 거쳐하는 곳인데, 앞으로 송사왜가 비록 계속하여 나오더라도 왜관에는 또한 빈 집이 많이 있으니 절로 추이(推移)하여 들어가 거쳐할 곳이 있거니와 동 가옥은 당초 우리가 지어 주었으니 필시 고쳐짓는 청은 없을 것이기로 뒤에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관수왜와 조용히 사례를 상고하여 논의하여 정하는 일을 훈도 별차에게 분부하였다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계축(1733) 4월 초6일

비변사에서 계목 운운. 이 동래부사 정언섭(鄭彦燮)의 장계를 보면, "왜선이 우도(右道)로 표류하여 정박했을 때 왜학 김정홍(金鼎弘)이 당초 배에 타지 않은 금도왜(禁徒倭) 2명이 함께 타고 나온 양으로 문정(問情)하였다가, 다시 상세히 탐지하여 적발하라 하였는데, 비선 1척이 23일 표류하여 정박하였다가 26일 출발한 뒤에 문정하기 위해 비로소 천천히 달려온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며, 이제 이번 표류인들이 대마도에 표류하였으니 약조대로 순부(順付)하여 내보내야 마땅한 일 이거늘, 약조 가운데 '파선(破船)'과 '운명(殞命 : 죽음)' 두 가지를 두 일로 나누어, 비록 물에 빠져 죽은 인물이 없음에도 단지 파선(破船)으로 차개(差价)를 정하여 데리고 와서는, 접대를 희망하며 감히 병신년(1716)과 정미년(1727)에 임시로 허락한 사례를 인용하여 반드시 그 바라는 바를 이루고 난 뒤에 그만두고자 하는 정상이 교활하고 간악하니, 이번에는 저쪽에서 한결같이 고집하여 다투더라도 결단코 흔들려 용

서하지 말고, 약조를 견고하게 지키는 일로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며, 신이 이 장계를 봉하여 이달 초3일에 발송하였는데, 가져간 발군(撥軍)이 도중에 시신으로 떨어져 양산군에서 찾아 보내었기에 그러므로 다시 올려보내거니와, 근래 발장(撥將)이 전연 살피지 않고 매양 굵어서 부실한 군졸로 전하여 보내다가 이렇게 죽어서 전달이 늦어지는 폐단이 있게 되었으니,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엄한 말로 각 고을에 더 신칙하여 이런 폐단이 없게 하게 하라” 하였는바, 역학 김정홍이 막중한 문정에 착오가 있고 시일을 늦춘 것은 모두 극히 놀라운 일이니 잡아다 심문하여 조처하며, 표류민을 압송할 때는 과선과 운명(殞命) 두 가지 일이 아울러 있는 다음에 비로소 별도로 차개를 정하는 것이 본디 약조이거늘, 이전에도 단지 과선으로 말미암아 차개를 내보내어 조정에서 엄하게 물리쳐서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 달 그대로 머무르며 떠들어 마지 않으므로, 특별히 관대한 은전을 사용하여 짐짓 접대를 허락하고는 이후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명백하게 엄하게 신칙하였으니, 마땅히 다시는 잘못된 규정을 감히 따르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 또 억지로 내보내는 것은 참으로 극히 통탄스러우니, 결코 매양 그들의 말에 굽혀 따라주어서 마치 응당 행하는 은전이 있는 것처럼 해서는 불가하니, 이번에는 결단코 접대를 허락하지 말고 속히 돌아 들어가라는 뜻으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특별히 엄한 말로 물리치게 하며, 발로(撥路:발군이 다니는 길)에 신칙하는 한 가지 역시 각별히 도신에게 분부하여 다시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함이 어떠할지?雍正 11년(1733) 4월 초5일 좌부승지 이구휴(李龜休)⁴⁰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계축(1733) 5월 11일

비변사의 감결(甘結). 동래부사의 첩보에, “방금 바친 훈도 김현문(金顯門)과 별차 김정균(金鼎均)⁴⁰⁹ 등의 수본에, ‘왜관에 머무는 일대관왜(一代官倭)는 일찍이 신축년(1721)에 전서관왜(典書官倭)라고 칭하면서 나와서, 예도에 있는 초목(草木) 조수(鳥獸) 어벌(魚鱗)의 약재 가운데 혹 이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알고자, 도주(島主)에게 분부하여 내보내게 하고, 귀국에서 물명(物名)을 제법 아는 자 한 사람을 선발하여 더불어 서로 강론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하였기로, 그 때 본부에서 비변사에 보고하여 본부에 있는 역관 한 사람을 선발하여 그로 하여금 강론하여 확정하도록 들여보내게 하였는데, 이제 관수왜의 말이 도주가 관중(館中)에 통

408) 이구휴(李龜休, 1675-?): 여흥 이씨로 자는 중휘(仲暉)이다. 영조 3년(1727)에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 장령, 승지, 사간을 역임하였다.

409) 김정균(金鼎均, 1682-?): 김해 김씨로 자는 태구(台九)이다. 숙종 36년(1710) 역과에 올라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보하기를, 예도에서 전일 약재를 강론하는 중 그래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도주에게 신칙하여 사람을 보내어 강학(講學)하여 오게 하라고 운운하였는데, 신축년 전서관(典書官)으로 있었던 왜인이 이제 바야흐로 일대관(一代官)으로서 왜관에 머물고 있으니, 그대로 이 책임을 겸하는 것이 매우 편하고 좋겠다고 하여, 이 뜻으로 본부 안전(案前)에 고하여 비변사에 보고하고, 역관 중에서 일을 아는 한 사람을 전례대로 정하여 보내달라고 하였기로 연유를 수분한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약재(藥材) 강론은 곧 약조 이외의 일인바 책망하고 타일러 물리쳐야 마땅한데, 그들이 신축년(1721)의 전례라고 말을 하므로 시험삼아 문서를 살펴보았더니, 신축년(1721) 8월에 부사 윤석래(尹錫來) 때 훈도 최한진(崔漢鎭)과 별차 신영래(愼榮來) 등이 이 일로 수분하여, 그 논보(論報)의 결사(結辭)에 '이는 약조 외의 전에 없었던 일이니 마땅히 즉시 책망하고 타일러 들여보내게 하였으나, 예도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칭하면서 간청하여 마지 않아 들어갈 뜻이 없기에, 먼 곳의 사람을 위로하는 도리에 있어서 또한 한결 같이 괘시하는 것은 불가하나, 일이 매우 흐릿하여 모두 규정 밖이기로 감히 변방의 정세로 핑계하여 곧장 번거로이 장계로 알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어 논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았더니, 중간에 폐단이 많이 있다고 임역(任譯)이 매양 누누이 말하기로, 부득이 수분에 의거하여 첩보하니, 혹 출사역관 중에서 사무를 아는 자가 있으면 묻는 대로 답하여 간략하게 접대하는 뜻을 보여주어 미봉하여 들여보냄이 어떠할지, 비변사에서 참작하여 분부하여 달라'고 첩정하였는데, 비변사의 회송(回送)에는 '이 일은 비록 약조 외에 묻는 대로 답하는 것이라서 무방할 듯하나, 전후 훈도와 역관과 출사역관으로 방금 본부에 있는 자가 또한 많이 있으니, 서울에 있는 역관을 내려보낼 필요가 없이 그 중에서 응대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택하여 접대하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일로 제송(題送)하였는바, 신축년(1721) 전례가 이미 이러한 지라, 이제 와서 막을 수 없으니 전례대로 본부에 머물러 있는 역관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주어, 그로 하여금 묻는 대로 답하게 함이 어떠할지 모르겠으니 참작하여 분부하시기를.' 라고 하였음.

제사(題辭): 보고한 대로 시행할 일.

계축(1733) 5월 23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정언섭의 장계를 보면 훈도 별차 등의 수분을 매거하면서, "신해조 피집한 인삼과 백사 값의 정은(丁銀)을 지난 겨울에 나왔던 5만 냥으로 우선 받아내도록 허락하였고, 이제 나온 천은(天銀) 1만 6천 냥은 속히 되돌려 준 뒤, 다 나오지 않는 물화 값의 정은을 속히 수량

에 맞추어 내어오라는 뜻으로 다시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이제 이번에 조정에서 금지하는 천은을 은근히 내어온 것은, 그 의도가 허락하여 받아들이거나 물리치는 사이에 시일을 많이 허비하다가 이에 방자하여 시일을 늦추려고 하는 묘한 계책인데, 만약 엄하게 방지하지 않으면 뒤의 폐단을 막기 어렵기로, 말을 만들어 통절하게 물리쳐 다시는 이런 버릇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훈도 별차 등은 가난한 역관으로 이미 물화를 피집하는 일이 없어 이 은화가 나오는 여부는 자기와 관계가 없으니, 케짜 가운데 있는 은화의 색깔로 교활한 왜인에게 기만을 당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지라 죄를 줄 단서가 없을 듯한데, 당초 문정할 때 속은 책임은 면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묘당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바, 근래 교활한 왜인의 소위가 절절이 근거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허다하게 막중한 물화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때맞추어 들어주었으나, 왜인은 물화 값으로 내어야 할 은화는 곧장 기한을 넘기고도 또한 금액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조정에서 금지하는 천은을 그 가운데 끼워넣으므로, 전에 이미 이치에 근거하여 물리쳤으니 감히 다시 생각을 내지 말아야 마땅함에도, 이제 또 방자하게 가져와서 문정하여 조사할 때 속여넘겼다가 모여 앉은 자리에서 받아들일 즈음에 탄로났으니 정상이 천만 통탄스러운지라, 동래부에서 엄하게 물리쳐 되돌려준 것은 참으로 체면을 얻은 것이고, 본색의 정은을 성화같이 고쳐 마련하여 내놓으라는 뜻으로 다시 십분 책망하여 타일렀으며, 훈도 별차 등이 처음에 기만당한 것은 굳이 이상한 일이 아니나, 교활한 왜인의 목은 버릇을 그들이 필시 익히 알았을 터인데, 만약 검사하던 날 명백하게 그것이 과연 정은인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면 저절로 곧장 발각되었을 것이거늘, 이 점을 생각지 않고 소홀하게 보아 넘기다가 스스로 속임을 당하였으니 그 죄를 면하기가 어려우니, 동래부에 명하여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경계하게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雍正 11년(1733) 5월 17일 좌부승지 신 홍상빈(洪尙賓)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계축(1733) 6월 11일

이번 6월 초9일 소대(召對)⁴¹⁰의 입시(入侍)에 영남감진어사(嶺南監賑御史) 이종백(李宗白)⁴¹¹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 이종일이 계품한 바, “시종(侍從) 신하가 왕명을 받드는 일은 일의 체면이 가볍지 않아, 행동하는 사이에 신중하지 않아서는 안

410) 소대(召對): 경연(經筵)에서 참찬관(參贊官) 이하를 불러 임금이 몸소 강론하는 자리.

411) 이종백(李宗白, 1699-1759): 경주 이씨로 자는 태소(太素), 호는 목천(牧川)이다. 경종 3년(1723)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조 8년에 영남어사가 되고, 대사간, 승지, 대사성, 대사헌, 평안도 관찰사, 함경도 관찰사, 경기도 관찰사, 형조, 공조, 호조, 이조, 형조의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정민(貞敏)이다.

되는데, 접위관(接慰官) 권신(權賚)⁴¹²은 이제 곤궁한 봄철의 진흙을 베푸는 날에 감히 관문을 발송하여 노비를 추쇄(推刷)하는 일을 하여, 신이 창원(昌原)에 도착하던 날 이미 그 관문을 목도하였고, 그 밖에도 비루하고 자잘한 일로 전하는 이야기가 낭자하여, 조정 관원에게 부끄러움을 끼치고 각 고을에 경시됨이 컸으니, 비록 복명하지 않았으나 경책(警責)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불가합니다” 하였더니, 상감께서는 “노비를 추쇄하고 빗을 징수하는 금령이 지엄한데 왕명을 받든 사람이 먼저 스스로 금령을 범하였으니 극히 무리하여 잡아다 조처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구 도주(島主)가 물러나 쉬는 것을 알리는 차왜의 접위관 권신(權賚)을 영남감진어사 이종백의 진달로 인하여 이미 잡아가 조처한다는 명이 있었는데, 차왜의 하선(下船) 다례를 5월 15일에 이미 행하였으나, 이 외에 또한 세 차례의 연향이 차례차례 베풀어져야 하니, 권신을 잡아 오고 대신의 접위관을 해조에 명하여 구전(口傳)으로 차출하여 즉시 밤낮없이 내려보내어 때에 맞추어 거행하게 하여, 차왜가 기한을 넘어 왜관에 머무는 폐단이 없게 하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여, 승정원에 올려, 동일 차대(次對)⁴¹³ 때 승지가 가지고 들어갔더니, 대신(大臣)이 ‘권신이 그대로 그 접위관의 일을 살피는 일’로 진달하여, 이 초기(草記)를 도로 내어 줌.

계축(1733) 6월 12일

이번 6월 11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접위관 권신은 그 일을 마치기를 기다린 뒤에 잡아 오라는 일로 탐전(榻前)에서 하교하심. 의금부(義禁府).

계축(1733) 6월 28일

비변사의 감결(甘結). 동래부사의 첩보에, “지난번에 전 부사가 장계 요청한 ‘피집(被執) 인삼을 짐짓 들여주지 말라’는 일을 복계(覆啓)하여 분부하였는데, 피집 인삼을 지급하지 않은 이후로 왜인의 생각이 흔들리는 여부를 과연 탐지하였는지, 피집하는 인삼을 비록 들여주지 않더라도 이미 인삼 상인이 몰래 파는 길을 엄금할 수 없어서 생각이 흔들릴 이가 없을 듯한데, 과연 한편으로 기관을 설치하고 엄탐하여 방색하도록 하는지, 거행하는 형편과 왜인의 동정을 관문(關文)이 도착하는 즉시 이치를

412) 권신(權賚, 1689-?): 안동 권씨로 자는 방서(邦瑞)이다. 숙종 45년(1719) 문과에 급제하여 헌납, 장령, 사간을 역임하였다.

413) 차대(次對): 매일 6회씩 의정(議政), 대간(臺諫), 옥당(玉堂) 등이 입시하여 중요한 정무를 상주하는 일.

따져 보고하는 일로 관문이 있었는데, 왜관에는 수문(守門) 및 설문(設門)이 내외로 두 칸이 있어서 본부와 부산진에서 각기 별교(別校)를 정하여 밤낮으로 지키는 것이 본디 예전 규정이었으나, 부사가 도입한 이후로 다시 군관을 별도로 정하여 계속하여 기찰(機察)하였더니, 잠상(潛商)이 왕래하는 자취는 아직 없으며, 상역(商譯)의 물화(物貨) 대금으로 정은(丁銀) 5,000냥이 이제 또 나와서 이달 초7일 별개시(別開市) 때 우선 받아 내었는데, 대충 듣기로는 왜인의 풍속에 병을 다스리는 약으로 인삼을 중시하고, 이제 더운 철을 당하여 더욱 긴요하게 사용하여 생사에 관계된다고 여기고 있으나, 요즈음 개시할 때 인삼 상품이 전연 들어가지 않으므로, 왜인들이 민망하고 절박함을 견디지 못하고 누누이 애걸하는바, 지금의 기색으로 보건대 조금 생각이 흔들리는 정상이 있기로 연유를 치보하는 일”로 장계하였음.

제사 : 민망하고 절박하여 애걸하는 것이 과연 실상이고, 피집한 금액을 일일이 기일에 맞추어 내어보내거든 이치를 따져서 장계로 알려 처분을 기다리되 실정과 허위를 잘 살펴서 속임을 당하는 폐단이 없게 함이 합당할 것.

계축(1733) 6월 30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운운. 이 전 동래부사 정언섭(鄭彦燮)의 장계를 보면, 왜인에게 지급하는 공목(公木) 작미(作米) 및 부족한 폐단을 갖추어 논하고, 또 검대송사왜(兼帶送使倭)의 요미(料米)를 끌어다 지급하는 폐단을 논하면서, “전감사 조현명(趙顯命)⁴¹⁴이 잘라서 지급한 첨조미(添助米) 400섬 및 신이 비축한 쌀 2,167섬으로, 획급(劃給)하지 않았던 요미(料米)와 오래된 포흠(逋欠)⁴¹⁵ 및 어가미(魚價米)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고, 그 중 1,090섬은 검대왜(兼帶倭)에게 이듬해에 들여줄 쌀 한 해 분량을 다 지급하고자 이제 바야흐로 비치해두고 있거니와, 공작미와 요미(料米)와 저치미(儲置米) 등의 쌀은 신이 이미 노력하여 수량을 채웠으니, 기해년(1719) 이후로 지급하지 못한 요미(料米) 1,027섬을 획급하지 말라는 일 및 일후의 공작미와 요미가 부족하다고 이전처럼 달라고 청하는 일이 있으면 결코 시행을 허락하지 말고, 도회관(都會官)⁴¹⁶ 마감 시에 왜인에게 지급할 것이 부족하다고 문서 안에서 빌려갔다가 빌려오는 일이 있거든 마감을 허락하지 말라는 일로 일체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며, 상항의 요미의 충족과 부족은 별차왜(別差倭)가 중첩하여 오는가

414) 조현명(趙顯命, 1690-1752): 숙종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영조(英祖) 경술(庚戌, 1730)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고, 영조 때 영의정을 지냈다. 영조시대 행정개혁의 실무를 보여주는 《양역실총(良役實總)》을 간행한 주역이다. 문집으로 《귀록집(歸鹿集)》이 전한다.

415) 포흠(逋欠): 관청의 물자를 사사로이 축남.

416) 도회관(都會官): 회계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자.

의 여부에 달려 있으니, 이 뒤로는 만약 금년처럼 대차왜(大差倭)가 중첩하여 내도하면 전일의 폐단처럼 굴릴 재물이 부족할 우려가 있을 듯하면, 연례 9송사왜와 관수왜에게 지급할 요미는 매년 보살펴서 확정하여 지급하고, 남은 쌀 710섬 6말은 동시에 나누어 확정하지 말고 차왜가 나오기를 기다려 요미를 전례대로 본부의 저치미 가운데서 마련하여 들여주었다가 세월에 감영에 보고하여 회감(會減)하도록 하고, 각종의 예비 식료(朔料) 역시 이에 의거하여 상하 회감(會減)하는 것이 변통의 도리에 합당하고, 세미(稅米)와 대동(大同)은 모두 국가의 곡식이니 묘당에 명하여 편할대로 규정을 정하게 하여 영구히 준행하며, 요미(料米) 등은 원래 비치하는 일이 없이 전례대로 획급하되, 1년 비용에 혹 남은 수량이 있으면 감영에 보고하여 회록(會錄)하고 부족하면 감영에 보고하여 획급함으로써, 당년에 부족한 수량을 충당하는 일 역시 묘당에 명하여 품의하여 분부하며, 고령현(高靈縣)의 미수(未收) 공작미 111섬은 동헌 저치미로 가록(加錄)하고, 그 대신으로는 본부의 저치미를 감록(減錄)한다면, 매년 전대(轉貸)하는 폐단은 절로 충당했다고 보고하는데로 귀결될 것이니 도신에게 분부하라” 하였는바, 왜공(倭供)은 일의 체면이 지극히 엄중하나, 차례차례 전대(轉貸)하다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되어, 해마다 끌어다 지급하느라 간혹 고갈되기도 하여 뒤의 폐단에 관계되는 바가 참으로 적은 걱정이 아니었는데, 부사가 꼼꼼하게 상고하여 바로잡고 끌어모아 충당했다는 보고는 참으로 국가를 위한 지극한 충성과 변방을 우려하는 원대한 계획에서 나온 것으로, 각종의 부족한 비용이 이제 이미 충당되었다고 보고하였으니, 이 뒤로 공작미는 부족하여 전대할 일이 없겠고, 요미 역시 감축되어 추이(推移)하는 폐단이 없으며, 겸대왜(兼帶倭)의 이자를 끌어다 지급하는 잘못된 사례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없으며, 기해년(1719) 이후 부족한 쌀을 획급하는 한 조목도 짐짓 잠시 보류하고, 매년 공작미를 반드시 세월에 다 지급하며, 겸대왜의 요미 역시 당년에 맞추어 줄 수 있으니, 공작미와 요미가 혹 부족함이 있다 하여 다시 이전처럼 달라고 청하는 일이 있거든, 도신(道臣)이 시행하지 않고 말 뿐만 아니라 낱알이 장계로 알려 죄를 논하며, 도회(都會)에서 마련하는 문서 가운데 혹 전대(轉貸)하는 일이 있으면 일체 마감을 허락하지 않는 일을 영구히 정식으로 하여 시행하여 시종 줄여나가도록 하고, 왜인의 요미는 연례로 항상 정하여 지급하는 1,960섬 외에 나머지 쌀이 710섬 6말에 이르니, 별차왜가 나오는 것이 비록 정한 회수가 없지만, 매년 부족한 것이 어찌 근래의 수량처럼 많을지, 세(稅)와 대동(大同)의 조건이 이미 구별되니, 요미의 전 수량을 저치미로 지출하는 것은 비록 처음으로 시행함이 어려우나, 나머지 쌀은 장계에 청한대로 동시에 본부에 획급하지 말고 짐짓 감영에서 관장하다가, 별차가 나오기를 기다려 낱알이 감영에 보고하여 회감하고 세월에 해조에서 마감하도록 하되, 차왜가 만약 다수 나와 남은 쌀이 다 없어져 지탱하지 못하면, 감영에서 참작하여 지출해야 할 실 수량을 저치미로써 변통하여 장계로 알려 지출하더라도, 매년 부족한 분량은 반드시 당년 내로 구별하여, 장계로 알려 달

라고 청한 것 외에는 본도에서 사사로이 추이(推移)할 수 없게 하는 일 또한 정식으로 하여 시행하며, 차왜의 삭료(朔料) 요태(料太)도 왜료미(倭料米)와 한가지 사례로 시행하고, 고령현의 미수 공작미는 금년의 새로운 조세 수납을 기다려 해당 현의 저치미로 가록(加錄)한 뒤, 본부의 저치미 가운데서 감록(減錄)한 다음, 가을을 기다려 즉시 수량에 맞추어 받아두어, 앞으로 저치미를 허수(虛數)로 기록하는 것을 모면하게 하는 뜻으로 먼저 엄하게 해당 현에 신칙함이 마땅하니, 이로써 본도와 본부, 서울의 아문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옹정 11년(1733) 6월 30일 좌부승지 신 한덕전(韓德全)⁴¹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축(1733) 9월 27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정래주(鄭來周)의 장계를 보면, 훈도 별차 등의 수본을 매거하면서, “표왜(漂倭) 등이 이틀 양식을 미쳐 내어주지 않은 까닭으로 우리나라 하리(下吏)를 잡아서 같은 배로 왔는데, 동 소란을 일으킨 왜인을 각별히 처치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엄중한 말로 책망하여 타일렀으며, 당해 훈도 별차가 이제 비로소 수본(手本)하였으니 시일을 늦춘 잘못이 없지 않거니와, 청천별장(淸川別將)에 이르러서는 이제 감히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서 왜인에게 넘겨준 것은 뒤의 폐단과 관계되어 결코 그대로 두어서는 불가하니, 청천별장의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표류한 왜인이 관리를 잡아서 같은 배에 태우고 온 것이나, 그들이 소란을 일으킨 것은 일찍이 듣지 못한 바이고, 훈도 별차 등이 문정(問情)할 당초에는 거론하지 않았다가 이제 비로소 수본한 것은 참으로 극히 시일을 늦춘 것이니, 동래부에 명하여 엄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경계하게 하며, 이른바 청천별장은 수호하는 장수로서 이미 이처에 근거하여 금지시켜 막지 못하고, 이제 도리어 우리나라 관리를 잡아서 준 정상은 통탄스럽고 놀라운데, 변방의 금령이나 뒤의 폐단을 막는 도리에 있어서 엄중하게 더 따져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되겠기에, 청천별장 김만직(金萬迪)은 그 관청에 명하여 잡아다 심문하여 조처함이 마땅하니, 이것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옹정 11년(1733) 9월 27일 좌부승지 신 한덕전(韓德全)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417) 한덕전(韓德全, 1685-?): 곡산 한씨로 자는 윤부(潤夫), 호는 회와(悔窩)이다. 숙종 43년(1717)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문학, 장령, 승지를 역임하였다.

계축(1733) 9월 29일

비변사(備邊司)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정래주(鄭來周)⁴¹⁸의 장계를 보면, 무릇 왜인을 응접할 때 훈도 별차 등이 오로지 주관하여 그 책임이 실로 긴요하고 소중하니, 반드시 말을 잘 하고 담력과 기개가 있어 먼 곳의 사람을 누를 수 있는 자를 차출한 연후에 물화(物貨)를 통할 때 반드시 의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임역(任譯)을 차출할 때 반드시 나이가 많고 품계가 높아서 왜정을 잘 아는 사람을 차출하라는 일로 해조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옹정(1733) 11년 9월 29일 좌부승지 한덕전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계축(1733) 12월 22일

이번 12월 20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호조판서 송인명(宋寅明)⁴¹⁹이 입계하기를, “호조(戶曹)에서는 은화가 나올 곳이 전혀 없어서 이전부터 동래 왜관에서 세를 거두어 비용에 보충하였으나, 근래에는 해마다 감축되어 더욱 모양이 아닌데, 그대로 둔다면 오래지 않아서 장차 씨마져 끊어지겠는데, 수세산원(收稅算員)을 본조에서는 이미 죄를 주어 쫓아내었으나, 이는 동래부에서 마음을 다하여 세를 거두지 않은 소치이고, 또한 상역(商譯)이 피집하였다가 황력(皇曆) 동지사(冬至使)와 두 번의 절행(節行) 때 내어오는 것은 수 백년 정해진 제도인지라, 참으로 네 계절과 마찬가지로 흑시라도 기일을 어김이 없었는데, 작년과 금년에는 절행(節行銀)이 무단히 기한을 넘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기한을 넘기면 곧 한 해 이득을 잃어서 허다한 상역들이 생업을 잃는 것은 논하지 않고 그냥 두더라도, 또한 공화(公貨)를 가벼이 사용하는 낭패도 없지 않은데, 풍문을 비록 다 믿기는 어렵지만 듣자하니 절행(節行銀)이 기한에 맞추어 나왔으나, 훈도 별차와 관왜가 나오지 않았다고 符同하여 덮어두고 중간에서 곧장 만상(灣上)⁴²⁰으로 보냈으므로, 만상에는 은화가 다수 대령하고 있고, 남쪽에서 오는 자는 간혹 은화를 실은 짐이 올라오는 것을 눈으로 본 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관계가 더욱 중대합니다. 신은 동래부사에게 경책(警責)을 해야 하고 훈도 별차를 엄하게 조처하는 것을 그만 둘 수 없다고 생

418) 정래주(鄭來周, 1680-?): 동래 정씨로 자는 내중(來仲)이다. 숙종 31년(1705)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419) 송인명(宋寅明, 1689-1746): 여산 송씨로 자는 성빈(聖賓), 호는 장밀헌(藏密軒)이다. 숙종 45년(1719) 문과에 급제하여 충청도 관찰사, 동부승지, 이조판서, 우참찬,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좌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420) 만상(灣上):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를 가리킨다.

각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 말하기를 “동래부사를 엄중하게 추고(推考)하고 훈도 별차를 잡아다 심문하여 조처하며, 끝에 진술한 것은 일의 체면이 비록 전해 들은 것이지만, 이미 연석(筵席)에서 진달하였는데 그냥 두는 것은 불가하니, 이것을 문목(問目)에 첨가하여 넣으라는 뜻으로 의금부에 분부함이 옳겠다”고 하셨습니다.

갑인(1734) 정월 일

비변사의 감결.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예조의 계본(啓本)에, 동래부사 정래주(鄭來周)의 장계 말단에, “왜공미(倭供米)를 들여줄 때 수표(手標)는 명백하게 받아내면서 곡물은 다 들여주지 않고 피차간에 가리고 덮어주어 조사하기가 실로 어려우니 뒤에 분쟁할 때 틈이 생길까 우려되어 미리 엄하게 방지하지 않아서는 안되고, 왜공(倭供)의 각종 쌀을 세말에 다 지급하고 수표를 받아낸 뒤에 별도로 감색(監色)과 동참(同參)을 정하여 범용(犯用)⁴²¹한 사람들은 왜관 문 밖에 효시(梟示)하고 뒤에 장계로 올리며, 왜인으로서 공범인 자는 일죄(一罪)⁴²²로 감단(勘斷)⁴²³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결정하여 거듭 밝혀 알리라는 일로 묘당에 명하여 품의하여 분부하라” 하였는바, 왜공미를 당년 10월 내에 들여주고 수표를 받아내는 것이 본디 정식이거늘, 종전에 본도(本道)와 영문(營門) 및 본부에서 매양 수표를 얻어 돈으로 바꾸거나 쌀로 바꾸어서 요리하는 밀천으로 삼았기 때문에, 간사한 상인과 간사한 왜인이 몰래 저희들끼리 주고받아서 수표를 얻어내려고 도모하거나 공작미에 흠이 생겨, 필경에는 서로 어긋나는 사단이 있어서 실로 서로 다투는 폐단이 나타날 뿐 아니라, 대관왜가 기한에 맞추어 거두어 돌아가지 못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말이 안가는 데가 없는 지경에 이르니, 바로 이른바 스스로를 모욕하고 도리어 나라를 모욕하는 데로 돌아갑니다. 전후로 수의(繡衣)⁴²⁴가 이를 엄하게 방지하자고 청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도신(道臣)이 간혹 신척하였지마는, 요즈음 들으니 이 폐단을 끝내 막지 못하고 본도의 간사한 사람 및 서울 관청의 모리배들이 수표를 사들여서 공작미를 방납하는 버릇이 갈수록 더욱 심하다고 하는데, 만약 이 폐단을 우선하여 막지 않으면 수표가 먼저 나오는 폐단을 금하려고 해도 금할 수가 없을 것이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무릇 수표와 방납(防納)⁴²⁵ 같은 것은 일체 엄하게 방지하여 통절하게 금하고,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적발되는데로 엄중하게 마감한 뒤 장

421) 범용(犯用): 법과 규정을 범하여 경비를 사용함.

422) 일죄(一罪):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

423) 감단(勘斷): 심리하여 처단함.

424) 수의(繡衣): 암행어사.

425) 방납(防納): 공물의 대납.

계로 알리게 하며, 공작미는 반드시 연내에 한정하여 수량에 맞추어 들여주고 수표를 비로소 받아내되, 받아낼 때 별도로 감색과 동참을 정하여 농간한 자는 왜관 문에 효시하며, 왜인이 공범이면 적발되는 대로 한가지로 심문하고 처단하여 관수왜에게 거둬 밝혀 알리는 일은 그 논하고 칭한 바가 법을 엄정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니 모두 장계대로 시행함이 어떠할지? 옹정 11년(1734) 12월 26일 우부승지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한다 하셨음.

갑인(1734) 정월 17일

동래부사 정래주(鄭來周)가 11월 28일에 성첩한 장계. 가훈도 헌덕윤(玄德潤)과 별차 김정균(金鼎均) 등이 와서 고하기를, “재관차왜가 평미일(平彌一) 도주(島主)가 승습(承襲)한 뒤 도서(圖書)를 바치기 전에는 그대로 아명(兒名)으로 송사(送使)를 보내겠다는 뜻으로 갑자기 일단의 이야기를 꺼내었다”고 하거늘, 신은 “법 외의 은전을 번거로이 청하는 것은 외람스럽다고 심분 엄한 말로 책망하여 타이르라”는 뜻으로 신칙하여 훈도 별차 및 수역(首譯) 박태신(朴泰信)⁴²⁶ 등에게 분부하였더니, 임역(任譯) 등이 여러 번 책망하여 타이른 뒤에 수분하기를 “지난번에 재판차왜가 비직(卑職) 등을 보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미일(彌一)이 이제 도주를 계승하여 그 아명의 도서를 장차 돌려드리려고 하거니와, 동 도서를 드리기 전에는 일찍이 아명의 송사(送使)를 내보내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이제 이전대로 내보려고 하는바’라고 운운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미일이 이미 도주를 승습하였으면 아명의 차개(差价)를 이전대로 내보내는 일은 매우 부당하니, 이런 무리한 말은 일체 입에서 내지 말라’고 이치에 근거하여 준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뒤 비직이 엄한 분부를 받고 관수와 재판 두 왜인을 만나서 말하기를, ‘옛그제 재판의 말은 극히 부당하니 반드시 깊이 생각하여 다시는 번거롭게 무익한 말을 올리지 말라’고 또한 이치에 근거하여 책망하고 타일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저희 대마주(對馬州)의 여론이 모두 도서를 바치기 전에 아명의 송사를 정지하는 것은 전례에 어긋난다고 제가 나올 때 말을 하여 보낸 일이 있었으므로 얼마 전에 감히 그 곡절을 진술하였는데, 동지(同知) 등이 엄한 말로 준절하게 물리치며 도무지 주객(主客)이 서로 공경하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까닭인가?’하고 중언부언 하거늘, 비직 등이 다시 더 책망하여 타일러 말하기를 ‘이제 와서 미일이 능히 선대의 가업을 계승하여 이미 도주가 되었으면 이른바 아명의 송사는 금년부터 혁파하는 것이 당연한 사리인데, 너희들이 갑자기 이렇게 천만

426) 박태신(朴泰信, 1679-?): 밀양 박씨로 자는 신재(信哉)이다. 숙종 25년(1699) 식년시의 역과에 왜학으로 합격하여 품계가 가선대부에 이르렀다.

뜻밖의 이야기를 하면서 만에 하나의 요행을 바라는 것은 극히 매우 근거가 없다'고 반복하여 따지고 책망하였으나, 동 왜인이 한결같이 서로 버티는바, 변방 사정에 관계되는 바 일이 매우 가볍지 않기로 비직 등이 수역(首譯) 박태신(朴泰信)과 더불어 이미 분부를 받고는 날마다 왜관에 가서 마디마디 재판과 관수 두 왜인을 타일러 말하기를, '도서를 바치기 전에 아명의 송사를 이전대로 내보낸다고 운운하는 것은 천만 이치에 닿지 않는다. 이런 옳지 못한 말은 우리들 임역(任譯)의 도리로는 결코 동래 사또의 위엄 아래에서 번거롭고 시끄럽게 할 수 없는데, 이웃나라의 차개(差价)가 진술하는 일을 자신이 책임 맡은 관리가 된 자가 또한 사사로이 수작하고 말아서는 불가하므로, 어제 우리들이 번거롭고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그 대강을 동래 사또에게 진술하였더니, 사또가 크게 놀라 엄중하게 밝히라고 분부하면서 뒤로는 이런 일로 번거롭게 떠들지 말라고 하셨으며, 우리들의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책임을 바야흐로 장계로 알려 엄중하게 처리한다고 분부하셨는바, 우리들이 받는 죄의 경중은 굳이 논하기에 부족하더라도, 대개 이 재판이 말한 바는 참으로 부당하니, 뒤로는 다시 말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책망하였더니, 동 왜인이 끝내 미혹된 마음을 돌리지 않고는, 또 '동지 등이 사정을 익히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규정과 전례의 당부(當否)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책망하기에 급급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절박하다. 제가 비록 불민(不敏)하나 옛날 사례를 들어 말하겠다. 이전에 의성(義誠) 의진(義眞) 등은 모두 다 도주(島主)를 승습하였으나 그 아명의 송사가 종전 대로 나온 것을 여기 저기서 상고할 수 있는데, 임관들은 두 나라 일을 맡아 보는 위치에 있으면서 어찌 이런 규정과 사례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가? 이로 말하자면 도주가 이미 승습했다고는 하나 아직 아명의 도서를 바치지 않았으니, 그 송사를 이전대로 내보내는데 무슨 부당한 사리가 있는가?'라고 하며 누누히 간청하며 말하거늘, 비직 등이 다시 말을 하여 타이르기를, '너희들이 말하는 바가 비록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나, 한 가지 말이 있다. 왜관에서 당년에 진상하는 동(銅)과 납(鑛) 등의 물건은 그 아명(兒名) 조항의 원래 수량을 이미 감하여 간품(看品)하고, 우리쪽에서 지급하는 공목(公木) 및 양식의 쌀과 콩 등의 물건을 또 각 고을에 복정(卜定)⁴²⁷하지 않았으니, 다시 논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사례로 말하더라도, 당초 아명 도서를 허락하여 지급한 것은 다른 까닭이 없다. 양국이 이웃나라로서 화해와 우호를 닦은 이후로 옛날 도주가 우리 조정을 위하여 마음을 고치고 충성을 바친 것이 예사롭지 않았으므로 따라 주기 어려운 청을 허락하였으나, 이는 한 때의 특별한 은전이였다. 이제 조금도 공로가 없는 날을 당하여 결코 매양 사례를 원용하여 함부로 그 세상에 드문 특별한 은전을 바라는 것은 결코 불가한지라, 너희들이 이제 비록 천마디 만 마디 말을 하더라도 조금도 더하거나 덜 일이 없으니 일체 다시 말하지 말라'고 시종 누누이 온갖 방법으

427) 복정(卜定): 조정에서는 각 도에, 각 도에서는 가 고을에 그 지방의 산물을 공납하도록 책정하는 일.

로 따지며 책망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또 말하기를, ‘이제 우리 대마주에서 만약 의진(義眞)의 사례에 따라 도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아명으로 송사를 이전대로 내보내더라도 임관 등은 이렇게 단정하여 잘라서는 부당한데, 도서를 돌려바치기 전에 금년에 한하여 이전대로 그 차개를 내보내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어서 반복하여 깊이 책망하여 어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가? 실로 임관 등이 고집하는 바가 타당한지 여부를 알수가 없다’ 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너희들이 고한 말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미일(彌一)의 도서를 돌려바치는 것은 아침이 아니면 저녁에 곧장 할 수 있는데, 이제 되돌려 바치지 아니했다는 한 절차를 구실로 삼아서 이렇게 서로 버티니, 이는 그 한 해 증정해 주는 물건을 이득으로 여겨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 일이 구차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너희들은 유독 마음에 부끄럽지 않는가? 너희들은 모름지기 사리의 당부를 깊이 생각하고 일체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고 소리를 같이하여 준엄하게 질책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머리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답하기를, ‘저희 대마주(對馬州)가 비록 구구하게 가난하고 작은 땅이지만, 어찌 감히 그 한 번 송사(送使)의 증정하여 지급하는 물건을 이롭게 여겨 이런 계획을 내겠는가? 임관 등은 모두 성신(誠信)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야속한 말을 사람에게 자꾸 가하여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가? 저희가 비록 용렬하고 녹록하나 그래도 한 가닥 엄치가 있는데, 이제 동지 등이 하는 말을 들으니 개탄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다. 다시 말을 하고 싶지 않으나, 저희 대마주 역시 귀국의 번방(藩邦)이다. 도주가 승습한 뒤에 그대로 아명의 송사를 보내는 것은 전례가 이려한데, 동지 등의 말이 시종 이러하고 동래 영감의 분부가 또 이렇게 엄중하고 분명하나, 저희들은 이미 도주의 명을 받아 왔으니 일의 경중을 막론하고 결코 사사로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불가하기로, 이제 방금 비선을 들여보내어 도중에 통보하였는데, 마땅히 그 회보를 기다려 다시 이야기하겠다’ 하였기로 연유를 수분한다” 하였거늘, 신이 다시 임역 등에게 엄하게 더 신칙하여 반복하여 책망하고 타이르게 하였데, 훈도 별차 등의 이번 추가 수분에, “비직 등이 잇달아 엄중하고 분명한 분부를 받고는 자주자주 관수(館守)와 재판(裁判) 두 왜인에게 가서 다시 누누이 말하여 책망하였더니, 동 왜인 등의 말이 일이 중대한 관계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미 도중에 통보하였는데 그 회답이 나오기 전에는 과연 답할 말이 없다’고 운운하였는데, 어제 비선이 나온 뒤에 관수와 재판 두 왜인이 비직 등과 수역 박태신을 만나보기를 요구하여 말하기를, ‘지난번에 미일 도주가 이미 승습하여 그 도서를 돌려바치기 전에 아명의 송사를 전례대로 내보낸다는 뜻으로 도중에서 말을 보냈으므로, 저희들이 부득이 그 이야기를 발설하여 동지 등과 허구하게 서로 버티며 여러 가지 수작을 하였는데, 동지 등은 누차 동래 영감의 엄하고 분명한 분부를 받아 반복하여 힐책하며 온갖 지극한 말까지 안한 것이 없어서 비록 매우 난처하였으나, 저희들은 이미 도주의 명을 받아 왔으니 저희들의 도리로서는 또한 사사로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로 얼마전에 돌아들

어가는 배 편에 일일이 도중에 통보하였더니, 도중의 여론이 모두 가까운 사례에 의거하여 말하자면, 의진(義眞) 도주가 승습한 이후에 그대로 아명의 도서를 사용하여 그 차개(差價)를 해마다 내보내다가 의진 도주가 죽은 뒤에 그 아명 도서를 받아들이고 송사를 거두었으니, 이제 와서 실로 가부를 논란할 단서가 없으며, 이제 도서를 바치기 전에 차개를 내보내는 것은 그 도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차개를 검하여 보내는 것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고, 이른바 한 번 송사에게 증여하여 주는 물건을 이롭게 여겨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누누이 엄하게 책망하는 것은 실로 부끄러울 뿐 아니라, 저희 대마주에서 이미 장차 도서를 바치려고 하였는데 임관 등이 사람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이런 지경에 이르고, 동래 영감의 분부가 또 이렇게 엄하고 분명하다면 저희 대마주에서 귀국을 공경하여 섬기는 도리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다투어 고집하는 것도 또한 무엇하여, 그 차개를 금년부터 정지할 계획이라고 어제 비선편에 그 회답이 나왔으니 이 뜻을 상세하여 고하여 알려달라고 하였기로 연유를 아울러 수분한다” 하였는바, 수분의 사연이 이러한바, 상항의 평미일 송사가 이미 혁파되었으므로 금년조 공목(公木) 44동 18필 23자 3치를 이제 이미 분참(分站)하여 받아들인 것은 그대로 두어 지급하지 않고 명년조 공목 가운데 보태어 지급할 계획이고, 명년부터 시작하여 공목 분참 가운데서도 또한 뺀다는 뜻으로 도신(道臣)에게 논보(論報)⁴²⁸⁾ 하며, 대마도에서 이미 도주를 승습한 뒤에 그 아명의 도서 사례로 송사(送使)를 청한 것은 실로 백년의 잘못된 관습이고 우리나라의 무궁한 폐단이었는데, 당초 도주 평의성(平義成)과 평의진(平義眞) 부자가 서로 이어서 이 사례를 준용하다가, 의진(義眞)에 이르러서는 두번 지난 임오년(1642)에 그 도서를 받았고, 두번 지난 갑오년(1654)에 승습(承襲)한 그대로 송사(送使)를 보내다가, 강희(康熙) 임오년(1702)에 죽은 뒤로 짐짓 혁파하였는바, 조정에서 처음에는 비록 방색하다가 끝내 준허하여 우리 백성의 허다한 고향을 다 낭비하여 실로 매우 통탄스러우며, 그 뒤 도주의 아들 언천(彦千)과 그 대신 암환(巖丸) 등이 또한 아명 도서를 받았으나, 모두 승습하기 전에 죽었으므로 다행히 다투는 사단이 없었는데, 이제 교활한 왜인이 의성 의진의 잘못된 습관을 다시 따르고자 이런 번거로운 청을 하였으니 그 정상이 만분 교활하고, 그 1년 동안 수응(酬應)하는 비용을 계산하면, 공목(公木) 44동 18필과 요미(料米) 도합 71섬, 콩 14섬 7말, 각종 가미(價米) 140섬, 예단(禮單) 인삼 1근, 범가죽과 표범가죽 각 1장, 면주(綿紬) 목면(木棉) 저포(苧布) 흑마포(黑麻布) 등의 물건과, 연향(宴享)에 드는 잡물 및 배와 집기에 갖추는 것 또한 적지 않아서, 합하여 계산하면 거의 만금의 비용에 이르는바, 이제 비록 1년 송사(送使)를 하겠다고 청하였으나 그 뒤의 사정은 알 수 없는 점이 있었는데, 이제 책망하여 타이른 뒤로는 감히 생각을 내지 못하고 이제부터 이후로 영구히 잘못된 관습을 혁파하였으니 이는 국가의 위

428) 논보(論報):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에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붙여 보고하는 일.

엄 있는 명령이 미친 것이 아님이 없는지라 실로 만분 다행이며, 차왜(差倭)가 발설한 이후로 임역 등이 만약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하지 않는다면 신이 바야흐로 장계를 올려 엄중하게 처단하려고 하였는데, 다행이도 가훈도 현덕윤과 별차 김정균, 수역 박태신 등이 마음을 다하여 책망하여 타일러 그들의 마음을 굴복시켰으니, 이는 참으로 그들의 직분 안의 일이지만 또한 힘을 쓰고 노력한 것이 없지 않은데, 본부에 있는 등록(騰錄)을 가져다 가운데 가까운 사례를 살펴보니, 신사년(1701) 훈도 변정욱(卞廷郁)과 별차 이석린(李碩麟), 차비역관 정찬주(鄭纘周) 등이 재판 차왜의 요미(料米) 270섬과 콩 60섬을 책망하고 타일러 감한 뒤에 상전을 받았고, 기해년(1719)에 출사역관(出使譯官) 변기화(卞箕和)가 9송사왜(送使倭)에게 1년 동안 지급하는 황죽(篁竹) 값 쌀 51섬 3말과 짚 값 50섬 7말, 두 가지 물건의 태가(駄價: 짐값) 쌀 65섬 2말 1되 6홉 도합 173섬 12말 1되 6홉을 감한 뒤 또한 상전을 입었는바, 이제 이번 아명 송사는 1년의 비용이 이에 비하여 10배일 뿐만이 아닌데도 능히 감하고도 남았으며, 근래 남북의 통화(通貨)가 대단히 실리(失利)하여 왜학이 파산하는 데 이르고, 더욱 심한 것은 매양 과거를 베풀어도 사람들이 모두 기피한 지 10여 년이나 지났으니 임역을 차출하는 것도 필시 구차할 것이라 하고, 이제 만약 죄가 있는데 벌이 없거나 수고가 있는데 상이 없으면 후진들을 불쑥 권할 도리가 없기로 감히 이렇게 사유를 갖추어 치계하오니, 상항의 세 역관 등에게 상을 논하는 한 조목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시라는 연유임.

이에 의거한 비변사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정래주의 장계를 보면 훈도 별차 등의 수분을 매거하면서 평미일의 송사를 이미 혁파하여 1년에 대응하는 비용을 합하여 계산하면 거의 만 냥에 이르는바, 가훈도 현덕윤과 별차 김정균, 수역 박태신 등이 마음을 다하여 책망하고 타일러 그들의 마음을 꺾어 굴복시켰는데, 이는 참으로 직분 내의 일이나 또한 힘을 쓰고 노력을 기울은 것이 없지 않으니, 상항의 세 역관 등에게 상을 논하는 한 가지 조목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바, 이제 이번 임역 등이 방색한 아명 도서는 비용을 줄인 것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잘못된 관습을 영구히 혁파하여 실로 다행이고, 장계의 사연으로 보건대 또한 힘을 쓰고 노력한 보람이 없지 않은데, 신사 연간에 임역 등이 왜료 요미와 콩 300섬을 감제한 공으로 모두 상전을 입었는바, 훈도 현덕윤은 변정욱의 사례에 의하여 특별히 가자(加資)하고, 한 가지 일에 세 사람이 가자하는 것은 전혀 상을 신중히 하는 의도가 아닌지라, 별차 김정균은 준직(準職)⁴²⁹을 제수(除授)하고, 수역 박태신(朴泰申)은 해당 품계의 실직(實職)을 제수함이 일의 도리에 합당할 듯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옹정 12년(1734) 정월 17일 좌부승지 신 홍(洪)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429) 준직(準職): 당하관(堂下官)으로서 가장 높은 정3품의 벼슬.

갑인(1734) 정월 일

이번 정월 초5일 명정문(明政門) 조참(朝參)에 입시하였을 때 **호조판서 송인명(宋寅命)**이 **계품한 바**, “삼남(三南)의 어염세(魚鹽稅)와 선세(船稅)를 모두 본조에서 관장하는 일로 전에 이미 성명(成命⁴³⁰)이 있어서 이제 장차 마련하여 절목을 만들어 계하하였는데, 본조와 각 도의 별장(別將), 차인(差人) 등을 한 가지로 모두 혁파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이미 각 도의 별장을 혁파하면 각 궁방(宮房)과 각 아문(衙門)의 별장 또한 한가지로 금단해야 마땅한데, 품의하여 정한 뒤에 분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우선 호남에서부터 시작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갑인(1734) 정월 27일

동래부사 정래주가 정월 19일에 성첩한 장계. 접위관(接慰官) 신 권경(權穎)⁴³¹이 죽은 뒤 도서(圖書) 대차왜(大差倭)의 상선연(上船宴)을 때 마침 거행하지 못했는데, 전례를 상고하니 두번 지난 임자년(1672)에 접위관을 잡아다가 추고할 때는 각항연례에 향접위관(鄉接慰官)을 차출하여 거행하였고, 무오년(1678) 접위관이 죽었을 때는 차왜가 향접위관과 행례(行禮)하기를 원하지 않았기로 경접위관을 차출하여 내려보냈는데, 차왜가 여러 달 왜관에 지체하여 머물면서 폐단이 무한하였기에, 이번에는 차비역관(差備譯官) 박태신이 관소(館所)에 나가서 누누이 타일러 임자년(1672)의 사례대로 향접위관을 차출하여 행례하는 일로 조정하였으니, 향접위관을 가까운 고을의 수령 가운데서 차출하여 정하는 일로 도신(道臣)에게 보고하며, 접위관이 떠고 오는 인신(印信)은 신이 짐짓 인수하여 보관해 두었다가, 차비역관이 올라 갈 때 전례대로 올려보낼 계획이오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

갑인(1734) 5월 초10일

이번 5월 초10일 소대(召對)에 입시하였을 때, **상감께서** “이웃나라와 사귀는 도리로는 성신(誠信)이 귀한데, 들으니 동래부에서 접대할 때 성신이 많이 모자란다고 한다. 전후로 신칙한 것이 한 두 번에 그치지 않아 동래부에서도 반드시 알 터이나, 새 부사가 겨우 이미 내려가서는 별도로 다시 신칙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된다. 무릇

430) 원본의 '성명(成明)'의 '명(明)'은 '명(命)'의 오자로 보인다. 성명(成命)은 임금이 결정하여 내린 명령.

431) 권경(權穎, 1691-?): 안동 권씨로 자는 유훈(幼文)이다. 경종 1년(1721) 증광 문과에 급제하고 전직을 역임하였다.

교린(交隣)할 때는 비록 땀감 같은 미세한 물건에도 서로 속이고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없이 반드시 성신의 뜻에 힘쓰라는 뜻으로 승정원에 명하여 조목을 거론하여 동래 부에 신칙하게 함이 옳겠다”고 하셨습니다.

갑인(1734) 5월 21일

이번 5월 21일 석강(夕講)에 입시하였을 때 지사(知事) 조상경(趙尙綱)⁴³²⁾이 계 품한 바, “신이 매번 품신(稟申)하려고 하였으나 하지 못하다가 이제 중국말(漢音)의 문자(文字)에 대한 말씀으로 인하여 감히 이렇게 양달(仰達)합니다. 신이 연행(燕行) 때 보니 역관들이 전혀 한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이추(李樞)⁴³³⁾와 김시유(金是瑜)⁴³⁴⁾ 이외에는 아는 것이라고는 매매하는 말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연소하면서 시킬만한 자가 없지 않았으나 이미 어음(語音)에 통하지 못하니 두 나라가 교제함에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일이 매우 우려됩니다.”라고 하였고, 특진관(特進官) 신방(申昉)이 말하기를 “역관의 등제(登第)를 간혹 본원에 일이 있으면 재력을 거두어 내는 자 및 다른 조건의 상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또한 유행으로 외람스런 폐단이 많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이 폐단을 막아서 반드시 취재(取才)하여 빈 자리를 메운다면 그들이 필시 한어(漢語)에 더욱 마음을 다할 것이고, 역학(譯學)을 권하는 도리에 합당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조상경이 말하기를 “사역원에 우어청(偶語廳)이 있으나 한어(漢語)를 가르치는데 전혀 착실하지 않으니 별도로 신칙하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일찍이 이미 신칙하였는데 효과가 없으니 다시 더 신칙하여 특별히 역학을 권장함이 옳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역원(司譯院).

갑인(1734) 7월 초6일

이번 7월 초4일 소대(召對)에 입시하였을 때, 상감께서 “접위관(接慰官)이 대차와

432) 조상경(趙尙綱, 1681-1746): 풍양 조씨로 자는 자장(子章), 호는 학당(鶴塘)이다. 숙종 36년(1710)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 승지, 함경도관찰사, 한성좌윤, 대사헌, 경기관찰사, 이조형조 공조 병조의 관서와, 우참찬, 수어사, 관의금부사, 관동령부사, 한성관윤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경헌(景獻)이다.

433) 이추(李樞, 1675-?): 금산 이씨로 자는 두경(斗卿)이다. 숙종 19년(1693) 역과에 올라 한학(漢學)으로 종사하여, 품계가 승록대부에 이르렀다.

434) 김시유(金是瑜, 1677-?): 경주 김씨로 자는 자유(子瑜)이다. 숙종 25년(1699) 역과에 올라 한학(漢學)에 종사하였고, 품계가 승록대부에 이르렀다.

(大差倭)와 어떻게 예를 행하는가?”하시자, 참찬관(參贊官) 정언섭(鄭彦燮)이 말하기를, “연향(宴享) 때는 손님과 주인의 예로 대하고, 진상(進上) 숙배(肅拜)는 객사(客舍)에서 행합니다. 대개 초량객사(草梁客舍)에 전패(殿牌)⁴³⁵를 봉안하기 때문에, 차왜 등이 진상 물건을 정청(正廳)에 벌여놓고 뜰에서 4배를 행하고, 전패의 문을 열고, 의장(儀仗)을 진열하고 그 예를 받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의장이 서울과 같은가?” 하자, 정언섭이 말하기를 “고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이 동래 부사가 되었을 때 장계로 청하여, 서울 관청의 장인(匠人)을 보내어 그 제조한 것이 의장고(儀仗庫)에 있는 물건과 한결같이 같았습니다. 대개 조정의 위의(威儀)를 높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감동이 솟아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의장은 혹 새로 갖추기도 하고 혹 수리하기도 하였으나 거개가 모두 색깔이 바래어 선명하지 않습니다. 시골 기술자가 만든 것이 어찌 이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의장이 파문하면 먼 곳의 사람에게 보일 수가 없고 또한 국가의 체면에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고 상신 민정중이 장계로 제작을 청한 것은 대개 이 때문이었습니다. 예전 사례대로 개조하도록 묘당에 명하여 신척하십시오.”라고 하였음. 언섭이 말하기를 “먼 사람에게 보이는 도리는 단만 의장만이 아닙니다. 전패를 봉안한 객사에 이제 썩어서 상된 곳이 많아 오래지 않아 필시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새 재목으로 바꿀 필요는 없으나, 이제 모조리 기울어 무너지지 않았을 때에 진작 속히 수리하여 고치면 물력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며, 또 그 전례가 각 진보(鎭堡)의 변장(邊將)을 시켜 각기 스스로 담당하여 개수(改修)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동래부에서 대죄(待罪)하고 있을 때 누차 감영에 논보(論報)하였으나 잇달아 흉년을 당하였기에 시절이 어려운데 큰 일을 거행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짐짓 수리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남별영(南別營)의 대청(大廳)으로 보건대 그다지 심하게 손상되지 않아서 수리 보완하면 반드시 재력이 많이 들 필요가 없었는데, 무너진 뒤에 비로소 개조하였으므로 그 들어간 비용이 매우 컸다. 이제 이번 초량객사는 속히 수리하되, 이것은 조정에서 알 바 아니고 비변사에서 감사에게 신척하여 그로 하여금 계획하여 즉시 거행하게 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비변사(備邊司).

이번 7월 초4일 소대(召對)에 입시하였을 때 상감께서, “왜인의 명맥(命脈)이 공목(公木)을 작미(作米)하여 때맞추어 들여주는 데 달려 있는데, 각 고을에서 기일을 여기는 우려가 없으며, 수송하는 수량이 이전보다 감소됨은 없는가?” 라고 하시자, 참찬관 정언섭이 말하기를, “공목은 이미 원래 수량이 있고, 공목 가운데 쌀로 만드는 것 역시 일정한 규정이 있으니, 이것은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한정하여 들여주는 것입니다. 화친을 약속한 이래로 이렇게 왜인에게 지급하는 일이 있게 되었으

435) 전패(殿牌): 지방 객사(客舍)에 봉안하는 전(殿)자를 새긴 나무 패.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공무로 지방이 나간 관원이나 지방 수령이 그곳에 배례를 행하였다.

나, 이제는 각 고을에서 예전부터 있는 예사 일로 여겨서 세초에 분참(分站)⁴³⁶한 이후로 연기하여 끌면서 보내지 않고, 동래부에서 매양 독촉을 더해도 모두 움직여 거행할 생각을 아니합니다. 만약 각 고을에서 수량을 맞추어 수송하는데 동래부에서 즉시 들어주지 않으면 죄가 동래부에 있으니 동래부에서는 진작 들어주지만, 각 고을에서 수송하지 않으면 죄가 각 고을에 있습니다. 이 일은 국가의 체면에 크게 관계되는 지라 참으로 우려됩니다. 신이 동래부에서 대죄하고 있을 적에 마침 신해년(1731)과 임자년(1732) 두 해의 큰 흉년을 당하여 공작미는 비록 다행히 기한 내에 다 지급하였으나, 그 사이 독촉의 어려움과 각 고을에서 연기하여 시일을 끄는 우려는 상년(常年)에 비하여 배로 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쌀 색깔은 다른 쌀에 비하여 가장 좋았고 원래 수량 또한 미수(未收)된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고, 시독관(侍讀官) 김약로(金若魯)⁴³⁷가 말하기를 “공작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이 일찍이 부산첨사에서 교체되어 온 자의 말을 들으니, 땔나무와 숲은 부산포에서 마련하여 지급하는데, 매양 각 고을에서 즉시 배를 거두어 보내지 않아서 곧장 궁색하고 다급한 지경에 이르러 간혹 불화한 일이 생기는 우려가 없지 않다고 하니, 또한 한가지로 신칙함이 합당합니다.”라고 하였고, 정언섭이 말하기를 “공작미로 말하자면 동래부에서는 조정 명령으로 인하여 각 고을에 독촉할 따름이고, 그 나머지 수납하는 것과 같은 일은 부산첨사가 주관하며, 땔나무와 숲에 있어서는 오로지 부산에만 속합니다. 대개 조정에서 숲을 지급하는 봉산(封山)은 양산 등 지역이고, 또 탄군(炭軍)에게 배를 거두는 법이 있는데, 그 배로써 생산되는 곳에서 사가지고 미리 마련하였다가 때 맞추어 계산하여 지급하기 위한 것이지만, 근래에는 각 고을에서 비록 조정의 명령이라도 오히려 즉시 준행하지 않거니와 하물며 일개 변방 장수의 명이겠습니까? 왜관에는 온돌이 없으므로 추위를 당하면 오로지 땔나무와 숲에 의지하는데, 땔나무와 숲을 매양 계속하여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이는 탄포(炭布)를 걷지 못하는데서 말미암아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 또한 매우 우려됩니다. 소신(小臣)이 동래부에 있을 때 조정에서 이런 폐단을 우려하여, 신에게 명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독촉하는 폐단을 관장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신용이 없으면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인의 교훈이다. 이웃나라와 교제하는데 신용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적국(敵國)에서 사단을 일으키는 것은 미세한 일에 있다. 대(臺)에 올라 웃어도 오히려 적병을 불러오거니와 하물며 이 공작미는 왜인의 명백에 관계되는 것이니, 무릇 들어주는데 관계되는 물건을 어찌하여 진작 거행하지 않겠느냐? 유정지공(惟正之供)⁴³⁸이 중대하

436) 분참(分站): 공무를 담당하는 일이나 비용의 몫을 구역에 따라 나누어서 집행하는 일.

437) 김약로(金若魯, 1694-1753): 청풍 김씨로 자는 이민(而敏), 호는 만휴당(晩休堂)이다. 영조 3년(1727)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평안도관찰사, 공조·호조·병조의 관서, 우참찬, 판의금부사를 역임하고 좌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438) 유정지공(惟正之供): 바른 법도에 의거한 공급 물자. 전삼세(田三稅)인 전세(田稅), 대동미(大同米), 호포(戶布)를 가리킨다.

지 않은 것은 아님에도 그 정공(正供)을 잘라서 저쪽 사람에게 제공함에, 각 고을에서 때맞추어 수송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근거가 없어, 이로써 하교한 것이 한 두 번에 그치지 않았음에도, 매양 거론한 조문 중 문구(文具)가 되고마니, 어찌 이런 도리가 있느냐? 왜료미(倭料米)에 이르러서도 또한 공작미와 한가지이니, 이 뒤로는 전일처럼 하지 말고 비변사에서 각별히 감영과 각 고을에 신칙하여, 공작미와 왜료(倭料)를 기한 내에 수송한 여부를 날날이 뽑아내어 장계로 알리고, 또한 비변사에서 자주 자주 관문을 발송하여 그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각 고을을 조사하여, 그 중에 시일을 넘겨서 납부하지 않은 수령은 엄중하게 죄를 논하도록 하고, 땀나무와 숲의 일은 전에 이미 신칙하였는데 이제 유신(儒臣)⁴³⁹⁾이 진달한 바를 들으니 또한 매우 놀란다. 아울러 묘당에서 특별히 신칙함이 좋겠다” 고 하셧음.

갑인(1734) 8월 11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정래주의 장계를 보면 “옥포 왜학 정동기(鄭東起)가 이페이양[以酹養] 송사왜(送使倭)가 데려온 반종(伴從) 2명과 종왜(從倭) 1명을 반종 3명으로 써서 보고하였고, 본디 노인(路引)이 없는 배를 노인이 있는 양으로 문정(問情)에 적어 넣어 보고하였으니, 그 죄상을 장계로 품의하여 조치하며, 부산에서 표류한 백성을 데려온 차왜가 지금까지도 지체하여 떠나지 않고 있는데, 전후에 이런 일로 인하여 차개(差价)가 올 때 임역(任譯) 등이 문장의 뜻을 분석하여 명백하게 설파하고, 이 뒤로 책망하여 타이를 때 반복해서 논의하고 나열하여 기어코 그 마음을 꺾어 복종시키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왜관에 물화(物貨)를 유통하는 것은 본디 상고(商賈)의 일이고, 역관들도 또한 물화를 피집(被執)하는 자가 많았으나, 지금 이후로 역관으로서 물화를 피집하는 자는 엄하게 금한 뒤라야 임역(任譯)들이 바야흐로 걸리는 데가 없어서 그 직분의 일을 다할 수가 있을 것이며, 역학(譯學)의 과정을 권장하는 방법은 오로지 본원(本院)에 있는데, 앞드려 들으니 전례로는 본부에 청(廳)을 설치하여 거쳐하면서 왜어(倭語)를 학습하였다고 하니, 본부에서 왜역(倭譯)으로 내려오는 자들을 불러모아 시험삼아 왜어를 가르치고, 그 능한 여부에 따라 간략하게 상벌을 시행하고, 끝내 환하게 통하지 못하는 자는 해당 사역원에 보고하여 걸러버리면, 역관들이 필시 감히⁴⁴⁰⁾ 이전처럼 게을리하지 못하고 흥기하는 바가 있을 것이니, 아울러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게 하라” 하였는 바, 옥포 왜학 정동기가 이페이양 송사왜의 반종 2명을 3명으로 일컬은 것과, 본디 노인이 없는 배를 노인으로 칭한 것은 극히 근거가 없으니, 장계에 칭한 대로

439) 유신(儒臣): 여기서는 홍문관 관원의 통칭으로 쓰였음.

440) 원본의 '필감(必敢)'의 '감(敢)' 앞에 '불(不)' 자 한 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임.

그 관청에 명하여 죄를 논하게 하며, 부산의 표류민을 데려 온 차왜가 지금까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데, 전후로 이 일로 인하여 차개가 나오는 것은 조정에서 매양 더욱 엄하게 신척하여 반드시 뒤에 사례로 삼지 말라고 하였는데, 임역들이 일찍이 명백하게 타일러 책망하여 그 마음을 꺾어 감복시키지 않고 매양 잘못된 사례를 답습하니 참으로 극히 통탄스럽고, 이는 다만 왜인의 교활함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역관들이 국가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양 그대로 따르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니, 이제 마땅히 임역들에게 엄하게 신척하여 장계 내의 사연을 각별히 책망하여 타일러 속히 들여보내도록 하고, 끝내 잘 거행하지 않으면 당해 임역 등을 잡아다가 심문하여 무겁게 추궁할 것이며, 동래부사도 당초 역관들을 엄하게 신척하여 그 때 들여보내지 않고 이미 반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장계로 알려 시일을 늦춘 과오를 면치 못하니 엄중하게 추고하며, 역관들이 물화를 피집하는 것은 견제가 없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사리가 참으로 그러하니 또한 동래부에서 더 엄하게 금단하고, 이 뒤로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작으면 곧바로 추궁하여 다스리고 크면 장계로 알리게 하며, 동래부에서 청(廳)을 설치하여 내려오는 역관들을 불러모아 왜어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또한 권장하여 흥기시키려는 도리에서 나온 것이로되, 이 일은 비록 전례가 있으나 폐기한 지 이미 오래되어 이제 갑자기 복구하는 것은 불가하여 그냥 두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雍正 12년(1734) 8월 11일 좌부승지 신 정필녕(鄭必寧)⁴⁴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하되, 말단의 일은 청한 바가 옳은데 이미 전례가 있으니 등대(登對)⁴⁴²할 때 품의 조처하라 하였음.

갑인(1734) 8월 21일

이번 8월 20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김(金)이 계 품하기를**, “지난번에 동래부사가 동래부에 내려간 왜학(倭學)들이 그대로 청(廳)을 설치하여 왜어(倭語)를 학습하는 일을 장계로 청하였는데, 비변사에서 복계하여 시행하지 말라고 판부(判付)한 내용에, 등대(登對)할 때 품의 조처하라는 전교가 있었으므로 감히 이렇게 양달(仰達)합니다. 대개 고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이 사역원 도제조(都提調)였을 때, 왜역들이 일을 마친 뒤 그대로 열흘에서 한 달을 머물며 왜관에 출입하면서 왜어를 학습한다는 뜻의 초기(草記)를 품의하여 정한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폐기하여 시행하지 않은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도록 폐기된 규정을 이제 갑자기 다시 행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복계를 상주(上奏)할 때 방색하여 허락하

441) 정필녕(鄭必寧, 1677-?): 해주 정씨로 자는 밑경(謚卿)이다. 숙종 40년(1714)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목사, 승지, 의주부윤, 대사간을 거쳐 호조참관을 역임하였다.

442) 등대(登對): 어전에 진알(進謁)하여 면담함.

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고, 행이조판서(行吏曹判書) 송인명(宋寅命)은 말하기를, “근래 왜역의 잠상(潛商) 폐단이 극심하여, 왜역으로서 한 번 내려가서는 그대로 장가들어 사는 자가 많습니다.”고 하였더니, 상감께서는 “왜역은 하직(下直)하지 않고 내려가는가?” 하자, 송인명이 말하기를 “명을 받들지 않고 내려가는 자도 많습니다. 신이 호조에서 대죄(待罪)하고 있을 때 그 폐단을 깊이 알아, 일찍이 동래 왜관에 피집(被執)하는 것은 모두 세를 납입한 뒤에 들여보내어 호조에 해마다 들어오는 세은(稅銀)이 많게는 만 냥에 가깝고, 적어도 사오 천 냥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래에는 왜역들이 한 번 동래부로 가면 모두 가정을 이루어 그대로 머물면서, 왜관의 왜인들과 교유를 맺고 무상으로 출입하며 피집(被執)과 매매를 각자 몰래 하니, 누가 세를 납입하려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세은이 한 해에 일 이백 냥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은화가 나오는 곳이 없고 단지 이 세은이 한 품의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감축되니 호조가 어떻게 모양을 이루겠습니까? 왜역이 일을 맡은 뒤로 그대로 머무는 폐단을 한번 진술하여 규정을 품의 확정하여 엄금하려 하였으나, 직책이 바뀌어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번에 청을 설치하자는 청은 왜역들이 그대로 머물 때 관청의 요미(料米)를 받아먹고, 한편으로 조정의 금단을 우려하여 그대로 완전히 견고하게 머물려는 계획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으며, 검예조판서 신(申)은 말하기를 “왜역들이 그 곳에 가서 머물면 그 사이에 농간과 허위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청을 설치하는 일은 끝내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으니 결코 허락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하였고, 병조판서 윤유(尹游)는 말하기를, “왜역의 잠상(潛商) 폐단은 금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은 항상 비변사에 통보하여 왜역이 일을 마친 뒤면 사역원에서 재촉하여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청을 설치하여 가르친다면 왜역으로 내려간 자는 필시 이것을 구실로 하여 한편으로는 오래 머물며 잠상을 하는 계획이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머물러 있을 적에 양식을 받아먹는 계획이 될 것입니다. 신은 지난해 동래부에 대죄하면서 대략 사정을 아는데, 1년에 9송사 이외에 또 표차왜가 서너 차례 있어서, 왜역으로 출사하는 자가 십여인에 이르는데, 이들은 동래를 즐거운 곳으로 여기고 돌아오기를 꺼리며 또한 물화(物貨)를 피집함으로써, 근년에 경부(京府)의 피폐한 역관들은 오로지 이 일을 일삼아 은이 나오기 이전에는 떨치고 돌아오지 못하여, 한 번 내려간 뒤 1년이 되도록 서울로 올라올 생각이 없습니다. 신이 일찍이 비변사에 보고하여 일을 마친 뒤에는 사역원에 명하여 일일이 돌아오도록 재촉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청을 설치하자는 청은 이들이 한편으로는 머물려는 의도에서, 한편으로는 급료를 받으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인듯 한데, 더구나 왜관에 무상으로 출입하면서 왜인에게 말을 배우면 그 사이의 농간과 허위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는 잠상의 문을 더욱 열어주는 것이라 이는 결코 시행을 허락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하였고, 우윤(右尹) 이유(李瑜)는 말하기를 “변방의 일은 엄격해야지 느슨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서쪽 변방의 일에는 비록

때때로 범하여 넘어감을 면치 못하더라도 오히려 제한하여 막을 단서가 있지만, 유독 동래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관에 거주하는 왜인이 경내에 공사의 일로 출입하는데 제한이 없고, 언어로 교접하여 통하지 않는 일이 없는데,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역관들이 한 번 가서 돌아오지 않고, 또 상업을 겸하여 몰려들어 계속 머무는 데도, 조정에서 일찍이 검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는 데는 이미 사역원이 있으니, 만약 언어에 익숙하게 통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그대로 가서 전수받아 익혀서 오게 하면 됩니다. 만약 또 하나의 가르치는 청을 변방에 설치한다면, 또한 서울에는 머물러 거주하는 왜학은 하나도 없을 것이니, 경종과 본말이 뒤바뀌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그 청을 방지하는데 그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조목을 거듭 밝혀서 드나들며 머물러 있는 자를 특별히 더 엄하게 방지하고 각별히 금단하여, 근일처럼 낭자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여 변방 금령을 엄격하게 하는 도리를 조금이나마 보존해야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이 장계를 처음 보고는 그 말이 옳을 듯하였는데, 이제 여러 신하가 진달(陳達)한 바를 들으니 그 사이 사정을 알 수 있겠다. 여러 신하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거의 그르칠 뻔하였다. 이 장계는 시행하지 말고, 우윤(右尹)이 진달한 내용이 참으로 옳다. 왜역이 왕래하는 것을 사역원에서 어찌 모를 이가 있겠는가? 이 뒤로는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동래부로 내려가는 자들은 북경 역관의 사례에 의하여 각별히 신척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우의정 김(金)이 말하기를 “동래부사는 별도로 재촉하여 일을 마친 뒤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사역원에서는 그 오고 가는 것을 상세히 살펴서 내려간 뒤에 오래 머물며 돌아오지 않는 자를 재촉하여 올라오게 한다면 저절로 지체하여 머무는 폐단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신척함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니, 상감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셨음.

갑인(1734) 8월 29일

이번 8월 29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김(金)이 계 품하기를**, “지난번에 연석(筵席)에서 군포(軍布)·신포(身布)와 대동(大同)을 막론하고 무릇 각사(各司)에 납부하는 것은 모두 순수한 무명으로 받아올린다는 일로 확정하였는데, 순 무명 2필은 혹 새로 받는 것부터 시작함이 마땅하고, 새로 받는 것은 10월에 있어야 마땅하나, 올해는 절기가 매우 늦어서 10월 안에는 새 무명을 장만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니, 명년 정월부터 시작하여 세전(歲前)에는 거론하지 말며, 전목(錢木)은 이전처럼 바치는대로 받아 올림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정월을 기한으로 하면 그 전에 바치는 것은 절로 거론하지 말고, 전포(錢布)를 받

는 것은 진달한 대로 정월부터 시작함이 옳겠다”고 하셨습니다.

갑인(1734) 10월 17일

동래부사 최명상(崔命相)⁴⁴³의 장계. 신은 이달 19일 전 부사 신 이흠(李滄)과 본부 경계인 소산(蘇山)⁴⁴⁴의 길가에서 교인(交印)한 뒤 그대로 도입하였습니다. 초량객사(草梁客舍)의 훼손된 곳 및 동 객사에 있는 의장(儀仗)을 수리하는 등의 일은, 신이 하직하기 위해 대기하다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성교(聖敎)를 받았는데 말씀이 극히 엄격하고 분명하였기로, 신이 이달 24일 호조의 수세산원(收稅算員) 및 기술자 등을 거느리고 초량객사로 나가 그 손상된 곳을 적발하였더니, 동 객사가 바닷가에 우뚝 홀로 솟아 있는지 이제 이미 50여 년이나 오래되어, 비바람에 씻겨 서까래가 무너져 내리고, 기와가 파손되어 별빛이 새어 들어오고, 주춧돌이 옆으로 기울고 사이 사이에 썩어 손상된 것이 많았으며, 벽면이 무너지고 창호가 모두 파손되어 보기에 매우 한심하니, 모조리 헐어서 걸어내고 고쳐 세워야 할 일이로되, 이른바 고쳐 짓는 것은 물력이 많이 들어가 가벼이 논의할 수 없어, 반복하여 생각하였으나 끝내 있는 그대로 서까래와 기와만 고쳐 이어서 썩은 곳마다 고치는 것만 못할 듯하고, 기울어진 곳은 떠받쳐서 바로잡는 것이 매우 편하고 쉬울 듯합니다. 이제 이 중수는 하루가 급하지만 당년조 부특송사왜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그것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진상 속배가 겨울철에 있게 되고, 명년조 송사왜 등은 명년 3월에 처음으로 나올 것인바, 정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나오기 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마땅하고, 재목 및 철물은 세전에 맞추어 전량을 운반해 둔 뒤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으며, 계단과 섬돌도 조각조각 주먹돌로 담장처럼 쌓았기에 하나같이 모두 무너지고 또한 존엄하지 않으니, 부석(浮石:떼어낸 돌)으로 축조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른바 떼낼 돌은 객사 뒤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수리하는 형편을 이제 치계하며, 동 수리하는 곳에 들어갈 재목·철물(鐵物)과 기와 굽는 것과 단청 및 석물(石物)을 떼내는 물력과 기술자와 요포(料布)와 사역꾼 등은 구별 마련한 성책(成冊)을 본도 감영에 보고하였으니, 들어갈 물력을 속히 획급하는 일을 묘당에 명하여 도신(道臣)에게 분부하게 하여, 기한에 맞추어 공사를 시작하여 수리하도록 하며, 동 객사에 있는 의장은 색깔이 바래었을 뿐 아니라 또한 파손된 것이 많아서 결코 먼 곳의 사람들이 쳐다보고 속배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급속히 고쳐 마련하지 않아서는 안되겠기로 도신에게 치보하여 이제 바야흐로 고쳐 마련하는 일임.

443) 최명상(崔命相, 1676-?): 경주 최씨로 자는 자량(子亮)이다. 경종 2년(1722)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지평, 헌납을 거쳐 동래부사를 역임하였다.

444) 소산(蘇山):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최명상의 장계를 보면 조량객사는 이미 송사왜 등이 왕명에 숙배하는 곳인데 무너진 지 이미 오래라 보기에 한심하여 참으로 국가의 체면을 높이고 먼 곳의 사람들에게 위엄을 보이기에 부족하니, 오는 봄에 진작 수리하지 않아서는 불가하니, 들어가는 물력을 속이 마련하여 획급하라는 뜻으로 장계에서 청한 바대로 도신에게 분부함이 어떠할지?雍正 12년(1734) 10월 12일 우부승지 신 한사득(韓思得)⁴⁴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상도 위유감진어사(慰諭監賑御史) 이종백(李宗白)의 폐막별단서계(弊廢別單書契)에 운운하기를, “첫째 표왜(漂倭)가 자주 오기로는 요즈음보다 심한 적이 없어서, 바닷가의 쇠잔한 고을아 수응(酬應)에 지쳐서 거의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여러 해이다. 당초 약조(約條)에는 단지 5일 동안 머물러 음식을 공급하는 것만 허락하였고 5일이 지난 뒤에는 즉시 호송하는 것이 왜관의 사례인데, 그러나 왜인의 정상이 교활하게 속여서 혹은 바람의 형편이 순조롭지 않다고 칭하기도 하고 혹은 병세가 한창 괴롭다고 칭하면서 핑계를 대어 물리며 출발하지 않고 곧장 보름이나 머물기도 하여, 큰 배에 하루 접대하는 쌀이 혹은 10섬이 되어, 1년을 통틀어 계산하면 바닷가의 각 고을에 비축한 소모 비용으로는 그 수량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러한 간사한 폐단은 엄하게 막지 않아서는 안되겠으니, 동래부사로 하여금 더 엄하게 관수(館守)에게 책망하고 타일러 약조를 거듭 신칙하고, 이 뒤로 왜선이 표류하여 바닷가의 고을에 도착하는 자는 만약 5일을 지나면 차원(差員)에게 명하여 곧바로 왜관으로 호송하게 하여 이전처럼 계속 머무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비변사의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 경상도 감진어사 이종백의 별단을 보니 운운하기를, “그 첫째, 표왜가 간혹 병세를 칭탁하거나 바람의 형편을 칭탁하여 물려서 핑계를 대며 출발하지 않고 곧장 한 보름을 머무니 큰 배에 하루 공급하는 쌀이 간혹 10섬이 되기도 하여 한 해를 통틀어 계산하면 그 수량이 넉넉하지 아니한지라, 마땅히 관수왜에게 책망하고 타일러 다시금 약조를 신칙하여, 왜선이 표류하여 바닷가 고을에 도착하는 자가 만약 5일을 넘기면 차원에게 명하여 곧바로 왜관으로 호송하게 하여 계속 머무는 폐단이 없게 하라”는 일임. 표왜가 바닷가 고을에 계속 머무는 것은, 접대하는 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몰래 상품을 장사하는 우려가 있거니와, 이른바 5일 동안 머물며 공급하는 사목(事目)은 감영(監營)의 등록 가운데 뚜렷하게 실려 있기로, 연전에 도신(道臣)이 관왜(館倭)에게 책망하고 타일러 사목에 의거하여 시행하려고 하였더니, 관왜들이 약조 가운데 원래 실린 바가 없다고 일컬으며 이렇게 오고 가며 다투어 힐난하다가 끝내 귀일되지 못하

445) 한사득(韓師得, 1689-1766): 청주 한씨로 자는 계능(季能)이다. 경종 2년(1722)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과 승지, 대사간, 병조 호조 형조의 참관, 도승지, 한성부판윤을 역임하고 관동령부사로 치사하였다.

였는데, 만약 이전부터 확정된 약조가 없으면 감영의 등록 가운데 어찌 기록을 실을
이가 있겠는가? 도신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임역(任譯)들로 하여금 관왜에게 책망하
고 타일러서 사목에 의거하여 거행하게 하고, 이 뒤로 만약 5일 외에 공급하는 일이
있거든 선혜청(宣惠廳)에서 비변사에 논보(論報)하여 임역은 엄중한 죄로 처단하고
도신(道臣)과 수신(守臣)은 한결같이 책임을 따지게 하며 운운 하였음. 옹정 12년
(1734) 10월 12일 우부승지 한사득(韓師得)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갑인(1734) 11월 초2일

몽학(蒙學) 전함(前啣) 오백창(吳百昌)⁴⁴⁶⁾ 등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
목을 운운. 이 상언을 보면 한학(漢學) 몽학(蒙學) 왜학(倭學) 청학(淸學)을 사학
(四學)이라 하는데, 한학과 왜학은 예전에 총민(聰敏)이 있었고, 청학에는 등제(等
第) 4자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권장하는 길이 좁아서 병오년(1726)에 총민(聰敏)을
창설하였으나, 몽학에는 유독 한결같이 보는 혜택을 받지 않았으니, 청학(淸學)의 근
래의 사례대로 별도로 총민(聰敏)을 설치하여 진작하게 하는 일로 특별히 천은(天恩)
을 받게 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였는바, 한학 왜학 청학 세 역학에는 모두 총민이
있으나 몽학에만 또한 홀로 총민이 없으니 억울하다고 일컬을 만한데, 일이 새로 만
드는데 관여되니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상세히 헤아려서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
지? 옹정 12년(1734) 11월 초2일 부승지 신 한사득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사역원으로 이송함.

악생(樂生) 김이택(金麗澤)이 상언하기를, “위를 삼가 아뢰. 신은 수고에 보답하
여 상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아름다운 은전이고, 부모를 위하여 은택을 바라는 것
은 사람의 자식으로서 지극한 인정이기에, 신은 부월(斧鉞)의 형벌을 피하지 않고 감
히 번개와 우뢰의 위엄을 무릅쓰고 천지 부모 앞에 소리를 질러 슬피 호소하오니 긍
휼히 여겨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신의 아버지 장악원 전악 신 진태(鎭兌)는 본
디 지방 사람으로 13세에 뽑혀서 서울에 올라와 이원(梨園)⁴⁴⁷⁾에 소속되어,
제법 음률을 이해하여 악사(樂師)의 직책에까지 승진하여 부지런히 20년이나 오래도
록 고생하였는데, 숙종조 병신년(1716) 가을 종묘(宗廟) 악기 및 늦쇠로 만든 종(鍾)
5부를 조성할 때 신의 아버지가 스스로 감독을 담당하여 정밀하게 조성하여 들었으
며, 기해년(1719) 봄 기로(耆老)에게 잔치를 하사할 때 신의 아버지는 집사전악(執事
典樂)으로서 여러 악공들을 거느리고 예에 맞는 음악을 절주(節奏)하여 군주의 은덕

446) 오백창(吳百昌, 1692-?): 해주 오씨로 자는 성로(聖老)이다. 숙종 40년(1714) 역과에 올라 몽학(蒙學)으로 종사하였다.

447) 이원(梨園): 장악원(掌樂院)의 별칭.

에 감사하였으며, 무신년(1728) 내연(內宴)을 하실 때도 또 집사전악으로서 풍악(風樂) 무동(舞童) 처용(處容)을 총괄하였으며, 맹인(盲人) 기생을 지휘하여 관현의 음악을 밤낮으로 가르쳐 정성을 다하여 복무하였고, 또 선의왕후(宣懿王后)⁴⁴⁸를 태묘에 부묘(祔廟)할 때 신의 아버지는 역시 집사로서 악기를 잡는 악공들을 가르쳐서 무리 지어 연주하는 예를 연습하고 폐단 없이 봉행한 나머지, 전후로 연례 때 풍물 악기를 담당하여 감조한 것 역시 신의 아버지의 손에서 나왔고, 국가의 제례 및 대소연의(宴儀)에도 수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그 사이 근로와 신고는 말하지 않아도 가산한바, 대개 집사전악으로서 종묘의 악기를 감독하여 만드는 것 및 이미 부묘의 큰 예를 치른 자는 간혹 면천(免賤)의 은전을 입기도 하고 가자(加資)의 은전을 받기도 하는 것이 응당 해야하여 할 규정이기도, 전악 정윤박(丁潤璞)과 김애남(金愛男), 임환(林桓), 황효성(黃孝成) 등이 모두 가자의 은전을 입었고, 근년에 와서 말하더라도 전악 권신(權信)은 숙종조 태묘에 부묘할 때 집사로서 전례대로 가자하였으며, 전악 김준영(金俊永)도 경종조 태묘에 부묘할 때 집사로서 또한 가자되었는데, 신의 아버지 진태에 이르러서는 집사 전악으로서 누차 대례(大禮)를 겪었고 또 부묘를 당하여서도 폐단없이 봉행하였으나, 유독 한결같이 보는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니 어찌 섭섭한 탄식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만약 성명(聖明)께서 효치(孝治)하는 아래에 사람의 자식이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지극한 정을 굽어 살피시고 또 신의 아버지가 복무한 공로를 통촉하시어, 한결같이 권신과 김준영 등의 사례대로 특별히 가자의 명을 내리시어 표옥(豹玉)의 영광을 입게 하신다면, 신의 아버지는 비록 죽을 나이라도 오히려 살아 있는 날과 마찬가지로 일이라 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운운. 이 상언을 보면 그의 아버지 진태가 본디 지방 사람으로서 이름이 이원(梨園)에 속하여 음률을 제법 이해하여 전악으로 승진하면서 부지런히 20년 동안 고생하였고, 병신년(1716) 가을 종묘의 악기 및 늦쇠로 만든 종 5부를 감독하여 정밀하게 제조하였고, 기해년(1719) 가을 기로에게 잔치를 하사할 때와 무신년(1728) 내연 때 집사전악으로서 풍악을 총괄하여 정성을 다하여 복무하였고, 또 선의왕후(宣懿王后)를 태묘에 부묘할 때 역시 집사로서 악공들을 가르쳐 폐단 없이 봉행하였으며, 전후로 연례(宴禮) 때의 풍물 악기를 담당하여 감독 제작하였으니, 대개 악기의 제작 감독 및 부묘의 대례를 이미 치른 사람으로 전악 정시박 등은 모두 가자의 은전을 입었고, 근년에 전악 권신과 김준영은 부묘할 때 집사로서 또한 가자하였는데, 그의 아버지 진태는 홀로 동일하게 보는 은택을 받지 못하였으니 어찌 섭섭한 한탄이 없겠는가? 한결같이 권신과 김준영 등의 사례대로 특별히 추가로 가자의 명을 내리는 일이 있었으니 오히려 천은을 받을 수 있게 하

448) 선의왕후(宣懿王后): 경종(景宗)의 계비 어씨(魚氏).

여 달라고 하여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는데, 김진태는 집사전약으로서 부모할 때 약공들을 가르치고, 악기와 풍물의 제작을 감독하고 전후 경례(慶禮)에 모두 공로가 있는데, 은상(恩賞)은 무거운 은전이라 매양 곧장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니, 상언의 사언을 이제 그냥 둬서 어떠할지? 옹정 12년(1734) 11월 초2일 우승지 신 한사득 차지로 입계하였더니, “대저 이런 상언은 근래에 비록 부분하나 이미 전례가 있어서 근거가 없지 않고, 겪었던 세 가지 일은 다른데 견주어 무거우며, 기해년(1719)의 일을 추억하면 더욱이 홀로 상을 줌이 마땅하니 다른 사례대로 가자하라” 하셨음. 이조(吏曹)로 이송함.

을묘(1735) 정월 초10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최명상(崔命相)의 장계를 보면, 재판차왜(裁判差倭)가 공목(公木)을 쌀로 만드는 기한을 다시 물리기를 청하는 일이라고 칭하면서 나왔는데, 이전의 약속대로 다시 번거롭게 청하지 말라는 뜻으로 엄중하게 더 책망하고 타일렀거니와, 왜선 3척이 당초 지세포로 표류하여 정박했을 때 옥포 왜학 정동기(鄭東起)의 문정(問情) 가운데 부특송사왜(副特送使倭)가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별폭(別幅)이 분디 없는데 별폭 1봉을 가져온 것으로 써서 보고하고, 재판차왜의 탄 배가 분디 1호선이 아닌데도 1호로 칭하여 써서 보고한 것은 모두 극히 놀라운데, 문정을 삼가하지 못한 실책은 그 죄상을 면하기 어려우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며,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에 또 ‘재판차왜가 나오면 접대하는 것이 이미 전례가 있는데 일이 변방 정세에 관계되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바, 재판 차왜가 이미 나왔으니 전례대로 접대하게 하되 쌀을 만드는 일은 일찍이 이미 엄하게 막았으니 각별히 책망하고 타일러 입에서 꺼내지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분부하며, 근래에 왜역(倭譯)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예사 문정을 이렇게 소홀히 누락함은 변방의 사정에 관계되는 바 실로 한심하니, 왜학 정동기를 잡아다가 심문하여 죄를 정함이 어떠할지. 옹정 13년(1735) 정월 초6일 우부승지 신 정필녕(鄭必寧)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을묘(1735) 정월 24일

동래부사 최명상(崔命相)이 정월 15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14일 유시(酉時)에 도부한 부산첨사 최형(崔炯)의 치통에, “이번 훈도 현덕윤(玄德潤)과 별차 유극신(劉克愼) 등이 바친 수분에, ‘계축년(1733) 10월 16일에 나왔던 관수왜 평방광(平方廣)

이 노쇠한 사람으로 오륙 일 전부터 다시 풍병(風病)의 조짐이 있더니 병세가 갑자기 위중하여 오늘 죽었기로, 관수왜가 주관하던 모든 일을 새 관수왜가 나오기 전까지 재판차왜(裁判差倭)가 겸하여 살피기로 한다고 운운하였다'고 수분한 일"로 치통하였는데,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갑진년(1724) 관수왜 평신명(平信明)이 나와서 다례(茶禮)를 베풀어 행하고 서계를 받아 진상 숙배를 미처 지내기 전에 사망하였기로, 무진년(1688)과 계유년(1693) 두 해의 관수왜가 죽은 뒤에 거행한 사례에 따라 새 관수왜가 나오기를 기다려 진상 물건을 받아 올린 뒤에 회답 서계 및 별폭 물건을 들어 주었는바, 이제 이번 관수왜 평방광이 다례를 행한 뒤 서계를 받아 올리고 해조의 답서와 별폭 등의 물건 또한 이미 내려왔으나, 한결같이 갑진년(1724)의 사례대로 새 관수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진상 물건을 받아 올린 뒤에 회답 서계 및 별폭 물건을 들어줄 계획이며, 공궤(供饋)하는 쌀과 콩과 잡물도 갑진년(1724) 사례대로 사망한 다음날부터 감하거니와, 관수왜기 이미 사망하였으면 부의(賻儀) 물건을 지급하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하겠는데, 본부의 등록을 상고하니 순치 계사년(1653) 연간에 차왜 굴성정(橘成正)이 사망한 뒤 부의 물자를 지급한 일이 있고, 갑진년(1724) 재판차왜 등방창(藤方昌)이 사망한 뒤 계사년(1653)의 사례에 의거하여 부의 물자를 지급하였는데, 관수왜가 사망한 뒤로는 무진년(1688) 계유년(1693) 갑진년(1724) 세 해에 모두 부의 물자를 지급한 전례가 없어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을묘(1735) 3월 초7일

동래부사 최명상이 2월 28일 성첩한 장계. 무지포(武知浦)⁴⁴⁹에 정박하고 있었던 왜선 한 척이 관소(館所)로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려 문정(問情)하여 장계로 알리겠다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이달 23일 사시(巳時)에 부산첨사 최형(崔炯)의 치통 내의 초탐장(哨探將)의 치보 및 기장(機張) 공형(公兄)⁴⁵⁰의 문장(文狀)에 "왜선이 손상된 곳에 들어갈 갑철(甲鐵) 1개, 편철(偏鐵) 3개, 철정(鐵釘) 28개를 만들어 주어서 수리를 마치고, 양식과 반찬과 땀나무와 물은 계속하여 들어주었다"고 하였음. 24일 해시(亥時)에 동 첨사의 치통에는, "이제 이번 무지포로 옮겨 정박한 왜선 한 척은 비바람이 이와 같아서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물고 있다"고 하였음. 26일 사시에 동 첨사의 치통에, "초탐장 및 기장 공형의 문장에, '무지포에 정박하고 있었던 왜선이 비바람이 번갈아 일어나 파도가 험악하여 발선하지 못하고 그대로 같은 곳에 머무르고 있으며, 요미(料米)는 한결같이 새로 반포한 사목(事目) 대로 5일에 한하여

449) 무지포(武知浦):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을 대변리와 연화리 일대.

450) 공형(公兄): 각 고을의 호장(戶長)·이방(吏房)·수형리(首刑吏) 즉 삼공형(三公兄)을 말함.

들어준 뒤 24일 저녁 때를 시작으로 지급하지 않았더니, 왜인들이 말하기를 「5일의 급료 외에 무단히 받지 않으면 관소로 돌아가 정박한 뒤 반드시 죄책이 있다고 하면서, 담당 색리(色吏)를 잡아끌어서 배에 싣고는 내보내지 않으므로, 타일렀더니 「사람을 훈도 별차에게 보내어 관중(館中)에서 표를 받아 오면 내려보내겠다」고 운운하였다」는 이야기가 극히 놀라워, 십분 타일러 색리를 도로 배에서 내리라는 뜻으로 신칙하였다」고 하였음. 동일 오시 쯤에 황령산과 간비오 봉군(烽軍) 등이 진고하기를,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로 나온다”고 하였음. 뒤따라 온 부산첨사의 치통에는 “구봉(龜峰) 봉군이 진고하기를,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에서 나온다’는 데 의거하여, 초탐하기 위하여 이선장(二船將)을 정하여 보낸다”고 하였음. 27일 자시(子時)에 동첨사의 치통에는, “무지포에 정박하고 있었던 왜선 한 척이 묘시(卯時)에 출발하여 신시(申時)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고, 왜선에 실었던 요미(料米) 색리(色吏)는 각별히 타일러서 배가 떠날 때 육지에 내렸다고 하며, 초탐장의 치보에, ‘오늘 나온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을 신시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데 의거하여, 즉시 훈도 현덕윤과 별차 유극신 등에게 명하여 문정한 수본에는,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임자조 제11선 격왜 20명과 교대 차 나온 중금도왜 1인, 소금도왜 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생동(生銅)⁴⁵¹ 30칭(稱)을 싣고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하여 19일 이른 아침에 대마도에서 나오다가 표류하여 항곶(項串)에 정박하여 돌아 올 즈음에, 꼬리나무(尾木)를 쫓은 곳이 손상되었으나 다행히 수리해주시는 혜택을 입어서 이제 비로소 관소로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운운 하였고,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6명, 교대차 나온 중금도왜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 및 재판에게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나왔다고 운운 하였으며, 두 배의 노인 두 통은 받아서 올려보낸다’고 하였음. 이에 의거하여 동 노인을 이전대로 보내거니와, 무지포에 정박한 왜선이 요미 색리를 실어갔다는 설은 듣기에 매우 놀라워 엄한 말로 전령하여 왜인에게 힐문하게 하였더니, ‘당초 표류하여 정박하였을 때 선체가 손상되어 자연히 육 칠 일 지체하여 머무를 때, 저희들은 짐짓 전례에 의거하여 받아내려 하였더니, 5일 식량 외에 날마다의 식량은 한결같이 새 사목(事目)에 따라 오일 양식 한 번만 지급하므로 피차간에 서로 버티며 다투는 사단으로 색리를 배에 실었다가, 오늘 돛을 올린 뒤에 내려보냈다가거니와, 표류한 왜선이 비록 바람 형편으로 인하여 오래 머무르더라도 5일 양식만을 지급한다는 일은 지난 겨울에 이미 조정의 명을 받들어 관수왜를 시켜 이것을 도중에 통보하게 하였는데, 도주가 에도에 머물고 있어서 회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사단이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나, 뒤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별히 재판차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렀다’는 수본에 의거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상항의 노인 2통은 감봉(監封)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지난해 겨울 조정의 명령으로 인

451) 생동(生銅): 불리지 아니한 구리.

하여 표류한 왜인들은 한결같이 새 사목에 의거하여 5일 양식만 지급하고, 그 밖에는 일체 더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신칙하였는데, 이제 이번 무지포에 정박한 왜인들이 5일 양식 외에 더 요구하려는 계획으로 요미를 지급하는 해당 색리를 잡아서 배에 실은 것은 참으로 극히 놀라워, 급히 놓아 보내라는 뜻으로 임역 등을 시켜서 엄한 말로 재판차왜에게 책망하였는데, 재판차왜가 미처 통기하기 전에 표류한 왜선이 이미 떠났고, 조탐장이 타이름으로 인하여 동 색리를 즉시 놓아 보냈거니와, 표류한 왜인 등이 도주가 마침 에도에 있어서 회보를 미처 내어오지 못했다고 운운 하고, 조정의 명령을 듣지 하고 이렇게 소란을 부린 것은 만분 절통하니, 주모자 왜인을 도중에 들여보내어 각별히 죄를 다스리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 들을 시켜 재판차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다는 일임.

을묘(1735) 3월 20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운운. 이 통제사 김집(金湑)⁴⁵²의 장계를 보면, 지세포와 옥포의 강 입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각 한 척은 이미 다대포로 넘겨 보냈거니와, 우도로 표류한 왜선을 차례 차례 영솔하여 앞 길의 각 진에 부쳐서 다대포에 교부(交付)하는 것이 본디 옛날 규정인데, 이제 이번 지세포로 표류한 왜선을 옥포 가장(假將)이 곧바로 다대포로 데려간 것은 규정에 어긋남이 있으니 죄를 논하여야 마땅한데, 지난 해 본 비변사의 관문에, 표류한 왜인이 혹 바람 형편 때문이라 핑계하여 출발하지 않으면 그 폐가 적지 않으니, 5일을 지나면 곧바로 관소로 호송하라 하였으며, 임자년(1732) 본 비변사의 관문에 표류한 왜선은 각 진에 명하여 차례 차례 교부하는 것은 법의 뜻이 있으니, 단지 마땅히 정한 규정대로 엄하게 신칙해야 다른 간사한 실정이 없을 터인지라, 오직 수신(帥臣)이 임시로 상세히 살펴서 그 죄의 경중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묘당에서 고쳐 명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니와, 계하(啓下) 분부한 일을 전후에 서로 달라서 봉행하는데 혼란스러우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하여 한 가지로 지적하여 분부하라고 하였는바, 작년 본 비변사에서 보낸 관문에는 이른바 5일을 지나 곧바로 관소로 보낸다고 한 것은 대개 그 주된 뜻의 비중이 위의 조항인 5일 외에 지체하여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일 따름이고, 아래 조항은 전례에 따라 늘 하는 말에 불과하거늘, 수신이 살려서 보지 못하고 이렇게 품의 장계가 있었으니, 차례 차례 교부하는 법은 이전대로 거행하고 5일에 호송하는 일은 일체 신칙함이 어떠할지? 옹정(1735) 13년 3월 13일 부승지 신 정필녕(鄭必寧)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452) 김집(金湑): 영조 때 무신으로 승지와 남병사, 북병사, 양성현감, 통제사를 역임하였다.

을묘(1735) 8월 초6일

동래부사 최명상이 7월 25일에 성첩한 장계. 신이 지난해 8월 초6일에 하직할 때 초량객사의 일로 친히 말씀을 들었기에, 도임한 뒤 즉시 살펴보고는 금년 초봄에 공사를 시작할 뜻으로 전에 이미 장계로 알렸더니, 들어가는 재목을 좌도와 우도의 봉산(封山)에서 바람에 쓰러진 나무를 사용하는 것으로 비변사에 보고하여 두 서너 차례 왕복할 때, 문득 농사 일이 바야흐로 한창인지라 미처 벌목하지 못하였다가, 이제 가을 일을 걷기 전에 바야흐로 벌목하고 운반하여 이달 24일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전패(殿牌)의 이안(移安)은 무신년(1728) 부산 객사(客舍)를 이건할 때의 등록에 의거하여 동 진의 영희정(永喜亭)에 하였다가, 오는 8월 19일 오시(午時)에 이안하기로 날짜를 정하였고, 동 객사의 공사 완공은 뒤에 다시 장계로 알릴 계획임.

병진(1735) 정월 초10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시기를. 이 경상감사 민(閔)의 장계를 보면, 동래부사의 첩정(牒呈) 및 호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왜인에게 주는 요미(料米)의 부족한 수량이 뚜렷한데, 호조와 선혜청(宣惠廳)에서 오가며 논의하는 사이에 자연히 시일이 연기되어, 기한을 두고 지급해야 하는 물건을 변통할 길이 없어서 매양 연례로 왜인에게 지급하는 물건을 추이(推移)하여 충당해 주기 때문에, 교활한 왜인의 피곤한 독촉이나 동래부의 구차함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으니, 상항의 계축년(1733) 부족 요미 705섬 12말과 콩 204섬 14말 및 기해년(1719)부터 신해년(1731)까지 각 연도에 부족하여 구획하지 못한 요태(料太)⁴⁵³ 198섬 1말을 급속히 획급하라는 뜻으로 묘당에 명하여 품의하여 분부해 달라” 하였는바, 왜인의 요미는 매년 호조의 전세(田稅)조에서 2,670섬을 구획하여 보내는데, 1,880섬은 당년조 8송사와 관수왜(館守倭) 대관왜(代官倭) 등의 요미로써 지급해야 하고, 남은 쌀 781섬은 남겨 두었다가 차왜(差倭)의 요미로 대비하므로, 당년에 별차왜(別差倭)가 많이 나오게 되면 모조리 지출하고, 만약 적게 나오면 반드시 남은 것을 가져다가 이듬해 남은 쌀에 보태 넣어서 사용하므로, 동래부에서는 처음에는 감히 요미(料米)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여 조정에 번거롭게 품의하지 않았는데, 기해년(1659) 연간에 묘당에서 우연히 잘못 살펴 관리하여, 당시 감사의 장계로 인하여 이른바 부족한 쌀 절반을 처음으로 저치미(儲置米)에서 잘라 주고 대동(大同)으로 전세를 보충한 것이 극히 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뒤로 이것을 전례로 하여 임진년(1712) 연간에 또 한 번

453) 요태(料太): 급료로 지급하는 콩.

잘라 주었으니, 지나간 일의 잘못은 비록 뒤에 바로잡을 수가 없으나 마땅히 엄하게 방지해야 하거니와, 계축년(1733)에 부사 정언섭이 장계로 왜료(倭料)의 일을 논하여 각년의 부족분은 본부에서 별도로 준비하여 모조리 갚는다고 하였으며, 매년 항상 나머지 쌀 700여 섬을 동시에 나누어 주지 말고 차왜가 나오기를 기다려서 감영에 보고하여 회감(會減)하도록 하였기로, 그 때 복계하기를 부족분을 잘라 주는 한 조목은 짐짓 보류하고, 혹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전처럼 얻기를 청하는 일이 있거든 도신(道臣)이 시행을 허락하지 않는데 그치지 말고, 날날이 장계로 알려져 죄를 논한다고 하였는바, 일찍이 1년이 안되어 이렇게 번거로운 품의가 있는 것은, 당년조 남은 쌀을 과연 감영에 보고하여 회감하고서 또 이렇게 부족분이 있는 것인지, 가령 부족하더라도 감히 얻기를 청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겨우 이미 엄하게 신칙하였는데 혹시라도 살피지 않고 이렇게 하는것인지, 일의 체면을 헤아려 보면 참으로 미안하고, 부사가 비록 간혹 소홀하더라도, 도신은 어찌하여 검속하여 살피지 않는지, 조정의 명령을 거둬 엄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경책(警責)이 없어서는 불가하니, 도신을 추고(推考)하여 그로 하여금 각별히 조사 조처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옹정 13년(1735) 12월 30일 동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병진(1735) 7월 28일

이번 7월 2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김(金)이 계 품하기를**, “경상감사 민(閔)의 장계에, ‘관왜(館倭)가 밀고 나온 일로 부산첨사 이석복(李錫復)과 동래 검임 김해부사 한형(韓珩), 훈도 박춘서(朴春瑞)⁴⁵⁴, 별차 이창기(李昌基)⁴⁵⁵의 죄상을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고, 땀나무와 숲의 감색(監色) 및 설문(設門)의 군관(軍官) 이하는 이제 바야흐로 엄하게 조사하여 무겁게 다스린다’고 운운하였고, 동래부사 오명서(吳命瑞)⁴⁵⁶의 장계의 사연 및 죄를 청한 것은 도신(道臣)과 한가지인데, 전례를 근거로 인용하여 또 첩공(撤供)의 청이 있습니다. 관왜가 밀고 나온 것은 정축년(1697)에는 200명이었고, 경인년(1710)에는 57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명수(名數)의 다과나 시간의 늦고 빠른 것이 전에 비해 간격이 있고, 또한 정축 경인년처럼 소란을 일으킴이 없으며, 다만 이제 이번에 밀고 나온 변고는 날

454) 박춘서(朴春瑞, 1687-?): 무안 박씨로 자는 화중(和仲)이다. 숙종 40년(1714) 역과에 올라 왜학으로 종사하였다.

455) 이창기(李昌基, 1696-?): 광주 이씨로 자는 대경(大卿)이다. 경종 2년(1722) 역과에 올라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456) 오명서(吳命瑞, 1688-1740): 해주 오씨로 자는 신경(信卿)이다. 영조 갑인(甲寅, 1734)에 문과에 급제하고 병진(丙辰, 1736)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마다 공급하는 숲을 때맞추어 계속 지급하지 못했는데서 비롯하였는데, 동래부의 장계에는 비록 우리쪽 사람에게 죄를 주지 않은 등록을 인용하였으나, 이 일은 과오가 우리에게 있어서 저쪽 사람만 오로지 책망하는 것은 불가하고, 또한 김해부사가 이미 겸관(兼官)이었는데 밀고 나온 이 일의 보고를 듣고서는 진작 동래부로 달려가 조사 심문하여 장계로 진달해야 옳았음에도, 일이 6월 초에 있었으나 이제 도신(道臣)의 장계로 인하여 비로소 알게 되어 회계(回啓)가 내려가는 시기가 장차 8월이 되어감에도, 변방의 정세를 전연 위에 알리지 않으니, 죄를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늦추는 것은 실로 국가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데 관계되어 먼 곳의 사람에게 위엄을 보이기에 부족하고, 부산첨사는 그 숲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일이 생기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덮어 두고 위에 알리지 않은 죄는 모두 극히 놀라우니, 부산첨사 이석복과 김해부사 한형을 아울러 잡아다 심문하여 엄하게 조치하고, 훈도 별차는 비록 그날 함께 본부에 들어갔다고 하나 그 말을 이미 믿을 수가 없고, 평소에 엄하게 방지 단속하지 못한 것도 또한 그 죄가 있으니, 한가지로 잡아다 심문하고, 시탄(柴炭) 검색과 설문 군관인 도장(都將), 부장(部將), 통사(通事) 등은 도신의 장계대로 영문에서 엄중하게 곤장을 치고, 왜인이 경계를 밀고 나오는 자는 일죄(一罪)로 단정하는 것이 약조에 실려 있으니,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러서 도중(島中)에 통보하여 법대로 처단한 뒤에 회보(回報)하게 함이 마땅하며, 철공(撤供) 한 조목은 이미 정축년(1697)과 경인년(1710) 두 해의 전례가 있으니 또한 동래부에서 청한대로 훈도 별차에게 명하여 엄한 말로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일러 철공한다고 고하고, 서서히 그들이 하는 바를 보고 조치함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왜관의 왜인이 밀고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미 약조이고, 땀나무와 숲과 공작미를 기일에 맞추어 들여주는 것 역시 약조인데, 한편으로는 교린(交隣)의 도리를 하나같이 지키고, 한편으로는 사시(四時)와 같이 미답게 한 뒤에야 성신(誠信)이 부응(孚應)할 수 있는데, 몇 일이거나 비록 몇 시각을 막론하고 어찌 기한을 넘기고도 지급하지 않아서 밀고 나와서 재촉하는 번고가 있게 하였는가? 왜관의 왜인이 짐짓 일을 일으킨 것이니, 우리나라 변방 신하를 다스려서 그들의 계교에 맞추는 것은 불가하나, 이는 땀감 한가지 일의 한심한 일로서 내가 이미 알았기에 그러므로 누차 엄하게 신칙하였고, 이제 이번 첨사가 내려갈 때 또한 타일렀음에도, 첨사가 신칙한 뜻을 받들지 못하고 전연 두려운 마음으로 거행하지 않았으니, 극히 통탄스럽고 놀랍다. 우리나라에서는 즉시 첨사를 효시(梟示)하여야 마땅하나, 명령을 거둬서 신칙하는 의도가 아닌 점이 있으므로 짐짓 잡아다가 심문하지는 않는다면 필시 그것을 예사로 볼 것이니, 부산첨사 이석복은 우선 파직하여 내쫓고, 그 교대 뒤에 좌수사(左水使)에게 명하여 친히 부산진으로 가서 위의(威儀)를 성대하게 펼치고 곤장 50대를 치게 하고, 이번에는 비록 그 다음의 법률을 적용하여 짐짓 곤장을 치지만, 후일에 다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첨사는 효시해야 마땅하니, 이 뜻을 엄하고 분명하게 분부하고, 땀나무와 숲의 공급

이 비록 간혹 기한을 넘기더라도 관수왜는 동래부에 말을 전하여 신척 독촉하여 지급하게 하도록 함이 마땅한데, 이제 약조를 어기고 밀고 나오는 거동은 우선 엄하게 관수왜에게 책망하고 타일러, 밀고 나온 왜인을 그로 하여금 법에 의하여 처단하게 하고, 철공 한가지 조목 또한 진례대로 거행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김재로(金在魯)⁴⁵⁷가 말하기를 “김해부사 및 훈도 별차 등을 잡아다가 심문하는 데는 분명한 하교가 아직 없었습니다”라고 하자, 상감께서는 “겸관(兼官)과 훈도 별차는 잡아다가 심문하여 엄중하게 살피 처단하고, 땀감 감색 및 과수하는 각색 사람들은 본도에 명하여 경중을 나누어 조처하게 하라”고 하셨음. 비변사(備邊司). 의금부(義禁府).

병진(1735) 8월 초6일

이번 8월 초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김(金)이 계품한바, “전일에 회환사(回還使) 신(臣)이 몽학(蒙學)이 전연 말을 통하지 못하여 후일의 우려를 깊이 진달하고는, 일찍이 이전에 이찬경(李繼庚)이 배워온 몽어(蒙語)를 다시 가서 질의하고 그대로 사용하기를 청하였는데, 요즈음 역학(譯學) 가운데 몽학(蒙學)이 가장 황폐하여, 비록 과시(科試)에 쓰이는 전해오는 책자가 있기는 하지만, 옛날과 지금에 차이가 있어서 거의 물과 불도 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고 관서 권상유(權尙游)가 역관 이찬경에게 명하여 몽고 사람에게 학습하여 일일이 차록(筭錄)하여 오게 하였다가, 그 뒤 찬경이 다시 북경에 가서 이 책을 사용하여 몽고 사람과 대화하였더니, 피차간에 이해하여 소통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전 책은 모조리 버리고 이것으로 과시(科試) 및 취재(取才) 등의 일에 사용하는데, 연전에 본원에서 몽역(蒙譯) 가운데 연소하고 총명 민첩한 사람 10여 인을 뽑아 그 책을 학습시키고, 그대로 그들에게 한 통을 정밀하게 베껴 두게 하였는데, 이제 사신이 진달한 바대로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한 사람을 선발하여 절사(節使)의 사행(使行)에 들여보내어, 그로 하여금 널리 더 질문하게 하여 만약 착오가 있는 곳이 있으면 즉시 바로잡아 오게 하여, 그것을 역관들에게 권하여 익히도록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그대로 하라. 그 책자는 돌아와서 들이라”고 하셨음.

457) 김재로(金在魯, 1682-1759): 청풍 김씨로 자는 중례(仲禮), 호는 청사(淸沙)이다. 숙종 36년(1710)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승지와 대사간, 전라도 관찰사, 대사성, 대사간, 개성유수, 충주목사 등을 역임하고 병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병진(1735) 8월 14일

동래부사 오명서(吳命瑞)가 8월 초6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4일 묘시(卯時)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자시(子時)에 도부한 가훈도 이창기(李昌基)와 가별차 황대일(黃大逸)⁴⁵⁸ 등의 수분에, ‘이제 이번 다대포에 표류 정박하였던 우리나라 배 및 왜선이 관소에 돌아와 정박한 뒤에 가서 사정을 물었더니, 도중(島中)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제1척은 순천(順天)에서 표류한 백성을 데려온 차왜의 배인데, 정관(正官) 등원안(藤元安)과 봉진압물(封進押物) 1인, 반종(伴從) 3명, 격왜(格倭) 40명, 교대 차 나온 소금도왜(小禁徒倭) 3명 등이 함께 타고 예조(禮曹)로 보내는 서계(書契)와 별폭(別幅) 각 한 통과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한 통과 별폭 두 통 및 진상 물건을 실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번 서계와 노인(路引) 가운데 연호를 향보(享保)라 쓰지 않고, 원문(元文) 원년(元年)이라 써 넣었거늘, 정관왜(正官倭)에게 따져 물었더니, 답하기를 연호는 본디 우리나라 왜황(倭皇)의 연호인데 금년 4월에 전 왜황이 졸서(卒逝)하고 새 왜황이 계승하여 원문이라 연호를 고쳐 간빠꾸[關白]에게 반포하였기로, 이번 서계를 시작으로 원문(元文)으로 써 넣어 나온다고 운운 하였다’는 수분이었기에, 이에 의거하여 상항의 서계 등본 두 통 및 노인 한 통을 이전대로 보낸다”고 하였거니와, 훈도 별차의 수분에 의거한 부산진의 이문(移文) 가운데 ‘새 왜황이 계승하여 호를 고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호를 고칠 때의 등록을 상고하니, 신묘년(1711)에 정덕(正德)으로 고치고 병신년(1716)에 향보(享保)로 고친 것이 모두 새 간빠꾸[關白]가 계승한 뒤에 하였는데, 이제 이번 왜황(倭皇)이 죽고 호를 고친 것은 이전과는 다른 듯하여, 이 뜻을 매거하여 부산에 조사 문의하였더니, 즉시 부산첨사 이석복의 회이(回移)에, “전령(傳令)하여 임역(任譯)에게 조사 문의하게 하였더니, 방금 바친 가훈도 이창기와 가별차 황대일의 수분에, ‘전령에 의거하여 이제 이번에 나온 표차왜(漂差倭)의 서계 가운데 연호를 원문(元文)으로 호칭을 고친 한 조목을 다시 상세히 동 차왜 및 관수왜에게 따져 물기를, 『이전에 귀국에서 연호를 고친 등록을 살펴보니, 신묘년(1711) 병신년(1716) 두 해에 정덕(正德)과 향보(享保)로 연호를 고칠 때, 모두 새 간빠꾸[關白]가 승습(承襲)한 이후에 고친 연호였는데, 이른바 정덕과 향보가 모두 간빠꾸의 연호라면, 이제 이번 원문(元文)도 필시 간빠꾸의 연호일 터인데, 어찌하여 전 왜황(倭皇)이 죽고 새 왜황이 계승한 뒤에 고친 연호라고 하여, 왜황의 연호로 돌리는가?』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답하기를, 『우리나라의 연호는 본디 왜황의 연호인데, 연호를 고치는 규정은 각기 유래하는 바가 있어서 그 규정이 한결같지 않다. 왜황이 새로 서거나 간빠꾸가 새로 서거

458) 황대일(黃大逸, 1710-?): 창원 황씨로 자는 화수(華叟)이다. 영조 8년(1732) 역과에 올라 왜학으로 종사하였다.

나, 국가에 길흉이 있거나 풍년이나 흉년이 들면 곧장 모두 사정을 따라 연호를 고치기로, 이전의 신묘년(1711)의 정덕과 병신년(1716)의 향보는 곧 모두 간빠꾸가 새로 승습한 초기의 연호이다. 간빠꾸가 새로 승습하는 것 역시 국가의 큰 경사이므로 그때 과연 연호를 고쳤고, 이번에 원문으로 호칭을 고친 일은, 금년 4월에 전 왜황이 죽고 새 왜황이 계승하여 연호를 고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였으며, 이른바 왜황은 본디 국정(國政)에 간여함이 없고 연호만 사용하는 데 지나지 않을 따름이므로, 예로부터 왜황이 죽거나 새로 설 때 달리 상고할 만한 전례가 없다'고 수분하였기에 연유를 회이한다"고 하였음.

병진(1735) 9월 12일

이번 9월 11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김(金)이 계 품한 바**, “이번 관왜(館倭)에 대한 조정의 처분이 적합하여, 교활한 왜인이 두려워 복종하고 국가의 위신 또한 펴졌으나, 논의하는 자는 혹 이 뒤로 왜인들이 첩사(僉使)를 경시할까 염려하는데, 이 또한 무리가 아닙니다. 또한 근래 부산진의 형편이 피폐하여, 연례(年例) 예단(禮緞) 또한 갖추어 줄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호조(戶曹)의 세은(稅銀) 400냥을 지급하는 일이 있었으나 중간에 호조에서 도로 빼앗아 갔고, 이전에는 당해 부산진에서 공작미(公作米)를 납입하였으므로 이익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동래부에서 받아들이며, 땀나무와 숯 값에 있어서도 방군(防軍)의 포목을 각 고을에서 또한 보내주지 않으므로, 감영에 논보(論報)하여 비로소 재촉하게 되므로, 기한을 넘겨 일이 생기는 폐단이 있게 됩니다. 이번의 일 뒤로는 조정에서 더욱 특별하게 부산진을 배려하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공작미를 납입하지 않는 자는 일찍이 처분하라는 말이 있었다. 이번 일 뒤로 공작미와 땀나무와 숯 등의 물건을 만약 또 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으면 첩사는 더욱 경시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더욱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상납(上納)과 하납(下納)은 모두 유정지공(惟正之供)으로 일의 체면이 지극히 엄중한데, 수령이 어찌하여 임의로 지연하는가? 만약 이런 일로 또 일이 일어나는 폐단이 있으면 첩사만 호시할 뿐 아니라 수령 또한 엄중한 법률을 적용해야 마땅하니, 비변사에서 각별히 신척함이 좋겠다”고 하였음.

이번 9월 11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김(金)이 계 품한 바**, “이것은 곧 동래부사 오명서의 장계인데, 관왜가 밀고 나온 일로써 조정의 명대로 관수에게 책망하고 타일러 그대로 철공하게 한 형편은 갖추어 진술하였는데, 관수왜는 밀고 나온 왜인 등은 마땅히 도중(島中)으로 잡아보낸다고 하였으니, 그 조처 여부를 살펴보고 철공 한 가지 일은 참작하여 분부하겠으나, 말단에 가훈도 변기

화(卜箕和)에 대하여 덧붙여 진술하기를, ‘말재주가 있어서 능히 말 한 마디로 교활한 왜인을 꺾어 복종시켰으나, 새로 차출된 훈도는 그 여론을 들으니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듯하다고 하니, 변기화를 그대로 훈도의 직책에 차출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의 체면을 헤아려보건대 대단히 편치 못합니다. 기화는 저가 사사로이 가서 머무는 자에 지나지 않는데, 설혹 이 책무를 감당할 만하다고 해도, 일개 변방의 신하가 어찌 감히 곧바로 청하여 그대로 차출하겠습니까? 사역원 제조(提調) 조(趙)가 이 장계를 보고는 말을 보내어 ‘기화는 일찍이 농간을 하여 죄과를 범한 일이 있으니 결코 차출을 허락해서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기화가 비록 연좌되는 바가 없더라도 번거로이 청하는 것이 불가한데, 하물며 전일에 죄를 지은 과오가 있는 자이겠습니까? 새로 차출된 훈도가 비록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 이미 청(廳)의 천거로 차출되어 이미 겨우 내려갔는데, 비난하고 헐뜯는 말이 또한 어찌 진실인지 알겠습니까? 동래부사 오명서를 추고하고, 이른바 훈도의 일은 시행하지 않음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왜역이 동래에 지체하여 머물면서 사는 자에게는 일찍이 신칙한 명령이 있었는데, 변기화가 스스로 사사로이 가서 머물고 있으니 그 버릇이 밍다. 수령은 즉시 독촉하여 보내야 마땅한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훈도로 차출하자는 청을 하였으니 일이 극히 편치 않다. 동래부사 오명서를 엄중하게 추고하고 장계에 청한 바는 시행하지 않음이 옳겠다”고 하셨습니다.

병진(1735) 10월 26일

비망기. 두 나라의 교린(交隣)에는 신의를 우선해야 마땅하고, 약조를 지킴에는 금석처럼 해야 마땅하다. 예전의 제도가 없지 않은데 어찌 계속 새로 만들어 교린의 후한 뜻을 손상해서야 되겠는가? 표류한 배에 낱짜를 정하여 양식을 지급하는 것이 비록 말단의 폐해를 다듬고자 하는 뜻에서 나왔으나, 이미 예전 제도가 아니고 대접 또한 너무 박하다. 저쪽에서 이미 이렇게 우리쪽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도리어 이렇게 저쪽 사람들을 대접하겠는가? 새기고 녹여야 그 율음을 보지만, 일이 만약 방해된다면 어찌 새기고 녹이는데 구애되랴? 통쾌하게 그 청을 허락하여 한편으로는 예전 제도를 보존하고 한편으로는 지체되어 곤란하여 없는 사정을 보살피도록 하라. 철공(撤供)하는 일은 예로부터 있었지만 대개 신칙하여 다듬기 위함이니, 또한 어찌 낱짜를 많이 하겠는가? 지급하도록 명한다는 뜻으로 아울러 비변사에 명하여 즉시 동래부에 분부하게 하라. 비변사.

병진(1735) 11월 22일

이번 11월 21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김(金)이 계품한 바**, “동래부사 오명서의 장계에, ‘지세포 만호 김세광(金世光)이 왜선을 5일이 지나 영솔하여 부친 데 대하여 죄를 논하는 여부를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기를 청한다’고 하였는데, 5일 식량 한 조목은 비록 이미 특별히 전교하여 열어주기로 허락하였지만, 변장(邊將)이 영솔하여 부치는데 5일을 넘긴 자는 이전대로 벌을 시행한 뒤에야 고의로 지체하여 머무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겠으나, 동료 재상의 생각으로는 ‘조정에서 이미 5일 뒤에 양식을 지급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어찌 5일을 넘겼다고 변장에게 죄를 줄 수 있겠는가?’ 하는데, 이 또한 그러한 듯합니다.”라고 하였고, 우의정 송(宋)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이미 5일 양식을 허락하고 또 5일 지체한 것을 죄로 논한다면 이는 문을 들어오게 하려다가 닫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상감께서는 “우상(右相)의 말이 옳다. 이는 분간하되, 이 뒤로 더욱 심하게 지체한 자는 간간히 적발하여 죄를 논함이 옳겠다”고 하셨음.

● **집필위원**

자료해제 : 김동철(부산대 교수)
자료국역 : 정경주(경성대 교수)
국역감수 : 이원균(전 부경대 교수)

● **편집위원**

위원장 : 강창석(동의대학교 총장)
위 원 : 강대민(경성대학교 교수)
" : 백승충(부산대학교 교수)
" : 감강식(부경역사연구소)
" : 박래희(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장)
" : 홍연진(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釜山史料叢書¹⁶

國譯 典客司別膽錄(I)

발 행 인 부산광역시장
편 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편집·교열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홍연진
발 행 일 2009년 7월 31일
인 쇄 대원애드콤
발간등록번호 52 - 6260000 - 00076 - 10

〈非賣品〉

【연락처】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부산광역시청 시사편찬실
TEL. 051)888-3468, FAX. 051)888-3469